

正史彙鑑

역주
하

正史彙鑑

역주
下

해 제

구순옥 | 단국대학교 한문교육연구소 연구교수

번역 및 교정

김우정 | 단국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구순옥 | 단국대학교 한문교육연구소 연구교수

김다미 | 단국대학교 한문교육연구소 연구원

김용창 | 단국대학교 한문교육연구소 연구원

최솔잎 | 단국대학교 한문교육연구소 연구원

기 획

유현희 | 수원학연구소 센터장

발행일 2022년 8월 30일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서둔동)
Tel. 031-220-8057

편집디자인·제작

산원커뮤니케이션

원문 출처

東京大學 総合圖書館

자료제공

경기도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ISBN 979-11-6819-087-0
979-11-90343-88-6 (세트)



『정사휘감正史彙鑑』역주 下

正史彙鑑 권5

- 개언로開言路: 언로를 열다 011
- 양사기養士氣: 선비의 기상을 배양하다 034
- 장명절獎名節: 명예와 절의를 장려하다 043
- 여염치勵廉恥: 염치를 장려하다 058

正史彙鑑 권6

- 애민생愛民生: 백성을 사랑하다 069
- 부附 경요부輕徭賦: 요역과 세금을 줄이다 080
- 부附 진제賑濟: 백성을 구휼하다 083
- 근정사勤政事: 정사를 부지런히 하다 088
- 절재용節財用: 재용을 절약하다 102
- 간행행簡行幸: 행행을 삼가다 115

正史彙鑑 권7

- 수법제守法制: 법제를 지키다 129
- 입기강立紀綱: 기강을 세우다 144
- 명상벌明賞罰: 상벌을 분명히 하다 154
- 흘형옥恤刑獄: 형옥을 삼가다 168
- 부附 신사愼赦: 사면을 신중히 하다 180



正史彙鑑 권8

- 예신료禮臣僚: 신료를 예우하다 187
- 변봉당卞朋黨: 봉당을 분별하다 202
- 칙무비飭武備: 군비軍備를 갖추다 215
- 유후곤裕後昆: 후손에게 덕행을 물려주다 226

부록 흥봉한 연보年譜 241

『정사휘감正史彙鑑』역주 上

『정사휘감』해제

1. 머리말 011
2. 『정사휘감』의 서지사항 및 선본善本 013
3. 『정사휘감』의 구성과 내용 019
4. 맺음말 024

正史彙鑑 권1

- 정사휘감 서 029
- 독성효篤聖孝: 성효를 돈독히 하다 031
- 법조종法祖宗: 조종을 본받다 046
- 경사천敬事天: 하늘의 뜻을 경건히 받들다 055
- 근사전勤祀典: 제사의 예법을 신중히 하다 069
- 전성학典聖學: 성학에 힘쓰다 078

正史彙鑑 권2

- 송유학崇儒學: 유학을 숭상하다 089
부附 좌교左敎: 이단을 배격하다 097
- 상검약尙儉約: 검약을 숭상하다 106
부附 척진이斥珍異: 진귀한 것을 멀리하다 114
부附 각공헌却眞獻: 공물을 물리치다 117
- 거편사去偏私: 편벽되고 사사로운 마음을 없애다 124
- 계총찰戒聰察: 자신의 총명을 경계하다 134
- 신사교信辭敎: 말과 전교를 미답게 하다 142

正史彙鑑 권3

- 정궁위正宮圍: 궁위를 바로잡다 153
부附 공주公主 165
- 어근습馭近習: 근습을 제어하다 171
- 목종친睦宗親: 종친을 보살피다 188
- 대척완待威晚: 척완을 대하다 201

正史彙鑑 권4

- 임현능任賢能: 현능을 임용하다 219
부附 위임委任 229
- 변간사辨奸邪: 간사를 분별하다 239
- 중전선重銓選: 전형銓衡을 신중히 하다 258
부附 석관방措官方: 관직을 아끼다 266
- 엄과시嚴科試: 과거科擧를 엄중히 하다 272

일러두기

- 현재 전해지는 총 5종의 『정사회감』 가운데 도쿄대학 아천문고(阿天文庫) 소장본을 저본으로 삼아, 총 4책 8권을 역주하였다.

| 교감 |

- ‘법조法條’와 ‘계조戒條’는 원전과 비교하는 원교原校를 원칙으로 하여 이본 간의 대교對校도 하였다.
- ‘근안謹按’은 이본 간의 대교를 원칙으로 하였다.
- 전고典故의 순서 오류, 원주原注의 위치 오류 등은 교감주를 달았으며, 원문의 교감 결과는 교감주는 달지 않고 오지誤字, 연자衍字 등은 ()로 표시하고, 수정한 자, 누락된 자는 []로 표시하여 반영하였다.

| 원문정리 |

- ‘근안謹按’으로 시작하는 흥봉한의 문장은 위에 “근안謹按”을 덧붙여 표시하였다.
- 저본의 원주原注는 【 】로 표시하였다.
- 원문에 표점을 병기하였다.

| 사용한 표점과 부호 |

- 종지부호: 마침표 (.), 물음표 (?), 느낌표 (!)
- 휴지부호: 쉼표 (,), 가운뎃점 (·), 쌍점 (:)
- 인용부호 강조: 큰따옴표 (“ ”), 작은따옴표 (‘ ’)
- 서명, 편명, 작품 표시: 겹낫표 (『 』), 홑낫표 (「 」)
- 내용 생략 부호: 말줄임표 (…)
- 원주 표시부호: 【 】
- 번역문에 간략한 부연설명이 필요한 경우, 꺾쇠괄호 ([]) 안에 기입하였다.

正史彙鑑

역주 下

正史彙鑑

권 5

개인로開言路

언로를 열다

법조 法條

- 순임금은 임금의 잘못에 대한 비판을 적을 수 있는 나무를 세우고 깃발과 북을 두어 직언하는 길을 넓혀서, 총장總章¹에 이르지 못한 말을 찾으려 하였다.
- 하夏の 우임금²이 종, 북, 경쇠, 방울, 노도路畿³를 걸고 사망의 선비를 기다리며 말하였다. “과인에게 도道を 가르쳐 줄 자는 북을 치고, 의리를 깨우쳐 줄 자는 종을 치고, 일에 대해 고할 자는 방울을 울리고, 우환을 말할 자는 경쇠를 치고, 송사가 있는 자는 노도를 흔들라.”【이상은 『봉주강감회찬鳳洲網鑑會纂』에 보인다.】
- 위 무공衛武公⁴은 나이가 아흔다섯에도 여전히 나라 사람들에게 훈계하여 “조정에 있는 자들은 내가 늙었다 하여 내버리지 말고, 반드시 서로 나를 일깨우고 이끌라.”라고 하니, 수레를 타고 갈 때는 호위하는 병사가 바로잡게 하고 조회를 받을 때는 관청의 수

1 총장總章: 순임금이 정교政敎를 시행하였던 명당明堂을 가리키는 말이다.

2 우임금: 하夏 제1대 왕으로, ‘대우대마’ 또는 ‘우왕禹王’으로 불린다. 곤鯀의 아들로, 치수治水에 큰 공적을 세우고 구주九州 체계를 확립하여 순임금의 후계자가 되었다. 순임금이 죽은 뒤 순임금의 아들 상균商均을 즉위시키고 은거하였다. 그러나 백성과 신하들이 자신을 찾아와 귀의하자 비로소 즉위하였다. 즉위 후 국호를 ‘하후夏后’, 성을 ‘사씨’로 고쳤다. 그의 아들 계황가 우임금의 뒤를 이어 즉위하였고, 이로부터 제위를 세습하게 되었다.

3 노도路畿: 두 개의 작은 북을 긴 자루에 어긋매끼어 끼운 악기로, 북의 허리 양쪽에 긴 쇠줄의 귀가 있어서 자루를 잡고 흔들면 쇠줄의 귀가 북에 부딪혀 소리가 난다.

4 위 무공衛武公: 춘추 시대 위의 군주로, 성은 희姬, 이름은 화제이다. 95세의 나이에도 근면함을 잃지 않고 스스로 경계하였다. 백성들이 무공의 덕을 찬미한 「기욱淇澳」이라는 시가 『시경』에 기록되어 있다.

장이 법도를 알려주게 하며, 안석에 기대고 있을 때는 송훈誦訓의 간언을 가까이하고⁵ 침소에 있을 때는 곁에서 모시는 자가 충고하게 하며, 일을 할 때는 악사樂師와 태사太史의 인도를 받고 편히 쉴 때는 사공師工이 시를 읊게 하며, 사관史官은 빠짐없이 기록하며 소경은 그침없이 훈계의 말을 외움으로써 일깨우고 제어할 수 있게 하였다. 【이상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보인다.】

|| 위 문후魏文侯⁶가 신하들에게 “나는 어떤 군주인가?”라고 묻자 모두가 “어진 군주이십니다.”라고 대답하였는데, 임좌任座는 “군주께서 중산中山을 얻고서 아우를 봉하지 않고 아들을 봉하셨으니, 어떻게 어진 군주라 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문후가 노하자 임좌는 종종걸음으로 빠르게 물러났다. 다음으로 책황翟璜에게 물으니, “어진 군주이십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문후가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라고 하니, “군주가 어질면 신하가 올곧은 법입니다. 앞서 임좌의 말이 올곧았으니, 이로써 알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문후가 기뻐하여 책황으로 하여금 임좌를 불러 돌아오게 하였다.

|| 전한 문제前漢文帝⁷ 때의 일이다. 영음후穎陰侯 관영灌嬰의 기驕⁸인 가산賈山⁹이 글을 올려 말하였다. “신이 듣건대, 벼락에 맞은 것은 모두 꺾이거나 부러지고 일만 균鈞의 무게에 눌린 것은 모두 곤죽이 되거나 가루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임금의 위엄은 벼락 이상이고, 힘은 일만 균 이상입니다. 언로를 열어 간언을 구하면서 온화한 안색으로 받아들이셔도 사인士人은 두려워서 감히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그 허물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는 경우라면 어떻겠습니까. 진 황제秦皇帝는 말을 달

5 안석에 … 가까이하고: 안석에 송훈誦訓의 간언들을 써서 가까이에 두고 보았음을 말한다. 송훈은 주周的 관직명으로, 왕을 위하여 사방의 고사故事와 풍속 등을 설명해주었으며, 왕이 순수巡狩할 때 왕의 곁에서 따라 다녔다고 한다.

6 위 문후魏文侯: 전국 시대 위의 군주 위사魏斯이다. 진ष의 삼경三卿 중 하나였다가 주周 왕실의 승인을 받아 진을 셋으로 나누어 그중 하나를 차지하고 제후가 되었다. 이극李兑 등의 유능한 인재들을 등용하여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7 전한 문제前漢文帝: 기원전 202~기원전 157. 전한 제5대 황제 유허劉恒으로, 재위 기간은 기원전 180년에서 기원전 157년이다. 공신功臣을 중용하고 가의賈誼와 조조晁錯 등의 인재를 등용하여 봉건제도를 바로잡고, 요역과 세금을 경감하며 농업을 장려하여 민생 안정과 국력 신장에 힘을 기울였다. 뒤를 이은 경제의 치세와 더불어 ‘문경지치文景之治’로 불린다.

8 기驕: 안사고顔師古는 ‘앞장서서 달리거나 뒤에서 시종하는 從從’라고 주석하였다.

9 가산賈山: 전한 문제에게 치란治亂의 도를 논하는 상주문 ‘지언포함’을 올렸고, 문제가 백성들이 사사로이 돈을 주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인 도주전령盜鑄錢令을 폐지하자 강력히 반대하는 글을 올렸다. 문제는 그의 글을 훌륭하게 여기고 받아들였지만, 끝내 벼슬에 등용하지는 않았다.

려 사냥하는 즐거움에 빠져 멸망의 한가운데 처해 있었으면서도 스스로 몰랐던 것은 어째서이겠습니까? 세상에 말해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무도 감히 말하지 않았던 것은 어째서이겠습니까? 비방하는 사람을 물리치고, 직간하는 사인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폐하께서 날마다 사냥에 빠져 토끼나 여우를 잡느라 대업을 손상시키고 계시니, 신은 몹시도 두렵습니다.” 문제가 가상히 여기고 그 말을 받아들였다.

■ 전한 경제前漢景帝¹⁰ 때의 일이다. 질도郅都¹¹가 중랑장中郎將이 되어 경제를 모시고 상림원上林苑에 들어갔는데, 가희賈姬가 측간에 갔을 때 멧돼지가 갑자기 달려와 측간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경제가 직접 무기를 들고 가희를 구하려 하니, 질도가 경제 앞에 엎드려 “첩을 하나 잃거든 다시 첩을 하나 들이면 됩니다. 천하에 가희 같은 여인이 드물겠습니까. 폐하께서 자신을 가벼이 여기신다면, 중묘와 태후는 어떻게 하시렵니까.”라고 하였다. 이에 경제가 돌아왔고, 멧돼지도 물러갔다. 태후가 이를 듣고서 질도에게 금백 근을 내렸다.

■ 전한 무제前漢武帝¹²가 문학하는 유자儒者를 초빙하였는데, 무제가 ‘나는 이리이러한 것을 하고 싶다.’ 라고 말하였다. 주작도위主爵都尉 급암汲黯¹³이 “폐하께서는 속으로는 욕심이 많으면서 겉으로만 인의仁義를 베푸시니, 어떻게 요순堯舜의 치적을 이룰 수 있겠

10 전한 경제前漢景帝: 기원전 188~기원전 141. 전한 제6대 황제 유계劉啓로, 재위 기간은 기원전 157년에서 기원전 141년이다. 아버지 문제文帝의 업적을 이어받아 검약에 힘쓰고 중농重農 정책을 펼치는 등 민생을 안정시켰으므로, 문제의 치세와 더불어 ‘문경지치文景之治’로 불린다.

11 질도郅都: 거리낌없이 직간하고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였으므로 그를 두려워한 종실과 귀척들에게 ‘새매[蒼鷹]’라고 불렀다. 질도가 안문雁門 태수로 부임하자 흉노가 그의 명성을 듣고 변방에서 떠나갔으며, 그가 죽은 뒤에도 안문 가까이 오지 못했다고 한다.

12 전한 무제前漢武帝: 기원전 156~기원전 87. 전한 제7대 황제 유철劉徹로, 재위 기간은 기원전 141년에서 기원전 87년이다. 권신을 내쫓고 인재를 등용하였고 유학을 중시하여 오경박사五經博士를 두었다. 제후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전국을 13주로 나누고 자사刺史를 파견하여 중앙집권화를 이루었다. 흉노를 격파하고 서역과의 실크로드를 확보하는 등 영토를 확장시켰으나, 막대한 군비를 소모하였으며, 화려한 궁전을 짓고 불로장생을 믿어 방사方士를 모아 봉선봉의식을 행하여 국가 재정을 어렵게 하였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상인 출신을 등용하여 국가가 상인의 역할을 대행하여 재정 확대를 꾀했지만 상인의 몰락을 초래하였다. 이후 여 태자廢太子 유거劉據가 난을 일으키는 등으로 정치적 사회적 불안이 심화되었고 무제가 사망한 뒤 한은 급격히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13 급암汲黯: 자는 장유長孺이다. 성품이 강직하여 황제의 면전에서 바른말을 서슴없이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급직汲直’이라고 일컬었다.

습니까.”라고 대답하였다. 무제가 말없이 낮빛을 바꾸고서 조회를 끝내자, 공경이 급암을 걱정하였다. 무제가 물러나 주변 신하들에게 “심하구나. 급암의 우직함이!”라고 하였다.

■ 전한 선제前漢宣帝¹⁴가 하후승夏侯勝¹⁵을 간대부諫大夫로 삼았다. 하후승이 선제를 만나고 나와 선제가 한 말을 다른 사람에게 옮겼다. 선제가 이를 듣고 하후승을 나무라자 하후승이 “폐하께서 하신 말씀이 좋은 내용이었으므로 신이 일부러 소문을 냈습니다. 요임금의 말은 천하에 퍼져 지금까지도 암송되고 있는데, 신은 폐하의 말씀이 세상에 전해질 만하다고 여겼으므로 그리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또한 조정에 큰 논의가 있을 때마다 선제는 하후승이 솔직하다는 것을 알고서 그에게 말하였다. “선생은 바른말을 하라. 지난 번의 일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¹⁶

■ 전한 성제前漢成帝¹⁷가 장우張禹¹⁸에게 이민吏民들이 하늘의 변고는 왕씨王氏가 정사를 전횡¹⁹한 결과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물었다. 장우는 왕씨에게 원한을 사게 될까 염려하여 “재변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심원하여 헤아리기 어려운데, 갓 배운 소생小生들이 도

14 전한 선제前漢宣帝: 기원전 91년~기원전 48년. 전한 제10대 황제 유순劉詢이다. 재위 기간은 기원전 73년~기원전 49년이다. 소제昭帝가 죽은 후 광광霍光에 의해 황제로 옹립되었다. 지방행정제도 정비와 경제 부흥을 위해 노력하였고, 처음으로 상평창常平倉을 설치하여 빈민 구제에도 힘썼다. 대외적으로는 오손烏孫과 손잡고 흉노를 분열시키고 서역 36국을 복속시킴으로써 국위를 떨쳤다.

15 하후승夏侯勝: 자는 장공長公이다. 『서경』에 정통하였으며, 격의 없이 간언을 올리고 위의를 중시하지 않아 황제를 군주이라 하고, 황제 앞에서 다른 신하를 이름 대신 자호로 부르기도 하였다.

16 지난 … 된다: 하후승이 바른말을 하다가 자신의 심기를 거슬러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안사고顔師古는 원문의 “前事”에 대해 ‘묘악廟樂에 대해 의문하다가 죄를 저지른 일[坐議廟樂事]’라고 주석하였다. 전한 선제가 증조부인 무제武帝의 덕을 칭송하기 위한 묘악을 만들도록 명하였는데, 하후승은 무제가 많은 군사를 희생시키고 천하의 재력을 소비하여 백성들이 은택을 입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묘악을 제정을 반대하였고, 이 일로 하후승은 탄핵을 받아 3년간 하옥되었다가 사면을 받았다.

17 전한 성제前漢成帝: 기원전 51~기원전 7. 전한 제12대 황제 유오劉骘이다. 어려서는 경서를 즐겨 읽고 관대하고 신중하여 촉망받았다고 하나, 즉위한 후에는 조회에도 나오지 않고 주색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았다. 조비연趙飛燕, 조합덕趙合德 자매의 미모와 가무에 빠졌으며, 조비연을 황후로 삼았다.

18 장우張禹: 자는 자문子文이다. 전한 성제의 사부이자 승상의 직임을 맡았고, 외척 왕씨王氏가 정권을 장악하자 관직에서 물러나 국가의 큰일에 대해 자문하였다.

19 왕씨王氏가 정사를 전횡: 전한 성제가 19세에 즉위하여 친정親政의 능력이 없었으므로, 장인丈人인 왕봉王鳳이 정사를 도왔다. 왕봉이 죽은 뒤에도 그의 형제인 왕음王音, 왕상王商, 왕근王根 등이 차례로 권력을 쥐었고, 왕근이 죽은 뒤에는 그 조카 왕망王莽이 집권하여 끝내 황제의 자리까지 찬탈했다.

도를 어지럽히고 사람을 오도誤導하고 있으니, 믿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전 괴리령槐里令 주운朱雲²⁰이 글을 올려 뱀기를 청하여 “바라건대 신에게 상방尙方的 참마검斬馬劍²¹을 내려주신다면, 아첨하는 신하의 머리를 베어 버리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성제가 그 아첨하는 신하가 누구냐고 묻자 “안창후安昌侯 장우입니다.”라고 대답하니, 성제가 노하여 “소신小臣이 짐의 사부師傅를 조정에서 옥보였으니, 죽음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죄다.”라고 하였다. 어사가 주운을 끌어내리려 하자 주운이 난간을 붙잡고 버텨서 난간이 부러졌는데, 주운이 “신은 관용방關龍逢²²과 비간比干²³을 따라 지하에서 노닐면 그만이지만, 성조聖朝는 어떻게 하려 하십니까.”라고 하였다. 이에 좌장군左將軍 신경기辛慶忌가 죽음을 무릅쓰고 간쟁諫爭하자 성제가 비로소 노여움을 풀었다. 후에 난간을 고칠 때, 성제가 말하였다. “난간을 바꾸지 말고 그대로 보수만 하여, 직언하는 신하의 상징으로 두어라.”

- 위 문제魏文帝²⁴가 기주冀州의 10만 가구를 옮겨 하남河南을 채우려고 하였는데, 당시에 가뭄과 메뚜기 떼로 인해 백성들이 굶주렸다. 시중侍中 신비辛毗가 뱀기를 청하자 문제가 일어나 궁 안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신비가 따라가 문제의 옷자락을 끌어당기니 문제가 끝내 뿌리치고 되돌아오지 않았다. 한참 뒤에야 나와서 “경이 나를 붙잡기를 어찌 그리도 다급히 하였는가?”라고 하자 신비가 “지금 옮기면 민심을 잃을 뿐만 아니라 먹고살 것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신이 감히 힘써 간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라 하니, 문제가 이에 그 절반만 옮겼다.

20 주운朱雲: 전한 성제의 아버지인 원제元帝의 재위 시절에 괴리령槐里令에 임명되었는데, 석현石顯 등 당시 집권자들의 전횡에 대해 여러 차례 상소하다가 모함을 받고 폐출되어 금고禁錮 처분을 받았다.

21 상방尙方的 참마검斬馬劍: 상방은 천자가 사용하는 칼 및 기타 완물玩物을 관리하는 한漢의 관서이다. 참마검은 천자가 대신大臣에게 권한을 위임할 때 그 징표로 내려주는 칼인 '상방검尙方劍'을 가리키는 것으로, 말의 목을 벨만큼 날카롭기 때문에 붙여진 별칭이다.

22 관용방關龍逢: 하 걸왕夏桀王 때의 현인賢人으로, 걸왕이 음주와 향락에 빠져 무도하자 이를 간언하여 피살되었다.

23 비간比干: 상 주왕商紂王의 숙부로, 주왕의 음란함에 대해서 간하자 주왕이 성인의 심장에 있는 일곱 개의 구멍을 확인하겠다고 그의 심장을 도려내어 죽였다.

24 위 문제魏文帝: 187~226. 삼국시대 위의 군주 조비曹丕로, 재위 기간은 220년에서 226년이다. 조조曹操의 아들로, 위왕魏王의 지위에서 후한 헌제에게 양위 받아 황제가 되었다. 후한 말기부터의 사회 혼란을 극복하고 왕조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내정에 힘썼다. 관리 선발 제도로 구품관인법九品官人法을 시행하고 환관과 외척의 득세를 막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변방을 평정하고 흉노, 강해 등과 우호관계를 맺었다. 시와 부에 뛰어나 조조와 조식과 더불어 '삼조삼부'로 일컬어진다.

|| 북위 세조北魏世祖²⁵ 때, 고필古弼²⁶이 상곡上谷에 있는 원유苑圃가 너무 넓으므로 절반 이상을 줄여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길 청한 적이 있었다. 고필이 들어가 세조를 만나 그 일에 대해 말하려고 했는데, 세조는 한창 급사중給事中 유수劉樹와 바둑을 두고 있었다. 고필이 한참 동안 곁에 앉아 있었지만 아فل 틈을 얻지 못하자, 갑자기 일어나 유수의 머리채를 잡아 상 아래로 끌어내려 귀를 잡아당기고 등을 때리며 말했다. “조정 의 일이 잘 다스려지지 않는 것은 실로 너의 죄다.” 그러자 세조가 안색이 변하며 바둑 판을 팽개치고 “짐의 잘못이다. 유수에게 무슨 죄가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고필이 주장奏狀을 갖춰 아뢰니 세조가 그가 아뢴 것을 모두 옳게 여겼다.

|| 북위 효문제北魏孝文帝²⁷가 산북山北에서 사냥을 하다가 고라니와 사슴 수천 마리를 잡았다. 상서尙書에 명해 소가 끄는 수레 오백 승乘을 가져와 실어 나르게 하였는데, 조서를 전달하는 사자가 떠나고 나자 효문제가 주변에 말하였다. “필공筆公이 틀림없이 내 뜻에 반대할 것이니, 너희가 직접 말로 운반하는 게 낫겠다.” 상서령尙書令 고필古弼은 머리가 뽕죽하였기 때문에 효문제가 항상 그를 지칭할 때 ‘붓[筆]’이라고 하였다.²⁸ 결국 가을걷이가 마치길 기다렸다가 운반하게 해 달라는 고필의 표表를 받고, 효문제가 “과연 내 말대로구나. 필공은 사직社稷을 위한 신하라고 할 만하다.”라고 하였다.

25 북위 세조北魏世祖: 408~452, 북위의 제3대 군주 탁발도拓拔燾로, 재위 기간은 423년에서 452년이다. 북연北燕, 북량北凉 등을 차례로 멸망시켜 439년에 화북을 통일하였고, 남조 송宋에 대한 공격을 개시해 회남과 강북을 빼앗았다.

26 고필古弼: 본래의 성은 ‘토해吐奚’로, 선비鮮卑 출신이다. 충민하고 정직하여 태종太宗의 총애를 받았다.

27 북위 효문제北魏孝文帝: 467~499, 북위의 제6대 군주 원광원宏(탁발광拓跋宏)으로, 재위 기간 471년에서 499년이다. 5살에 즉위하여 19년간 조모祖母 풍 태후馮太后가 섭정하였다. 친정 기간은 10년이었지만 북위 중흥의 군주로 일컬어진다. 처음으로 관리에게 봉록을 지급하고 율령을 개정하였으며 호적제도를 정비하고 균전제를 실시하여 토지제도를 개혁하였다. 494년 수도를 낙양洛陽으로 옮기면서 조정에서 한어漢語를 사용하고 중국식 복장과 성을 사용하게 하는 등의 한화漢化 정책을 시행하였다. 황족의 씨족명 ‘탁발拓拔’을 ‘원元’으로 고쳤으나, 극심한 반발이 이어져 북주에 이르러서 다시 복귀되었다.

28 ‘붓[筆]’이라고 하였다: 붓을 의미하는 한자 ‘필筆’과 그의 이름인 ‘필弼’의 음이 같은 것을 이용한 일종의 언어유희이다.

29 당 고조唐高祖: 566~635, 당 제1대 황제 이연李淵으로, 재위 기간은 618년에서 626년이다. 당국공唐國公 이병李昞의 아들로, 7세에 작위를 이어받았고 수隋에서 자사, 태수 등을 역임하였다. 수 말기에 관료, 호족과 결탁하고, 아들 이건성李建成, 이세민李世民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 장안을 점령했고, 양제가 살해되자 제위에 올라 당을 건국하였다. 이후 이세민의 활약으로 중원中原의 군웅 이밀李密, 두건덕竇建德, 왕세충王世充 등을 진압하였다. 626년 자식 간의 다툼으로 현무문玄武門의 변變이 일어나 이세민이 패권을 잡자, 양위하고 상왕上皇이 되었다.

|| 당 고조唐高祖²⁹가 소세장蘇世長³⁰을 간의대부諫議大夫로 삼았는데, 소세장이 피향전披香殿에서 고조를 모시고 연회에 참석했다가 분위기가 무르익자 고조에게 말했다. “이 건물은 수 양제隋煬帝가 만든 것입니까?”³¹ 고조가 “경은 어떻게 이 건물이 짐이 만든 것임을 모른단 말인가?”라고 하자 소세장이 대답하였다. “신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다만 경궁傾宮,³² 녹대鹿臺³³와 같이 화려한 것을 보고는 왕업王業을 일으킬 군주가 만든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당 태종唐太宗³⁴ 때의 일이다. 위징魏徵³⁵이 말미를 청하여 성묘省墓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가 돌아와서 태종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폐하께서 남산으로 행차 하시기에 밖에 있는 자들이 모두 채비를 마쳤는데도 결국 가지 않으셨다고 하던데, 어째서입니까?” 태종이 웃으며 말하였다. “처음에는 정말로 그럴 마음이 있었으나, 경이 성낼까 겁이 났기 때문에 도중에 그만둔 것일 뿐이다.” 태종이 아름다운 새매를 얻어 팔뚝에 올려놓고 놀다가 멀리서 위징이 오는 것을 보고 자신의 품속에 숨겼다. 위징이 일을 아뢰면서 이를 눈치채고 일부러 오랫동안 멈추지 않았으므로 새매가 결국 태종의 품속에서 죽었다.

30 소세장蘇世長: 당唐의 관리로, 기지가 있고 말을 잘하였다. 고조高祖에게 사치와 향락을 일삼다가 멸망한 수隋를 거울삼아 사치를 삼가고 검약할 것을 여러 차례 간언하였다.

31 수 양제隋煬帝가 만든 것입니까: 수 양제는 사치를 일삼다가 나라를 망쳐 큰 혼란을 야기하였고, 당 고조 이연은 그 혼란을 틈타 군대를 일으켜 수를 멸망시키고 당을 건국하였다. 소세장은 바로 전대前代 왕조가 호화로운 궁전을 짓고 사치를 부리다가 멸망한 사실을 고조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해 짐짓 모른 체하면서 물은 것이다.

32 경궁傾宮: ‘가파르게 솟아오른 궁전’이라는 뜻으로, 주왕紂王이 녹대鹿臺와 함께 세운 화려한 궁궐인 ‘경실瓊室’ 또는 ‘경궁瓊宮’을 가리키기도 한다.

33 녹대鹿臺: 상 주왕紂王이 화려하게 지어 올린 건물로, 이곳에 보화와 재물을 저장하였다. ‘요대瑤臺’라고도 불린다.

34 당 태종唐太宗: 600~849. 당 제2대 황제 이세민李世民으로, 재위 기간은 626년에서 649년이다. 고조高祖 이연李淵의 차남으로, 이연을 도와 당의 창건을 주도하였다. 당이 건립된 후, 중원 통일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626년 형인 태자 이견성, 넷째 아우 이원길 등을 죽이는 ‘현무문玄武門의 정변政變’을 일으켜 태자가 되었고, 얼마 후 선양을 받아 즉위하였다. 신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치文治에 힘썼고 영토를 확장하였으며, 지방 행정 조직, 재정, 조세 등 모든 제도를 정비하여 ‘정관지치貞觀之治’를 이루었다.

35 위징魏徵: 580~643. 자는 현성玄成이다. 수隋 말기에 이밀李密의 휘하에 있다가 당 고조高祖에게 귀순하여 태자 이견성李建成을 보좌하였다. 이견성이 아우 이세민李世民에게 패한 뒤, 이세민에게 부름을 받아 간의대부 등을 역임한 후 재상으로 등용되었다. 태종 이세민에게 200여 차례 직언을 올리면서 보좌하여, ‘정관지치貞觀之治’를 이루는 데 공헌하였다. 태종과의 문답은 대부분 『정관정요』에 실려 있으며, 『간태종십사소諫太宗十思疏』가 유명하다.

- 당 태종이 단소전丹霄殿에서 근신近臣과 연회를 가지다가, “위징은 간언할 때마다 내 의견을 따르지 않는데, 어째서인가?”라 하자 위징이 대답하였다. “옛날에 순임금이 신하들에게 ‘그대는 앞에서 순종하다가 물러나 뒷말하는 일이 없게 하라.’라고 권계하였습니다. 신이 마음속으로는 그것이 그르다 생각하면서 입으로는 폐하게 맞장구를 친다면, 이는 앞에서만 순종하는 것이니 어찌 직稷³⁶과 설契³⁷이 순임금을 섬기던 마음이라 하겠습니까.” 태종이 크게 웃으며 말하였다. “사람들은 위징의 행동거지가 거만하다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예쁘기만 하던데,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 당 태종이 일찍이 공경公卿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싶으면 반드시 깨끗한 거울을 보아야 하고, 군주가 자기의 허물을 알고 싶으면 반드시 충신이 필요한 법이다. 군주는 간언을 듣지 않으면서 스스로 현명하다 여기고 그 신하는 아침하면서 군주의 뜻에 따른다면, 군주가 나라를 잃고 난 뒤 신하가 어떻게 저 혼자서 온전할 수 있겠는가. 예컨대 우세기虞世基³⁸ 등은 수 양제隋煬帝에게 아침하여 부귀를 누렸으나 양제가 시해되고 나서 죽임을 당했다. 공들은 마땅히 이를 경계로 삼아야 할 것이다.”
- 당 태종이 간의대부諫議大夫 저수량褚遂良³⁹에게 “순임금이 칠기漆器를 만들자 그에 대해 간언하는 자가 십여 명이었는데, 어찌 이런 것까지 간언을 했단 말인가.”라고 물으니, 저수량이 “사치는 위망危亡의 근본입니다. 칠기 만들기를 멈추지 않으면 금과 옥으로

36 직稷: 순임금 때의 신하로, 본래의 이름은 기稷이며 농관農官인 후직后稷이 되어 순임금을 보좌하였다. 후에 주周的 선조先祖로 받아들여졌다.

37 설契: 순임금 때의 신하로, 교육과 호적 및 토지대장을 관장하는 사도司徒가 되어 순임금을 잘 보좌하였다. 후에 상商의 선조先祖로 받아들여졌다.

38 우세기虞世基: ?~618. 자는 무세懋世이며 소위蘇威, 우문술宇文述, 배구裴矩, 배운裴蘊과 함께 오귀五貴라 불렸다. 양제煬帝의 대규모 원정과 토목 공사로 인해 핍박받던 백성들이 자주 반란을 일으켰지만, 이를 은폐하여 양제에게 보고하고 그의 환심을 샀다. 우문화금宇文化及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양제와 함께 살해당하였다.

39 저수량褚遂良: 596~658. 자는 등선登善이며, 하남군공河南郡公에 봉해졌으므로 ‘저하남褚河南’이라 불리기도 한다. 학문과 서법書法에 뛰어나 태종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으며, 우세남虞世南, 구양순鄒羆詢, 설직薛稷과 함께 ‘초당사대가初唐四大家’로 불렸다. 고종高宗이 무축천武則天을 황후로 삼으려 할 적에 이를 반대하였으나 고종이 듣지 않자, 홀을 궁전 섬돌에 내려놓고 머리를 땅에 찧어 피를 흘리면서 “폐하의 홀을 돌려드립니다.”라고 하고 떠났다.

만들게 될 것이니, 충신이 군주를 사랑함에 반드시 그 조짐을 막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태종이 “그 말이 옳다. 짐에게도 허물이 있으니, 정도 마땅히 조짐이 보이면 간언하라.”라고 하였다.

- 당 태종이 위징魏徵에게 “군주가 어떻게 하면 명철한 군주가 되고, 어떻게 하면 우매한 군주가 되는가?”라고 묻자, 위징이 대답하였다. “다른 의견을 두루 들으면 명철해지고, 한쪽만 들으면 우매해집니다. 옛날 요임금은 아래 백성들에게 허심탄회하게 물었기에 유묘有苗의 죄악이 위로 알려질 수 있었고,⁴⁰ 순임금은 사방으로 눈을 밝히고 귀를 열었기에⁴¹ 공공共工과 환도驩兜의 죄악이 은폐될 수 없었습니다. 진 2세秦二世는 조고趙高만 믿었기에 망이궁望夷宮의 재앙을 빚었고,⁴² 남조南朝 양 무제梁武帝는 주이朱異만 믿었기에 대성臺城에서 치욕을 당했고,⁴³ 수 양제隋煬帝는 우세기虞世基만 믿었기에 팽성彭城關의 변란을 초래하였습니다.⁴⁴ 그러므로 군주가 두루 듣고 널리 받아들이면, 지위가 높은 대신이 틀어막거나 감추지 못하여 하민下民의 실정이 위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태종이 말하였다. “좋은 말이다.”

40 요임금은 … 있었다: ‘유묘有苗’는 요임금 시대에 있었던 강력한 부족 국가인 삼묘三苗를 가리킨다. 『서경』 「여형묘죄」에 “황제께서 아래의 백성들에게 허심탄회하게 물으시자, 흠아비와 과부들도 삼묘三苗의 허물을 성토했다.[皇帝清問下民 鯀稟有辭于苗]”라고 하였다.

41 순임금은 … 열었기에: 『서경』 「순전舜典」에 순임금이 즉위하고 나서 “사악四岳에게 지문을 구하여 사방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사방의 눈으로 밝게 보고 사방의 귀로 또렷하게 들었다.[舜格于文祖 詢于四岳 闢四門 明四聰]”라고 하였다.

42 진 2세秦二世는 … 빚었고: 진의 제2대 황제 호해胡亥는 환관 조고 덕분에 제위에 올랐으므로 그를 승상에 임명하고 신뢰하였는데, 조고는 황제의 이목을 가리고 국정을 전횡하였다. 후에 반란군이 수도인 함양咸陽까지 진격해오자 조고는 황제가 자신을 문책할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사위 염락閻樂으로 하여금 망이궁望夷宮에 거처하고 있던 황제를 압박하여 자살하게 만들었다.

43 양 무제梁武帝는 … 당했고: 후경侯景이 권신權臣 주이朱異 등을 주벌한다는 명목으로 반란을 일으켰는데, 무제는 후경이 수도인 건강健康까지 공격해오지 않을 것이라는 주이의 말만 믿고 방비하지 않았다. 결국 무제는 수도까지 진격한 후경에게 포위당하여 대성臺城에 유폐되고 굶어 죽었다.

44 수 양제隋煬帝는 … 초래하였습니다: 수 양제는 자신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전국 각지의 반란에 대해 은폐하는 우세기虞世基의 거짓 보고를 믿었는데, 우세기는 우문화금宇文化及의 반란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도 양제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양제는 우문화금의 반란을 막아내지 못하고 팽성彭城의 누각에서 죽임을 당하였고, 우세기도 마찬가지로 죽임을 당하였다.

|| 당 현종唐玄宗⁴⁵ 때, 한휴韓休⁴⁶가 황문시랑黃門侍郎 겸 동평장사同平章事였다. 한휴는 엄정嚴正한 사람이었으므로, 현종은 잘못된 것이 있을 때마다 주위에 “한휴가 이를 아는가?”라고 말하였는데, 말을 마치고 보면 간언하는 상소가 이미 와 있었다. 현종이 거울을 마주하고서 말없이 즐거워하지 못하니, 주위에서 “한휴가 재상이 되고 나서 폐하께서는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지셨습니다. 어찌서 내쫓지 않으십니까?”라고 하였다. 현종이 탄식하면서 말했다. “내 모습은 비록 수척해졌지만, 천하 사람들은 틀림없이 살이 올랐을 것이다. 소승蕭嵩⁴⁷은 일을 아뢰릴 적에 항상 내 뜻에 따랐는데 그가 물러가고 나면 내 잠자리가 편치 못했고, 한휴는 항상 힘껏 간쟁하는데 그가 물러가고 나면 내 잠자리가 편안하다. 내가 한휴를 쓰는 것은 사직社稷을 위해서이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다.”

|| 당 헌종唐憲宗⁴⁸ 때, 백거이白居易⁴⁹가 일을 논하다가 “폐하께서 잘못하셨습니다.”라고 하

45 당 현종唐玄宗: 685~762. 당 제6대 황제 이릉기李隆基로, 재위 기간은 712년에서 756년이다. 백부父인 중종이 재위할 때, 황후 위씨가 딸 안락공주와 짜고 중종을 독살하고 현종의 아버지까지도 해치려 하자, 현종이 위 황후와 안락공주를 주살한 후 아버지를 황제로 옹립하고 자신은 태자가 되어 실권을 잡았다. 아버지의 양위로 즉위하여, 기강을 바로잡고 선정을 베풀어, 문화, 경제, 교역 등이 모두 융성하여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이 통치 시기를 ‘개원지치開元之治’라고 한다. 그러나 만년에 정사를 등한시하고 도교에 심취하였으며 양귀비를 총애하여 국정을 어지럽혔다. 안녹산의 난이 일어나자 피난 갔다가 다음 해에 아들 숙종肅宗에게 양위하였다.

46 한휴韓休: 673~740. 자는 양사良士이며, 성격이 강직하고 영화와 이익을 구하지 않았다. 예부시랑, 황문시랑 등을 역임하였고, 소승蕭嵩의 추천을 받아 재상의 지위에 올랐다. 재상이 된 후 강직한 성격 탓에 소승과 갈등을 빚었고 결국 공부상서로 좌천되었다. (『新唐書』「韓休傳」)

47 소승蕭嵩: ?~749. 자는 교보喬甫이며, 후량 명제後梁明帝의 현손玄孫이다. 하서 절도사河西節度使로서 토번吐蕃을 격퇴하는 공을 세워 서국공徐國公에 봉해졌고, 중서령, 우승상, 태자태사 등을 역임하였다. 재상에 임명된 후 국정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내지 않고 현종의 말을 따르기만 하였다고 한다. (『新唐書』「蕭嵩傳」)

48 당 헌종唐憲宗: 778~820. 당 제11대 황제 이순李純으로, 재위 기간은 805년에서 820년이다. 병약한 아버지 순종順宗으로부터 양위 받아 즉위하였다. 즉위하여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환관 세력을 누르고자 두황상杜黃裳을 재상으로 등용하고 관제官制를 개혁하였으며 번진세력을 통제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이때 당은 일시적으로 중흥기를 맞이하였는데, 이를 ‘원화중흥元和中興’이라 한다. 그러나 태자 이녕李寧이 19세에 요절한 이후, 불교와 도교에 빠져 금단金丹을 남용하여 걸핏하면 화를 내고 환관을 때리는 등 정신 이상을 일으켰다. 결국 환관들에게 시해되었다.

49 백거이白居易: 자는 낙천樂天이며, 시인으로 유명하다. 현종이 「장한가長恨歌」 등 백거이의 시를 좋아하여 그를 불러 한림학사로 임명하였다. 사회 정치의 부조리함을 비판하는 「신악부新樂府」 50수 등을 지었는데, 풍자시에서 비판의 대상이었던 대신들이 그를 미워하고 모함하여 강주 자사江州刺史로 좌천되었다. 좌천된 이후 인생에 대한 회의와 문학에 대한 반성을 담아 「비파행琵琶行」을 완성하였다.

50 이강李絳: 764~830. 자는 심지深之이고, 시호는 정후이다. 성품이 강직하여 직간하는 신하로 명성이 있었다. 벼슬이 상서우복야尚書右僕射, 산남서도 절도사山南西道節度使에 이르렀으며, 저서에 『이심지문집李深之文集』이 있다.

자 현종이 정색을 한 채 논의를 끝내고, 은밀히 승지^{承旨} 이강^{李絳}⁵⁰을 불러 “백거이는 소신 주제에 불손하니, 한림원^{翰林院}에서 쫓아내야 마땅하다.”라고 하였다. 이강이 “폐하께서 직언을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신하들이 진심을 다하여 감추지 않는 것입니다. 백거이의 마음은 충심을 바친 것인데 폐하께서 지금 죄를 주신다면, 신은 천하 사람들이 저마다 함구할 생각을 하게 될까 염려됩니다.”라고 하니, 현종이 기뻐하면서 백거이를 예전처럼 대하였다.

현종이 상림원^{上林苑}에서 사냥을 하고 싶어서 봉래지^{蓬萊池}까지 갔다가 주위에 말했다. “이강이 틀림없이 간언할 것이니, 그만두는 게 낫겠다.”

■ 당 현종 때, 주질현 위^{蓋屋縣尉}와 집현 교리^{集賢校理}를 지낸 백거이가 악부시^{樂府詩} 100여 편을 지어 시사^{時事}를 풍간^{諷諫}하였는데, 궁중까지 전해졌다. 현종이 이를 보고 마음에 들어 그를 불러 한림학사^{翰林學士}로 삼았다.

■ 당 현종 때의 일이다. 이강^{李絳}이 토돌승취^{吐突承璀}의 전횡에 관하여 현종을 대면하여 말하였는데, 그 말이 몹시도 간절하였다. 현종이 낯빛을 바꾸어 “경의 말이 너무 지나치다.”라고 하자, 이강이 울면서 말하였다. “폐하께서 신에게 복심^{腹心}과 이목^{耳目}의 직임을 맡기셨는데, 만약 신이 두려워 회피하고 아뢰지 않는다면 신이 폐하를 저버리는 것이고, 아뢰었는데도 폐하께서 듣기 싫어하신다면 폐하께서 신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현종이 노여움을 풀면서 말하였다. “경이 말한 것은 모두 남들이 말하지 못하는 것이었는데, 짐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해 주었으니 참으로 충신이다. 다음에도 숨김 없이 다 말하여 모두 이와 같이 하라.”

■ 북주 태조^{北周太祖}⁵¹가 다음과 같이 조서를 내렸다. “짐은 군인 출신으로 학문을 가까이 하지 못했기에 천하를 다스리는 방법을 잘 모른다. 문무백관들 가운데 나라와 백성을 이

51 북주 태조^{北周太祖}: 505~556. 북주 문제^{北周文帝}의 아버지 우문태^{宇文泰}이다. 후위^{後魏} 사람으로 관서 대도독^{關西大都督}이 되었고 고환^{高歡}에게 핍박받던 효무제^{孝武帝}를 장안^{長安}에서 받들어 모시고 서위^{西魏}를 세웠으나, 뒤에 효무제를 독살하고 문제^{文帝}를 옹립한 다음 스스로 태사^{太師}가 되어 전권^{專權}을 행사하였다. 후에 그의 아들 우문각^{宇文覺}이 위^魏를 찬탈하여 북주를 세우고 우문태를 태조 문황제^{太祖文皇帝}로 추존하였다.

롭게 해줄 방도를 아는 자는 각자 봉사封事를 갖춰 올리되, 모두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써야 할 것이며 번잡하게 수사修辭를 덧붙이지 말라.”【이상은 『자치통감資治通鑑』에 보인다.】

- || 북송 태종北宋太宗⁵² 때의 일이다. 추밀직학사樞密直學士 구준寇準이 대전大殿에서 일을 아될 적에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아 태종이 화를 내며 일어서면, 구준이 번번이 태종의 옷을 붙잡고 다시 앉기를 청하여 일이 결정되고 나서야 물러났다. 태종이 이를 가상히 여겨 “짐이 구준을 얻은 것은 당 태종이 위징을 얻은 것과 같다.”라고 하였다. 가뭇과 메뚜기 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태종이 근신近臣을 불러 정사의 잘잘못 때문인지 물었는데 대부분 하늘의 운수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구준이 “큰 가뭇은 대개 공평하지 못한 형벌이 있다는 것에 대한 증험입니다.”라고 하자, 태종이 화를 내며 일어나 거처로 들어갔다. 잠시 후에 다시 그를 불러 묻고, 이에 구준이 중임을 맡길 만한 인물이라 여기고 추밀부사樞密副使로 삼았다.

- || 북송 인종北宋仁宗⁵³ 때, 채양蔡襄,⁵⁴ 구양수歐陽脩,⁵⁵ 왕소王素⁵⁶와 지간원知諫院 여정余靖⁵⁷이

52 북송 태종北宋太宗: 939~997. 북송 제2대 황제 조경趙匡胤으로, 재위 기간은 976년에서 997년이다. 태조太祖 조광윤趙匡胤의 동생으로, 형과 함께 송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즉위하여 당시 활거하고 있던 정권들을 격파하고 오월의 항복을 받고 북한北漢을 멸망시켰다. 승세를 타고 요遼를 공격했지만 실패하였다. 절도사의 권한을 억제하여 각 주를 중앙에 직속시켜 번진 체제를 종식하고 중앙집권제를 확립하였다. 과거제도를 확대하여 문신을 채용하여 문치를 이루었다.

53 북송 인종北宋仁宗: 1010~1063. 북송 제4대 황제 조정趙禎로, 재위 기간은 1022년에서 1063년이다. 송 황제 중에 재위 기간이 가장 길다. 진종眞宗의 여섯째 아들로, 다섯 형이 모두 요절하여 13세에 즉위하였다. 즉위 초 장현명숙황후章獻明肅皇后가 수렴청정하다가 1033년부터 친정을 시작하였다. 천성이 너그럽고 평소 넓은 옷을 입고 지낼 만큼 매우 검약하였다.

54 채양蔡襄: 1012~1067. 자는 군모君謨이며, 추밀원직학사樞密院直學士, 한림학사, 삼사사리시司使 등을 역임하였다. 직언을 잘하기로 이름나서 구양수, 왕소, 여정과 함께 ‘사간四諫’으로 불렸다. 서법書法에도 조예가 깊어 소식蘇軾, 황정건黃庭堅, 미불米芾과 함께 ‘송사가宋四家’로 불리기도 한다.

55 구양수歐陽脩: 1007~1072. 자는 영숙永叔, 호는 취옹醉翁, 만년에는 육일 거사六逸居士라 하였다. 한림원학사翰林院學士, 참지정사參知政事 등의 관직을 거쳐 태자소사太子少師가 되었다. 인종 때, 범중엄范仲淹과 한기韓琦를 중심으로 한 신진관료에 속하여 ‘경력신정慶曆新政’에 참여하였다. 후에 지예부공거知禮部貢舉로 임명되어 자신의 시문혁신론詩文革新論을 바탕으로 과거의 유형을 개편하였다. 이때 과거에 지원한 증공曾鞏, 소식蘇軾, 소철蘇轍이 합격하였다. 그에 앞서 소식의 부친인 소순蘇洵을 천거하여 등용하기도 하였다. 신종神宗 때, 왕안석王安石의 신법에 반대하여 관직에서 물러났다.

56 왕소王素: 1007~1073. 자는 중의仲儀이며, 위국공魏國公에 봉해진 대신大夫 왕단王旦의 아들이다. 지간원知諫院, 동판국자감同判國子監, 공부상서 등을 역임하였고, 간관 시절에 직언을 잘하여 구양수, 왕소, 채양과 함께 ‘사간四諫’으로 불렸다.

57 여정余靖: 1000~1064. 자는 안도安道, 호는 무계武溪이다. 집현교리, 우정언右正言, 비서감 등을 역임하였고, 직언을 잘하여 구양수, 왕소, 채양과 함께 ‘사간四諫’으로 불렸다.

우정언右正言이었다. 구양수는 일에 대해 논하는 것이 지나치게 직설적이어서 사람들이 그를 원수처럼 보았지만, 인종만은 그의 과감한 발언을 장려하면서 근신近臣에게 말하였다. “구양수와 같은 자를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는가.”

■ 북송 신종北宋神宗⁵⁸ 때, 태미성太微星에 혜성이 나타났다. 봉사封事를 올리라는 조서에 응하여 왕안례王安禮⁵⁹가 상소하여 “권력을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구렁텅이에 서 굶어 죽어가는 이들의 힘까지 다 쥐어짜고 농사꾼의 이익까지 모두 착취하고 있으니, 음양陰陽의 질서를 거슬러 별의 변괴를 불러들이기에 충분합니다.”라고 하였다. 신종이 이를 칭찬하고 탄식하며 왕안례에게 “왕규王珪⁶⁰가 경으로 하여금 조목조목 갖추어 진달하게 하였구나. 지금 한 손가락으로 눈을 가리면 태산泰山이나 화산華山이 눈앞에 있더라도 보지 못하니, 근습이 그 근주를 가리는 것이 이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경은 더욱 자신을 가져도 좋다.”라고 하고, 한림학사翰林學士로 등용하였다.

■ 남송 효종南宋孝宗⁶¹ 때의 일이다. 진량陳亮⁶²이 궁궐로 가서 글을 올려, 시사時事⁶³에 대해

58 북송 신종北宋神宗: 1048~1085. 북송 제6대 황제 조옥趙顛으로, 재위 기간은 1067년에서 1085년이다. 즉위하여 나라를 개혁하고자 왕안석을 재상으로 임명하였다. 왕안석은 서하西夏와의 전쟁으로 인한 국가재정난, 관료제로 인한 폐해, 지나친 문치주의로 인한 군사력 약화 등을 극복하기 위해 신법新法을 단행하였다. 신종은 왕안석王安石의 신법을 지지하여 시행하였으나 지나치게 급진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보수 관료들이 반발하여 그 목적인 바를 이루지 못하였다. 신종의 정치는 실패한 것도 많았으나 나라의 체제를 바로잡고 국가 권력의 확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59 왕안례王安禮: 1034~1095. 자는 화보和甫이다. 왕안석王安石의 아우이지만 정치적 견해가 서로 달랐다. 왕안석의 주도로 정치 개혁이 진행되는 가운데 혜성이 나타나 이를 불길하게 여긴 신종이 신하들의 의견을 물었으나 감히 아무도 의견을 내지 못하였는데, 왕안례만 혼자 상소하여 신종의 신임을 받았다.

60 왕규王珪: 1019~1085. 자는 우옥禹玉이며, 재상의 지위에 올랐고 사후에 태사太師에 추송되었다. 재상으로 있으면서 신종에게 일을 아를 때는 “성지를 받으러 간다.[取聖卮]”라고 하고 신종이 일에 대해 결정을 내리면 “성지를 받았다.[鑿聖卮]”라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결과를 알릴 때는 “이미 성지를 얻었다.[得聖卮]”라고 하면서 신종의 뜻에 순종하였다. 이로 인해 ‘삼지정승三楨政丞’이라 불리며 무능한 재상으로 평가를 받았다. (『宋史』 「王珪傳」)

61 남송 효종南宋孝宗: 1127~1194. 남송 제2대 황제 조신趙昀으로, 재위 기간은 1162년에서 1189년이다. 고종高宗의 양자가 되어 즉위하였다. 고종이 효종에게 양위한 후 24년간 태상황으로서 끊임없이 정사에 관여하였는데, 효종은 행동을 삼가며 고종을 극진히 모셨다. 금수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 공격하였으나 실패하여 금과 화의를 맺었다. 통치하는 동안 많은 인재가 배출되었고 정치, 제도 등이 개혁되었으며 재정이 풍족하였다.

62 진량陳亮: 1143~1194. 자는 동보同甫이며, 이학理學의 공리공담을 반대하고 ‘의리쌍행義利雙行’과 ‘왕패병용王霸併用’을 내세운 ‘사공지학事功之學’을 주장한 학자이다. 그를 중심으로 영강학파永康學派가 형성되었고, 이지李觴, 황종희黃宗羲, 왕부지王夫之, 대진戴震 등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주희와 ‘의리’와 ‘왕패’에 대한 논쟁을 벌인 바 있다.

63 시사時事: 금수의 군대가 개봉開封을 함락시키자 강왕康王이었던 고종高宗은 전당錢塘으로 피난하여 제위에 오르고 금과 강화講和하였으며, 고종의 양자로서 뒤이어 즉위한 효종은 북벌을 감행하였다가 실패하고 금과 화의를 맺은 후 내정에 힘쓰고 있었다.

극언極言하고 전당錢塘은 천자가 안주할 곳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효종은 얼굴을 붉히며 떨쳐 일어나, 조당朝堂에 방을 붙여 신하들을 권면하고, 충방種放⁶⁴의 고사故事를 활용하여 재야의 인물을 불러 전殿에 오르게 하고 발탁하여 쓰고자 하였다. 【이상은 『속자치통감續資治通鑑』에 보인다.】

■ 명 성조明成祖⁶⁵가 육과급사중六科給事中⁶⁶에게 “짐이 여러 업무에 대해 결재를 함에 혹시 문제가 있다면 그대들은 직언을 하고 숨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해진解縉⁶⁷ 등을 돌아보며 “과감하게 행동하는 신하는 구하기 쉬우나 과감하게 말하는 신하는 얻기 어렵다. 과감하게 행동하는 자는 자신을 이겨야 하지만, 과감하게 말하는 자는 군주를 이겨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숨김없이 말하는 자가 두려워할 것이 없고, 말을 듣는 자가 거슬러 할 것이 없다면 천하가 다스려지지 않을 것을 어찌 걱정하겠는가. 짐은 그대들과 함께 힘쓰겠다.”라고 하였다.

■ 명 성조 때, 삼전三殿에 불이 나자⁶⁸ 직언을 올리라 명하니, 시강侍講 이시면李時勉⁶⁹, 추집鄒緝 등이 봉사封事を 올려 공부상서工部尙書 이경李慶 등을 그 원흉으로 지목하였다. 이경 등이 성조에게 봉사를 올린 자들에게 죄주기를 청하니, 성조가 말하였다. “하늘을 공경

64 충방種放: 955~1015. 자는 명일명逸이며, 종남산終南山에서 은거하면서 자급자족하면서 강학 활동을 하였다. 진종眞宗이 그를 여러 차례 불렀으나 사양하였으나 결국 진종의 부름에 따라 출사하였다. 그가 처음 송정전崇政殿에서 진종을 알현할 때, 진종은 그를 가까이에 앉히고 대화를 나눈 후 그날로 좌사간佐司諫에 임명하였다.

65 명 성조明成祖: 1360~1424. 명 제3대 황제 주체朱棣로, 재위 기간은 1402년에서 1424년이다. 연호를 따라 '영락제永樂帝'로 불린다. 조카인 혜종惠宗의 정책에 반발하여 정변을 일으키고 4년간의 내전 끝에 승리하여 즉위하였다. 대군을 이끌고 몽골을 공격하고, 베트남, 티베트, 남아시아 등으로 군대를 파견하여 북아시아에서 아프리카 동쪽 연안까지 위세를 떨쳤다. 『영락대전永樂大典』을 편찬하는 등 문화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재위 기간에 명은 전성기를 누렸으나, 그가 추진한 원정과 대규모의 공사는 나라가 피폐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66 육과급사중六科給事中: 육부六部의 일에 대해 간언, 감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67 해진解縉: 1369~1415. 자는 대신大紳이며, 문장과 서예에 능하였다. 시정時政의 폐단을 논하는 만언소萬言疏를 올려 태조太祖에게 인정받아 여시御史에 제수되었다. 『태조실록太祖實錄』, 『고금열녀전古今列女傳』, 『영락대전永樂大典』 편찬을 주관하였다. 우춘방대학사右春坊大學士, 내각수보內閣首輔 등을 역임하였다.

68 삼전三殿에 불이 나자: 영락永樂 19년(1421) 4월에 봉천전奉天殿, 근신전謹身殿, 화개전華蓋殿에 불이 났다는 기록이 있다. (『明史』)

69 이시면李時勉: 1374~1450. 이름은 무懋이고, 시면은 그의 자수이다. 강직한 성격으로 평소 환관인 왕진에게 인사도 건네지 않고 외면하다가 국자감 증축 과정에서 왕진에게 트집을 잡혀 망신을 당한 적이 있다. 벼슬은 국자감 채주에 이르렀고 사후에 예부시랑에 추증되었다.

하기 때문에 아래의 말을 듣고자 하였다. 지금 말한 자들을 죄준다면, 곧 하늘을 거스르는 것이다. 옛날의 명철한 왕들은 모두 직언을 장려하였는데 지금 그대들은 죄줄 것을 청하고 있으니, 그대들은 짐을 어떤 군주로 만들고 싶은 것인가.” 그러자 이경 등은 부끄러워하며 물러났다.

- || 명 인종明仁宗⁷⁰이 태학사太學士 건의襄義, 양영楊榮, 김유자金幼孜에게 각각 은으로 만든 도장을 주었는데, 거기에는 “허물과 잘못을 바로잡다.[緝愆糾謬]”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 인종이 말하였다. “경들은 모두 오래된 신하이자 경험이 풍부한 자들이니, 정사에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모두 이 도장을 써서 조용히 상소하여 아뢰고, 두 번, 세 번 말하기를 꺼리지 말라.”【이상은 『명사강목明史綱目』에 보인다.】

계조 戒條

- || 하 걸왕夏桀王⁷¹이 무도無道하니 관용방關龍逢⁷²이 나아가 간언하였다. “임금이 공손하고 신실하며 재물을 아껴 쓰고 사람을 사랑하므로 천하가 안정되고 종묘와 사직이 지켜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군주께서는 재물 쓰기를 끝이 없는 듯이 하고 사람 죽이기를 미처 다 못할 듯이 하여 인심이 이미 떠났고 천명이 돕지 않는데, 어째서 조금도 뉘우치지 않습니까?” 걸왕은 결국 그를 가두고 죽여 버렸다.

- || 상 주왕商紂王⁷³ 때의 일이다. 비간比干⁷⁴이 선왕先王이 창업했던 어려움과 천명을 보전하

70 명 인종明仁宗: 1378~1425. 명 제4대 황제 주고치株高熾로, 재위 기간은 1424년에서 1425년이다. 연호를 따라 '홍희제 洪熙帝'로 불린다. 성조成祖의 장남으로, 독서를 좋아하고 행실이 반듯하여 조부인 태조太祖에게 사랑을 받았다. 재위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지만 혜종惠宗과 연관되어 옥살이를 한 신하들을 사면해주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힘썼다.

71 하 걸왕夏桀王: 하夏の 마지막 임금으로, 애첩인 말희妹喜가 비단 찢는 소리를 좋아하자 매일 비단을 찢게 하고 사치스러운 궁실과 요대瑤臺를 지어 민력民力을 고갈시켰다. 상商의 마지막 임금 주왕紂王과 함께 폭군으로 손꼽힌다.

72 관용방關龍逢: 「개언로開言路」 법조 22번 각주 참조.

73 상 주왕商紂王: 상의 마지막 임금으로, '제신帝辛'이라고도 불린다. 사치와 향락을 일삼고 가혹한 형벌과 부세로 민심을 잃고 주 무왕周武王 희발姬發에게 멸망당하였다. 폭군의 대명사로 일컬어진다.

74 비간比干: 「개언로開言路」 법조 23번 각주 참조.

는 것이 쉽지 않음과 국가가 장차 망하려는 분명한 징조에 대해 주왕에게 진언하고 마음을 씻고 행실을 바꿀 것을 청하였다. 그리고 상위象魏⁷⁵의 문에 엮드려 3일간 떠나지 않았다. 이에 주왕이 크게 노하여 결국 비간을 죽이고 그의 심장을 도려내어 눈으로 확인하였다.

|| 주 여왕周厲王⁷⁶이 사치하고 오만하게 행동하여 나라 사람들이 왕을 비방하였다. 여왕이 노하여 위衛나라 무당을 얻어 비방하는 자를 감시하게 하고 보고된 자들을 죽여 버리니, 나라 사람들이 감히 비방하는 말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길에서도 말없이 눈짓만 주고받았다. 【이상은 『봉주강감회찬』에 보인다.】

|| 초 영왕楚靈王⁷⁷이 건계乾溪에 사냥하러 가서 우윤右尹 자혁子革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좌사左史 의상倚相이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자, 영왕이 “이 자는 훌륭한 시관이다. 『삼분三墳』,⁷⁸ 『구구九丘』,⁷⁹ 『팔색八索』⁸⁰을 잘 안다.”라고 하였다. 자혁이 “옛날 주 목왕周穆王⁸¹이 천하를 주유하여 수레바퀴와 말발굽의 자취를 모두 남기려 하였는데, 채공祭公 모보謀父⁸²가 「기초祈招」⁸³라는 시를 지어 왕의 마음을 막았습니다. 신이 그 시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모르고 있었습니다.”라고 대답

75 상위象魏의 문: 궁궐의 정문을 가리킨다. 상위는 궁궐 문밖 양쪽에 높이 세워 교령을 게시하던 건축물이다.

76 주 여왕周厲王: 주周的 왕 희호姬胡이다. 즉위 후 사치와 폭정을 자행하니, 제후들은 조회하지 않고 백성들은 원망하다가 결국 대규모 폭동으로 이어졌다. 여왕이 체虜로 달아나자 왕이 없는 상태로 공화共和의 정치가 운영되었고, 태자 희정姬靜[宣王]이 장성하여 즉위함으로써 나라가 안정되었다.

77 초 영왕楚靈王: 춘추 시대 초의 군주로, 성씨는 미부, 씨씨는 웅熊이며, 이름은 건虔이다. 강왕康王의 동생으로, 강왕의 아들 겁오郈敖가 즉위하자 영운右尹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누리다가 조카 겁오를 시해하고 즉위하였다. 초로 온 채 영후蔡靈侯를 살해하여 채를 멸망시키고 서徐를 포위하여 오북을 위협하는 등의 행위로 지탄을 받았다. 사치와 폭정으로 민심이 이반되자, 동생들이 반대파를 규합하여 난을 일으켰고 이에 자결하였다.

78 삼분三墳: 삼황三皇[伏羲·神農·黃帝] 시대의 전적을 가리킨다.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79 구구九丘: 구주九州的 토지에서 생산하는 물건과 그 지방 풍속들을 기록한 상고시대의 글을 가리킨다.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80 팔색八索: 팔괘八卦에 대한 설을 기록한 글을 가리킨다.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81 주 목왕周穆王: 주의 왕 희만姬滿으로, 소왕昭王의 아들이다. 소왕이 원정 도중에 행방불명되자 즉위하였다. 8마리 준마를 몰아 건웅犬戎을 토벌하고 서역西域을 순수巡狩하였다. 목왕이 오랫동안 서역에서 유람하며 돌아오지 않자, 서徐가 반란을 일으켜 주의 동쪽 지역을 장악하였다. 이에 황급히 돌아와 서를 공격하여 멸망시키고 영토를 수복하였다.

82 채공祭公 모보謀父: 채祭는 지명 또는 나라 이름으로, 채공은 지위이고 모보는 그의 명칭이다. 일설에는 제공과 모보로 각각 다른 사람으로 구별하여 보기도 한다.

83 기초祈招: 『시경』에 수록되지 않은 일시逸詩이다. 기초祈招는 사마司馬의 업무를 맡은 어느 관리의 이름이라는 설이 있지만, 자세하지 않다.

하였다. 왕이 “그대는 잘 아는가?”라고 하자, “잘 압니다. 그 시는 ‘기초(祈招)의 온화함이며, 왕의 덕음(德音)을 밝히었구나. 우리 왕의 법도를 생각하여 옥과 같이 여기고 금과 같이 여겼다. 왕께서 백성의 힘을 헤아리고, 스스로 술에 취하거나 배부르려는 마음은 없으셨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영왕은 자신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여 곤경에 이르게 되었다.⁸⁴

|| 오왕(吳王) 부차(夫差)⁸⁵가 부초(夫椒)에서 월(越)을 패배시켰는데, 월이 강화(講和)를 청하자 오가 허락하려 하였다. 오원(伍員)이 “병을 없애려면 뿌리째 없어야 하는 법입니다. 월은 우리와 한 땅에서 살면서 대대로 원수로 지내왔습니다. 지금 이겼는데도 취하지 않으면 하늘을 거스르고 도적을 기르는 것이니, 훗날 후회하더라도 식일 수 없는 한이 될 것입니다.”라고 간언하였다. 그러나 부차가 듣지 않자 물러 나와 어떤 사람에게 “20년 뒤에는 오뿔이 파헤쳐져 연못이 될 수도 있으리라.”라고 하였다. 【이상은 『춘추좌씨전』에 보인다.】

|| 북제(北齊) 현조(顯祖)⁸⁶가 황포(荒暴)하여 살인을 즐기니 개부참군(開府參軍) 배위지(裴謂之)가 글을 올려 극간(極諫)하였다. 현조가 양음(楊愔)⁸⁷에게 “이 멍청이는 어찌 감히 이와 같은 짓을 하는가?”라고 하자, “그자는 폐하가 자신을 죽이게 하여 후세에 이름을 남기려는 것일 뿐입니다.”라고 대답하니, 현조가 “소인이로다. 내가 장차 그를 죽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름을 얻겠는가.”라고 하였다. 전어승(典御承) 이집(李集)이 면전에서 간언하면서 걸주(鞮紩)에 비유하자, 현조가 묶어서 물속에 던지라고 명령하였다. 물에 빠뜨린 지 한참 뒤에 끌어내고 그에게 “내가 얼마나 걸주와 같은가?”라 말하자 이집이 “아직은 그에 못 미칩니다.”라고 하였다. 현조는 또 물에 빠뜨리라고 명하고, 끌어내어 다시 문기를 서너

84 영왕은 … 되었다: 영왕이 건계(乾紀)에 대홍을 짓고 방탕하게 놀다가 자혁(子革)의 간언을 듣고 3일 동안 외출하지 않았으나, 끝내 결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건계에 가서 노닐었다. 그때 아우인 공자(公子) 비비가 반란을 일으키자 산속을 방황하면서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春秋左氏傳』 昭公 13年)

85 오왕(吳王) 부차(夫差): 춘추 시대 오의 군주로, 성은 희(姬), 씨는 고발(姑發)이다. 아버지 합려(闔閭)가 월왕(越王) 구천(句踐)과의 전쟁으로 사망하자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고 맹세하였고 마침내 월과 싸워 대승을 거두고 항복을 받았다. 국위(國威)를 떨쳐 제후들의 회맹을 주도하는 패자(霸者)의 지위에 올랐으나, 항복했던 월왕 구천의 급습을 받아 나라를 잃고 자살하였다.

86 북제(北齊) 현조(顯祖): 526~559. 북제 초대 군주 고양(高洋)으로, 재위 기간은 550년에서 559년이다. 성정이 잔인하고 술을 좋아하였으나 그가 총애한 양음(楊愔)이 정사를 잘 돌보아 나라가 잘 다스려졌다.

87 양음(楊愔): 511~560. 자는 준연(遵彦)이다. 현조의 누이를 아내로 맞이하고 여러 차례 왕으로 봉해질 정도로 현조의 총애를 받았다. 한편, 현조의 성격이 난폭하여 그에게 웃이 피에 흥건히 젖을 정도로 채찍을 맞기도 하고 산 채로 관에 넣어 묻힐 뻔한 적도 있다. 비록 현조가 모략하였으나 양음이 재상으로서 정사를 잘 돌보아 나라가 잘 다스려졌다.

차례 하였어도 이집의 대답은 처음과 같았다. 현조가 크게 웃으면서 “천하에 이런 바보가 있는 것을 보니, 관용방關龍逢과 비간比干도 대단한 인물이 아님을 이제야 알았다.”⁸⁸ 라고 말하고 마침내 그를 풀어 주었다.

|| 수 양제隋煬帝⁸⁹가 비서랑祕書郎 우세남虞世南⁹⁰에게 말하였다. “내 천성이 남의 간언을 달가워 않는다. 지위와 명망이 높으면서 간언함으로써 이름나길 바라는 자는 결코 참지 않을 것이며, 비천한 선비는 조금 너그럽게 봐준다 해도 결국 지상에서 편히 살게 두지 않을 것이다. 너는 알아 두어라.”

|| 당 덕종唐德宗⁹¹이 당안공주唐安公主⁹²를 위해 탑을 만들고 후하게 장례를 지내려 하자 간의대부諫議大夫 겸 동평장사同平章事였던 강공보姜公輔⁹³가 표表를 올려 간언하였다.⁹⁴ 덕종이 육지陸贄⁹⁵에게 사자를 보내 “당안공주를 위해 탑을 만드는 것은 그 비용이 매우 미미하니, 공보는 짐의 과실을 지적하고 진언하여 스스로 이름나길 바라는 것일 뿐이다. 재상이 이와 같이 짐을 저버렸으니, 어떻게 처리해야겠는가?” 라고 하자, 육지가 상주上奏하였다.

88 관용방關龍逢과 … 알았다: 죽음을 무릅쓰고 왕의 무도함에 대해 간언하여 칭송받는 관용방과 비간도 이집李集과 마찬가지로 힘없고 고집 센 인물이었을 것이라고 폄하하는 말이다.

89 수 양제隋煬帝: 569~618. 수 제2대 황제 양광楊廣으로, 재위 기간은 604년에서 618년이다. 문제文帝의 둘째 아들로, 병이 위중해진 문제와 형을 살해하고 제위에 올랐다. 만리장성, 남북을 연결하는 대운하大運河, 서원西苑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토목공사와 정복 사업을 벌였다. 612년, 113만의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했지만 을지문덕에게 살수에서 대패하였다. 613년 다시 고구려 원정에 나섰는데, 양현감楊玄感의 반란으로 인해 철수하면서 실패하였다. 법령을 정비하고 대운하를 완성한 업적을 남기기도 했으나, 만년에 극심한 사치와 대규모 원정, 자연 재해 등으로 백성의 원성이 자자했고 결국 전국에서 군웅이 봉기하였다. 강도江都를 남순南巡하다가 신하 우문화공宇文文化及에게 살해되었다. 이후 수의 관료였던 이연李淵이 전국을 재통일하고 당唐을 세웠다.

90 우세남虞世南: 558~638. 자는 백시伯施이다. 수隋 멸망 후 당唐의 이세민李世民을 섬겨 방현령房玄齡 등과 함께 문한文翰을 맡았다. 저작랑, 비서감 등을 역임하고 영흥현永興縣에 봉해져 “우영흥虞永興” 또는 “우비감虞秘監”이라 불리기도 한다. 왕희지, 왕헌지의 서법을 계승하여 구양순, 저수량, 설직과 함께 이름난 서예가로 꼽힌다.

91 당 덕종唐德宗: 742~805. 당 제9대 황제 이괄李适로, 재위 기간은 779년에서 805년이다. 대종代宗의 장남으로, 즉위하여 환관들의 정치 관여를 금하고 조세법을 개혁하는 등 중흥을 도모하였다. 번진 세력을 진압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군비 확보를 위한 각종 세금으로 인해 백성의 원성을 불러일으켰다. 또 반란군을 진압하던 토벌군이 도리어 장안을 점거하여, 봉천으로 피난하였다. 이후 환관들이 정치에 관여하면서 정국이 어지러워졌다.

92 당안공주唐安公主: 당 덕종이 난을 피하는 과정에서 잃은 만딸이다.

93 강공보姜公輔: 730~805. 자는 덕문德文이며, 재상으로서 당안공주의 장례 비용을 절약하여 군사 비용에 보태야 한다는 표를 올렸다가 덕종의 미움을 받아 좌천되었다. 간의대부諫議大夫와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를 역임하였다.

94 강공보姜公輔가 … 간언하였다: 강공보는 “산남 지방은 장구토록 편안한 곳이 아니니, 공주의 장례를 상도로 귀장歸葬하여야 합니다. 이에 장례를 검소하게 하여 비용을 절약해서 시급한 군비를 도와야 합니다.”라고 간언하였다.

“과실을 지적한 것에 대해 노하여 고치지 않으면 폐하께서 직언을 싫어한다는 비방을 받을 것이고, 이름나기를 바라는 자를 물리치느라 받아들이지 않으면 폐하께서 간언을 피한다는 비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는 자기의 과실을 감추려다가 과실을 더욱 드러내고, 상대의 이름을 깎아내리려다가 이름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덕종은 여전히 노하여 공보를 파직시키고 좌서자左庶子⁹⁶로 삼았다.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 남송 고종南宋高宗⁹⁷ 때의 일이다. 추밀원樞密院 편수관編修官 호전胡銓⁹⁸이 봉사封事를 올려 진회秦檜⁹⁹에게 참형을 내릴 것을 청하자, 고종은 명을 내려 호전을 광주廣州 임창도감鹽倉都監으로 폄적하였다. 의흥宜興의 진사進士 오사고吳師古가 호전이 올린 글을 목판에 새겼는데 금순의 사람들이 천금의 현상금을 걸어 놓고 그 글을 구하였다. 조사朝士 진강중陳剛中이 계사啓事를 지어 호전의 귀양을 하례하니,¹⁰⁰ 오사고는 연좌되어 원주袁州로 유배되고, 진강중은 건주虔州 안원현安遠縣 지현知縣으로 폄적되었다가 모두 죽었다.

95 육지陸贄: 754~805. 자는 경여敬輿, 시호는 선공宣公이다. 덕종이 즉위하자마자 그를 한림학사翰林學士로서 불러 측근에 두었다. 번진藩鎮의 반란이 연이어 일어나 봉천奉天으로 파천하게 되면서 덕종을 보필하였고, 내상內相이라고 불리며 국가의 중대사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여러 간신의 참소로 여러 차례 폄직을 당하였지만, 한유韓愈, 이강李絳 등의 인재를 선발하며 용호방龍虎榜이라는 칭호를 듣기도 하였다. 그러나 배연령裴延齡의 모함으로 충주별가忠州別駕로 폄직되었다.

96 좌서자左庶子: 태자太子를 위한 사무관의 일종이다.

97 남송 고종南宋高宗: 1107~1187. 남송 제1대 황제 조구趙構로, 재위 기간은 1127년에서 1162년이다. 휘종徽宗의 아홉째 아들로, 금순의 군대가 휘종과 흥종欽宗을 포로로 잡아가지 뒤를 이어 즉위하게 되었다. 금에 항쟁하지는 주장을 물리치고 남쪽으로 천도하여 남송을 건국하였다. 1162년 금과 화평을 맺고 아들에게 양위하여 자신은 태상황이 되었다. 시가와 서예에 뛰어났다.

98 호전胡銓: 1102~1180. 자는 방형邦衡, 호는 담암澹菴이다. 추밀원편수, 공부시랑 등을 역임하였고, 금순과의 화친을 주장하는 진회秦檜의 목을 베어야 한다는 상소를 올린 강경한 척화론자였다. 금순에서 천금千金의 현상금을 내걸고 그의 상소를 구해 보고는 군대를 철수시켰다는 일화가 있다.

99 진회秦檜: 1090~1155. 남송 고종 때의 재상으로, 자는 회지會之이다. 금순과의 외교 정책에 있어 화평을 진행하고 강화를 주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전파인 악비岳飛, 한세충韓世忠과 같은 군벌을 탄압하고, 그 후에도 스스로의 권력 유지를 위해 공포정치를 행하였다.

100 계사啓事를 … 하례하니: 호전이 봉사를 올려 직간하였다가 폄적되자 진강중이 계사를 지어 호전을 전송하였다. “금에 무릎 꿇고 화의를 청하였으니, 그들의 침략을 방어할 계책이 묘당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담하게 시안을 논하였으니, 추밀원에 원대한 계책을 도모하는 사람이 있어 기뻐했습니다. 몸은 남해로 여정을 떠나지만, 명성은 태산처럼 대단해졌습니다.〔屈膝請和 知廟堂禦侮之無策 張胆論事 喜樞廷謀遠之有人 身爲南海之行 名若泰山之重〕”(『宋史全文』「宋高宗」)

|| 남송 영종南宋寧宗¹⁰¹ 때의 일이다. 무주婺州의 처사 여조태呂祖泰¹⁰²가 등문고登聞鼓¹⁰³를 울리고 글을 올려, 한탁주韓侂胄¹⁰⁴가 군주를 무시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고 논하고 그를 죽여 화란禍亂을 방지하길 청하였다. 글이 나오자 조정 안팎의 사람들이 크게 놀랐으니, 영종이 명을 내려 여조태를 흠주欽州的 뇌성牢城¹⁰⁵으로 보냈다. 여조태는 여이간呂夷簡¹⁰⁶의 5세손世孫이다. 【이상은 『속자치통감』에 보인다.】

근안 謹按

삼가 살펴보건대, 군주는 작은 몸 하나로 억조億兆의 사람들 위에 군림하니, 한 사람의 총명聰明으로는 서무庶務까지 두루 살피기 어렵고 한 사람의 지려智慮로는 모든 일을 다 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 자신의 총명에 보태고 사람들의 말을 불러들여 자신의 지려를 넓혀야 하니, ‘남에게서 취하여 선을 한다.’¹⁰⁷는 것은

101 남송 영종南宋寧宗: 1168~1224. 남송 제4대 황제 조화趙擴으로, 재위 기간은 1194년에서 1224년이다. 조여우趙汝愚, 한탁주韓侂胄 등이 정신병을 앓던 광종光宗을 퇴위시키고 그를 옹립하였다. 당시 조여우와 한탁주 간의 세력 다툼이 심하였는데, 영종은 조여우를 파직하고 한탁주에게 전권을 맡겼다. 한탁주는 성리학을 위학儒學으로 규정하고 조여우와 주희 등을 관직에서 몰라나게 하였는데, 이를 ‘경원慶元の 당금黨禁’이라 한다. 1206년 금을 공격했으나 결국 실패하여, 한탁주를 원흥으로 지목하여 죽인 후 머리를 보내어 굴욕적인 ‘가정화의嘉定和議’를 맺었다.

102 여조태呂祖泰: ?~1196. 자는 태연泰然이다. 인종仁宗 때의 중신重臣 여이간呂夷簡의 후손이며, 동래東萊 여조겸呂祖謙의 종제이다. 세상사를 논하는 데 거리낌이 없어 듣는 이들이 귀를 막고 도망갈 정도였다고 한다. 1201년에 영종에게 글을 올려 한탁주韓侂胄와 소사단蘇師旦, 주균周筠의 목을 베라 청하였는데, 이 편지가 유출되어 논란이 되었고 결국 불기 백대를 맞고 흠주欽州 뇌성牢城에 위리안치 되었다. 한탁주가 죽은 후 상주문학上州文學에 임명되어 복귀하였다.₩

103 등문고登聞鼓: 백성들의 충간忠諫이나 원정冤情을 듣기 위해 조정朝廷에 달아 두었던 북이다.

104 한탁주韓侂胄: 1152~1207. 자는 절부節夫이다. 영종 옹립에 공을 세우고 총애를 받아 13년 동안 정권을 잡았다. 조여우와 대립했고 주희와 팽구년을 내쫓고 성리학을 위학儒學이라 하여 배척했는데, 이를 ‘경원慶元の 당금黨禁’이라 한다. 금술 토벌군을 일으켰으나 실패하고 금과 화의를 맺게 되었는데, 금이 전쟁을 주장한 사람을 잡아 보내라고 요구하자 송은 한탁주를 죽여 그의 머리를 보낸 뒤 화의할 수 있었다.

105 뇌성牢城: 귀양 간 죄수를 수용시켜 사역使役하던 곳이다.

106 여이간呂夷簡: 979~1044. 자는 탄부坦夫이다. 우간의대부右諫議大夫, 참지정사參知政事 등을 역임하였고 10년간 재상으로서 인종仁宗을 보필하였다. 간관諫官이었던 범중엄范仲淹의 논박을 받아 폄척된 적이 있었는데, 변방에 난리가 일어나자 범중엄을 책임자로 천거하였다.

107 남에게서 취하여 선을 한다: 『맹자』 「공손추公孫丑」에 “대순大舜은 이보다도 더 위대함이 있었으니, 선을 남과 함께 하 시어 자신을 버리고 남을 따르시며, 남에게서 취하여 선을 함을 좋아하셨다.[大舜有大焉 善與人同 舍己從人 樂取於人 以爲善]”라고 하였다.

순임금이 백관百官을 기쁘게 한 방법¹⁰⁸이고, ‘묻기를 좋아하면 여유로워진다.’¹⁰⁹는 것은 탕왕이 만방萬邦에 모범¹¹⁰이 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후세의 임금은 바른 논의를 따르고 직언을 장려해야 하는 것을 모르지는 않으나, 받아들이는 것을 어려워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무라고 물리치는 것을 거듭하고 있으니, 이는 어째서이겠습니까? 그 문제점은 네 가지가 있으니, 스스로 성군이라 여기는 것[自聖], 이기는 데 힘쓰는 것[務勝], 잘못을 합리화하는 것[遂非], 지적을 싫어하는 것[惡訶]입니다. 스스로 성군이라 여기는 군주는 자신의 영명함을 믿고서 지나치게 총람總覽하여 나의 지혜는 애초에 과실이란 없다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의 간쟁이나 논의를 가리켜 번번이 어리석고 망령된 것으로 치부합니다. 이기는 데 힘쓰는 군주는 자신의 존위尊威를 가지고 사납게 행동하여 나에게 잘못이 있어도 누가 감히 지적하겠냐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의 간언을 들을 때마다 꺾어 버립니다. 잘못을 합리화하는 군주는 자기의 과실을 남이 아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자기의 허물에 대해 남이 조언하는 것을 싫어하니, 속으로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겉으로는 잘못을 감추려 하여, 의미나 이유를 이리저리 둘러대고 말솜씨로 남을 막아 버립니다. 지적을 싫어하는 군주는 간절하게 간언하면 뒷사람을 비방한다고 의심하고 바른말을 하면 명예를 얻으려고 한다고 지목하니, 그들의 걱정과 사랑을 살피지 않고 도리어 폭로한다고 의심하고 먼저 억측하여 그들이 시기하거나 화를 내는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언로言路를 차단하여 스스로 눈과 귀를 가려 버린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열성列聖께서는 충간忠諫을 살피 받아들이심이 예부터 탁월하셨습니다. 조야朝野에서 전해지는 것들을 삼가 말해 보면, 태종 때에 대관臺官이 “전하의 말씀이나 행동, 정사나 교화 가운데 볼 만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진언하자, 태종께서 “훌륭한 말이다.”라고 하였고, 세종 때에 대간들은 간언한 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그때마다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고하니, 세종께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고 상신相臣으로 하여금 뜻을 전

108 순임금이 … 방법: 『서경』 「직직職職」에 “순임금이 노래를 지어 ‘하늘의 명을 삼갈진댄 때마다 삼가고 기미마다 삼가야 한다.’ 라고 하시고, ‘고굉股肱의 신하가 기뻐하여 일하면 원수元首인 임금의 다스림이 흥기하여 백공이 기뻐한다.’ 라고 노래하였다.[帝庸作歌曰 勅天之命 惟時惟幾 乃歌曰 股肱喜哉 元首起哉 百工熙哉]” 라고 하였다.

109 묻기를 좋아하면 여유로워진다: 『서경』 「중혜지고仲應之誥」에 “묻기를 좋아하면 여유가 있고, 스스로 지혜를 쓰면 작아진다.[好問則裕 自用則小]” 라고 하였다.

110 탕왕이 만방萬邦에 모범: 『서경』 「중혜지고仲應之誥」에 “하늘이 왕에게 용기와 지혜를 내려 주고, 만방의 모범이 되도록 하였다.[天乃錫王勇智 表正萬邦]” 라고 하였다.

달하고 맞이하여 데리고 오게 하셨습니다. 성종 때에 일찍이 성 밖으로 거동하셨는데, 대간이 이 일을 가지고 강경히 간쟁하다가 성종께서 궁에 이르시자 비로소 멈췄습니다. 성종께서 처음에는 그들을 파직시키라 하셨다가 다시 승직시키라 명하시고 “먼저 파직시킨 것은 간쟁을 서둘러 멈추었기 때문이고, 승직시킨 것은 강경히 간쟁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선조 때에 김성일^{金誠一}이 “전하께서는 요순^{堯舜}이 될 수도 있고 걸주^{桀紂}가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였고,¹¹¹ 강서^{姜緒}가 “전하의 많은 문제는 모두 ‘교만^驕’ 한 글자로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¹¹² 선조께서 두 신하의 말을 받아들이셨으니, 비록 동등한 위치에서 말한 것이라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김성일에게는 낮빛을 엄숙하게 고쳐 보이셨고 강서에게는 장려해 주셨습니다. 인조 때에 연신^{筵臣}이 “정은^{鄭蘊}이 전하를 지난날에 비유하였으니, 지난날은 곧 혼조^{昏朝}를 가리킵니다.”라고 하자, 인조께서 “옛날에는 ‘폐하는 걸주^{桀紂}와 같은 임금입니다’ 라는 말도 했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라고 하셨습니다. 효종 때에 유철^{俞徹}이 국문^{鞫問}을 받게 되었을 때, 효종께서 크게 노하셔서 그를 구하려는 자는 응당 같은 법으로 다스리겠다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헌신^{憲臣} 윤집^{尹鑠}이 혼자 나서서 아뢰자 사람들은 모두 그가 틀림없이 죽을 거라 생각하였는데, 효종께서 빠르게 그의 말을 따르시고 곧 그의 관직을 높여 주셨습니다. 아! 앞으로 간언한 자들이 그저 충성스럽고 고지식함이 남보다 더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과감히 말했던 것은, 실로 우리 열성조께서 허심탄회하게 간언을 따라 개도^{開導}하여 오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대저 복종하면 기뻐하고 거스르면 화내는 것은 어느 군주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뻐하면 신하에게는 이롭고 화내면 신하에게는 해로운 일인데, 저 말하는 자들이 무엇 때문에 고생스럽게 이로움을 버리고 해로움을 취하며 굳이 이렇게 강직한 행동을 하겠습니까? 이는 모두 진심 어린 마음과 애타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니, 군주를 사랑할 줄만 알고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에 있는 자는 진실로 사건을 버리

111 김성일^{金誠一}이 … 하였고: 선조가 경연에서 “나를 전대의 제왕과 비교해 볼 때 어느 군주와 비슷인가?”라고 묻자, 김성일이 “요순^{堯舜}이 될 수도 있고 걸주^{桀紂}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전하께서는 천품이 고명하시어 요순이 되시기에 어렵지 않습니다마는 스스로를 위대하게 여겨 간하는 말을 거부하시는 병통이 있으니, 이는 걸주가 멸망한 이유가 아닙니까.”라고 하였다. (『宣祖實錄』 6년 7월 1일)

112 강서^{姜緒}가 … 하였습니다: 선조가 경연에서 ‘교^驕’ 자에 대해 논하다가 강서가 “전하께서 여러 신하들을 멸시하시고 일세^{一世}를 능가하시는 허다한 병통은 모두 ‘교’ 자에서 오는 것입니다.”라 하였다. (『宣祖實錄』 11년 7월 1일)

고 남의 고견을 따르는 도량을 지니고 군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깊이 살펴서, 거울처럼 공정하고 저울처럼 공평하고 바퀴처럼 고정되지 않으며 물아物我를 구분하지 않고 안색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득실에 절실하다면 가상히 여겨 장려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빨리 시행할 것을 생각하며, 비록 헛소리 같더라도 우선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과감하게 말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면 군주가 실수하더라도 숨김없이 직간할 것이고, 관리들이 잘못하더라도 남김없이 논의할 것입니다. 이는 열성께서 이어 오셨던 간언을 받아들인 방법이고, 순임금이 남에게서 취하고 탕왕이 문기를 좋아한 것도 이러한 도를 따라 순치馴致하였던 것이니, 어찌 성대하지 않습니까. 송宋의 신하 호인胡寅이 “거역함과 순종함을 비교해본다면 공손한가 공손하지 않은가의 차이이고, 방자함과 경계함을 비교해 본다면 즐거운가 즐겁지 않은가의 차이이다. 그러므로 총명하고 지혜로운 군주는 거역함이 공손한 것이고 순종함이 몹시 공손하지 못한 것이며 경계함이 즐거운 것이고 방자함이 몹시 즐겁지 않은 것임을 안다.”라고 하였으니, 곱씹어 볼 말입니다. 어찌 이를 헤아려 택하지 않겠습니까. 유념하고 유념하소서.

양사기養士氣

선비의 기상을 배양하다

법조 法條

- 전한 무제前漢武帝 때의 일이다. 동중서董仲舒¹가 대책對策²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평소 선비를 기르지 않고 현능한 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옥을 쪼아 다듬지 않고서 문채文采가 나길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선비를 기르는 데 있어 태학太學보다 중요한 것이 없으니, 태학은 현능한 선비의 관문이고 교화의 근본입니다. 신은 바라건대 폐하께서 태학을 일으키고 현명한 스승을 배치하여 천하의 선비를 기르신다면, 마땅히 영민하고 준수한 이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³ 【『자치통감』에 보인다.】
- 북송 인종北宋仁宗 때의 일이다. 해릉海陵 사람 호원胡瑗⁴이 호주湖州의 교수教授가 되었는데,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데 법도가 있고, 규정을 세세하게 갖춰 놓았다. 당시 한창 사부詞賦를 숭상하였는데, 호학湖學만은 경의재經義齋와 치사재治事齋를 세워 실학實學에 힘썼다. 태학太學이 중흥하자, 호주에 조서를 내려 그 법을 취하여 정식 규정으로 삼았다.

1 동중서董仲舒: 강도상江都相, 교서승膠西丞을 역임하였다. 「현량대책賢良對策」을 올려 유학을 존숭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오경박사五經博士를 두어 경학의 지위를 높이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저서로는 『춘추번로春秋繁露』 등이 있다.

2 대책對策: 황제의 물음에 답한 글로, ‘책문策文’이라고도 한다. 전한 무제前漢武帝的 「책문현량문학조策問賢良文學詔」 이후 정례화되어 과거시험의 한 과목으로 자리매김하였다.

3 평소 … 것입니다: 이상은 동중서가 올린 「현량대책賢良對策」으로, 무제의 인정을 받아 금마문金馬門의 대조待詔가 되었다.

4 호원胡瑗: 993~1059. 자는 익지翼之이다. 광록시승光祿寺丞, 천장각시강天章閣侍講 등을 역임하였다. 손복孫復, 석개石介와 함께 ‘송초삼산생宋初三先生’이라 불렸다. 범중엄范仲淹의 천거로 교서랑校書郎이 되었다가 호주湖州의 교수教授가 되어 경의재에서는 육경六經을, 치사재에서는 치민治民, 치병治兵, 수리水利, 산수算數와 같은 것을 가르쳤으며, 당시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자 ‘호학湖學’이라 하였다. 태학太學에 들어가서도 다년간 인재 양성에 정성을 쏟았다. 저서로는 『주역구의周易口義』, 『홍범구의洪範口義』 등이 있다.

- || 원 세조元世祖⁵ 때의 일이다. 한림학사 승지翰林學士承旨 왕악王鶯⁶의 진언進言에 따라 박학 다식한 선비들을 뽑아 각 노路⁷의 학교에 제거提舉⁸를 두어 엄격하게 가르치도록 하여 후일의 관리 선발에 대비하였다.
- || 원 세조 때의 일이다. 두목竇默⁹이 “삼대三代가 장구한 기간 동안 풍속이 순수하게 유지되었던 것은 모두 학교를 설립하고 선비를 양성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지금 응당 학교를 설립하고 스승을 세워 귀족 자제들을 널리 선발하고 그들을 가르쳐 풍화風化의 근본을 보이셔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세조가 이를 따라 허형許衡¹⁰을 집현태학사 겸 국자좨주集賢太學士兼國子祭酒로 삼도록 명하였다.
- || 원 인종元仁宗¹¹이 즉위하자마자 중서평장정사中書平章政事 이맹李孟¹²에게 국자감國子監을 맡도록 명하며 “학교는 인재를 배출하는 곳이니, 경들은 자주 국자감에 가서 학생들을

5 원 세조元世祖: 1215~1294. 원 제1대 황제 보르지긴 쿠빌라이[孛兒只斤忽必烈]로, 재위 기간은 1271년에서 1294년이다. 1260년 몽골 제국의 칸으로 즉위하여 1271년 국호를 원으로 개칭하였다. 1279년 남송을 정벌하여 중국대륙을 정복하고 금수와 거란족의 잔당을 토벌하였으며, 베트남 북방까지 영토를 확장시키고 중앙집권제를 확립하였다. 인종을 불문하고 실력 위주로 관리를 등용하고, 서역 문화를 중시하였으며, 라마교를 받아들였다.

6 왕악王鶯: 1190~1273. 자는 백일百一이다. 원 세조가 번저藩邸에 있을 적에 『효경』과 『서경』, 『주역』을 강의하였다. 세조가 즉위한 뒤 한림학사 승지에 임명되었다. 제고전장制誥典章이 모두 그의 손에서 나왔으며, 그의 상주로 한림학사원翰林學士院과 심도제거학교관修道提舉學校官이 세워졌다.

7 노路: 원대元代 지방 행정 구역으로, 명·청明清 때의 부府와 같다. 송대宋代의 노제路制를 승계하였으나, 그 위에 행정省을 설치하여 노를 통할하게 하였으므로 그 수가 약 200개까지 늘어났다.

8 제거提舉: 원대元代의 관직으로, 제거학교소提舉學校所에 소속된 관원이다. 태종 때, 제거학교소를 설치하여 중앙관학 및 교육 행정 관리기구로 삼았으나, 세조 때 국자감을 설치하여 전국의 교육행정을 관장하게 되면서 지방학교로 전환되었다.

9 두목竇默: 1196~1280. 초명은 갈傑이고, 자는 한강漢卿이다. 황자 진금眞金の 스승으로 있다가, 세조가 즉위하자 한림시강학사翰林侍講學士에 임명되었다. 오추姚樞, 허형許衡 등과 함께 경학을 연구하였으며, 원대元代 경학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10 허형許衡: 1209~1281. 자는 중평仲平이다. 과거에 뜻을 두지 않고 학문에 전념하여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오추姚樞에게 정주학을 배운 뒤로 성리학에 전념하여 북방에 정주학을 일으켰으며 주희朱熹의 사서집주四書集註가 과시科試에 채택되게 하는 데 공헌하였다. 유인劉因, 오징吳澄과 함께 원대의 3대 이학가理學家로 일컬어진다. 저서에 『독역사언讀易私言』, 『노재심법魯齋心法』, 『허노재집許魯齋集』 등이 있다.

11 원 인종元仁宗: 1285~1320. 원 제4대 황제 아유르바르와다[愛育黎拔力八達]로, 재위 기간은 1311년에서 1320년이다. 황제였던 형 카이산의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 『정관정요』를 몽골어로 번역하여 배포하고 한문 법전 편찬을 시작하였으며, 한인漢人과 비한인非漢人을 불문하고 유학자를 우대하였으며 과거科擧를 부활시켰다.

12 이맹李孟: 1265~1321. 자는 도복道復이다. 후당後唐 황실의 후예로, 견문이 넓고 경사經史에 밝았다. 원 인종이 즉위한 뒤, 중서성평장사中書省平章事에 임명되어 관리의 기강을 바로잡고 옥사를 바르게 처리하였으며, 승도관愴道官을 혁파하였다. 후에 한국公韓國公에 봉해졌다.

시험하여 덕업에 힘쓰도록 하라.”라고 유시하였다. 【이상은 『속자치통감』에 보인다.】

- 명 태조明太祖¹³가 “출중하고 비범한 인재가 산림에 숨어 있거나 사졸들 가운데 감춰져 있기도 하니, 만일 그들을 발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겠는가. 민간의 수재秀才 가운데 나이가 25세 이상으로 자질과 성품이 명철하고 기민하면서 학식과 재간 이 있는 자를 중서성中書省으로 불러들여 등용하라.”라고 유시하였다.
- 명 태조가 공신功臣의 자제들을 학교에 입학시키라 명하며 다음과 같이 유시하였다. “순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훌륭한 대장장이를 구하여 가공하고, 좋은 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뛰어난 옥장이를 구하여 다듬는다. 그런데 훌륭한 자질을 가진 자제의 경우 현명한 스승을 구하여 가르치지 않으니, 자제를 아끼는 것이 금이나 옥보다도 못한 것인가. 지금 경사에는 태학이 있지만 아직 천하에 학교가 다 설립되지는 않았으니, 군현에 모두 학교를 설립하여 사류士類를 기르도록 하라.”
- 명 태조가 군현에 조서를 내려 “모든 마을에 학교를 열고 스승을 세우며, 수령은 수시로 궁벽하고 치우친 곳을 잘 살펴서 학교가 없는 곳이 없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또 북방은 전쟁의 여파가 있어 학문에 대해 아는 사람이 드물었으므로, 어사대御史臺에 명하여 태학太學의 제생諸生 중에 나이가 많고 학문이 뛰어난 임백운林伯雲 등 366인을 선발하여 북방을 교화하였다.
- 명 태조가 “천하에 현능한 인재가 없었던 적은 없으니, 그들을 기르는 방법을 어찌하는냐에 달려 있을 뿐이다. 전국의 학교에 명하여 민간의 자제 중에 태학에 들어가길 원하

13 명 태조明太祖: 1328~1398. 명 제1대 황제 주원장朱元璋으로, 재위 기간은 1368년에서 1398년이다. 연호를 따라 ‘홍무제洪武帝’로 불린다. 가난한 농민 출신으로 승려가 되었다가 환속하였다. 곽자흥郭子興의 홍건군紅巾軍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곽자흥의 양녀를 아내로 맞았다. 곽자흥의 군대가 분열되자 독자적으로 세력을 키워 각지의 군웅들을 굴복시키고, 명을 세워 원을 몰아내고 중국의 통일을 이루었다. 한족 왕조를 회복하고 몽골의 풍속을 금지했으며, 조세와 부역을 공평히 시행하였고 중앙집권적 독재체제의 확립을 도모하였다. 그는 아들에게 확고한 통수권을 물려주기 위해 측근들 대부분을 숙청하였는데, 2만 명에 가까운 측근을 숙청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장남이 급사하여 어린 손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자 숙청은 더욱 가혹하게 진행되었다. 그는 만년에 고독하게 살다가 병사하였고, 죽은 이후 아들들 사이에는 권력 투쟁이 일어났다.

는 자는 그 집안의 부역을 면제해주고, 반드시 자질이나 성품이 순박하고 학문이 성숙하며 40세 이상인 자를 공생貢生¹⁴이 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명 효종明孝宗¹⁵ 때의 일이다. 남경 국자감 궈주南京國子監祭酒 장무章懋¹⁶가 공생貢生을 선발하는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옛날 태학에서 길러낸 자들은 모두 천하의 수재였기에 인재들이 성대하고 풍속이 아름다웠습니다. 바라건대 정해진 공생 인원 외에, 행실이 마을에 드러나고 학문은 경술經術에 정통하며 나이가 어리고 힘이 강한 자를 힘써 구하여 두 국자감國子監¹⁷에 나누어 보낸다면 태학에 있는 자 중에 정예로운 자가 저절로 많아질 것입니다.” 효종이 이를 따랐다.
- 명 세종明世宗¹⁸ 때의 일이다. 급사중給事中 장교章僑¹⁹와 어사御史 양세표梁世驃²⁰가 “도학의 전수는 주희朱熹에 이르러 크게 밝아졌습니다. 근래 다른 이론을 내세우는 자들이 육구연陸九淵은 단순하고 명료한 반면 주희는 번거롭고 난잡하다고 여기니, 의당 엄격히 금

14 공생貢生: 국자감國子監 생도로, 명·청대明清代 각 성에서 과거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가리킨다.

15 명 효종明孝宗: 1470~1505. 명 제9대 황제 주우탱朱祐樞으로, 재위 기간은 1487년에서 1505년이다. 연호를 따라 '홍치제弘治帝'로 불린다. 명 중흥의 영주英主로 꼽히며, 그의 치세 시기를 '홍치중흥弘治中興'이라고 한다. 방사方士 이지성李致省, 태감太監 양방梁芳 등 간신을 축출하고 유건劉建, 왕시王愨, 마문승馬文升 등 현신을 등용하였다. 『대명률大明律』을 개정하여 『문형조례間刑條例』를 반포하였고, 『대명회전大明會典』을 개편하는 등 법규를 정비하였고 황실과 권문세족의 토지 겸병을 금지하고 조세를 탕감해주어 백성을 구휼하여 내치를 이루었다. 대외 관계에서도 치적을 쌓았다. 말년에 환관 이광李廣을 총애하는 과오를 범하였으나 곧 바로잡았다. 당시 대학사大學士 주국정朱國禎은 “삼대 이후 현군이라고 할 임금은 전한 문제와 북송 인종, 명 효종이다.”라고 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16 장무章懋: 1437~1522. 자는 덕무德懋이다. 한림편수翰林編修, 대리시평사大理寺評事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에 『풍산어록楓山語錄』, 『풍산집楓山集』 등이 있다.

17 두 국자감國子監: 태종太宗 때, 수도를 남경에서 북경으로 옮기면서 두 개의 국자감을 두었다. 그리하여 남경에 세운 국자감은 남감南監 혹은 남옹南雍, 북경에 세운 국자감은 북감北監 혹은 북옹北雍이라 하였다.

18 명 세종明世宗: 1507~1567. 명 제11대 황제 주후총朱厚聰으로, 재위 기간은 1521년에서 1567년이다. 제10대 무종의 사촌동생으로, 무종이 후사가 없어 장황태후張皇太后와 양정화楊廷和 등에 의해 옹립되었다. 연호를 따라 '가정제嘉靖帝'로 불린다. 즉위한 후 부친인 주무원朱祐樞를 추존할 것을 명하였는데, 3년 동안 의론이 분분하던 끝에 황고皇考라 추존하고 묘호를 예종이라 하였다. 그러자 신하들이 예법에 맞지 않는다 하여 강력히 반대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투옥된 자가 3백 명이나 되었다. 이를 '대례의大禮議 사건'이라 한다. 그는 도교와 연단술에 빠져 궁녀들에게 가혹한 짓을 행했는데, 이로 인해 십여 명의 궁녀들이 그를 교살하려다가 실패한 '임인궁변壬寅宮變'이 일어났다. 말년에 재초齋醮에만 골몰하다 금석金石으로 만든 약에 중독되어 죽었다.

19 장교章僑: 1499~1543. 자는 처인處仁이다. 상소를 올려 중관中官 소경蕭敬과 예경현芮景賢을 탄핵하였으며, 이단의 학문을 일삼는 자들을 처벌하도록 진언하였다.

20 양세표梁世驃: 1495~1544. 자는 응방應房 또는 경원敬遠이다. 무종武宗 때 진사가 되어 첨사僉事에 이르렀다.

지하여 선비의 풍기를 바로잡아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세종이 “선비의 풍기가 괴이해지고 문사가 난삽하여 치화(治化)에 해를 끼치고 있으니, 독학관(督學官)으로 하여금 방(榜)을 붙여 유시하고 이를 금지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이상은 『명사강목』에 보인다.】

계조 戒條

|| 남송 고종(南宋高宗) 때의 일이다. 태학생(太學生) 진동(陳東)²¹이 글을 올려 이강(李綱)²²은 유임시키고 황잠선(黃潛善)²³과 왕백언(汪伯彥)²⁴은 파직하길 청하였다. 그리고 포의(布衣) 구양철(歐陽澈)²⁵도 글을 올려 정권을 잡은 대신들을 극렬히 비난하였다. 이에 황잠선이 성언(聲言)하여 고종을 분노케 하니, 결국 진동과 구양철을 저자에서 참수하였다.

|| 남송 이종(南宋理宗)²⁶이 조서를 내려 상중에 있던 사승지(史嵩之)²⁷를 관직에 나오도록 하자,

21 진동(陳東): 1086~1127. 자는 소양(少陽)이다. 태학생 신분으로 무리를 이끌고 ‘정강의 변(靖康之變)’의 원흉인 채경(蔡京), 양사성(梁師成), 이언(李彥), 왕보(王黼), 동관(童貫), 주면(朱勳) 등 육적(六賊)을 제거할 것을 여러 차례 주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후에 이강(李綱)이 파직되었을 때도 상서하여 이강을 유임시키고 황잠선(黃潛善)과 왕백언(汪伯彥)을 파직하라고 주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저자에서 참수되었다.

22 이강(李綱): 1083~1140. 자는 백기(伯紀)이다. 휘종 때 병부시랑, 추밀사 등을 역임하였다. 금수에 항전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천도(遷都)를 반대하였다. 천도한 뒤 고종(高宗)이 재상으로 삼았다. 시문에 능하고 유학에 정통하였다. 주희(朱熹)는 “이강은 임금이 계신 것만 알고 자신의 안위는 알지 못했으며, 천하의 안위만 알고 자신의 병을 알지 못하였다. 비록 그를 참수하여 배척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게 했지만 그의 나라와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은 결국 빼앗을 수 없었으니, 한 세상의 위인이라고 말할 만하다.”라고 평하였다.

23 황잠선(黃潛善): 1078~1130. 자는 무화(茂和)이다. 왕백언(汪伯彥)과 함께 주전파인 이강(李綱)을 몰아내고 정권을 농단하여 금수와 화의를 맺게 하였으며, 진동(陳東)과 구양철(歐陽澈)이 자신을 비판하자 모두 죽였다.

24 왕백언(汪伯彥): 1069~1141. 자는 정준(廷俊)이다. 우복야(右僕射)로 있으면서 제멋대로 권세를 휘두르다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으나, 후에 다시 검교소부(檢校少傅)와 보신군 절도사(保信軍節度使)에 임명되었다.

25 구양철(歐陽澈): 1091~1127. 자는 덕명(德明)이다. 포의(布衣)로서 흥종 즉위 초에 폐정(弊政)을 개혁할 것과 변방을 안정시켜 외적을 막는 방책에 대해 건의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고종이 즉위하자 도부로 행재(行在)로 가 엮드려 상서하면서 황잠선(黃潛善)과 왕백언(汪伯彥)이 화의를 주장하여 나라를 망친 사실을 지적하며 규탄했다가 태학생 진동(陳東)과 함께 참수되었다. 저서로 『구양수천집(歐陽修撰集)』이 있다.

26 남송 이종(南宋理宗): 1205~1264. 남송 제14대 황제 조윤(趙昀)으로, 재위 기간은 1224년에서 1264년이다. 이종은 태조 조광윤의 10세손으로 본명은 조귀성(趙貴誠)이다. 승상 사미원(史彌遠)의 눈에 들어 영종의 사촌동생의 양자가 되었는데, 영종의 병세가 위독하자 황후 양씨와 처세를 위조하여 태자로 세워졌고 즉위하였다. 사미원이 죽자 친정을 시작하여 이듬해 몽골과 협세하여 금을 멸망시켰다. 이후 몽골이 잠시 북쪽으로 물러난 틈을 타 낙양과 개봉을 차지하였으나 이것이 빌미가 되어 몽골의 침공을 받았다. 이후 정대전과 가사도가 권력을 천단해 국세가 기울었다.

태학생太學生 황개백黃愷伯 등과 무학생武學生 응일선翁日善 등과 경학생京學生 유시거劉時舉 등과 종학생宗學生 여환與寰 등이 글을 올려 간절히 간쟁하였는데 답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태학의 재랑齋廊에 ‘승상이 아침에 들어가면 제생諸生은 저녁에 나가고, 승상이 저녁에 들어가면 제생은 아침에 나간다.’라고 방榜을 붙이자, 경윤京尹 조여주趙與簾가 유사遊士가 부추긴 탓이라고 하여 유사를 축출하였다. 제생이 이를 듣고 권당문捲堂文²⁸을 지어 선성先聖에 사죄하자, 경윤이 마침내 유사의 이름을 관직에서 삭제하였다. 장작감將作監 서원걸徐元杰²⁹이 상소하여 사송지의 기복에 대해 논하면서 “선비들의 여론이 분분합니다. 사송지에게 자기를 대신할 만한 집정대신執政大臣을 천거하도록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이에 이종이 “학교에서 올린 글이 비록 정론正論이라 하더라도, 너무나 심하게 말하였다.”라고 하니, 서원걸이 “정론은 국가의 원기元氣입니다. 지금 정론이 여전히 학교에 있으니, 마땅히 사문斯文의 혈통을 보호하고 양성해야 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 남송 이종 때의 일이다. 소산위蕭山尉 정대전丁大全³⁰이 우승상 동고董槐³¹를 탄핵하여 승상에서 파직시켰다. 이에 태학생 진의중陳直中 등 6인이 글을 올려 “대신을 진출시키거나 퇴출할 때는 마땅히 예절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라고 하며 정대전의 간사함에 대해 극렬히 논하였다. 그러자 정대전이 성지聖旨를 받아 6인을 사적士籍에서 제명하여 먼 주현州縣으로 편관編管³²하게 하였다. 국자감 좌주祭酒와 사업司業이 재생齋生 20여 인과 함

27 사송지史嵩之: ?~1257. 자는 자유子由이다. 우승상 겸 추밀사右丞相兼樞密使로 도독강회경호사천군마都督江淮京湖四川軍馬를 역임하였다. 부친상을 당해 물러났다가 다시 복직하여 힘써 화의和議를 주장했지만, 공론이 용납하지 않아 이후 13년 동안 한거閑居하였다.

28 권당문捲堂文: 태학 전체 인원이 불명이 있을 때 일제히 문을 닫고 물러가는 것을 공고하는 글이다. 유문표俞文豹의 『취검사록吹劍四錄』에 “이달 13일에 무학武學의 생원이 임안부臨安府 천장攬將 가자충柯子冲, 노덕선盧德宣에게 매를 맞고 축출당하자, 권당을 하고 떠났다.”라고 하였다.

29 서원걸徐元杰: 1196~1246. 자는 인백仁伯이다. 장작감將作監을 거쳐 국자좌주國子祭酒에 이르렀고, 중서사인中書舍人을 지냈다. 조정에 있으면서 전력을 기울여 직언을 올렸고, 권세기라 해서 피하지 않았다. 우승상 사송지史嵩之가 부친상을 당하고도 관직에 나온 것을 논해 파직시켰다.

30 정대전丁大全: 1191~1263. 자는 자만子萬이다. 환관 노윤승盧允昇과 동송신董宋臣에게 아첨하여 권력을 전횡하였다. 우승상 동고董槐를 탄핵해 내쫓고 좌간의대부左諫議大夫에 올랐으며, 관직이 우승상 겸 추밀사에 이르렀다. 몽고군이 침략했을 때 군정軍情을 숨긴 죄목으로 파직되었다.

31 동고董槐: ?~1262. 자는 정식庭植이다. 보광輔廣에게 학문을 배웠으며, 관직은 우승상에 이르렀다. 정대전丁大全의 모함으로 탄핵되었다.

32 편관編管: 송대宋代에 관리가 죄를 지으면 먼 지방의 주군州郡으로 유배를 보내어 그 지방의 호적에 편입시키고, 아울러 그 지방 관리를 통해서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계 관대冠帶를 갖추어 입고 환교圓橋로 나와 그들을 전송하니, 정대전이 더욱 노하여 삼학三學³³에 비석을 세워서 제생에게 국정을 의논하지 말도록 경고하였다. 【이상은 『속자치통감』에 보인다.】

|| 명 헌종明憲宗³⁴ 때의 일이다. 한림원수찬 나륜羅倫³⁵이 상소하여 상중에 있던 이현李賢³⁶의 복직을 반대하자, 내비內批를 내려 나륜을 복건 시박사부제거福建市舶司副提舉로 꺾적하였다. 이에 어사御史 양량楊琅은 “천하의 사기士氣는 국가의 원기元氣와 서로 통하니, 사기가 왕성한가 미약한가에 국가 원기의 소장消長이 달려 있습니다.”라고 상주하였으며, 왕휘王徽³⁷는 “나륜을 멀리 내쫓아 일을 논했다는 이유로 외직에 보임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사기가 다시 크게 저하되었으니, 이는 조정의 복이 아닙니다.”라고 진언하였다.

근안 謹按

삼가 생각건대, 사습士習의 미악美惡이 나라 형세의 안위에 관계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나무에 비유하자면 뿌리의 견고하고 유약함에 가지가 무성하거나 앙상해지며, 사람에게 비유하자면 혈기의 텅 비고 가득함에 신체가 파리하거나 왕성해집니다. 주위의 사노는

33 삼학三學: 송대宋代 태학의 외사外舍, 내사內舍, 상사上舍를 아울러 일컫는 말로, ‘삼사三舍’라고도 한다. 『송사宋史』 「직관지職官志」에 “희령熙寧 연간 초에 경술經術로 선비를 선발한 다음, 횡사橫舍를 확장하여 삼학으로 나누어 배치하였는데, 생도의 수효가 2천 8백 인이었다.”라고 하였다.

34 명 헌종明憲宗: 1447~1487. 명 제8대 황제 주견심朱見深으로, 재위 기간은 1464년에서 1487년이다. 영종英宗의 아들로, 영종이 오이라트瓦剌에게 포로가 됨에 따라 숙부 대종代宗이 즉위하자, 태후의 명에 따라 태자가 되었다. 이후 고종이 폐위되고 영종이 복위하게 되고, 영종의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 귀비貴妃 만정아萬眞兒를 지나치게 총애하였고 그녀가 환관 왕직汪直, 양방梁芳 등과 결탁하여 권력을 전횡하였으나 방관하였다. 방술을 지나치게 믿어 방사方士와 승도僧道를 고관으로 임명하고 기존의 사찰기구 동창東廠 외에도 서창西廠까지 추가로 세워 신하들을 감시하고 처형하였다.

35 나륜羅倫: 1431~1478. 자는 응괴應魁 또는 이정彝正이다. 이현李賢의 복직을 반대하여 좌천되었다가 이듬해 복직되었다. 이후 병으로 사퇴하고 금수산金山에 은둔하여 학문 활동과 저술에 전념하면서 후학을 양성하였다. 저서에 『일봉집一峯集』이 있다.

36 이현李賢: 1408~1466. 자는 원덕原德이다. 벼슬은 이부상서吏部尙書, 한림원학사翰林院學士 등을 지냈다. 칙명에 따라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를 편찬하였으며, 저서에 『감고록鑑古錄』, 『천순일록天順日錄』 등이 있다.

37 왕휘王徽: 1428~1510. 자는 상문尙文이다. 남경 형과급사중南京刑科給事中, 섬서 좌참의陝西左參議 등을 역임하였다. 환관 우옥牛玉의 간사함과 기만을 탄핵하여 귀주 보안판관貴州普安判官으로 좌천되었다.

귀했고 진秦의 사는 천했으니, 이른바 귀함이란 윗사람은 몸을 굽히고 아랫사람은 도를 굽히지 않는 것이며, 천함이란 아랫사람에게 지조를 잃고 윗사람에게 영합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가 귀하게 여겨지면 이로 인해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사가 천하게 여겨지면 이로 인해 나라가 어지러워집니다. 주의 사는 뿌리가 견고하고 혈기가 가득한 자들이었고 진의 사는 뿌리가 유약하고 혈기가 텅 비어 버린 자들이었으니, 이를 통해 주와 진의 흥망성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는 공경대부 사이에서 나오기도 하고 여항閭巷이나 초야에 있기도 하니, 반드시 진지眞知의 학문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담론하는 바는 의리義理이며, 반드시 쓰기에 적합한 인재는 아니지만 숭상하는 바는 기개氣概입니다. 그러므로 윗자리에 있으면서 교화의 권형을 잡고 있는 자가 그들을 진작시키고 북돋는다면, 태평한 시대에는 자신을 갈고 닦고 채찍질하여 당대에 쓰이지 않는 자가 없고, 위급한 때에는 자신을 희생하여 인仁을 이루어 나라에 보답할 것입니다. 윗사람이 이와 반대로 그들을 대우한다면, 아랫사람이 자처하는 바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임금께서는 이러한 이치에 밝아서 부지런히 그들을 길러내셨습니다. 태종께서는 반유泮儒에게 명하여 광연루廣延樓에서 진강進講하게 하고 또 인서印書를 반사頒賜하여 인재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세종께서는 재생齋生이 성균관에서 도병禱病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말을 듣고, 병이 회복되고 나서 그들의 사기士氣를 가상히 여기셨습니다.³⁸ 성종께서는 이단을 물리치는 교화를 크게 밝히시어 문文이 마침내 더욱 빛났으며, 명종께서는 요승妖僧 보우普雨³⁹를 주살하라는 청을 특별히 윤허하여 유생들의 상소를 표창하셨습니다. 선조께서는 법사法司에서 관유館儒들 가운데 벽서壁書 사건에 연루된 자들을 치죄하라고 청하

38 세종께서는 … 여기셨습니다: 세종이 일찍이 병으로 눕게 되었는데, 나인들이 무당의 말에 현혹되어 성균관 앞에서 도병禱病 하였는데, 유생들이 무녀巫女들을 몰아내어 이를 중지시켰었다. 이에 세종이 병을 무릅쓰고 일어나 있으며 “내가 일찍이 선비를 양성하지 못했까 걱정하였는데, 지금 사인들의 기개가 이러한 것을 보니 내가 무슨 걱정할 것이 있겠는가. 이 말을 듣고 보니, 내 병이 나은 듯하다.”라고 하였다. (『大東野乘』 「東閣雜記」)

39 보우普雨: 1509~1565. 호는 허응虛應 또는 나암懶庵이다. 명종 때 수렴청정하던 문정왕후文定王后의 신임을 받아 승과僧科, 도첩제도牒制 실시 등으로 불교를 부흥하는 한편 유생들과는 크게 반목하였다. 문정왕후가 죽은 뒤에 제주에 유배되었으며 곧바로 죽임을 당했다.

40 선조께서는 … 전교하셨습니다: 1606년에 성균관 안에 있는 문묘의 벽에 조신朝臣 및 관리들과 내관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기자헌奇自獻은 왕의 총애로 좌의정까지 되었음을 비방한 ‘문묘낙서옥文廟落書獄’이 일어났다. 이에 선조는 “속히 공초供招를 받지 않을 수 없겠지만 형벌을 가하여 공초를 받지 말라. 그리고 사실대로 공초하면 석방하겠다는 뜻으로 개유開諭하되 심상한 옥사로 여기지 말라.”라고 하며, 유생들을 석방하였다. (『宣祖實錄』 39년 6월 14일; 『芝峯類說』 「雜事部」)

자, “유생들은 처벌해선 안 되니, 즉시 풀어 주도록 명하라.”라고 전교하셨습니다.⁴⁰ 효종께서는 대군이 소유疏儒들 가운데 태형笞刑으로 다스리라고 인도한 자들에 대해 분노하며 호소하자, “이들은 나도 두려워하는 대상이니, 너도 마땅히 삼가고 피하라.”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열성조에서 사류士類를 기른 것이 이처럼 도타우십니다. 그러므로 이름난 사람들이 배출되어 풍절風節을 숭상하여 위태로운 시기에 우뚝 서거나 쓰러져가는 풍속에서도 격양하여 수백 년에 이르도록 국가의 다스림이 그들의 힘에 의지하였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을 면려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방법은 진실로 날로 떨어지는 세도를 맡기고 쇠미한 풍속을 맡길 수 없고, 또 인물이 적다고 하여 인재 양성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대개 금신衿紳의 반열에 있는 자가 하나의 일과 하나의 행위에 시속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세세한 절목을 생략하고 더 장려해주길 힘써서 메마른 샘에 흐르는 물을 갖다 대듯 이미 쇠락한 기운을 고무시키고 가득 쌓인 음기陰氣가 미약한 양기陽氣를 보호하듯 막 자라나는 기운을 길러줘야 합니다. 그리하면 청아靑莪와 역복械樸의 교화⁴¹가 꾸준히 같고 닦여 향당嚮堂에는 선을 좋아하는 풍화가 있고 조정에는 행실을 고무하는 아름다움이 있게 되어, 이에 훌륭한 많은 사를 이르게 하여 국가의 원기元氣를 장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 삼대三代가 교화가 행해지고 풍속이 아름다워 사람마다 덕을 행하고 문을 배우며 집마다 예악을 익히고 악기를 연주하며 시를 읊었던 것은, 학교를 설치하여 효도하고 공경하는 의리를 가르치고 인의仁義의 방도로 이끌어 그들을 권면하여 나아가게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선비를 기르는 방법도 오로지 학교에 있으니, 안으로는 성균관을 두고 밖으로는 향학을 두어 삼물三物을 일으키고 오전五典을 돈독히 한다면 당대 사의 기상을 크게 진작시키고 크게 변화시키는데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유념하고 유념하소서.

41 청아靑莪와 역복械樸의 교화: ‘청아’는 『시경』 「청청자아靑菁者莪」로, 인재 육성을 즐거워하는 뜻을 읊은 시이다. ‘역복’은 대야大雅의 편명으로, 주 문왕周文王이 인재를 적재적소에 기용한 것을 예찬한 시이다.

장명절 獎名節

명예와 절의를 장려하다

법조 法條

- || 주 무왕周武王은 상용³을 이긴 뒤에, 소공공¹에게 명하여 간혀있던 기자箕子²를 풀어주도록 하였고, 필공畢公³에게 명하여 상용⁴이 사는 마을을 정표⁵를 표지하였으므로, 굉요⁵에게 명하여 비간⁶의 묘에 봉분을 만들어 주도록 하였다. 【『봉주강감회찬』에 보인다.】
- || 제 경공齊景公⁷이 진핍의 이의^{夷儀}를 토벌할 적에, 폐무존^{敝無存}이 먼저 성으로 올라가 성문을 열고 나오려다가 처마 밑에서 죽었다. 그러자 경공이 이의 사람들에게 “폐무존의

1 소공공: 주 문왕周文王의 아들이자 무왕의 아우로, 이름은 석^石이다. 무왕을 보좌하여 상용을 정벌하는데 공을 세워 연핵에 봉해졌다. 무왕이 죽은 뒤 즉위한 성왕이 너무 어렸으므로, 장남 극^紂을 봉지^{封地}인 노에 보내고 자신은 주에 남아 정국을 안정시켰다. 남국南國을 순시하다가 팔배나무^{甘棠} 아래서 정무를 살피주니, 백성들이 그의 공덕을 칭송한 노래가 『시경』에 남아있다. (『詩經』 「甘棠」)

2 기자箕子: 상용의 왕 문정^{文丁}의 아들이자 주왕^{紂王}의 숙부이다. 주왕이 탐욕스럽고 무도하므로 간언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거짓으로 미친 척하여 노예가 되었다.

3 필공畢公: 주 문왕周文王의 서자로, 이름은 고^高이다. 필^畢 땅에 봉해졌으므로 필공이라고 하였다. 무왕^{武王}이 즉위한 후 태공망^{太公望}, 주공^{周公}, 소공^{召公} 등과 함께 무왕을 보필하였다. 무왕 사후, 성왕^{成王}과 강왕^{康王}을 보좌하였다.

4 상용^{商容}: 주왕^{紂王} 때의 대부^{大夫}로, 한때 악관^{樂官}으로 있었는데 주왕에게 여러 번 극간하다가 파면되었다. 일설에는 예악으로 주왕을 교화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여 태항산^{太行山}에 은거하였다고 한다. 무왕이 은을 이기고 나서 삼공^{三公}에 봉하려고 하였으나 사양하였으므로, 그의 마을에 정표하였다.

5 굉요^鬻: 주 무왕周武王 때 정사를 보필한 10인의 신하 중 한 사람으로, 주왕^{紂王}이 문왕을 가두었을 때, 유신씨^{有莘氏}의 미녀와 여용^{驪戎}의 명마 등 귀중한 물품을 바쳐 문왕을 구해냈다. 훗날 무왕을 따라 주왕을 멸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6 비간^{比干}: 「개언로^{開言路}」 법조 23번 각주 참조.

7 제 경공齊景公: 춘추 시대 제의 군주로, 성은 강^姜, 씨는 여^呂, 이름은 저구^齊이다. 장공^{莊公}의 이복동생이다. 장공이 최자^{崔杼}에게 시해된 뒤 올림되었다. 즉위 초기에는 사치가 심하여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고 형벌을 가혹하게 시행하여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였다. 이후 대신 안영^{晏嬰}을 재상으로 삼고 책사 사마양저^{司馬穰苴}를 기용하면서 번영을 누렸다.

시신을 찾는 자에게는 다섯 집을 상으로 내리고 역사(役事)에 동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윽고 그의 시신을 찾자, 경공은 시신에 세 벌의 수의(褻衣)를 입히고 서헌(犀軒)과 직개(直蓋)를 주어 먼저 제(齊)로 돌아가게 했다. 이때 인솔하는 자를 꿇어앉히고 군사에게 곡하게 하였으며, 친히 수레를 세 번 밀어 출발시켰다.⁸

|| 안(鞍)에서 전쟁⁹ 할 때, 방추보(逢丑父)가 제 경공(齊頃公)의 거우(車右)¹⁰였는데, 전세가 불리해 지자 경공과 자리를 바꾸어 자신이 경공인 체하였다. 그 뒤, 방추보가 경공에게 수레에서 내려 화천(華泉)으로 가서 마실 물을 떠오도록 하여 경공이 이를 틈타 도망갈 수 있었다. 한궐(韓厥)¹¹이 방추보를 바치니, 극헌자(郤獻子)¹²가 그를 죽이려 하였다. 그러자 방추보가 큰 소리로 “지금부터 제 군주를 대신하여 고통을 떠맡을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극헌자가 “저자가 죽음으로써 자신의 임금을 환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를 죽인다면 상서롭지 못하다. 그를 사면하여 임금을 섬기는 자들을 권면하겠다.”라고 하고, 그를 풀어주었다. 【이상은 『춘추좌씨전』에 보인다.】

|| 한 고조(漢高祖)¹³가 낙양(洛陽)에서 팽월(彭越)¹⁴을 효수(梟首)하고 “팽월의 시신을 거두어 살피는

8 경공은 … 출발시켰다: 폐무존을 이례적으로 예우하였음을 표현한 것이다. 서헌은 물소 가죽으로 장식한 수레로 신분이 높은 자가 타는 것이고, 직개는 자루가 긴 일산(日傘)으로 신분이 높은 자가 쓰는 것이다. 경공은 이것을 주어 폐무존의 부장품으로 쓰게 한 뒤, 상차(喪車)의 바퀴가 세 바퀴 돌도록 친히 밟으로써 폐무존을 극진히 예우하였다.

9 안(鞍)에서 전쟁: 제(齊)와 진(晉)이 안(鞍)에서 벌인 교전을 가리킨다. 제 경공(齊頃公) 10년에 경공이 노홍(魯)과 위(衛)를 정벌하자, 노와 위는 진(晉)에 구원을 청하였다. 진은 극(郤)을 대장으로 삼아 그들을 구원하게 하여, 미계산(靡笄山) 아래에서 대진하게 되었다. 제는 안(鞍)에 진을 치고, 대부 방추보가 경공의 거우가 되어 호위하였으나, 결국 패전하였다.

10 거우(車右): 전차(戰車)의 오른쪽에 타는 무사를 가리킨다. 전차는 나란히 달리는 네 마리 말에 세 명이 타는데, 어자(御者)가 수레 가운데에 앉고, 어자를 기준으로 임금이 왼편에, 호위하는 사람이 오른쪽에 타서 수레가 기울지 않게 하였다. 이렇게 오른쪽에 타는 신하를 참승(參乘)이라고도 하는데, 주로 임금이 친애하는 측근을 참승으로 태웠다.

11 한궐(韓厥): 춘추 시대 진(晉)의 대부로, 시호가 헌(獻)이므로, 한헌자(韓獻子)라고도 한다. 많은 전공을 세워 진이 패자(霸者)가 되는 데 기여를 하였다.

12 극헌자(郤獻子): 춘추 시대 진(晉)의 장수 극(郤)으로, 시호가 헌(獻)이다. 제(齊)에 사신으로 갔을 때, 다리를 절며 계단을 올랐는데, 제 경공(齊頃公)의 부인 소동숙자(蕭同叔子)가 이를 비웃었다. 극은 이를 수치로 여겨 안(鞍)에서의 전쟁에서 제를 격파한 뒤, 소동숙자를 인질로 바칠 것을 고집하였다가 결국 포기하였다.

13 한 고조(漢高祖): 기원전 256~기원전 195. 전한(前漢) 제1대 황제 유방(劉邦)으로, 재위 기간은 기원전 206년에서 기원전 195년이다. 진(秦) 2세 황제 때 각지에서 군웅이 봉기하였는데, 유방도 군사를 일으켜 한왕(漢王)이 되었다. 초(楚) 항우(項羽)를 해하(垓下)에서 격파한 뒤 천하를 통일하고 제위에 올라 한(漢)을 건국하였다. 진의 가혹한 법률을 폐지하고 악법삼장(約法三章)으로 인심을 수습하였다.

자가 있으면 곧바로 체포하겠다.”라는 조령詔命을 내렸다. 양梁의 대부인 난포樂布¹⁵가 제齊에 사신 갔다가 돌아와서 팽월의 머리 아래에서 사신 갔던 일을 아뢰고 제사를 지내 통곡하였다. 관리가 그를 체포하여 보고하니, 고조가 난포를 불러들여 삶아 죽이려고 하였다. 난포가 “팽왕이 이미 죽었으니 신은 살아도 죽는 것만 못합니다. 삶아 죽여 주십시오.”라고 말하니, 고조가 난포를 풀어주고 중위中尉에 제수하였다.

- || 후한 광무제後漢光武帝¹⁶가 조서를 내려 처사處士인 태원太原 사람 주당周黨¹⁷과 회계會稽 사람 엄광嚴光¹⁸ 등을 불러오게 하였다. 주당은 엎드려 잇기만 하고 자신의 성명을 고하지 않고는 본래 뜻한 대로 살기를 밀 원한다고 하였다. 박사博士 범승范升¹⁹이 아뢰었다. “주당 등은 세 번 초빙한 뒤에야 비로소 수레에 올랐고, 황제를 빌 적에 예를 행하여 자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처사라는 허명虛名을 사사로이 흠쳐 폐하게 과시하고 고귀해지길 구한 것이라면 그들 모두 매우 불경한 것입니다.” 글을 아뢰자, 다음과 같이 조서를 내렸다. “명철한 임금과 어진 군주에게는 빈객이 되지 않은 사인士人이 반드시 있었다. 주당이 짐의 녹祿을 받지 않는 것도 각자의 뜻이 있어서이다. 비단 40필을 하사하여 돌려보내라.”

14 팽월彭越: ?~기원전 196. 항우項羽의 수하로 있다가 유방劉邦에게 협조하여 전한前漢을 세우는 데 기여한 개국공신이다. 해하垓下의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워 양왕梁王으로 봉해졌다. 후에 진희陳豨의 반란을 평정하려 간 고조高祖가 징병을 요청하였는데, 병상에 누워있다 징병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여후呂后의 모함을 받아 삼족이 멸해졌다.

15 난포樂布: ?~기원전 145. 연왕燕王 장도臧荼와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가 유방劉邦에게 사로잡혔으나, 팽월의 도움으로 풀려나서 양梁의 대부가 되었다. 후에 팽월이 모반죄로 죽었을 때 난포가 목숨을 걸고 그 시신을 거두어주었다. (『史記』「樂布傳」)

16 후한 광무제後漢光武帝: 기원전 6~57. 후한 제1대 황제 유수劉秀로, 재위 기간은 25년에서 57년이다. 고조 유방의 9세손이다. 왕망王莽의 신산 말년에 농민들이 봉기하고 군웅들이 할거하자, 형 유적劉縯과 거병하여 왕망의 군사를 대파하고 농민군들을 병합하여 제위에 올라 한漢을 재건하였다. 즉위하여 10년 동안 군웅 세력을 진압하고 전국을 통일하였다. 노비와 죄수를 평민으로 복귀시켰고 조세와 요역을 경감하였으며 중앙집권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유학을 장려하고 선비를 우대하고 명분과 절의를 존중하여 예교주의禮敎主義를 정치 이념으로 확립하였다.

17 주당周黨: 자는 백황伯況이다. 왕망王莽이 제위를 찬탈하자 병을 칭탁하고 처사가 되어 두문불출하였다. 광무제가 즉위 후 의랑議郎으로 삼았는데,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민지澠池에 은거하였다. (『後漢書』「周黨傳」)

18 엄광嚴光: 자는 자릉子陵이다. 어린 시절부터 광무제와 친구였다. 광무제가 즉위 후 간의대부諫議大夫로 삼았는데, 부춘산富春山으로 들어가 양피羊皮 갓을 입고 칠리탄七里灘에서 낚시하며 여생을 마쳤다. (『後漢書』「嚴光傳」)

19 범승范升: 자는 변경辯卿이다. 양구역학梁丘學과 맹시역학孟氏易學을 전공하였다. 금문경학今文經學을 위주로 하여 일찍이 고문경학가 한흠韓歆과 논쟁하면서 고문경학인 비씨역학費氏易學과 『춘추좌씨전』의 학관學官을 세우는 것에 반대하였다.

|| 후한 광무제 때의 일이다. 공손술公孫述²⁰이 광한廣漢 사람 이업李業²¹을 부르며 출사하지 않으면 독주毒酒를 내리겠다고 하니, 이업이 독주를 마시고 죽었다. 또 파군巴郡의 초현譙玄²²을 초빙하였는데, 초현의 아들 초영譙瑛이 천만 냥을 바쳐 아버지의 죽음을 속죄하였다.²³ 건위鍵爲 사람 비이費貽는 몸에 옷칠을 하여 나병에 걸린 것처럼 꾸미고 거짓으로 미친 체하여 피하였으며, 임영任永和 풍신馮信은 모두 청맹靑盲²⁴을 핑계로 사양하였다. 광무제가 촉蜀을 평정한 뒤, 초현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중뢰中牢²⁵로 제사하였고, 이업이 살던 마을에 정표旌表하였다. 비이, 임영, 풍신을 불렀는데 마침 임영과 풍신은 병으로 죽었고 비이만 출사하여 합포 태수合浦太守에 이르렀다.

|| 진 무제晉武帝²⁶가 다음과 같이 조서를 내렸다. “제갈량諸葛亮²⁷은 촉蜀에 있으면서 자신의

20 공손술公孫述: ?~36. 후한後漢 때 군웅群雄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자는 자양子陽이다. 처음에는 왕망王莽을 섬겼으나, 전한前漢 말 경시제更始帝 유현劉玄이 반란을 일으키자 성도成都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파촉巴蜀을 평정한 뒤 스스로 천자라 칭하고 국호를 성가成家라고 하였으나, 광무제에게 멸망당하였다.

21 이업李業: 자는 거유巨游다. 평제平帝 때 명경明經으로 천거되어 낭관郎官에 임명되었으나, 왕망王莽이 섭정을 하자 병을 이유로 낙향하여 두문불출하였다. 왕망이 칭제稱帝하고 그를 주사酒士로 삼으려 하자 자살하였다.

22 초현譙玄: ?~35. 자는 군황君黃이다. 『주역』과 『춘추』에 정통했다. 성제成帝 때 의랑議郎을 지냈고, 평제平帝 때 중산대부中散大夫가 되었다. 왕망王莽이 섭정을 하자 귀향하여 은거하면서 강학했다. 아들 초영도 역학易學에 뛰어나 북궁위사北宮衛士를 지냈다.

23 천만 … 속죄하였다: 공손술이 초현을 초빙하면서 사자를 보내 독약으로 위협하였는데, 초현은 끝내 출사하지 않고 독약을 마시고 죽었다. 이 때문에 그의 아들 초영이 집안이 화를 입을까 두려워 공손술에게 돈을 바쳐 그 아버지의 죽음을 속죄한 것이다.

24 청맹靑盲: 눈이 멀기에는 멀쩡하지만 점점 보이지 않아 나중에는 실명하게 되는 병이다. 흑맹黑盲이라고도 한다.

25 중뢰中牢: 양부와 새끼 돼지猪를 희생으로 사용하는 제사이다.

26 진 무제晉武帝: 236~290. 진의 제1대 황제 사마염司馬炎으로, 재위 기간은 265년에서 290년이다. 위 원제魏元帝 때 아버지 사마소司馬昭의 뒤를 이어 상국相國과 진왕晉王이 되었는데, 원제에게 선양을 받아 진을 건립하였다. 촉蜀과 오를 멸망시키고 천하를 통일한 후, 새로운 율령을 반포하고 관제를 정비하였으며 점전제田佃制를 시행하는 등 치국에 힘썼다. 그러나 만년에 환락에 빠지고 어리석은 사마충司馬衷을 태자로 삼는 등 실정하여 죽은 뒤 ‘팔왕八王의 난’이 일어나게 되었다.

27 제갈량諸葛亮: 181~234. 자는 공명孔明이다. 황족이었던 유비劉備의 ‘삼고초려三顧草廬’에 응하여 유비의 책사가 되어 오뎀의 손권孫權을 설득하여 동맹을 맺고 적벽대전赤壁大戰에서 조조曹操의 대군을 물리쳤다. 유비가 촉을 건국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유비가 사후에도 그의 아들 유선劉禪을 보좌하여 남만南蠻을 정복하는 데 성공하고 여러 차례 위적을 침공하였다. 그러나 북벌은 번번이 실패하였고 군중軍中에서 사망하였다. 북벌을 앞두고 유선에게 올린 〈출사표出師表〉가 유명하다.

28 제갈첨諸葛瞻: 227~263. 자는 사원思遠이고, 제갈량의 아들이다. 촉한蜀漢의 2대 군주인 유선劉禪의 딸과 결혼하여 기도위騎都尉가 되었고, 행군호위장군行軍護衛將軍에 이르렀다. 위魏의 장군 등애鄧艾가 촉한을 침공하자, 군대를 이끌고 면죽綿竹에서 맞아 싸우다가 패하여 전사하였다.

마음과 힘을 다하였고, 그의 아들 제갈첨諸葛瞻²⁸은 환란을 만나 의롭게 죽었다. 그러나 그의 손자 제갈경諸葛京²⁹을 재주에 따라 관리로 임명해야 할 것이다. 또 촉의 장수였던 부첨傳翕 부자³⁰는 그의 군주를 위해 죽었다. 천하의 선물은 한 가지이니, 이쪽이나 저쪽 이나로 달리할 수 있겠는가. 부첨의 자식인 부저傳著와 부모傳募는 해관奚官³¹에 적물籍沒되어 들어갔으니, 사면하여 서인庶人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북위 세조北魏世祖 때의 일이다. 최호崔浩³²가 국사를 감수監修할 적에 나라의 악행을 드러낸 일로 수감되었다. 고윤高允³³ 또한 함께 국사를 감수하였기에 세조가 고윤을 불러 물었다. “국서國書는 모두 최호가 감수하였는가?” 고윤이 “신이 최호와 함께 하였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이에 태자가 “고윤은 정신이 혼미하여 착각했을 뿐입니다. 신이 물었을 때 모두 최호가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고윤에게 “동궁이 말한 것이 사실인가?”라고 묻자, 고윤이 “신은 감히 거짓되고 망령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태자는 신이 모시고 강학한 날이 오래이므로 제 목숨을 구하려 한 것일 뿐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세조가 태자를 돌아보며 “정직하구나, 이 사람이여. 죽음이 닥쳐도 말을 바꾸지 않음은 ‘신信’이요, 신하가 되어 임금을 속이지 않음은 ‘정眞’이다. 응당 특별히 그의 죄를 면제하여 정표해야 한다.”라고 하고, 마침내 그를 사면하였다.

29 제갈경諸葛京: 제갈첨의 차남으로, 부친 제갈첨과 형 제갈상諸葛尚이 면죽관綿竹關에서 전사하자 하동河東으로 피하여 제갈량의 가계를 이어나갔다.

30 부첨傳翕 부자: 촉한蜀漢의 무장인 부첨(?~263)과 그의 부친 부용傳彤(?~222)을 가리킨다. 『삼국지연의』에서는 부용을 부동傳彤으로 오기하였다. 부첨은 부용이 이릉夷陵에서 전사한 공으로 좌중랑左中郎이 되었고 나중에 관중 도독關中都督에 올랐다. 위魏의 종회鍾會가 촉을 침입했을 때 양안관陽安關을 방어하다가 전사하였다.

31 해관奚官: 소부少府에는 해관령奚官슈이 있는데, 적몰되어 들어간 남녀들이 소속되어 있었다.

32 최호崔浩: ?~450. 북위 태조北魏太祖, 태종太宗, 세조世祖 때의 모신謀臣이다. 북위 건국 초부터 외정外征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때마다 지략을 발휘하여 황제의 신임을 얻었다. 태종이 혁련창赫連昌을 공격해 궤멸하고 유연柔然을 물리치면서 북경北京을 차지할 때, 대부분의 전략이 그에게서 나왔다. 그 공으로 시중侍中에 오르고 무군대장군撫軍大將軍을 거쳐 당시 신분상의 제약이 있었던 특진特進에 올랐다.

33 고윤高允: 390~487. 자는 백공伯恭이다. 경사와 천문, 술수에 두루 통달하였다. 문성제文成帝 때 양성후梁城侯로 봉해졌는데, 황제가 그를 매우 신망하여 영공수公이라 부르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다섯 임금을 섬겼고 50여 년 동안 벼슬하였으며 강직한 신하로 이름이 났다. 저서에 『노전석老傳釋』, 『공양석公羊釋』, 『모시습유毛詩習遺』 등이 있다. (『魏書』 『高允傳』)

|| 수 문제隋文帝³⁴가 진陳의 산기상시散騎常侍 원원우袁元友가 진 숙보陳叔寶³⁵에게 자주 직간하였다는 말을 듣고 그를 발탁하여 시랑侍郎에 임명하였다. 그리고는 여러 신하들에게 “처음 진을 평정하고서 임만노任蠻奴³⁶를 죽이지 않은 것을 후회하였다. 남이 주는 후한 봉록을 받고 중대한 임무를 맡고도 나라를 위해 죽지 못하였으니, 홍연弘演이 간을 넣은 것³⁷과 어찌 이리도 다르단 말인가.”라고 하였다.

|| 당 태종唐太宗이 다음과 같이 조서를 내렸다. “수隋의 옛 응격랑장鷹擊郎將 요군소堯君素³⁸는 비록 걸책의 개가 요임금을 보고 짓듯이 충성을 다하여³⁹ 창끝을 거꾸로 돌린 뜻⁴⁰에는 어긋남이 있었으나, 거센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풀처럼 실로 혹한의 추위에도 변치 않는 마음을 드러내었다. 포주 자사蒲州刺史로 추증하고, 그 자손들을 찾아서 보고하라.”

34 수 문제隋文帝: 541~604. 수의 제1대 황제 양견楊堅으로, 재위 기간은 581년에서 604년이다. 남북조 시대 북조 서위西魏와 북주北周의 장군인 수국공隋國公 양견楊堅의 아들이다. 딸이 북주 선제宣帝의 황후가 되고, 선제의 아들 정제靜帝가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정권을 장악하고 선양 받아 수를 건국하였다. 이후 후량後梁, 진陳 등을 멸망시키고 천하를 통일하였다. 제도를 정비하고 과거제를 실시하여 중앙집권제를 강화하였다. 의심이 많아 황태자 양용楊勇을 폐하고 둘째 아들 양광楊廣을 태자로 세웠는데, 병이 심해지자 양광에게 살해되었다.

35 진숙보陳叔寶: 553~604. 남조南朝 진陳의 마지막 임금으로, 자는 원수元秀, 시호는 양왕이다. 주색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았으며, 많은 누각을 짓고 연회를 벌이며 시부詩賦를 일삼았다. 수隋의 장수인 하악필翼若弼이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 오는데도 연회를 그치지 않다가 결국 사로잡혀 죽었다. (『陳書』「後主本紀」)

36 임만노任蠻奴: 남조 양梁에서 수隋에 걸쳐 활동한 무장 임충任忠을 가리킨다. 만노는 임충의 소명小名이다. 임충은 여러 왕조에서 관직을 역임하였는데, 양조梁朝 때는 파릉군 태수巴陵郡太守, 형양내사衡陽內史를 지냈고, 진陳에 항복하고 공적을 세워 영군장군領軍將軍이 되고 시중의 자리에 올랐으며, 양신군공梁信郡公에 봉해졌다. 수隋가 진을 침공하자, 임충은 후주後主를 배반하고 수에 투항하여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의 벼슬을 받았다. 임만노를 예로 들어 여러 차례 모국에 대한 충절을 저버리고 적에게 투항하여 벼슬한 임충을 비판한 것이다.

37 홍연弘演이 간을 넣은 것: 홍연은 춘추 시대 위 의공衛懿公의 신하이다. 그가 망명을 받들고 사신으로 나간 사이에 적인翟이 위를 공격하였는데, 의공이 평소에 학鶴만 좋아하고 백성을 돌보지 않았기에 백성들이 싸우지도 않고 도망쳤다. 이에 적인이 의공을 죽여 그 고기를 모두 먹고 간肝만 남겨 놓았다. 홍연이 돌아와서 위공의 간을 향해 사명을 완수했다고 보고한 뒤에, 통곡하며 “임금의 겉옷이 되겠다.[臣請爲襪]”라고 하면서 자기의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내고 위공의 간을 그 속에 집어넣었다. (『呂氏春秋』「忠廉」)

38 요군소堯君素: 수 양제隋煬帝 때 대신으로, 양제가 진왕晉王이었을 때 곁에서 모셨다. 양제가 제위에 오른 뒤 여러 차례 승진하여 응격랑장鷹擊郎將이 되었다. 하동수河東守로서 당 고조唐高祖의 군대에 맞서 싸우다 측근에게 살해당하였다. 태종이 그의 충절을 기려 「증요군소포주자사조贈堯君素蒲州刺史詔」를 내렸다. (『隋書』「堯君素傳」)

39 걸책의 … 다하여: 양제를 위해 충성을 다한 것을 비유한 말이다. 『사기』「회음후전淮陰侯傳」에 “도적盜跖의 개가 요임금을 보고 짓는 것은 요임금이 어질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주인이 아닌 사람을 보고 짓는 것일 뿐이다.[跖之狗吠堯 堯非不仁 狗因吠非其主]”라고 하였다.

40 창끝을 거꾸로 돌린 뜻: 상대방의 인정仁政에 탄복한 나머지 싸울 마음이 없어 오히려 자기 편을 공격하는 것을 말한다. 『서경』「무성武成」에 주 무왕周武王이 목야野에서 상 주왕商紂王의 군대와 싸울 적에, 은의 군사들이 주를 대적하지 않고 창끝을 돌려서 거꾸로 자기 편을 공격한 덕분에 크게 이겼다는 기록이 보인다.

■ 견제甄濟⁴¹가 청암산靑巖山에서 은거하고 있었는데, 안녹산安祿山⁴²이 상주하여 그를 서기書記로 삼았다. 견제는 안녹산에게 다른 뜻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거짓으로 풍질風疾이 든 체하였다. [견제가 청암산으로 돌아온 후] 안녹산이 반역을 일으키고서 사자使者로 하여금 형을 집행하는 사람 둘을 데리고 가 그를 주살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데려오게 하니, 견제가 머리를 숙이고 죽기를 기다렸다. 사자가 감복하여 진짜 병에 걸렸다고 안녹산에게 보고하였다. 후에 견제가 광평왕廣平王 숙傲⁴³을 군문軍門에서 알현할 적에 숙종肅宗⁴⁴이 역적의 관작을 받은 자들을 줄지어 세우고 견제에게 절하게 하여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였다.

■ 남당南唐의 군주 이경李璟⁴⁵ 때의 일이다. 호주 단련사濠州團練使 곽정위郭廷誥⁴⁶가 후주後周에 투항하려고 하여 녹사참군錄事參軍 이연추李延鄒에게 명령하여 항복하는 표문表文의 초안을 쓰도록 하였다. 이연추가 충의忠義로 책망하자 곽정위가 병기로 위협하니, 이연추

41 견제甄濟: 당 현종唐玄宗 때의 처사處士로, 자는 맹성孟成이다. 안녹산의 보좌관인 범양 장서기范陽掌書記로 있었다. 후에 안녹산의 모반 기미를 알아차리고 벼어리가 된 것처럼 가장해 청암산으로 돌아왔는데, 안녹산이 반란을 일으킨 뒷사람을 보내 칼로 협박하며 종용했지만 끝내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 일로 낙양에 구금되었다. (『新唐書』 「甄濟傳」)

42 안녹산安祿山: ?~757. 초명은 알낙산軻山이었는데, 어려서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개가함에 따라 성이 안안이 되었다. 당 현종唐玄宗 때 양 귀비의 눈에 들어 몇 개 절도사節度使를 겸임했다가 양국총楊國忠과 갈등을 빚고 그를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경사京師를 함락하고 스스로 웅무황제雄武皇帝라 칭하며 '성무聖武'란 연호를 썼으나, 그의 아들 경서慶緒에게 살해되었다. (『新唐書』 「顏真卿傳」)

43 광평왕廣平王 숙傲: 당 숙종唐肅宗의 맏아들인 이숙李倣으로, 훗날 대종代宗으로 즉위하였다.

44 숙종肅宗: 711~762. 당탕 제7대 황제 이형李亨으로, 재위 기간은 756년에서 762년이다. 현종玄宗의 셋째 아들이다. 안녹산安祿山의 난 때 현종을 따라 피신하다가 환관 이보국李輔國의 건의를 받아들여 군대를 정비하여 스스로 황위에 오르고 현종을 태상황으로 삼아 유폐시켰다. 즉위한 뒤, 이보국과 장 황후張皇后의 권력다툼이 치열하였다. 이에 숙종의 둘째 아들 이담李倓이 이보국과 장 황후의 죄상을 여러 차례 간언하자, 이보국과 장 황후는 이담을 모함하여 죽였다. 그 뒤 숙종은 중병에 걸려 위독하자, 장 황후는 황태자 이에李豫와 이보국을 죽이고 셋째 아들 이계李係를 황제로 삼으려고 모의하였다. 이보국이 이 사실을 알고 장 황후와 이계를 유폐시키고 숙종에게 양위를 받아 이예를 옹립하였다. 유폐되어 있던 현종이 죽은 지 13일 뒤에 숙종도 죽자, 이보국은 장 황후와 이계를 살해하였다.

45 이경李璟: 916~961. 오대십국 남당의 군주 이경李璟으로, 재위 기간은 943년에서 961년이다. 묘호는 원종元宗이다. 북주세종北周世宗이 남하하여 침공하자 대패하고, 장강 이북의 땅을 할양하고 북주를 신하로서 섬기며 황제 칭호를 버리고 스스로를 국주國主라 칭한다는 조건으로 강화하였다. 또한 '경璟'이라는 이름은 북주 황족이 사용하 것이므로 조약에 따라 '경景'으로 개명하였다. 이후 조광윤趙匡胤이 북주에서 제위에 올라 송송을 건국하자, 남당은 송을 섬기고 그들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송이 강성해지자 수도를 금릉金陵에서 남창南昌으로 옮기고 금릉의 수비를 태자 이욱李煜에게 맡긴 후 사망하였다.

46 곽정위郭廷誥: 919~972. 자는 신신信臣이다. 후주後周가 후당을 공격하자 장강 이남에 있던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남당 군주의 허락을 받은 후, 후주에 항복하였다.

가 붓을 집어 던지고 말하였다. “대장부로서 나라를 저버리고 역신逆臣이 되어 항복하는 표문을 짓는 짓은 끝내 못하겠다.” 광정위가 그를 참수하고 호주를 통째로 바치고 항복하였다. 남당 군주가 이연추의 자식에게 상을 내리고 관리로 삼았다.

- || 후주後周의 군대가 남당 장수 유인섬劉仁贍⁴⁷을 수춘壽春에서 포위하였다. 그의 아들 유송간劉崇諫이 밤에 배를 띄워 회수淮水를 건너려다가 소교小校⁴⁸에게 붙잡히니, 유인섬이 아들을 참수하였다. 성이 함락되었을 때, 유인섬은 병이 심해져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다. 감군監軍이 유인섬을 들어 메고 성에서 나오자, 후주 세종後周世宗⁴⁹이 다시 성으로 들어가 요양하게 하였다. 그리고는 그를 천평 절도사天平節度使 겸 중서령中書令에 임명하였는데, 제사制辭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섬기는 군주에게 충성을 다하였고 절개 굳게 지켜 흠결이 없었다. 짐이 배반한 나라를 토벌함에 그대를 얻은 것이 큰 수확이다.” 이날 유인섬이 죽었는데, 팽성군왕彭城郡王의 작위를 내리고, 청회군淸淮軍을 충정군忠正軍이라 개칭하여 유인섬의 절개를 표창하였다.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 || 진교陳橋⁵⁰에서 대중이 송 태조宋太祖⁵¹를 옹립하자, 시위 부도지휘사侍衛副都指揮使 한통韓

47 유인섬劉仁贍: 900~957. 자는 수혜守惠이다. 청회군 절도사淸淮軍節度使를 맡아 수주壽州를 진수鎮守하였다. 후주가 공격해오자 성을 사수하다가 위독해지자 부사副使 손우孫羽가 거짓으로 항복문서를 만들어 성을 버쳐 항복하니, 그날 성안에서 죽었다.

48 소교小校: 군교軍校를 따라 죄인을 잡던 사령使수이다.

49 후주 세종後周世宗: 921~959. 오대십국 후주 제2대 군주 시영樂樂으로, 재위 기간은 954년에서 959년이다. 아버지는 시수례柴守禮인데, 고모부 광위郭威의 양자가 되었다. 광위가 951년 후주를 건국하고 사망하자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 세종은 중국을 통일하겠다는 목표 아래 군대를 정비하고 직접 진두 지휘하여 서쪽으로 후촉後蜀을 패퇴시키고 남쪽으로 남당南唐을 꺾고 북쪽으로 요초를 격파하여 거란에게 잃었던 북방의 많은 땅을 되찾았다. 그러나 통일을 실현하지 못한 채 병으로 사망하였다.

50 진교陳橋: 하남성河南城 개봉開封에 위치한 역명驛名이다. 이곳에서 군졸軍卒들이 조광윤趙匡胤에게 황의黃衣를 입히고 천자로 추대하였다.

51 송 태조宋太祖: 927~976. 북송 제1대 황제 조광윤趙匡胤으로, 재위 기간은 960년에서 976년이다. 후주後周의 세종 수하의 장군으로, 신임을 받아 금군禁軍을 통솔하였다. 이후 금군에게 추대되어 즉위하고 국호를 송으로 고쳤다. 후촉後蜀, 남한南漢, 남당南唐 등을 멸망시키고, 번진의 병권을 빼앗고 문치에 의한 중앙집권적 관료제를 확립하였다. 또한 과거제도科擧制度를 정비하고 황제가 직접 실시하는 전시殿試를 시행하였다.

52 한통韓通: 오대십국 주周的 무장으로, 송 태조 조광윤趙匡胤이 황제가 되는 것에 협조하지 않다가 왕언승王彥昇에게 살해되었다. 태조는 그의 죽음을 애석히 여겨 왕언승을 벌하려고 하였으나 개국 초인자라 차마 벌하지는 못하고 대신 생사여탈권을 부여하는 절월節鉞은 내리지 않았다. (『宋史』「韓通傳」)

通⁵²이 군대를 이끌고 방어하려 하다가 군교軍校 왕언승王彦昇에게 살해당하였다. 태조는 중서령中書令에 추증하여 그의 충절을 표창하고, 왕언승에게 한통을 제멋대로 살해한 죄를 묻고자 하였으나 신하들이 그의 사면을 간청하였다.

- 송 태조宋太祖가 북한北漢⁵³ 태주澤州를 정벌할 적에 북한의 평장사平章事 위융衛融⁵⁴을 사로잡았다. 위융이 “개는 자기 주인이 아닌 이에게 짖는 법입니다. 폐하께서는 신을 당장 죽이셔야 하니 신은 절대로 폐하를 위해 쓰이지 않을 겁니다.”라고 하였다. 태조가 화가 나서 철퇴로 그의 등을 때리니, 피가 튀어 얼굴을 뒤덮었다. 위융이 “신이 죽을 곳을 얻었습니다.”라고 하자, 태조가 그의 충절을 가상하게 여겨 태부경太府卿에 임명하였다.
- 남송 고종南宋高宗 때의 일이다. 이강李綱⁵⁵이 “요즘 세상의 사대부들은 염치가 없어 군신의 의리를 알지 못합니다. 정강靖康의 화⁵⁶에 절개를 지켜 의를 위해 죽은 이는, 조정에서는 유겸劉韜⁵⁷과 이약수李若水⁵⁸뿐이었고, 외방에서는 곽안국霍安國⁵⁹뿐이었습니다. 증홀贈恤⁶⁰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하니, 고종이 그의 말을 따랐다.

53 북한北漢: 오대십국의 하나로, 돌궐突厥 사타족沙陀族 출신인 유송劉崇이 산서성 북부에서 후한後漢을 계승하여 세운 나라이다. 4대 29년 만에 송에 멸망하였다.

54 위융衛融: 905~973. 자는 명원明遠이다. 유송劉崇이 세운 북한北漢에서 중서시랑中書侍郎과 평장사平章事를 지내고, 유군劉鈞이 제위를 잇자 재상이 되었다. 송 태조가 북한을 침략했을 때 절개를 굽히지 않았으며, 그 후 송에 벼슬하여 진주陝州와 서주舒州, 황주黃州의 지주知州를 역임했다.

55 이강李綱: 『양사기養士氣』 계조 22번 각주 참조.

56 정강靖康의 화: 북송 흥종北宋欽宗의 연호인 정강 연간(1126~1127)에 금군이 북송北宋을 멸망시킨 사건을 말한다. 휘종徽宗의 뒤를 이은 흥종은 정강 원년에 수도를 포위한 금과 강화 교섭을 진행하여 재물을 제공하고, 북방의 중산中山, 하간河間, 태원太原 삼진三鎭의 할양, 금을 백부伯父로 하는 등의 조건으로 화의를 맺었다. 그러나 금과의 약속을 어기고 내부 교란을 획책하다가, 두 번째 공격을 받았다. 개봉이 함락된 뒤, 휘종과 흥종은 오국성五國城에 유배되었다가 죽었다. 한편 흥종의 동생 강왕康王 조구趙構(고종高宗)이 응천부應天府에서 즉위하여 송 왕조를 중건하니, 이를 남송南宋이라 한다.

57 유겸劉韜: 1067~1127. 자는 중언仲偃이다. 정강의 화에 사신으로 금의 군영에 파견되어 상서복야尚書僕射에 제수되었으나, 자결하여 충절을 지켰다. 사후에 자정전 대학사資政殿大學士로 추증되었다.

58 이약수李若水: 1093~1127. 초명初名은 약빙若冰이며, 자는 청경淸卿, 시호는 충민忠愍이다. 흥종徽宗 때 태학박사太學博士를 역임하였다. 변경汴京이 함락되자, 흥종을 따라 금의 진영으로 갔다. 금인이 교외에 나와 흥종을 맞이하면서 폄박하여 옷을 갈아입게 하였는데, 이약수가 흥종이 벗어 놓은 옷을 보고 흥종이 죽은 줄 알고서 금인을 비방하다가 죽음을 당하였다. 사후에 관문전 박사에 추증되었다. (『宋史』 「李若水傳」)

59 곽안국霍安國: 정강의 화에 금이 회주懷州를 함락시킨 후에 지회주知懷州 곽안국霍安國 및 부대장部隊將 5백 인이 모두 항복하지 않아 죽음을 당하였다. 사후에 연강전 학사延康殿學士에 추증되었다. (『宋史』 「霍安國傳」)

60 증홀贈恤: 나라에 공을 세우고 죽은 자의 가족에게 장사나 제사 지낼 비용을 하사하는 것이다.

|| 원 순제元順帝⁶¹ 때의 일이다. 진우량陳友諒⁶²이 안경부安慶府를 공격하였다. 수장守將 우승右丞 여궐余闕⁶³이 걸어다니며 창을 들고 싸우다가 몸에 십여 군데 상처를 입었으며, 성이 함락되자 칼로 자신의 목을 그었다. 명 태조明太祖가 그의 충절을 가상히 여겨 충절방忠節坊에 그의 사당을 세우고 유사有司에게 매년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이상은 『속자치통감』에 보인다.】

|| 명 태조明太祖 초기, 원신元臣 채자영蔡子英⁶⁴이 달아나 관중關中으로 들어갔다가 사로잡혔다. 그를 포획하여 경사京師에 이르자 태조가 그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는데, 자영이 받지 않고 물러나 다음과 같이 글을 올렸다.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은 여자가 시집가는 것과 같으니, 사람으로서 죽을 때까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폐하께서 사절死節한 사람을 기리고 충의忠義로운 사람을 장려하시려면 예의와 염치를 모르는 포로를 유신維新的 조정에 세우셔서 안 될 것입니다.” 태조가 그의 글을 보고 더욱 그를 훌륭하게 여기고 칙서를 내려 유사有司에게 그를 전송하여 국경을 나가게 하였다. 【『명사강목』에 보인다.】

61 원 순제元順帝: 1320~1370. 원 제11대 마지막 황제 토곤테무르[妥懽帖睦爾로, 재위 기간은 1333년에서 1368년이다. 명 종명宗의 맏아들이자 영종寧宗의 형이다. 영종이 병사病死한 뒤 13세에 즉위하였다. 당시 몽골 귀족들의 전횡이 심하여 과도한 조세와 부역으로 백성들이 궁핍해져 각지에서 민란이 이어졌고 결국 1351년 홍건기의 난이 일어났으며, 순제와 황태자가 정권을 다투어 내전內戰이 발생하였다. 이후 주원장朱元璋이 남방 지역을 장악하고 북벌을 단행하여 순제는 북경에서 쫓겨나 응창應昌으로 달아났다가 2년 뒤 병사했다.

62 진우량陳友諒: 1316~1363. 원원 말기 군웅群雄의 한 사람으로, 호북성湖北省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서수휘徐壽輝가 반란을 일으키자 그 휘하에 들어갔고, 예문준倪文俊의 서기書記가 되었다. 예문준을 죽이고 그 병력을 모은 다음, 안휘성 남부에 기반을 굳혔다. 이후 서수휘를 죽이고 스스로 황제라 부르며 국호를 대한大漢이라 했다. 강주江州에 도읍하고 한때 강서江西와 호남, 호북을 점거하였으나 주원장朱元璋에게 패하여 전사하였다.

63 여궐余闕: 1303~1358. 자는 정심廷心이며, 시호는 충선忠宣이다. 안경安慶을 지키다가 진우량陳友諒의 난에 죽었다. 경학經學과 서예로 이름났다. 저서에는 『청양집靑陽集』이 있다. (『元史』 「余闕傳」)

64 채자영蔡子英: 차칸테무르[察罕帖木兒]의 막료가 되어 행성 참정行省參政을 맡았다. 원원 멸망 후 차칸테무르의 양자인 코케테무르[擴廓帖木兒]와 함께 감숙성甘肅省의 정서定西로 도주하였다가 사로잡혔다. 명 태조明太祖가 그의 명성을 듣고 벼슬을 내렸으나, 절개를 지켜서 받지 않았다.

계조 戒條

- || 원 세조元世祖 때의 일이다. 문천상文天祥⁶⁵이 3년 동안 연경燕京에 억류되었을 적에 조그만 누각에서만 지내고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다. 세조가 문천상을 불러 들이는 유지諭旨를 내렸는데, 문천상은 죽음을 내려주기를 원하였다. 이에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연경 시시柴市에서 문천상을 죽였다.⁶⁶ 한림학사翰林學士 왕반王磐이 시를 지어 그의 죽음을 곡하였다. “대원大元은 문 승상을 살해하지 않아 임금의 의로움과 신하의 충절을 둘 다 얻었네. 혹여 사관이 기록하지 않을까 늙은이가 눈물을 담아 새로 시를 쓰노라.”【『속자치통감』에 보인다.】
- || 명 무종明武宗⁶⁷ 때의 일이다. 영왕寧王인 주신희朱宸濠⁶⁸가 반란을 모의하여 “태후께서 조령詔命을 내리셨기에 내가 군사를 일으켜 입조入朝하여 감국監國⁶⁹하는 것이다.”라고 외치니, 강남 순무사江南巡撫使 손수孫燧⁷⁰가 눈을 부라리며 “태조의 법제法制가 있는데, 누가 감히 어긴단 말인가.”라고 사납게 말하였다. 이에 주신희가 손수를 포박하라 명하

65 문천상文天祥: 1236~1283. 남송南宋 말기의 재상으로, 자는 송서宋瑞, 이선履善이며 호는 문산文山이다. 원元の 군대가 쳐들어오자 가산을 내어 의용군을 조직, 임안臨安을 지켰다. 남송이 멸망한 후, 포로가 되어 북송되던 중 탈출하여 도종度宗의 장자 익왕益王을 도와 남송 회복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다시 체포되어 북경에 있는 감옥에 갇혔다가 처형되었다. 원 세조가 벼슬하기를 권했지만 끝내 사양하였으며, 옥중에서 지은 「정기가正氣歌」가 유명하다. 저서에 『문산집전文山全集』이 있다. (『宋史』 「文天祥傳」)

66 세조가 … 죽였다: 원 세조가 문천상을 불러 “그대가 송宋을 섬기던 충심을 나에게로 돌린다면 내가 그대를 재상으로 삼을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문천상이 “송의 은혜를 받아 재상이 되었는데, 내가 어찌 두 성姓을 섬기겠는가. 나를 죽여 달라.”고 거절하였다. 이에 명을 내려 연경燕京의 시시柴市에서 죽이게 하였다가 얼마 후 사형을 중지하게 하였는데, 이미 문천상은 처형된 뒤였다. (『資治通鑑』 「元紀」)

67 명 무종明武宗: 1491~1521. 명 제10대 황제 주후조朱厚照로, 재위 기간은 1505년에서 1521년이다. 연호를 따라 '정덕제正德帝'로 불린다. 주색과 각종 유희遊戲에 빠져 사치를 일삼았고, 유근劉瑾 등의 환관을 총애하였으며 라마교를 광신하였다. 한편, 능력있는 신하들을 기용하고 유근을 숙청하면서 권력을 유지하였으며, 여러 차례 민민을 구휼하기도 하였다. 반란군을 성공적으로 진압하였고 스스로 '주수朱壽'라는 이름의 장군이 되어 변방을 토벌하기도 하였으므로 그의 치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공존한다.

68 주신희朱宸濠: 1479~1521. 명 태조明太祖 주원장朱元璋의 5세손이다. 무제武帝가 황음무도荒淫無道하다는 것을 구실로 삼아 반란을 일으켰다가 왕수인王守仁에게 평정되어 처형되었다.

69 감국監國: 황제가 도성을 비우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태자에게 권한을 임시로 부여하여 국정을 대신 다스리게 하는 것이다. 태자가 아닌 자가 대행하기도 하였다.

70 손수孫燧: 1460~1519. 자는 덕성德成이다. 주신희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항복하지 않아 살해되었다. 세종世宗 즉위 후 예부상서禮部尙書에 추증되었다.

자, 허규許逵⁷¹가 호통치며 “손수는 어사御史이고 조정의 대신인데, 감히 제멋대로 죽인다는 것인가.”라고 하였다. 주신희가 그들을 모두 끌어내어 죽였다. 손수 등이 죽고 난 뒤, 간신들의 저지로 인하여 무종武宗의 시대가 끝날 때까지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여 추증되지 않았다.

- 명 의종明毅宗⁷²이 태학사太學士 전사승錢士升⁷³이 명예를 구한다고 심하게 꾸짖으니, 전사승이 결국 사직을 청하였다. 어사御史 첨이선詹爾選이 글을 올려 “전사승이 보신輔臣으로서 관직을 버리고 떠난 것은 사람들의 뜻을 진작시키는 점이 있는데, 황상께서는 도리어 명예를 구한다고 하십니다. 임금이 명분과 절의로 천하를 고무하지 않고, 신하들로 하여금 녹만 축내고 충애를 보존하여 염치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익히게 한다면 어찌 국가에 이롭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그러나 의종은 그를 불러 꾸짖었다. 【『명사강목』에 보인다.】

근안 謹按

삼가 생각건대, 이른바 ‘명절지사名節之士’란 당시 임금의 상정常情에서 본다면 미워할 만하지 가상하게 여길 만한 존재는 아닐 것입니다. 평소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자신에게는 스스로 명망을 유지하고 임금에게는 걸핏하면 뜻을 거스르며, 그 말을 들어보면 사리에 어두운 것 같고 그 행동을 살펴보면 괴이하고 과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난세에 큰일이 있을 때에는 국란에 목숨을 바치고도 후회가 없고 자신의 뜻을 지켜 누구도 빼앗지 못하

71 허규許逵: 1484~1519. 자는 여등汝澄이다. 주신희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항복하지 않아 살해되었다. 세종世宗 즉위 후 좌부도어사左副都御史에 추증되었다.

72 명 의종明毅宗: 1611~1644. 명 제16대 황제 주유검朱由檢으로, 재위 기간은 1628년에서 1644년이다. 연호를 따라 ‘송정제崇禎帝’로 불리고, 묘호는 의종毅宗(혹은 사종思宗) 또는 회종懷宗이다. 즉위하면서 권력을 전횡하던 환관 위중헌魏忠賢을 제거하면서 쇠락한 국세를 만회하려 노력하였으나, 잦은 인사 교체와 정치적 실책으로 국정에 혼란을 초래하였고 후금後金の 침입과 민란을 해결하지 못하였다. 이자성李自成的 반란군에 의해 북경이 함락되자 자살하였다.

73 전사승錢士升: 1575~1652. 자는 억지抑之, 호는 새암塞庵이다. 전시殿試에 장원하여 한림원 수찬翰林院修撰에 제수되었다. 의종에게 관寬, 간簡, 허虛, 평平 「사잠四箴」을 지어 올려 당시의 병폐를 간언하였다가 신임을 잃어 사직하였다. 저서에 『주역규周易揆』, 『손국일서遜國逸書』, 『남송서南宋書』 등이 있다.

니, 전복된 나라를 일으킴에 큰 물결에 버티고 서 있는 지주砥柱⁷⁴ 같고 절의를 위해 목숨을 버림에 거센 바람에 꽃꽂이 버티는 초목과 같습니다. 아, 정치가 잘못되어 국란이 닥친 시기⁷⁵에 도움을 얻고자 한다면 응당 평안할 때에 인재를 모아 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부터 임금의 눈앞의 삶은 것만 알고 훗날 가상히 여기게 될 줄은 생각지 못하여 작게는 소원하게 대하고 크게는 유배보내기까지 하여 뼈격대고 정치 없이 떠돌아 조정에서 편안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벼슬과 봉록만 중시하고 명예와 절의를 경시하는 무리만이 지위와 총애를 얻어 청요직淸要職에 포진해 있게 되어 풍속을 무너뜨리고 화란을 점차 불러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날 배척당한 자들이 비록 앞장서서 책임감을 갖고 그 충의를 드러내고자 하여도 어찌할 방법이 없었으니, 슬픈 일이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나라를 세운 바탕은 오로지 명성과 절의를 숭장崇獎한 데 있습니다. 선죽교의 충신⁷⁶과 금오金烏의 처사⁷⁷는 비록 천명이 돌아가는 것에는 어두웠으나 실로 신하된

74 지주砥柱: 하남성河南省 섬주陝州에서 동쪽으로 40리 되는 황하黃河의 중류에 있는 기둥 모양의 돌이다. 위가 판판하여 솟돌 같으며, 격류激流 속에서 우뚝 솟아 끔찍도 하지 않으므로, 난세亂世에 처하여 절개를 지키는 선비를 비유한다.

75 정치가 … 시기: 원문의 “板蕩”을 풀이한 말이다. 판板과 탕蕩은 각각 「시경」의 편명으로, 그 내용은 주 여왕周厲王의 학정을 읊은 것이다. 정치를 잘못하여 나라의 상황이 어지러워짐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76 선죽교의 충신: 이방원李芳遠에 의해 선죽교에서 피살된 정몽주鄭夢周(1337~1392)를 가리킨다. 정몽주는 본관이 영일迎日, 자는 달가達可, 호는 포은圃隱이다. 고려 말, 이성계李成桂의 세력이 강해지자 이를 숙청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선죽교에서 이방원의 심복인 조영규趙英珪 등에게 격살당하였다. 고려조의 충신으로서 성리학에 대한 조예가 깊어 목은牧隱 이색李穡이 그를 동방 이학理學의 시조라고 하였다. 1401년(태종 1) 권근權近의 요청에 의해 ‘대광보국승록대부 영의정부사 수문전대제학 감예문춘추관사 익양부원군대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事修文殿大提學監藝文春秋館事益陽府院君’으로 추증되었다. 1517년(중종 12) 태학생太學生 등의 상서上書로 문묘에 배향될 때 묘에 비석을 세웠는데 고려의 벼슬만을 쓰고 시호를 적지 않았으므로써 두 왕조를 섬기지 않았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다. 저서에 『포은집圃隱集』이 있다.

77 금오金烏의 처사: 금오산金烏山에서 은거했던 길재吉再(1353~1419)를 가리킨다. 길재는 본관이 해평海平, 자는 재보再父, 호는 아은冶隱, 금오산인金烏山人이다. 길재는 이색李穡과 정몽주鄭夢周의 문인으로, 고려가 망할 것을 예측하고 벼슬을 버리고 선산善山의 금오산 아래에 은거하였다. 1400년(정종 2)에 이방원李芳遠의 부름에 못 이겨 상경하여 태상박사太常博士에 임명되었으나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는 글을 올려 사퇴하고 귀향하였다. 이후, 1426년(세종 8)에 고려에 충의를 가지고 조선에서 벼슬하지 않았다는 절사節士라는 이유로 ‘통정대부 사간원좌사간대부 지제교 겸 춘추관 편수관通政大夫司諫院左司諫大夫知製敕兼春秋館編修官’에 추증되었다. 길재는 후학의 교육에 힘써 그의 문하에서 김숙지金叔滋 등 많은 학자가 배출되어 김종직金宗直, 김굉필金宏弼, 정여창鄭汝昌, 조광조趙光祖로 그 학통이 이어졌다. 저서에 『아은집冶隱集』, 『아은언행습유록冶隱言行拾遺錄』 등이 있다.

78 노호露湖의 여섯 현인: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발각되어 세조에게 죽임을 당한 이개李垓, 하위지河緯地, 유성원柳誠源, 유응부俞應孚, 성삼문成三問, 박팽년朴彭年 등 사육신을 가리킨다. 이들의 시신을 성삼문의 사위인 박인경朴麟卿이 수습하여 한강변 노량진에 매장하였다.

자의 모범이 되었으니 표창하여 추증하였고, 노호(露湖)의 여섯 현인⁷⁸과 남한(南漢)의 다섯 신하⁷⁹는 신하된 직분을 다하였으므로 후회가 없고 대의(大義)를 밝혔으므로 떳떳이 할 말이 있었으니 격식을 갖춰 제사를 지내 주었습니다. 그 밖에 명예와 절의를 지켜 그 행적이 사라져서는 안 되는 자들은 전후로 극진히 표창하지 않은 적이 없으니, 풍성(風聲)이 이르는 곳마다 절의를 갈고 닦으며 숭상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비록 무오년과 갑자년의 참벌(斬伐)⁸⁰을 겪었어도 기묘년에 명사들이 가장 왕성하였고, 비록 기묘년의 고초⁸¹를 겪었지만 을사년⁸²에도 사기(士氣)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계해년에 화란을 잠재운 것⁸³과 신축년에 사직을 부지한 것⁸⁴과 같은 경우도 모두 명예와 절의를 일으켜 세운 효험이 아님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나라가 태평한 지 이미 오래됨에 습속이 점차 낮아져 연속(軟熟)과 방편이 이

79 남한(南漢)의 다섯 신하: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서 청(淸)에 항복함을 반대하고 척화(斥和)를 계속 주장하다가 청에 붙잡혀 갔던 신익성(申翊聖), 신익전(申翊全), 허계(許啓), 이명한(李明漢), 이경여(李敬輿) 등 척화 오신을 가리킨다. 조선에서 한선(漢船)을 접대하고 비밀 무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용골대(龍骨臺)가 봉성(鳳城)으로 나와서 관련된 사람들을 심문하였는데, 이때 선천 부사(宣川府使) 이계(李桂)가 본국이 명(明)과 내통한 사실을 낱말이 고해(高解)되면서 이들 오신이 청(淸)국을 반대하는 주동자라고 하였다. 이를 빌미로 용골대를 비롯한 사신 일행이 조선으로 와서 오신을 심문하고는 심양으로 잡아갔다. (『仁祖實錄』, 20년 10월 18일; 12월 11일; 12월 12일)

80 무오년과 갑자년의 참벌(斬伐): 무오년과 갑자년에 있었던 사회(士禍)를 가리킨다. 무오사화는 1498년(연산군 4)에 유자광(柳子光)을 중심으로 한 훈구파(勳舊派)가 『성종실록』에 실린 사초(史草) 「조의제문(弔義帝文)」으로 사람파(士林派)를 모함하여 일어난 일이다. 이 사화로 조의제문을 지은 김종직(金宗直)은 부관 참시(館參)가 되고, 김일손(金弼孫)을 비롯한 많은 사림이 죽임을 당하고 쫓겨났다. 무오사화는 사초(史草)로 발단되었다 하여 사회(士禍)라고도 한다. 갑자사화는 1504년(연산군 10)에 연산군이 모친인 폐비 윤씨(尹氏)의 복위를 반대한 사람들과 폐위 사건에 관련된 신하들을 학살한 사건으로, 성종의 후궁들과 왕자들을 죽였으며, 또 이를 빌미로 자기를 견제하는 훈구들과 사람들을 제거하려 옥사를 더욱 확대하였으므로 그 피해가 무오사화보다 심하였다.

81 기묘년의 고초: 1519년(중종 14)에 일어난 기묘사화를 가리킨다. 기묘사화는 홍경주(洪景舟), 심정(沈貞), 남곤(南袞) 등의 훈구파 재상이 개혁정책을 주장하던 조광조(趙光祖), 김정(金淨), 김식(金湜) 등 사람파의 신진 사류를 몰아낸 일이다. 조광조가 현량(賢良)과 賢良科를 설치하여 신진 사류를 대거 등용하고 요직에 앉히자 훈구파의 불만이 고조되었는데, 조광조가 다시 중종반정(中宗反正)에 공이 있는 정국(鄭國) 공신 중에서 자격 미달인 자가 있다고 주장한 뒤에 남곤, 심정 등을 포함한 76명의 공신 호를 박탈하였다. 그러자 훈구파는 희빈 홍씨(熙嬪洪氏)의 아버지인 남양군(南陽君) 홍경주(洪景舟)와 모의하여, 조광조에게 내심 불만이 있었던 중종의 밀지를 받아 사화를 일으켰다. 그 결과 조광조 이하 많은 사람들이 사사되거나 유배당하였다.

82 을사년: 1545년(명종 즉위년)에 일어난 을사사화를 가리킨다. 을사사화는 인종(仁宗)이 죽고 명종(明宗)이 즉위한 뒤, 명종의 외숙인 소윤(小尹) 윤원형(尹元衡)이 인종의 외숙 대윤(大尹)의 윤임(尹任) 일파를 몰아내는 과정에서, 대윤파에 가담했던 사람(士林)이 크게 화를 입은 일이다. 사화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왕위 계승을 둘러싼 외척간의 갈등이었다.

83 계해년에 화란을 잠재운 것: 1623년(인조 1)인 계해년에 서인(西人) 일파가 광해군 및 대북파를 몰아내고, 능양군(寧陽君) 곧 인조(仁祖)를 왕위에 올린 인조반정(仁祖反正)을 말한다.

84 신축년에 사직을 부지한 것: 1721년(경종 1)인 신축년에 노론 4대신 김창집(金昌集), 이이명(李爾命), 이건명(李健命), 조태채(趙泰采)가 후사가 없었던 경종(景宗)에게 왕세제 책봉을 강력하게 건의해 연잉군(延昞君) 영조를 왕세제로 세운 일을 말한다.

미 시규時規가 되고 풍채와 기절氣節은 한 쪽으로 버려졌습니다. 평상시 그럭저럭 해 나갈 때에는 비록 당장의 부스럼은 없으나 만일 위급할 때를 만난다면 그들의 힘을 얻고자 하여도 열성조列聖朝의 훌륭한 사류士類가 행한 것과 같기는 어렵습니다. 북송北宋의 신하 구양수歐陽修는 “아래에 교화를 펼침에 집집마다 찾아가서 깨우쳐 줄 수 없다. 그러므로 항상 명예와 절의를 가진 선비를 높이는 데 힘써 천하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그 경박한 풍속을 고치도록 독려하는 것이다.”⁸⁵라고 말하였으니, 진실로 위에서 독려하고자 한다면 명절지사가 없을까 근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구차하게 얻는 데 뜻을 두지 않고 좃대 없이 남을 따르는 데 끌려가지 않는 자를 높여 장려하고, 두려워할 만한 이에게 자신을 굽히지 않고 욕심낼 만한 것에 휘둘리지 않는 자를 존송하여, 하나로 백을 권면하고 가까운 것에서 먼 데까지 격발시킨다면, 게으르고 나약한 자는 날로 사라지고 정직한 자는 날로 나타날 것입니다. 세도가 크게 변화하고 조정이 깨끗해지는 길은 다만 한 번 마음을 바꾸는 사이의 일일 뿐입니다. 유념하고 유념하소서.

85 아래에 … 것이다: 『송문감宋文鑑』 「논포증제삼사시論包拯除三司使」에 보인다. 이 글은 북송 인종北宋仁宗 가우嘉祐 4년(1059) 3월에 지어졌다. 이때 집정執政이었던 송상宋庠이 동생인 송기宋祁를 삼사사三司使에 임명하였다가 여론이 좋지 못하여 송기와 친한 포증包拯을 대신 임명하였다. 그러자 구양수가 글을 올려 포증이 의리와 절조를 지켜서 임명을 받지 말아야 옳다고 비판하였다.

여염치 勵廉恥

염치를 장려하다

법조 法條

■ 전한 문제 前漢文帝 時代の 일이다. 가의 賈誼¹가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관자 管子』에 ‘예禮, 의義, 염廉, 치恥를 네 가지 강령[四維]이라 하니, 네 가지 강령이 펼쳐지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한다.’ 라고 하였으니, 염치가 행해지지 않으므로 대신들이 막중한 권력을 쥐고도 부끄럼을 모르는 종복 從僕의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염치로 예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절개 있는 행실을 숭상하여 행실을 돌아보고 이익을 잊으며 절개를 지키고 의리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어할 수 없는 권한을 맡기고 6척의 어린 임금을 부탁할 수 있었던 것이니, 이는 염치를 장려하고 예의를 행한 소치입니다.” 문제가 이 말을 깊이 받아들였다.

■ 전한 문제 時代의 일이다. 장무 張武² 등이 뇌물로 주는 돈을 받았다가 발각되었는데, 문제가 도리어 상을 하사하여 그 마음을 부끄럽게 하였다.

■ 전한 선제 前漢宣帝 時代의 일이다. 우부풍 右扶風 윤옹귀 尹翁歸³가 죽었는데, 집안에 남은 재

1 가의 賈誼: 기원전 200~기원전 168. 시문에 뛰어나고 제자백가에 정통하여 문제 文帝의 총애를 받아 약관의 나이에 박사가 되었다. 율령과 관제, 예악 등의 제도를 정비하였으나, 주발 周勃과 관영 灌嬰 등의 시기를 받아 장사왕 長沙王의 태부 太傅로 좌천되었다. 저서에 『신서 新書』와 『가장사집 賈長沙集』이 있으며, 「복조부 鵬鳥賦」와 「조굴원부 弔屈原賦」를 지었다.

2 장무 張武: 문제 文帝 즉위 전부터 낭중령 郎中丞으로 있으면서 문제를 보필하였다. 흉노를 정벌하는 데 앞장섰으며, 관직은 복토장군 復土將軍에 이르렀다.

3 윤옹귀 尹翁歸: ?~기원전 62. 자는 자황 子況이다. 동해 태수 東海太守를 지내고 뒤에 우부풍 右扶風을 지냈으며, 청렴으로 알려졌다. (『漢書』 「尹翁歸傳」)

산이 하나도 없었다. 이에 “윤옹귀는 청렴하고 공평하며 정도正道를 지향하여 백성들을 다스림에 특별히 뛰어났으니, 윤옹귀의 아들에게 황금 1백 근을 하사하여 제사를 받게 하라.”고 조서를 내렸다.

■ 북위 고조北魏高祖가 조서를 내려 등급에 따라 봉록을 지급하도록 하였는데,⁴ 회남왕淮南王 탁발타拓跋佗⁵가 옛 제도에 따라 봉록을 끊어 버리자고 주청하였다. 이에 중서감中書監 고려高闕⁶가 “굶주림과 추위가 절실하면 자애로운 어머니도 자식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제 봉록을 지급하면 청렴한 자는 분수를 지키고 탐욕스러운 자는 감화될 것입니다.”라고 하니, 고려의 논의를 따르라고 조서를 내렸다. 봉록의 등급을 제정하면서 가장 먼저 의장義贓은 한 필피, 왕법枉法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두 사형을 내리게 하였다.⁷ 이때 진주秦州와 익주益州의 자사刺史 이홍지李洪之⁸가 외척으로서 탐욕과 횡포를 부리니, 봉록의 등급이 제정된 후에 뇌물을 받은 것으로 처음 조사를 받았다. 이에 고조가 이홍지에게 형틀을 씌워 평성平城으로 압송하라고 명하고 친히 왕립하여 죄목을 열거하며 꾸짖었는데, 그래도 그가 대신이기 때문에 집에서 자진하도록 판결하였다. 이외에도 주군州郡의 관리들 가운데 뇌물을 받아 사형에 처해진 자가 40명이니, 봉록을 받는 자 중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가 없어 뇌물을 받는 일이 거의 사라졌다.

4 북위 고조北魏高祖가 … 하였는데: 고조는 효문제孝文帝的 묘호이다. 「개언로開言路」 법조法條 27번 각주 참조. 고조가 처음으로 봉록제俸祿制를 제정하였는데, 이전에는 관리들에게 봉록을 주지 않고, 전쟁의 전리품과 각종 하사품으로 봉록을 대신하였다. 이에 특히 지방관들은 백성들을 착취하거나 관청의 물품 절도하는 등 부패가 만연하였다. (최진열, 『북위의 율령 수용과 그 실상』, 『중국고중세사연구』 제37집, 2015, 58쪽 참조)

5 탁발타拓跋佗: 416~488. 북위北魏의 황족으로, 세조世祖를 따라 산호백룡山胡白龍을 토벌하는 공을 세워 회남왕淮南王에 봉해졌다. 고조高祖 때 입조하여 사도司徒에게까지 올랐다.

6 고려高闕: ?~502. 자는 염사闇士이고, 본명은 려驥이며, 발해 출신이다. 문장에 뛰어나 최호崔浩에게 발탁되었으며, 고윤高允과 함께 ‘이고二高’로 불렸다. 저서에 『고려문집高闕文集』과 『연지燕志』가 있다.

7 의장義贓은 … 하였다: ‘의장’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사적인 감정으로 주는 뇌물을 받는 것이고, ‘왕법枉法’은 뇌물을 받아 법률을 멋대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에는 왕법은 14필피, 의장은 24필이면 사형에 처하였는데, 고조高祖가 등급에 따라 봉록을 제정하면서 관리들이 뇌물을 받지 못하도록 엄격히 다스렸다.

8 이홍지李洪之: 본명은 문통文通이다. 고조高祖의 아버지인 현조顯祖의 외숙부이다. 외척이라는 이유로 요직에 있으면서 뇌물을 많이 받았다. 이에 고조의 명에 따라 독약을 마시고 자살하였다.

|| 당 태종唐太宗 때, 우효위 대장군右驍衛大將軍 장손순덕長孫順德⁹이 어떤 사람이 보내 준 비단을 받았다가 발각되었는데, 태종은 그가 공을 세웠음을 아껴서 처벌하지 않았다. 다만 궁전의 뜰에서 비단 수습 필을 하사하며 “저 자가 사람의 본성이 있다면 비단을 받는 치욕이 형벌을 받는 것보다 심할 것이요, 만일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면 한낱 짐승일 뿐이니, 그를 죽인다 한들 무슨 보탬이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 당 태종 때의 일이다. 중서사인中書舍人 고계보高季輔¹⁰가 “외관外官으로 낮은 직급에 있는 자들은 여전히 봉록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굶주림과 추위가 절실하면 청렴결백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창고가 가득하니, 적절히 헤아려 넉넉히 봉록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 뒤에 탐욕을 부리지 말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상주하니, 태종이 이를 좋게 여겼다.

|| 당 목종唐穆宗¹¹ 때의 일이다. 한홍韓弘¹²이 죽자, 재산을 관리하던 가노家奴와 속리屬吏들이 어사부御史府에 송사하였다. 그러자 목종이 한홍의 장부를 모두 가져다 직접 열람하였는데, 안팎의 권세 있는 사람들 중에 한홍의 뇌물을 받은 자가 많았다. 그런데 유독 붉은색 작은 글씨로 ‘모년 모월 모일에 호부시랑戶部侍郎 우승유牛僧孺¹³에게 천만 전錢을 보냈는데, 받지 않았다.’라고 쓰여 있었다. 이에 목종이 크게 기뻐하여 좌우에 보여주며 “아무렴, 내가 사람 보는 눈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고, 우승유를 중서시랑 동평장사中書侍郎同平章事로 삼았다.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9 장손순덕長孫順德: 장손 황후長孫皇后의 집안 사람이다. 반란을 꾀한 이효상李孝常과 왕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파면되었다가, 후에 태주 자사澤州刺史로 복귀하여 훌륭한 관리로 인정받았다. 능연각 24공신에 이름을 올렸다.

10 고계보高季輔: 596~654. 고평高滂을 가리킨다. 계보는 그의 자이다. 이부상서吏部尚書 등을 역임하였으며, 백성들의 부역을 줄이고 지방 관리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치적을 쌓았다. 장손무기長孫無忌 등과 『오경정의五經正義』를 간행하였다.

11 당 목종唐穆宗: 795~824. 당 제12대 황제 이항李恒으로, 재위 기간은 820년에서 824년이다. 헌종의 셋째 아들이다. 만형인 태자 이녕李寧이 폐위되자 둘째 형을 제치고 태자가 되었고 환관의 옹립을 받아 즉위하였다. 격구와 음악 등의 향락을 탐닉하면서 정사를 살피지 않아 환관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도교에 빠져 금단金丹을 먹다가 죽었다.

12 한홍韓弘: 765~823. 원화元和 연간에 회서淮西에서 오원제劉元濟를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워 시중侍中이 되고 허국공許國公에 봉해졌다.

13 우승유牛僧孺: 779~847. 자는 사암思黯이다. 헌종憲宗 때, 이길보李吉甫의 배척을 받아 오랫동안 서용敍用되지 못하다가 목종穆宗의 신임을 받아 호부시랑 동평장사戶部侍郎同平章事가 되었다. 후에 이종민李宗閔과 합심하여 이덕유李德裕 등을 배척했는데, 이를 ‘우이당쟁牛李黨爭’이라 일컫는다.

- || 송 태조宋太祖 때의 일이다. 이한초李漢超¹⁴가 관남 병마도감關南兵馬都監으로 있었는데, 관남 사람 중 이한초가 자신의 딸을 강제로 데려다 첩으로 삼았고, 백성들에게 돈을 빌리고서 갚지 않는다고 송사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에 몰래 보낸 사자가 이한초에게 “속히 그 딸과 빌린 돈을 돌려주어라. 짐이 우선 용서할 터이니, 너는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라. 쓸 돈이 부족하였다면 무엇 때문에 짐에게 고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니, 이한초가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관남을 더욱 잘 다스렸다.
- || 원 세조元世祖 때의 일이다. 염희헌廉希憲¹⁵이 병세가 위중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설탕물을 마셔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자 염희헌의 동생이 아합마阿合馬¹⁶에게 설탕 두 근을 요구하여 염희헌에게 보내 주었다. 이에 염희헌이 밀쳐내어 땅바닥에 두고서 “이 물건이 정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더라도, 나는 간사한 사람이 보낸 물건으로 질병을 치료하지 않겠다.”라고 하니, 세조가 이를 듣고 설탕 세 근을 하사하였다. 【이상은 『속자치통감』에 보인다.】
- || 명 태조明太祖가 원대元代 말엽에 집권자에게 뇌물을 주어 관작을 얻었던 폐단에 대해 잘 알았으므로 탐관오리들을 용서치 말라고 조서를 내렸다. 또 여러 신하에게 “만일 염치를 지키고 법을 받든다면 사람이 평탄한 길을 걷듯 편안하고 여유롭겠지만, 뇌물을 탐해 법에 저촉된다면 가시밭길을 걷듯 한 걸음도 떼지 못할 것이니, 비록 빠져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온몸에 성한 살갓이 없을 것이다.”라고 유시諭示하였다.
- || 명 태조는 엄격하여 탐욕스러운 수령이 있으면, 경사京師로 압송하여 살갓을 벗기고 죄를 심문하여 장래의 경계로 삼았다. 각 부府, 주州, 현縣의 왼쪽에 특별히 ‘박피장剝皮場’

14 이한초李漢超: 907~977. 자는 현충顯忠이다. 관남 병마도감關南兵馬都監으로 있다가 태종太宗 즉위 후 응주 관찰사應州觀察使가 되었는데, 정치를 잘하여 칭송이 높았다.

15 염희헌廉希憲: 1231~1280. 자는 선보善甫이다. 경학과 역사에 능하여 세조가 ‘염맹자廉孟子’라 불렀다. 현종 때, 학교를 세워 인재를 육성할 것과 포로로 잡은 사인士人들을 석방할 것 등을 건의했다. 현종이 죽자 세조에게 즉위를 권유하였다. 중서우승中書右丞, 중서평장정사中書平章政事 등을 역임하며 직간을 잘하였고, 송의 관리들을 채용하는 한편 약탈을 금지하고 기민飢民을 구제하고, 학교를 열어 인재를 양성하였다.

16 아합마阿合馬: ?~1282. 중서평장정사中書平章政事로 있으면서 원의 재무행정을 도맡았다. 남송정벌 이후 재무, 행정을 독점하고 소금 등의 전매제와 상업 세제 등을 정비하였다. 후에 소금세의 권한을 독점하여 폭리를 취하면서 많은 이들의 반감을 샀고, 그의 정치적 후원자였던 소예순성황후昭睿順聖皇后가 사망한 이듬해에 암살되었다.

을 만들어 항시 눈으로 보고 두려움을 느끼도록 하였다.

- 명 태조가 천하의 현능한 인재를 널리 소집하여 모두 수령守令에 제수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홍범洪範」에 ‘부유하게 해 주고 난 뒤에야 선해진다.’ 라고 하였다. 반드시 엄치를 길러준 뒤에 성공을 요구할 수 있으니, 각기 봉록을 후하게 지급하여 보내도록 하라.”
- 명 태조 때의 일이다. 한밤중에 형과급사중刑科給事中 장사공張思恭에게 금을 보낸 이가 있었는데, 장사공이 받지 않자 그 사람이 금을 놔두고 떠났다. 이튿날 아침 장사공이 이 일을 조정에 고하니, 태조가 그의 청렴함을 가상히 여겨 형부좌시랑刑部左侍郎으로 발탁하고, 이어서 금을 하사하였다.
- 명 선종明宣宗¹⁷이 시신侍臣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옛날에 공분孔奮이 고장姑臧의 수령으로 있으면서 청렴한 자세로 자신을 지켰는데, 당시 사람들 모두 ‘기름 덩어리 속에 있으면서도 제 몸 하나도 윤택하게 하지 못한다.’ 라고 비웃었다. 그러나 한 광무제漢光武帝는 광분을 발탁하여 표창하였다. 지금 천하에 청렴한 사인士人이 없지 않을 것이니, 경들이 짐을 위해 엄정하게 가려내어 아뢰면 짐이 마땅히 그를 표창할 것이다.”
- 명 영종明英宗¹⁸ 때, 산동 포정사山東布政使 왕질王質¹⁹이 관직에 있으면서 오로지 채소만 먹고 살았기에 사람들이 그를 ‘왕청채王靑菜’ 라고 불렀다. 영종이 이를 듣고, 그를 호부

17 명 선종明宣宗: 1398~1435. 명 제5대 황제 주침기朱瞻基로, 재위 기간은 1425년에서 1435년이다. 연호를 따라 ‘선덕제 宣德帝’로 불린다. 인종의 장남으로, 인재들을 발탁하여 정치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발전시켰다. 그의 통치기간은 아버지 인종의 통치기간과 아울러 ‘인선지치仁宣之治’라 일컬어진다. 그러나 환관에게 관직을 주고 내서당內書堂을 설치해 독서를 권장하는 등, 환관이 권력을 천단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18 명 영종明英宗: 1427~1464. 명 제6대, 8대 황제 주기진朱祁鎮으로, 재위 기간은 1436년에서 1449년, 복위 기간은 1457년에서 1464년이다. 연호를 따라 ‘정통제正統帝’ 혹은 ‘천순제天順帝’로 불린다. 9세에 즉위하였으므로, 즉위 초반에는 태황태후太皇太后 장씨張氏가 수렴청정을 하고 ‘삼양三楊양사楊士奇·양영楊榮·양부楊溥’이 보좌하였다. 황태후와 원로 대신들이 사망한 뒤, 환관 왕진포振에게 국정을 맡기면서 조정의 기강이 무너지고 국정이 파국을 맞게 되었다. 오이라트[瓦剌]가 침입하자, 왕진의 권유로 50만의 군대를 이끌고 친정親征에 나섰다가 패전하여 포로가 되었다. 이를 ‘토목土木의 변’이라고 한다. 명 조정에서는 이복동생 대종代宗경태제景泰帝를 옹립하였고, 송환된 이후 태상황이 되어 유폐당하였다. 그러나 조정 내에서 대종을 반대하는 일파가 정변을 일으켜 대종을 폐위하고 영종을 복위시켰다.

19 왕질王質: ?~1444. 자는 몽근夢瑾이다. 사천 참정四川參政, 형부상서 등을 역임하였다. 옛것을 좋아하고 박학했으며, 몸가짐이 청렴하여 사람들의 칭송을 들었다.

시랑戶部侍郎으로 발탁하였다.

- || 명 헌종明憲宗 때, 섬서 순무陝西巡撫 진굉秦紘²⁰이 진왕부秦王府의 일에 연루되어 기교旗校²¹가 그를 옥사에 가두었는데,²² 가산을 몰수해보니 누렇게 바랜 천 한 필과 낡은 옷 몇 벌 뿐이었다. 이에 헌종이 즉시 진굉을 석방하고, 지전紙錢 만 관貫을 하사하여 그의 청렴함을 표창하였다. 【이상은 『명사강목』에 보인다.】

계조 戒條

- || 우숙虞叔이 좋은 옥을 갖고 있었는데, 우공虞公이 그 옥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우숙이 “필부에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옥을 가진 것이 죄이다.”라고 하고, 그 옥을 우공에게 바쳤다. 우공이 또 명검을 요구하자 우숙이 “이 사람은 만족을 모르는 사람이다. 만족할 줄 모르면 장차 화가 나에게 미칠 것이다.”라고 하고, 결국 우공을 공격하니 우공이 도망갔다. 【『춘추좌씨전』에 보인다.】
- || 당 중종唐中宗²³이 근신近臣에게 연회를 베풀 적에 국자궐주國子祭酒 축흠명祝欽明²⁴이 팔풍무八風舞를 추겠다고 자청하여 머리를 흔들고 눈알을 굴리며 온갖 추태를 다 부리니, 중

20 진굉秦紘: 1426~1505. 자는 세영世纒이다. 남경어사南京御史에 임명되어 관리들을 탄핵하여 유배되었다가 헌종憲宗 즉위 후 섬서陝西 각지의 지주知州, 지부知府 등을 지냈다. 나중에 우첨도어사右僉都御史로 선부宣府를 순무巡撫하고, 국경 수비에 공을 세웠으며, 삼변군무三邊軍務를 총괄했다.

21 기교旗校: 기군旗軍의 교관校官을 가리킨다. 기군은 명대明代의 관군인 사위영四衛營으로, 무양좌위武驤左衛, 무양우위武驤右衛, 등양좌위騰驤左衛, 등양우위騰驤右衛로 구성되어 있다.

22 진왕부秦王府의 … 가두었는데: 당시 경성왕慶成王 주종일朱鍾鏞의 아들 주기간朱奇淵이 폭정을 일삼았는데, 탄핵하는 이가 없었다. 그러나 진굉秦紘이 섬서 순무陝西巡撫로 부임한 뒤 그의 죄목을 낱낱이 아뢰자, 경성왕이 진굉을 모함하여 하옥시켰다. 이에 헌종憲宗은 진굉을 법사에 회부하였는데, 증거는 없었고 낡은 옷 몇 벌만을 찾아내었다. 이에 진굉의 청렴함을 표창하고 주기간 등 3인의 작위를 깎았으며, 경성왕의 봉록 3분의 1을 감하였다. (『明史』「秦紘傳」)

23 당 중종唐中宗: 656~710. 당 제4대 황제 이현李顯으로, 재위 기간은 683년에서 684년, 복위 기간은 705년에서 710년이다. 고종高宗의 일곱째 아들로, 어머니는 측천무후則天武后이다. 중종은 고종의 뒤를 이어 즉위하였으나 2개월 만에 측천무후에 의해 폐위되었다. 측천무후는 여덟째 아들 예종을 옹립하였다가 얼마 뒤 폐위시키고 자신이 제위에 올라 국호를 주周로 고쳤다. 측천무후가 죽은 뒤 중종은 제위와 국호를 회복하였으나 황후 위씨가 실권을 장악하였고, 위 황후와 딸 안락공주가 중종을 독살하기에 이르렀다.

종이 웃었다. 축흥명은 평소 유자儒者로 이름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부시랑 노장용 盧藏用²⁵이 사사로이 여러 학사에게 “축공祝公의 오경五經이 빗자루로 쓸어낸 듯 다 없어졌다.”라고 하였다.

- || 민궐의 군주 왕희王曦²⁶가 여정영余廷英²⁷을 천주 자사泉州刺史로 삼았다. 여정영이 남의 여자를 노략질하고서 후궁으로 삼을 여인을 선발하라는 조서를 받았다고 사칭하였다. 이 일이 발각되어 옥리獄吏에게 맡겨 처리하게 하자 여정영이 매연전賈宴錢²⁸ 1만 민縑을 바쳤다. 왕희가 이튿날 여정영을 불러 “연회 자리는 이미 샀지만, 황후에게 올릴 공물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니, 여정영이 다시 이 황후李皇后에게 돈을 바쳤다. 이에 천주로 돌아가게 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정영을 불러서 재상으로 삼았다.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근안 謹按

삼가 생각건대, 군주의 근심은 사방이 잘 다스려지지 않는 데에 있고, 신하의 근심은 네 가지 강령[四維]이 펼쳐지지 않는 데에 있으니, 그 근심은 각각 다른 듯하나 그 실상은 본래 유관합니다. 어찌서이겠습니까? 군주는 혼자서 다스릴 수 없으니, 반드시 아랫사람의 정성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일을 받드는 자가 청렴하고 방정한 지조를 품어 청명한

24 축흥명祝欽明: 자는 문사文思이다. 중종中宗이 복위한 뒤 국자재주國子祭酒에 발탁되었다. 중종이 교제郊祭를 지내려 할 때, 위 황후李皇后에게 영합하기 위해 전례를 들어 황후가 교제를 도와야 한다고 말하는 등 비위를 맞추려고 한 일이 많았다. 후에 탄핵을 받아 요주 자사澆州刺史로 쫓겨났다. 나중에 홍주 도독洪州都督으로 옮겼다가 얼마 뒤 죽었다.

25 노장용盧藏用: 자는 자잠子潛이다. 이부시랑, 황문시랑 등을 역임하였다. 태평공주太平公主에게 아부하여 유배되었다.

26 왕희王曦: ?~944. 오대십국 민궐 제5대 군주로, 재위 기간은 939년에서 944년이다. 주문진朱文進, 연중우連重遇가 반란을 일으켜 왕연희王延曦를 추대하면서 권력을 장악하였으며, 후진後晉에게 왕으로 책봉 받고, 이름을 왕희로 바꾸었다. 즉위 후 폭정을 일삼았으며, 종실들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아 건주 자사建州刺史로 있던 동생 왕연정王延政과 갈등을 빚어 내분에 휩싸였다. 이에 주문진과 연중우에게 죽임을 당했으며, 후에 주문진이 민의 군주 지위에 올랐다.

27 여정영余廷英: 동평장사同平章事, 천주 자사泉州刺史를 역임하였다. 황제에게 매연전賈宴錢을 바치면서 황후에게도 공물을 바친 뒤로 정례화되었다.

28 매연전賈宴錢: 오대십국 때, 조정 관원이 조정에 상납하는 돈을 가리킨다. 본래 지방 관원이 입조할 때 상납하던 것이었으나, 후당 명종後唐明宗이 회절원會節園에 행행할 적에 조정 관원들도 돈을 상납한 이후로 관행이 되었다.

교화를 돕게 하고, 보좌하는 이가 부끄러움을 아는 절개를 지켜 격려하는 풍속을 일으키게 하면, 네 가지 강령이 펼쳐져 성대해지고 사방의 다스림이 절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만일 청렴하지 않은 무리가 조정에 늘어서 있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들이 자리를 꿰차서, 재물이나 이익을 탐해 오로지 사치스러운 욕심을 부리고 작위나 봉록을 다투어 오로지 조급하게 나오길 일삼아 명예와 절의, 품행과 검속이 귀중하다는 것을 더 이상 알지 못한다면, 어찌 풍교風教가 떨어지지 않으며 세도世道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이 때문에 나라를 잘 다스리는 자는 염치를 숭상하는 도리로 세상을 다스리고 부끄러움을 아는 법도로 아랫사람을 인도하여, 반드시 하지 않는 바가 있는 사람을 찾아 세상의 표준으로 삼고 취하지 않는 바가 있는 사람을 얻어 백성들이 보고 감화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대부의 출처와 사수辭受[사양하거나 받는 짓]가 결백하고 정대하지 않음이 없어 치세에는 이익에 뜻을 빼앗기지 않고 난세에는 화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한 시대의 교화를 도울 이가 어찌 적겠습니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세종께서는 상신相臣의 낡은 집을 생각하여 울타리를 설치해 표창하셨고, 성종께서는 더러워진 사신의 보따리에 통탄하여 그들을 하옥시켜 징계하셨습니다. 장오법贓汚法을 설치하신 것은 명종께서 악을 징계하기 위한 것이고, 청백리를 선발하기 시작하신 것은 선조께서 선을 표창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²⁹ 인묘仁廟인조께서는 원로의 안빈낙도하는 아름다움을 이루어 주기 위해 특별히 흰 명주로 만든 요를 하사하셨고,³⁰ 숙묘肅廟숙종께서는 과거 응시자가 환봉換封³¹하는 간사함을 낱알이 조사하라 명하여 영구히 죄인의 명부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전후에 조관朝官의 반열에 있는 자들 모두 독려하는 교화를 입어 바르게 신칙하는 방도를 알게 되었으니, 그 유풍流風과 여운이 여전히 사람들의 이목에 남아 있습니다.

29 청백리를 ... 것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뒤에 수령守令, 변수邊帥는 말할 것도 없고 청반淸班에 있는 자들까지도 탐묵貪墨을 자행하는 풍조가 있으니, 청백리 자손을 녹용錄用할 뿐만 아니라 청백리를 뽑아 아뢰라고 전교하였다. (『宣祖實錄』 34년 1월 8일)

30 인묘仁廟께서는 ... 하사하셨고: 인조가 영의정을 지낸 이원익李元翼(1547~1634)에게 승지承旨를 보내 안부를 묻게 하였는데, 여전히 청렴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기에 정당正堂을 지어주고 무명 이불과 흰 명주 요를 하사하였다. (『仁祖實錄』 9년 1월 11일)

31 환봉換封: 봉미封彌를 바꿔치기하는 것으로, 남의 봉미의 내용을 지우고 자신의 봉미의 내용을 써서 넣는 부정행위이다. 봉미는 시권試卷의 오른편 끝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조四祖의 성명을 쓴 부분으로, 이것을 보이지 않도록 봉하였으므로 봉미라고 한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보면 하나같이 예전과는 다르니, 인심이 변해서 그런 것인지 세교가 쇠해져서 그런 것인지 신은 모르겠습니다. 폐단의 연원을 살펴보면, 교화가 아직 흥기하지 못해서 그런 듯합니다. 유자^{儒者}들이 집집마다 깨우쳐주고 사람마다 가르쳐준 적이 있습니까. 평소의 지려와 행실로 이미 조야^{朝野}에서 귀하게 받들어지므로, 그 풍도를 들은 자는 법으로 삼아 스스로 청렴한 지조를 가까이하고 그 덕에 감화된 자는 갈고 닦아서 더러운 행동에 빠질까 두려워합니다. 그리하여 나약한 사람도 분기하고 완악한 사람도 청렴해지는 효과가 부지불식간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공경^{公卿}은 뇌물 꾸러미가 집에 이를까 경계하고, 수재^{守宰}는 주머니를 가득 채워 자신을 살지게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전조^{銓曹}³²에서는 청탁을 받는 일이 없어지고, 과장^{科場}에서는 뇌물을 받는 일이 사라질 것입니다. 만일 유자들이 처음부터 등용되지 않았다면 그만이지만, 등용되었는데도 쇠퇴한 풍속을 크게 변화시키지 못했다고 한다면 신은 믿지 못하겠습니다. 유념하고 유념하소서.

32 전조^{銓曹}: 문관^{文官}과 무관^{武官}의 전형을 맡은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의 별칭이다.

正史彙鑑

권
6

애민생 愛民生

백성을 사랑하다

법조 法條

- 요임금은 곤궁한 백성에게 더 마음을 써서, 한 백성이라도 굶주리면 “내가 굶주리게 하였다.”라고 하고, 한 백성이라도 추위에 떨면 “내가 추위에 떨게 하였다.”라고 하고, 한 백성이라도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죄에 빠뜨렸다.”라고 하였으니, 백성들이 해와 달처럼 떠받들고 부모처럼 친애하였다. 그러므로 상을 내리지 않아도 백성들이 격려되었고 벌을 주지 않아도 백성들이 단속되었다.
- 주 문왕周文王¹이 서백西伯이 있을 때, 풍읍豊邑으로 도읍을 옮겨 영소靈沼를 파다가 죽은 사람의 뼈가 드러나자 “잘 묻어 주어라.”라고 하였다. 관리가 “이는 주인이 없는 뼈입니다.”라고 하니, 서백이 “천하를 소유한 자는 천하의 주인이고, 일국一國을 소유한 자는 일국의 주인이다. 과인이 본디 그의 주인이니, 또 어디서 주인을 찾겠는가.”라고 하고, 예복禮服을 갖춰 입고 다시 장례를 지내 주었다.
- 주 성왕周成王² 때, 주공周公³이 「무일無逸」을 지어 바치며 말하였다. “군자는 안일해서는 안 되니, 우선 농사짓는 어려움을 경험해 본 후 편히 지내야 백성들이 의지하는 바를

1 주 문왕周文王: 상商的 제후국이던 주周의 군주로, 성은 희姬, 이름은 창홍이다. 부친 계력季歷의 서백西伯 작위를 계승하여 '서백 창'으로 불린다. 아들인 무왕武王이 상을 멸망시키고 주 왕조를 창건한 뒤, 문왕으로 추존되었다. 상 왕조와 평화적 태도를 취하였고 우虞, 예夏 두 나라의 분쟁을 중재仲裁하면서 제후들의 신망을 얻어 제후들 가운데 3분의 2가 따르게 되었다. 만년에 현상賢相 강상姜尚의 도움을 받아 덕치에 힘썼다. 유가儒家에서 성왕聖王으로 일컫는다.

2 주 성왕周成王: 주 제2대 왕 희송姬誦으로, 문왕의 손자이자 무왕의 아들이다. 주공의 섭정 7년과 친정 30년을 합쳐 총 37년 동안 재위했다. 숙부인 주공과 소공의 보좌를 받아 훌륭한 정치를 하여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알게 됩니다.”【이상은 『봉주강감회찬』에 보인다.】

|| 제 경공齊景公이 병을 앓자 축관祝官과 사관史官을 벌주어 죽이려 하니,⁴ 안자晏子가 말하였다. “산림의 나무는 형록衡鹿이 지키고 연못의 억새와 부들은 주교舟蛟가 지키며, 덩불의 떨감은 우후虞候가 지키고 바다의 소금과 조개는 기망祈望이 지킵니다.⁵ 궁 안으로는 총애하는 첩이 저자에서 제멋대로 물건을 빼앗고 궁 밖으로는 총애하는 신하가 변방에서 거짓 명령으로 착취하니,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필부필부匹夫匹婦가 모두 저주하고 있으니, 비록 축원을 잘하더라도 어찌 억조億兆의 사람들이 퍼붓는 저주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군주께서 만약 축관과 사관을 죽이려 하신다면, 덕을 닦은 후에야 죽일 수 있을 것입니다.” 경공이 기뻐하여 유사有司로 하여금 정사를 너그럽게 하여 세관稅關을 허물고 금령禁令을 없애고 부세賦稅를 줄이도록 하였다.

|| 진 도공晉悼公⁶이 백성을 편히 쉬게 할 방법을 도모하니,⁷ 위강魏絳이 쌓아둔 재물을 다 풀어 빌려줌으로써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고, 군주로부터 이하 신하들 가운데 축적한 재물이 있는 자는 모두 내어놓게 할 것을 청하였다. 나라에는 적체된 재물이 없으니 곤궁한 백성도 없고, 도공이 백성들의 이익을 금하지 않으니 탐욕스러운 백성도 없게 되었으며, 기도할 때는 희생犧牲 대신 폐백을 사용하고 빈객에게 대접할 때는 한 가지 희생만을 썼다. 이를 시행한 지 1년이 지나자 나라에 법도가 있게 되었다.

3 주공周公: 주 문왕周文王의 아들이자 무왕의 아우로, 이름은 단보이다. 무왕을 보좌하여 상하를 정벌하는데 공을 세워 노획에 봉해졌다. 무왕이 죽은 뒤 즉위한 성왕이 너무 어렸으므로, 장남 백금伯禽을 봉지封地인 노에 보내고 자신은 주에 남아 섭정을 하였다. 7년 뒤 성왕이 장성하자 정권을 돌려주고 자신은 경사卿士로 남아 보좌하였다. 예악의 기초를 닦은 인물로서 공자孔子에게 존경을 받았다.

4 제 경공齊景公이 … 하니: 제 경공이 평소 앓던 병이 심해져서 1년 동안 앓았는데, 문병을 온 제후들은 축관祝官과 사관史官이 귀신을 공경하지 않는 탓이라 하여 그들을 죽일 것을 권하였다. (『春秋左氏傳』昭公 20年)

5 산림의 … 지킵니다: 형록衡鹿, 주교舟蛟, 우후虞候, 기망祈望은 모두 관명으로, 본문에서는 백성들이 나무 등의 물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관리를 두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6 진 도공晉悼公: 춘추 시대 진의 군주로, 성은 희姬, 이름은 주周이다. 여공厲公의 7촌 조카로, 여공이 시해되자 경대부들에게 의해 14세에 즉위하였다. 어린 나이임에도 영명하고 담대하여 자신을 추대한 경대부들에게 충성의 서약을 받아낸 후, 간신을 처형하고 폐단을 시정하였다. 내치의 안정을 기반으로 부국강병을 이루었다.

7 백성을 … 도모하니: 당시 진 도공이 군대를 일으켜 제후들과 정鄭을 두 차례 토벌한 뒤였다. (『春秋左氏傳』襄公 9年)

|| 오왕吳王 합려闔廬⁸는 재앙이 있거나 역병이 돌면 친히 고아와 과부들을 순무巡撫하여 부족한 것을 공급해주었고, 백성들을 부지런히 구휼하여 고락苦樂을 함께 하였다. 이 때문에 백성들은 피로해하지 않았고 죽더라도 헛되이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상은 『춘추좌씨전』에 보인다.】

|| 전한 문제前漢文帝 때, 가의賈誼⁹가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한 명의 사내가 밭 갈지 않으면 누군가는 굶주리고, 한 명의 여인이 베를 짜지 않으면 누군가는 추위에 떨게 된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본업인 농업을 버리고 말업인 상업을 좇는 자가 매우 많아서 생산하는 자는 적고 소비하는 자는 많으니, 천하의 재산이 어찌 고갈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백성들을 농업으로 돌아가게 인도하여 모두가 이 본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말업에 종사하거나 놀고먹는 자들로 하여금 농전農田¹⁰에 의지해 살도록 하신다면, 쌓아 둔 것이 풍족하여 백성들이 제자리를 즐겁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가의의 말에 공감하여 적전籍田¹¹을 열라는 조령詔令을 내리고, 문제가 직접 밭을 갈아 천하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였다.

|| 전한 무제前漢武帝가 조서를 내려 지난날¹²을 깊이 뉘우치며 “이전에 유사有司가 백성들에게 30전의 세금을 더 부과하여 변방의 경비에 보태고자 하였고, 지금 또 병졸을 윤대輪臺¹³에 보내어 둔전屯田을 경작하도록 청하니, 이는 천하를 어지럽히고 수고롭게 하는 것이요, 백성을 넉넉하게 해주는 방법이 아니다. 짐은 차마 허락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정벌을 위한 사업들을 중단하고 전춘추田千秋¹⁴를 봉하여 부민후富民侯

8 오왕吳王 합려闔廬: 춘추 시대 오의 군주로, 성은 희姬, 씨는 고발姑發, 태자 시절 이름은 광光이다. 오자서伍子胥를 재상으로 삼고 손무孫武를 장군으로 임명하여 부국강병을 이루었다. 월왕越王 구천句踐과의 전투에서 중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9 가의賈誼: 「어엄치勵廉恥」 법조 1번 각주 참조.

10 농전農田: 원문의 “南畝”는 농전을 가리킨다. 남쪽은 벌이 오래 잘 들어 작물이 잘 자라므로, 농전이 대부분 남쪽으로 개간되어 있기 때문에 ‘남무’라 한 것이다.

11 적전籍田: ‘자전籍田’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천자나 제후가 백성들에게 농사를 권장하기 위해 친히 경작하는 시범을 보이는 전지田地를 가리킨다. 백성들의 힘을 빌려籍 경작한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2 지난날: 무제가 평생을 서역西域 정벌을 위해 국력을 고갈시킨 것을 가리킨다.

13 윤대輪臺: 서역西域의 옛 나라 이름으로, 위치는 지금의 중국 신강성 서남쪽 지역이다. 무제가 서역 정벌을 위해 이광리李廣利를 보내어 정복하고 이곳에 둔전屯田을 운영하였다.

14 전춘추田千秋: ?~기원전 77. 충간을 하여 신임을 받아 승상에 올랐다. 노년에는 수레를 탄 채로 궁궐을 출입할 수 있는 특혜를 누리 사람들이 ‘차전추車千秋’라고 불렀으며, 자손들이 이로 인해 차씨車氏가 되었다.

로 삼음으로써 백성을 쉬게 하고 부유하게 해 주겠다는 뜻을 분명히 보였다. 또, 조과 趙過¹⁵를 수속도위 搜粟都尉로 삼으니, 조과가 대전법 代田法¹⁶을 잘 운영하였고 그가 개선한 경작법과 농기구가 모두 편리하고 정교하여, 이를 백성에게 가르쳐서 들이는 힘은 줄이고 얻는 곡식은 늘렸다.

|| 북위 세종 北魏世宗¹⁷ 때, 중위 中尉 견침 甄琛¹⁸이 표表를 올려 말하였다. “한 집안의 가장은 반드시 자손을 사랑하여 기르고 천하의 군주는 반드시 만민을 사랑하여 기르니, 백성의 부모가 되어 식초와 젓갈을 아끼고 모든 생명을 다 소유할 만큼 부유하면서 물건 하나 까지 전매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현관 縣官이 하동 河東의 염지 鹽池를 차지한 채 그 이익을 거두고 있으니, 이는 입과 배만 채우고 손과 발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해를 소유하신 천자가 어찌 가난함을 걱정하십니까. 바라건대 소금 채취를 금하는 법을 풀어 주셔서 백성들과 이로움을 함께하십시오.” 이에 북위는 염전을 금하는 법을 폐지하게 되었다.

|| 당 태종 唐太宗이 도적을 방지하는 방도에 대해 신하들과 논의할 적에 어떤 이가 무거운 형벌로 금지시킬 것을 청하자 태종이 말하였다. “짐이 마땅히 사치와 소비를 줄이고 요역과 부세를 덜어주며, 청렴한 관리를 뽑아 써서 백성들의 의식을 넉넉하게 해준다면 저절로 도적질을 하지 않을 것인데, 무거운 형벌을 무엇하러 쓰겠는가.” 이로부터 여러 해가 지난 뒤, 해내 海內가 평안하여 백성들이 길에 떨어진 물건을 줍지 않고 바깥 대문을 닫지 않으며, 상인들도 안심하고 야숙 野宿하였다.

15 조과 趙過: 자는 회지 悔之이다. 전한 무제 때 수속도위 搜粟都尉가 되어 대전법 代田法을 시행하였고 삼각루차 三脚耬車 등 경작과 파종에 사용하는 농기구를 제작했다.

16 대전법 代田法: 윤작법 輪作法의 일종으로, 경작지 내의 일부를 해마다 돌아가면서 쉬게 하여 지력의 소모를 막고 수확을 올리는 농법이다.

17 북위 세종 北魏世宗: 483~515. 북위의 제8대 군주 원각 元恪[탁발각 拓跋恪]으로, 재위 기간은 499년에서 515년이다. 시호는 선무제 宣武帝이다. 아버지 효문제의 한화 漢化 정책을 계승하면서 영토를 확장하였으나, 국정을 측근이나 외척에게 맡기고 종실을 배척하여 국가 쇠락을 초래하였다.

18 견침 甄琛: ?~524. 자는 사백 思伯이다. 북위의 효문제 孝文帝, 선무제 宣武帝, 효명제 孝明帝 3대에 걸쳐 신임을 받았고, 관직은 이부상서에 이르렀다.

|| 당 고종唐高宗¹⁹이 백성을 기르는 것에 대해 묻자 내제來濟²⁰가 대답하였다. “옛날 제 환공齊桓公이 출유出遊하였다가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노인을 발견하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였는데, 노인은 ‘온 나라의 굶주린 자들에게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고, 옷을 내리자 ‘온 나라의 추위에 떠는 자들에게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환공이 ‘과인의 창고가 어떻게 온 나라의 굶주리고 추운 자를 구휼할 정도로 넉넉하겠는가.’ 라고 하니, 노인은 ‘백성이 농사지를 때를 빼앗지 않으면 나라 사람 모두가 먹을 것이 넉넉하고, 누에 치는 여인을 빼앗지 않으면 나라 사람 모두가 입을 옷이 넉넉하게 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군주가 백성을 기르는 것은 정역征役을 줄이는 것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지금 산동山東의 역정役丁이 수만 명인데, 노역을 시키면 백성의 고생이 심하고 고용雇用을 하면 백성의 비용 부담이 큼니다. 신은 이들을 모두 면해주시길 바랍니다.” 고종이 이를 따랐다.

|| 안녹산安祿山の 난에 현종玄宗이 연추문延秋門을 나서면서 좌장左藏²¹을 지나갔다. 양국충楊國忠이 불태우길 청하며 “적이 차지하게 해서 안 됩니다.” 라고 하니, 현종이 정색하면서 “적이 와서 얻지 못한다면 틀림없이 백성들에게 다시 거둬들일 것이다. 쥐버리는 것만 못하니 내 백성들을 더욱 곤궁하게 하지 말라.” 라고 하였다. 현종이 가교假橋를 건너자 양국충이 사람을 시켜 불태우게 하니, 현종이 “사서인士庶人이 저마다 적을 피해 살고자 하는데, 그 길을 끊으면 어쩐단 말인가.” 라고 하고 내시감 고력사高力士²²를 남겨 불을 끄게 하였다.

19 당 고종唐高宗: 628~683. 당 제3대 황제 이치李治로, 재위 기간은 649년에서 683년이다. 태종 이세민李世民的 아홉 번째 아들로, 장남과 네 번째 아들이 차례로 태자로 책봉되었다가 폐위된 후, 외척 장손무기長孫無忌의 지지를 받아 태자가 되어 즉위할 수 있었다. 신라와 동맹을 맺고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는 등 공격적인 대외 정책을 펼쳤고, 당의 율령과 전장 제도를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말년에는 황후 무씨武氏가 적극적으로 국정에 개입하게 만들었고, 이것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였다.

20 내제來濟: 610~662. 당 고종 때의 재상으로, 의론을 잘하고 시무에 밝았다. 고종이 태자이던 시절에 사의랑司議郎을 지냈고, 고종이 즉위한 뒤에 중서시랑 겸 홍문관학사中書侍郎兼弘文館學士에 임명되어 국사國史를 감수하였다. (『舊唐書』 「來濟傳」; 『新唐書』 「來濟傳」)

21 좌장左藏: 국고國庫의 일종으로, 궁궐의 좌측에 자리하여 좌장이라 이름 붙였다. 당대唐代에는 돈과 비단 등을 보관하고 관리하였다.

22 고력사高力士: 684~762. 환관으로, 위씨韋氏의 난亂을 평정할 때 활약하여 당 현종唐玄宗의 총애와 신임을 받았으므로, 숙종肅宗이 태자로 있을 때, 그를 형으로 섬겼다고 한다. 숙종 연간에 표기대장군驃騎大將軍에 임명되고, 제국공齊國公에 봉해졌다.

- || 후당 명종後唐明宗²³이 풍도馮道²⁴에게 “올해는 풍년이 들었으니 백성들의 생활은 넉넉해 졌는가?”라고 물으니, 풍도가 말하였다. “농가는 흉년이면 떠돌다가 굶어 죽고, 풍년이면 곡식값이 싸져서 피해를 봅니다. 신이 진사進士 섭이중聶夷中²⁵의 시를 기억하는데, 그 시에 ‘2월에 생사生絲를 미리 팔고, 5월에 곡식을 미리 파네.²⁶ 눈앞의 부스럼을 고치느라 심장의 살을 도려내느구나.’라고 하였습니다. 시어는 비록 속되지만 농가의 상황을 곡진하게 드러내고 있으니, 군주라면 몰라선 안 될 것입니다.” 명종이 곁에 있는 신하에게 그 시를 기록하도록 명하고, 항상 읊조렸다.
- || 후주 세종後周世宗이 조정에서 오랫동안 돈을 주조하지 못하는데도 민간에서는 돈을 녹여 불상을 만들고 있다고 여겨, 민간의 불상을 모두 공적公的으로 거둬들이고 관에서 그 값을 쳐주라고 칙령을 내렸다. 세종이 시신侍臣에게 말했다. “부처의 뜻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데 있어, 머리와 눈도 내놓아 보시했다고 들었다. 만약 짐의 몸으로 백성들을 구휼할 수 있다면 아깝지 않다.”【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 || 송 태조宋太祖가 천하의 군현에 조령詔令을 내려 고로원孤老院을 세워 백성 가운데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고아와 노인은 고로원에 들어가게 하고, 생필품을 넉넉히 지급하여 달마다 쌀 3말과 펄감 30근, 겨울과 여름에는 포布 1필을 주었으며, 동에게는 3분의 2를 지급하였다. 이는 양제원養濟院으로 바뀌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 || 북송 인종北宋仁宗 때의 일이다. 수도에 역병이 돌자 내고內庫에서 무소뿔 2개를 내어 태

23 후당 명종後唐明宗: 867~933. 오대십국 후당 제2대 군주 이사원李嗣源으로, 재위 기간은 926년에서 933년이다. 진왕왕 주 이극용李克用의 양자가 되어 장종莊宗 이존욱李存勳을 섬겼으나, 장종이 인망을 잃고 시해되자 수도 낙양에 가서 제위에 올랐다.

24 풍도馮道: 882~954. 자는 가도可道이고 후당後唐, 후진後晉, 후한後漢, 후주後周에서 10명의 군주를 모시는 동안 장상將相 또는 삼공三公이나 삼사三師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십조원로+朝元老’라 불렀다. (『舊五代史』「馮道傳」; 『新五代史』「馮道傳」)

25 섭이중聶夷中: 837~884. 자는 탄지뵈지이며 시인으로 이름이 높다. 그가 지은 시 「상전가傷田家」는 농가의 가난한 생활상과 농민의 괴로움을 잘 묘사한 것으로 유명하다.

26 2월에 … 파네: 농민들이 당장의 궁핍을 면하기 위해서 양잠을 시작하기 전인 2월에 앞으로 나올 실을 저당잡고, 가을에 수확할 곡식을 5월에 여물지도 않은 상태로 저당잡아 먹고 살아감을 말한다.

의太醫로 하여금 약을 지어 백성들을 치료하게 하였는데, 그중 하나는 통천서通天犀²⁷였다. 좌우의 신하들이 임금의 복식에 사용하기 위해 남겨두어야 한다고 하니, 인종이 “내 어찌 기물奇物을 귀하게 여기고 백성을 천하게 여기겠는가.”라고 하고, 바로 부수라고 명하였다.

■ 원 인종元仁宗 때, 대사농大司農 매주買住 등이 사농승司農丞 묘호겸苗好謙²⁸이 저술한 『재상도설栽桑圖說』을 올리니, 인종이 “농사와 양잠은 의식衣食의 근본이니, 이 도설은 매우 좋다.”라고 하고, 1,000질秩을 간인하여 민간에 배포하도록 명하였다. 【이상은 『속자치통감』에 보인다.】

■ 명 태조明太祖가 시신侍臣과 함께 치도治道를 논하면서 말하였다.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물을 다스리는 것과 같으니, 물을 다스리는 자는 물의 물성物性を 따라야 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백성의 인정人情을 따라야 한다. 인정상 누구나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니 형벌을 줄이고 전쟁을 그쳐 안정시켜야 하고, 누구나 가난을 싫어하고 부유함을 좋아하니 농사를 중시하고 부세를 줄여 넉넉하게 해 주어야 하고, 누구나 편안함을 좋아하고 수고로움을 싫어하니 공사工事와 요역을 줄여 편안하게 해 주어야 한다. 원하지 않는 것을 강요하면서 복종하길 바라는 것은 물을 막아 거슬러 오르게 하고 이마보다 높게 튀어 오르게 하는 것²⁹과 같으니, 결국 그것의 물성이 아니다.” 또 호부戶部에 다음과 같이 유시諭示하였다. “짐의 생각에는 먹을 것이 풍족함은 말업未業을 금하는 데 달려 있고, 입을 옷이 풍족함은 사치를 금하는 데 달려 있다. 그대들이 마땅히 서민들로 하여금 각자의 본업을 지키게 하고 놀고먹는 것과 비단옷 입는 것을 금지한다면, 그 폐단을 끊어 버릴 수 있을 것이다.”

27 통천서通天犀: 뿔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실선의 무늬가 있는 무소뿔로, 하늘과 이어주는 신령한 기물奇物로 여겼다. 무소뿔은 고관의 복식에 사용되는 매우 귀한 재료였다.

28 묘호겸苗好謙: 1240~1318, 원대元代의 저명한 농학가로, 『제민요술齊民要術』 등 옛 농서를 두루 참고하여 『농상집요農桑輯要』 6권을 편찬하고, 『재상도설栽桑圖說』 1권을 완성하여 그 공로로 어사중승御史中丞에 임명되었다. 그중에서도 『농상집요』는 고려와 조선에서 간행되었으며, 농업 기술 연구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29 물을 ... 것: 물은 본래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본성인데, 사람이 인위적인 힘을 가해 일시적으로 본성을 거스르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맹자』 「고자씨子」에 “지금 물을 쳐서 튀어 오르게 하면 사람의 이마보다 높이 올라가게 할 수 있고, 물을 막아서 거슬러 올라가게 하면 산에 있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어찌 물의 본성이겠는가. 외부의 형세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今夫水搏而躍之 可使過類 激而行之 可使在山 是豈水之性哉 其勢則然也】”라고 하였다.

|| 명 태조가 유기劉基³⁰에게 말하였다. “지금 천하가 조금 안정되어 길러 주고 쉬게 하는 데 힘써야 하니, 이는 오직 백성들의 재물을 불러 주고 백성들의 힘을 쉬게 하는 데 달려 있다. 씹씹이를 줄이지 않으면 백성의 재물이 고갈되고, 요역을 줄이지 않으면 백성의 힘이 소진된다. 이 때문에 백성을 기르는 자는 터전에 뿌리내리게 해 주고, 나무를 심는 자는 그 뿌리를 북돋아 주어야 한다.” 또 모든 군현郡縣에 유시諭示하였다. “전쟁이 이제 막 안정되어 백성의 재물과 힘이 모두 곤궁한 상태이다. 비유하자면 날갯짓을 갖 배운 새는 그 날개를 당기지 말아야 하고 새로 심은 나무는 그 뿌리를 흔들지 말아야 하는 것과 같으니, 안정시키고 쉬게 해 주어야 한다.”

|| 명 성조明成祖 때의 일이다. 호부상서 육신郁新³¹ 등이 “어마감御馬監이 흰 코끼리에게 먹 일 곡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니, 성조가 “흰 코끼리가 무슨 쓸모가 있다고 백성이 먹을 것을 빼앗아 기른단 말인가.”라고 하고, 허락하지 않았다.

|| 명 선종明宣宗이 장릉張陵과 헌릉獻陵을 배알拜謁하다가 멀리서 밭을 가는 자를 보고 기병 몇 명을 데리고 가서 살펴보면 조용히 농사일에 대해 묻고, 이어 농부가 쥐고 있던 쟁기를 가져다 세 번 밀고는³² 시신侍臣을 돌아보며 “짐은 쟁기질을 세 번만 해도 이미 힘들어 벽찬데, 이를 항상 하는 자는 어떻겠는가.”라고 하고, 밭을 가는 자에게 60정錠을 하사하였다.

|| 명 세종明世宗이 유풍정幽風亭에 가서 수확하는 것을 지켜보고서 시신侍臣에게 다음과 같이 유시諭示하였다. “농사의 수고로움은 글로 보는 것이 직접 실상을 보는 것만 못하다. 우리 성조의 가르침 중에 ‘비단을 입을 때는 길쌈하는 여인의 수고를 생각하고, 곡식을

30 유기劉基: 1311~1375. 자는 백온伯溫이고, 성의백誠意伯에 봉해졌으므로 ‘유성의劉誠意’라고 불렸다. 경사經史, 천문天文, 병법兵法에 두루 능통하였고 주원장朱元璋의 군사軍師로서 명 건국에 기여하였다. 역법曆法 제정과 군정 체제 건립에 공헌하였으므로, 제갈량諸葛亮에 비견되었다. 저서에 『성의백문집』과 우언체 산문집 『육리자郁離子』가 있다.

31 육신郁新: ?~1405. 자는 독본敦本이며, 명 태조明太祖가 천하의 호구戶口와 전부田賦 등에 대해 묻자 빠짐없이 자세히 응답하여 칭찬을 받았다. 성조成祖 때는 메뚜기 피해가 발생하자 이를 조정에 보고하지 않은 관원들을 탄핵하고 피해를 수습하였다.

32 쟁기를 … 밀고는: 『예기』 「월령月令」에 천자가 삼공三公과 구경九卿을 거느리고서 몸소 적전籍田에서 밭갈이를 할 때, “천자는 세 번 밀고 삼공은 다섯 번 밀고, 경과 제후는 아홉 번 민다[天子三推 三公五推 卿諸侯九推]”라고 기록되어 있다.

먹을 때는 농부의 수고를 기억하라.’ 라고 하셨으니, 과연 알알이 모두 백성의 수고가 담겨 있구나.”【이상은 『명사강목』에 보인다.】

계조 戒條

|| 진 소공晉昭公³³ 때의 일이다. 숙향叔向이 제齊에 가서 안자晏子에게 “제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 안자가 말하였다. “제는 말세末世입니다. 백성들이 힘써 얻은 소출이 셋이라면 그중 둘은 공실公室에 납입하고 남은 하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실에 쌓아 둔 것은 썩어 벌레가 먹고 있지만 삼로三老³⁴가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으며, 도성의 여러 시장에서는 신발이 흔하여 혈값에 팔리지만 목발이 귀하여 비쌉니다.³⁵” 그러자 숙향이 말하였다. “우리의 공실도 말세입니다. 서민은 피폐한데 공실은 더욱 사치하고, 길에는 굶어 죽는 이가 끊이지 않는데 총희寵姬는 더욱 부유하니, 백성들이 공실의 명령을 들으면 도적이나 원수를 피하듯이 합니다. 정사는 대부가 장악하여 백성은 의지할 곳이 없는데, 군주는 날마다 뉘우칠 줄 모르고 향락에 빠져 우환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있습니다.”【이상은 『춘추좌씨전』에 보인다.】

|| 북위 효명제北魏孝明帝³⁶ 때, 도적이 날로 많아져서 정도征討가 그치지 않았다. 국고가 바닥나서 6년 치의 조租와 조調를 앞당겨 징수하고도 여전히 부족하여, 시장에 들어오는 자에게 한 사람당 1전씩 세금을 걷고 저점邸店³⁷에도 모두 세금을 물리니, 백성들이 탄

33 진 소공晉昭公: 춘추 시대 진의 군주로, 성은 화姬, 이름은 이夷이다. 평공平公의 아들이다. 재위 기간에 육경六卿 즉, 한씨韓氏, 조씨趙氏, 위씨魏氏, 범씨范氏, 중행씨中行氏, 지씨智氏 등이 강해지고 공실公室의 위상이 악화되었다.

34 삼로三老: 삼로는 여러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 첫째는 각 지방의 향鄕, 현縣, 군郡에서 인덕을 갖추고 백성들을 교화하는 역할을 맡은 장자長者, 둘째는 삼공三公의 지위에서 치사致仕한 노인, 셋째는 노인의 나이를 ‘상上[120세 이상]’, ‘중中[100세 이상]’, ‘하下[80세 이상]’로 구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고령의 노인을 가리키기도 한다.

35 신발이 … 비쌉니다: 제 경공齊景公이 백성들에게 가혹한 형벌을 많이 집행하였다는 말이다. 당시 많은 백성이 월형刑刑을 받아, 멀쩡히 건지 못하고 목발을 짚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홀형옥恤刑獄』 법조法條 기사에 보인다.

36 북위 효명제北魏孝明帝: 510~528. 북위 제9대 군주 원후元詧(탁발후拓跋詧)로, 재위 기간은 515년에서 528년이다. 묘호는 숙종肅宗이다. 6살에 즉위하였으므로 어머니 호 태후胡太后가 섭정하였다. 태후의 폭정으로 각지에서 도적이 일자 흉노족 이주영爾朱榮의 군대를 앞세워 태후를 제거하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도리어 태후에게 독살당하였다.

37 저점邸店: 상인들의 숙박, 화물의 보관, 위탁 판매 등을 아울러 갖춘 시설이다.

식하며 원망하였다.

- || 당 숙종唐肅宗 때의 일이다. 조용사租庸使³⁸ 원재元載³⁹가 강회江淮 지역이 비록 전쟁을 겪었지만 다른 도道에 비해서는 여전히 자산이 있다고 하여⁴⁰ 장부를 살펴 8년간 조租와 조調를 내지 않았거나 달아난 자를 적발하여 큰 값을 기준으로 징수하였다. 또, 부채의 여부와 재산의 고하高下를 따지지 않고 곡식과 비단이 있는 백성을 찾아내면, 무리를 보내 포위하고 그가 소유한 것을 장부에 기록하고 절반을 가져갔는데, 심한 경우에는 열에 여덟아홉을 가져왔으니, 이를 ‘백착白著’⁴¹이라 하였다. 이에 백성들은 서로 무리 지어 도적떼가 되었다.
- || 당 덕종唐德宗 때의 일이다. 탁지度支에서 통상 거두어들이는 세금으로는 한 달의 경비도 충당하지 못하게 되자, 판탁지判度支 조찬趙贊⁴²이 간가間架의 세법을 시행하도록 주청하였다. 간가세는 집마다 두 보[窠]를 1칸으로 삼아 상등上等의 집은 2천 전錢, 중등中等은 1천 전, 하등下等은 5백 전을 세금으로 거두는 것으로 하여, 아전이 붓을 잡고 주판을 들고서 백성의 집에 들어가 계산할 적에 감히 한 칸이라도 숨기면 곤장 60대를 쳤다. 또 맥전법陌錢法을 시행하여 공사公私 간에 증여하거나 매매하면 1민糶당 50전을 관에서 가져갔다. 이에 근심하고 원망하는 목소리가 원근遠近에 가득했다.

38 조용사租庸使: 국가의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관직으로, 수·당隋唐 시기에 조·용·조租庸調 형태의 세제稅制가 정착된 후 신설하여 운영하다가 덕종德宗 때 폐지하였다. 조租는 토지를 대상으로 곡물을 징수하고 조調는 호구를 대상으로 징수하는 세금이다. 개인을 대상으로는 노동력을 바치게 하는 역할이 있는데, 이를 베나 면포, 은냥 등으로 대납代納하는 것을 용庸이라 한다.

39 원재元載: ?~777. 자는 공보公輔이다. 숙종肅宗 때 이보국에게 붙어 동중서문하평장사에 임명되었다. 대종 때, 이보국이 죽자 내시들과 권력을 쥐고 불법을 자행하면서 충신들을 배척하고 뇌물을 공공연하게 받았다. 악행이 알려져 결국 자살을 명받았다. 불교를 신봉하였다.

40 강회江淮 … 하여: 8여 년간 진행된 안사安史의 난이 주로 황하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장강長江과 회수淮水 지역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음을 말한다.

41 백착白著: 법으로 정해진 조세 이외에 불법으로 거두어들이는 세금을 말한다. 아무 이유 없이 부과하여 징수하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42 조찬趙贊: 당 덕종唐德宗 때 노기盧杞와 함께 당시 국가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가옥의 칸수에 따라 매기는 세금인 간가세間架稅, 상품의 매매 액수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인 제맥전際陌錢을 제안하여 시행하였으며, 차를 전매하는 제도도 시행하였다.

- || 당 덕종 때, 궁시⁴³를 만들어 환관을 궁시사^{宮市使}로 삼아 사람들의 물건을 강매하게 하니, ‘궁시’라고만 말하면 백성들은 손을 놓고 주어야 했다. 대개 백 전 어치 물건으로 백성들의 수천 전 어치의 물건을 사들였는데, 흥색이나 자주색으로 물들인 헌옷이나 낡은 비단을 조각조각 찢어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백성 중에는 시장에 물건을 팔러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기도 하였다. 한 농부가 나귀에 땀감을 싣고 팔러 가다가, 환관이 ‘궁시’를 구실삼아 빼앗자 농부가 울부짖다가 결국 환관을 구타하기도 하였다.
- || 당 희종⁴⁴ 초에 한림학사 노휴⁴⁵가 상주^{上奏}하였다. “신이 보니 관동^{關東}에 가뭄이 들어 가난한 자는 봉호^{蓬蒿}의 열매를 갈아 국수로 만들어 먹고 왜나무 잎을 모아 삶아 먹으면서 언덕과 골짜기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으니, 남은 세금을 사실상 더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현^{州縣}에서는 걸핏하면 매질하며 독촉하므로 백성들이 집을 부수고 나무를 베며 처자식을 팔아 마련하지만, 관리들이 중간에서 먹고 마시는 비용으로만 쓰이고 부고^{府庫}에 이른 적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칙령을 내리셔서 주현에서 세금 거두는 것을 일체 멈추고 누에치고 보리 거둘 때까지 기다리게 하십시오.” 희종이 그의 말을 따라 칙령을 내렸으나 유사^{有司}가 이행하지 못했다.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43 궁시^{宮市}: 궁 안에서 민간의 물건을 사기 위해 만든 시장으로, 민간에서 시가^{時價}로 매입해오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환관들에 의해 사실상 백성들에게서 헐값에 강매해오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44 당 희종^{唐僖宗}: 862~888. 당 제18대 황제 이현^{李儼}으로, 재위 기간은 873년에서 888년이다. 유흥과 잡기에 빠져 정사를 일체 환관 전영자^{田令孜}에게 맡겼다. 왕선지^{王仙芝}와 황소^{黃巢}의 반란이 일어나 낙양^{洛陽}과 장안^{長安}이 함락되자, 전영자와 함께 성도^{成都}로 달아났다. 황소의 난이 평정된 후 장안으로 돌아왔지만, 지방은 번진의 절도사 출신 군벌들이 장악하여 지배하면서 중앙 정권의 영향력이 쇠퇴하면서 당의 몰락이 가속화되었다.

45 노휴^{盧携}: 824~880. 자는 지승^{子升}이며, 집현교리부터 시작하여 재상까지 역임하였다.

부附 경요부輕徭賦 요역과 세금을 줄이다

법조 法條

- || 전한 문제가 조조晁錯⁴⁶의 말을 따라 다음과 같이 조서를 내렸다. “짐이 직접 천하의 농업을 장려한 지 지금까지 10년이 되었으나, 들판이 더 개간되지 않았고 한 해만 오곡이 여물지 않아도 백성들은 굶주린 모습을 보인다. 나의 농민은 몹시 고달픈데 이들을 돌보는 관리가 아무도 없으니, 어떻게 권면할 수 있겠는가. 올해 전조田租를 절반으로 감면해 농민에게 부과하도록 하라.”
- || 전한 소제前漢昭帝⁴⁷가 각고령權酷令⁴⁸을 파기하니 현량賢良과 문학文學⁴⁹의 의논을 따른 것이다. 무제武帝 말기에 해내海內的 재정이 고갈되고 호구戶口가 절반으로 감소하였는데, 이 때에 이르러 부역을 가볍게 해주고 부세를 줄여 주어 백성과 더불어 휴식을 취하니, 백성이 풍족해져서 문제文帝와 경제景帝 시절의 경제력을 회복하였다.
- || 전한 원제前漢元帝⁵⁰ 때, 장신소부長信少府 공우貢禹⁵¹가 다음과 같이 상주上奏하였다. “여러 이궁離宮과 장락궁長樂宮의 호위는 그 태반太半을 감축하여 요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6월에 조서를 내려 “짐의 생각에는 백성들이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고 부모처자와

46 조조晁錯: 언변이 뛰어나고 박식하여 경제景帝가 태자太子 시절에 그를 “피주머니[智囊]”라고 칭찬한 바 있다. 경제가 문제의 뒤를 이어 즉위하자, 조조가 천자의 권력을 강화하고 제후와 공신을 약화하는 정책들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오초칠국吳楚七國의 난을 초래하였다. 경제는 반란을 일으킨 제후들을 회유하기 위해 조조를 처형하였다.

47 전한 소제前漢昭帝: 기원전 94~기원전 74. 전한 제8대 황제 유불릉劉弗陵으로, 재위 기간은 기원전 87년에서 기원전 74년이다. 무제의 여섯째 이들로, 무제의 유언에 따라 8살에 즉위하였다. 즉위 후 13년 동안 광광霍光이 정치를 보좌하였다.

48 각고령權酷令: 나라가 술을 전매하는 제도로, 전한 무제前漢武帝 천한天漢 3년(기원전 98)에 처음 시행되었다.

49 현량賢良과 문학文學: 책문策文을 통해 선발된 간관을 가리킨다.

멀리 떨어져 지내면서 급하지 않은 일에 힘쓰고 거처하지 않는 궁전을 지키고 있으니, 자주 가지 않는 감천궁甘泉宮의 궁위宮衛와 상림원上林園 궁관宮館의 관리를 중지하라.”라고 하였다.

■ 후한 광무제後漢光武帝가 다음과 같이 조서를 내렸다. “근래에 정벌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비용이 부족하였으므로 10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었는데, 지금 비축한 양이 조금 쌓였으니, 군郡과 국國으로 하여금 전조田租를 거둘 때 옛 제도와 같이 30분의 1을 거두게 하라.”

■ 후당 노왕後唐潞王⁵² 때의 일이다. 판삼사判三司 유후劉昫가 여러 해 동안 납부되지 않은 세금의 수를 조사하라고 명하였다. 유후가 그 가운데 갚을 수 없는 자들은 모두 견감蠲減하거나 면해 주길 주청하였다. 그러자 노왕이 조령詔勅을 내려 장흥長興 연간(930~933) 이전에 호부戶部와 여러 도道에서 납부하지 못한 338만의 조세에 대해서 장부를 불태우고 전부 거두지 말라 하니, 가난한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 후주 세종後周世宗이 시신侍臣에게 “근래 조정에서 곡식과 비단을 거두어들일 때, 대개 수확과 방적紡績이 끝나기도 전에 거둔다.”라고 하고, 삼사에 조서를 내려 “지금부터 여름 세금은 6월, 가을 세금은 10월부터 걷어라.”라고 하니, 백성들이 편하게 여겼다.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50 전한 원제前漢元帝: 기원전 75~기원전 33. 전한 제11대 황제 유석劉奭으로, 재위 기간은 기원전 49년에서 기원전 33년이다. 현명하고 재주가 뛰어나고 유학儒學을 좋아하였다. 즉위한 후에 유교를 중시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지나치게 유교에 심취하여 현실주의자였던 아버지 선제宣帝와 달리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주의적인 정책을 실시하여 재정을 악화시키고, 환관과 외척이 번갈아 정권을 장악하게 하는 등 국정을 혼란하게 하였다.

51 공우貢禹: 기원전 127~기원전 44. 자는 소옹少翁이며, 간대부諫大夫, 어사대부 등을 역임하였다. 사치와 낭비를 멈추고 백성의 부역을 경감할 것을 여러 차례 건의하여 실행함으로써 민생 안정에 기여하였다. (『漢書』「貢禹傳」)

52 후당 노왕後唐潞王: 885~937. 후당 폐제後唐廢帝 이종가李從珂로, ‘말제末帝’라고도 불린다. 노왕은 즉위 전의 봉호封號이다. 명종明宗의 양자養子로, 명종의 친아들인 민제閔帝 이종후李從厚가 즉위하자 군대를 일으켜 폐위시키고 자신이 제위에 올랐다. 후에 자신의 매부 석경당石敬瑭이 일으킨 내란에 패배하여 자살하였다.

- || 북송 진종⁵³이 사자를 보내 천하의 관리와 백성들이 미납한 조세를 조사하게 하고 모두 면제해 주었으니, 면제해 준 미납 조세가 1천여 만이었다. 【이상은 『속자치통감』에 보인다.】
- || 명 태조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라를 보존하는 방법은 백성들을 부유하게 해 주는 것이다. 백성이 부유하면 친애하게 될 것이고 가난하면 이반할 것이니, 공실의 기용과 음식과 의복이 과하거나 사치스러워 재산을 축내고 백성에게 피해를 끼칠까 걱정된다.”
- || 명 태조 때의 일이다. 근신⁵⁴이 “재정을 잘 운용하여 국가의 재용⁵⁵을 넉넉히 해야 합니다.”라고 하자, 태조가 말하였다. “하늘과 땅이 재물을 나게 하여 백성을 기르니, 군주된 자는 백성을 기르는 것에 힘써야 한다. 사치와 낭비를 절제하고 세금을 줄여도 백성에게 손해를 끼칠까를 걱정하는데, 무겁게 세금을 걷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옛날에 한 무제⁵⁶는 상홍양⁵⁷을 기용⁵⁸하고 송 신종⁵⁹은 왕안석⁶⁰을 기용⁶¹하여 재정을 운용하니, 소인이 앞다투어 진출하여 천하가 소란스러워졌다. 이를 경계로 삼아야 할 것이다.”

53 북송 진종⁵³北宋眞宗: 968~1022. 북송 제3대 황제 조항⁵⁴趙恒으로, 재위 기간은 997년부터 1022년이다. 태종⁵⁵太宗의 셋째 아들로, 처음에 한왕⁵⁶韓王과 양왕⁵⁷襄王, 수왕⁵⁸壽王에 봉해졌다가 태자가 되었다. 즉위 후 유학을 장려하여 각지에 공자⁵⁹孔子의 사원을 세우게 하고 이항⁶⁰李沆을 재상으로 기용하여 ‘함평지치⁶¹咸平之治’라 불리는 태평성세를 이룩하였다. 요⁶²遼가 남하하자 친정⁶³親征을 하였고, 오랜 전쟁 끝에 ‘형’인 송이 ‘아우’인 매년 은과 비단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전연⁶⁴澶淵에서 강화를 맺었다.

54 한 무제⁵⁶漢武帝는 상홍양⁵⁷桑弘羊을 기용: 전한 무제가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상홍양을 기용하여 국고를 늘린 것을 가리킨다. 상홍양은 소금, 철, 술 등의 국가 전매를 실시하고, 균수법⁵⁸均輸法과 평준법⁵⁹平準法을 시행하여 유통 구조를 개선하였으며, 일종의 재산세인 산민전⁶⁰算緡錢을 자산가들에게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고를 크게 늘렸다. 그러나 주공⁶¹周公의 관직을 훔치고, 돈에 미혹된 안물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55 송 신종⁵⁹宋神宗은 왕안석⁶⁰王安石을 기용: 신종이 거란, 서하⁶¹西夏와의 오랜 전쟁으로 재정이 궁핍해지자 왕안석을 기용하여 세법을 혁신함으로써 재정을 확보하려 한 것을 가리킨다. 왕안석은 봄, 여름에 백성에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가을에 곡식으로 갚게 하는 청묘법⁶²淸苗法, 토지를 다시 측량하여 누락되거나 탈세된 세수를 확보하는 방전균세법⁶³方田均稅法, 조지에서 물자를 대량 사들여 물가를 조절하는 시역법⁶⁴市易法 등을 고안하여 시행하려 하였으나 보수파의 강경한 반대로 인해 시행하지 못하였다.

부附 진제賑濟 백성을 구휼하다

법조 法條

- || 주 무왕周武王이 상휼을 이기고 남궁괄南宮适⁵⁶에게 명하여 녹대鹿臺⁵⁷의 재물을 풀고 거교鉅橋⁵⁸의 곡식을 내어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구휼하게 하였다. 【『봉주강감회찬』에 보인다.】
- || 수隋의 탁지상서度支尙書 장손평張孫平이 다음과 같이 주청하였다. “가을마다 백성들로 하여금 조와 보리 1섬 이하를 내게 하되 빈부에 따라 차이를 두고, 해당 사社⁵⁹에 저장하고 사사社司에게 맡겨 단속시켜서 흉년에 대비토록 해야 하니, 이를 ‘의창義倉’이라 하십시오.” 수 문제隋文帝가 이를 따라 군현에 조령詔命을 내려 의창을 설치하게 하였다.
- || 당 현종唐玄宗이 다음과 같이 명하였다. “이전에 여러 주에서 기근이 들면 모두 아뢰어 답변을 받은 후에 비로소 창고를 열어 진휼하였으니, 길이 아주 먼 외딴 지역은 어떻게 구제하겠는가. 지금부터는 주현州縣의 장관長官과 채방采訪⁶⁰에게 맡겨 사정을 살피고 배급한 뒤에 아뢰게 하라.”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 || 송 태조가 명을 내려 주현에 의창義倉을 설치하게 하고 조령詔命을 내렸다. “많은 일이 있는 뒤로 의창이 차츰 폐지되었다. 어떤 해에는 너무 적게 거두어 예비하지 못하니,

56 남궁괄南宮适: 주周의 공신功臣으로, 태전太顛, 굉요闢天, 산의생散宜生과 함께 주 문왕周文王의 ‘사우四友’ 중 한 명이며, 무왕武王을 보필한 10인의 훌륭한 신하 ‘십란+亂’ 중 한 명이기도 하다.

57 녹대鹿臺: 「개언로開言路」 법조 33번 각주 참조.

58 거교鉅橋: 상 주왕商紂王이 만든 곡식 창고이다.

59 사社: 한대漢代부터 사용된 지방 행정 단위로, 수대隋代에는 25가구를 1사로 삼았다.

60 채방采訪: 채방처치사采訪處置使의 준말로, 각 주현을 관리, 감독하는 관직이다. 당唐 초기의 ‘안찰사按察使’에서 온 것으로, 현종 때는 ‘채방처치사’, 숙종 때는 ‘관찰처치사觀察處置使’라 하였다.

마땅히 여러 주에 명을 내려 소속 현마다 의창을 설치하고, 지금부터 관^官에서는 매년 두 번의 세금을 거둘 때 1섬당 1말을 따로 걷어 저장하여 흉년에 거두거나 빌려주는 것을 대비하라.”

- || 송 태조 때 조빈曹彬⁶¹이 강남을 평정하였다. 승전보가 이르자 신하들이 칭송하고 하례하였는데, 태조는 눈물을 흘리면서 “천하의 현이 나뉘어 백성들이 그 화를 입었다. 성을 공격할 때 틀림없이 창칼에 다치거나 죽은 자가 있을 것이니, 참으로 슬프구나.”라고 하고, 명을 내려 쌀 10만 섬을 내어 진휼하게 하였다. 【이상은 『속자치통감』에 보인다.】
- || 명 성조가 요광효姚廣孝 등에게 명하여 소주蘇州와 호주湖州를 진휼하게 하고, 출발할 때 그들에게 유시諭示하였다. “군주의 옷 한 벌, 식사 한 끼는 모두 백성이 마련해 준 것이거늘, 백성이 곤궁하여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없는데 군주가 어찌 구휼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 명 성조가 황태자를 불러 북경에 오게 하였는데, 태자가 추현을 지나다가 굶주린 백성이 풀을 뜯는 모습을 보고서 몹시 안타까워하였다. 또 민가에 들어가 백성들을 살펴보니, 남녀가 모두 여기저기 기운 옷을 입었고 아궁이의 솔은 엮어져 있었다. 이에 탄식하면서 “백성들의 아픔이 위로 알려지지 못해 이 지경에 이르렀구나.”라고 하고, 환관에게 명하여 돈을 주게 하였다. 마을의 장로들을 불러 고충을 묻고 자신이 먹을 것을 그들에게 내렸으며, 산둥山東의 포정사布政使 석집중石執中에게 칙령을 내려 관아의 곡식을 내어 진휼하게 하였다. 태자가 입궐하여 알현한 뒤 이를 아뢰자, 성조가 말하였다. “잘했다. 옛날에 범중엄의 아들이 보리를 실은 배를 가지고 아버지의 벼를 구제하기도 하였는데,⁶² 하물며 백성은 나의 자식이니 더 말할 것도 없다.” 【이상은 『명사강목』에 보인다.】

61 조빈曹彬: 931~999. 자는 국회國華이다. 태조를 도와 천하를 안정시켰다. 촉蜀을 정벌하고 남당南唐을 이겼으나 한 사람도 함부로 죽이지 않았다. 노국공魯國公에 봉해졌고 죽은 뒤에 제양군왕濟陽郡王에 봉해졌다. (『宋史』 「曹彬傳」)

62 옛날에 … 하였는데: 범중엄范仲淹의 아들 순인純仁이 아버지의 명을 받아 보리 5백 섬을 배에 실어오다가, 아버지의 벗 석만경石曼卿을 만나 그의 딱한 처지를 듣고서 보리를 모두 내어준 일을 말한다. ‘보리를 실은 배’라는 뜻의 ‘맥주麥舟’가 부의賻儀를 가리키는 말이 된 것은 여기에서 유래하였다.

근안 謹按

삼가 살펴보건대, 옛 어진 군주는 백성을 아끼 보살피듯이 하였습니다. 대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자식이 질병이나 굶주림이나 추위에 시달리면 자기가 당한 것보다 더 걱정하고 슬퍼하여, 음식을 먹이고 약으로 치료하는 데 온 힘을 다하여 하지 않는 일이 없으니, 이는 진실로 인정상 당연한 바입니다. 백성의 부모가 되어 백성에게 정사를 행할 때도 아프면 치료할 방법을 생각하고 굶주리면 구제할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더하여 요역과 세금을 줄여 삶을 안정시키고 본업을 즐길 수 있게 해준 뒤에야 비로소 아끼처럼 보살피는 방법을 행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역대 제왕은 비록 애민의 마음을 지녔더라도 애민의 요령을 얻은 자는 드물었습니다. 조서에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넘쳐나지만 대개는 형식적인 법제에 그치고 실질적인 혜택에 이르지 못하여, 생업을 마련해 줌에 부모를 섬기고 처자식을 기르기에 부족하고 진흙을 행함에 위에서 떨어 아래에 보태주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백성을 보살피는 왕도 정치가 말세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백성 돌보는 일을 중시하여, 보듬고 보살피는 어짊은 열성제聖께서 한결같이 으셨습니다. 태종께서는 농사에 힘쓰길 장려하셔서 중국의 농서農書를 번역하여 안팎에 배포하셨고,⁶³ 공물을 바치는 폐해를 염려하여 궁중 마구간의 말과 공납할 솥을 줄이셨습니다.⁶⁴ 세종께서는 땅을 6등급, 해를 9등급으로 구분하여⁶⁵ 농민에게 피해가 없게 하시고, 의창에 갇지 않은 곡식을 경감하고⁶⁶ 궐내에 날마다 제공되는 물품을 줄이셨습니다. 세조께서는 세금 거두는 방식을 정하여 옳고 나르는 수고로움을 공평하게 부담시키셨

63 태종께서는 … 배포하셨고: 태종이 농사를 장려하기 위해 우희열禹希烈, 이은李殷, 한옹韓雍 등을 각 도에 파견하여 농사일을 감독하게 하고, 원元에서 편찬된 『농상집요農桑輯要』를 번각翻刻하여 반포하였다. (『太宗實錄』 14년 12월 6일)

64 공물을 … 줄이셨습니다: 태종 때 상의원尙衣院의 다림질을 위한 솥의 양은 절반으로 줄이고, 내사복內司僕의 말은 40필로 한정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太宗實錄』 15년 8월 6일)

65 땅을 … 구분하여: 고려시대에는 전국을 셋으로 구분하여 토지의 등급과 수세액을 정하고 매년 가을에 수령이나 향리가 작황에 따른 실적을 감안하여 세금을 확정하는 답험손실법踏驗損實法을 시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부정이 많이 발생하였다. 이에 세종은 작황에 관계없이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정액제定額制를 추진하였으나, 이 또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여 최종적으로 토지의 비옥도는 6등급, 한 해의 풍흉豐凶은 군현 단위로 9등급으로 나누어 세금을 산정하고 거두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16세기에 이르러서는 향리들이 하하년下下年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관행이 자리 잡아 연분9등법이 사실상 무의미해지게 되었다. (『世宗實錄』 26년 11월 13일)

66 의창에 … 경감하고: 세종은 의창義倉에서 백성들에게 빌려준 양곡 가운데 신축년(1421) 이전에 빌려주어 돌려받지 못한 것은 탕감해준 일이 있다. (『世宗實錄』 8년 12월 1일)

고, 인종께서는 밭 갈고 길쌈하는 모습을 그리게 하여 그 힘든 실상을 살펴보셨습니다. 선조께서는 기전(畿甸)이 쑥대밭이 되었음을 지적하시면서 유사(有司)가 빌려준 양곡을 재촉하여 거둬들이는 것에 대해 나무라셨고,⁶⁷ 인조께서는 호부(戶部)의 곡식을 털어 가난한 집에서 내야 할 세금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효종 때는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대동법(大同法)을 시행하셨고, 농사를 권장하기 위해 수차(水車)를 만들게 하셨으며, 내사(內司)의 염분(鹽盆)을 내주어 남쪽 백성의 힘을 덜어주고 내국(內局)의 약을 지어 보내 북쪽 백성의 병을 낮게 하셨습니다. 현종 때는 농사를 권장하고 조세를 경감하는 조령(詔令)이 없었던 해가 없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일은 신해년의 큰 진흙이니, 내탕고에 비축된 재물을 모두 써서 곤궁한 백성들을 구제하셨습니다. 숙종 때는 폐단을 고치고 기근을 구휼한 정사가 이루다 기록할 수 없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일은 임종하실 적에 따로 내은(內銀)을 내어 능역(陵役)을 조성하려 세금 거두는 일을 막은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근본이 오랫동안 지켜지고 백성의 삶이 안정된 것은, 모두 조종조의 깊은 어짐과 두터운 은택이 뻗속까지 스며들어 있는 덕분이 아니겠습니까.

아, 군주와 백성의 분수는 비록 엄연히 구별되나 고락(苦樂)의 의리는 당연히 서로 연관되어 있으니, 백성이 좋아하는 것을 군주도 좋아하고, 백성이 싫어하는 것을 군주도 싫어하는 법입니다. 생업을 잃는 것은 백성이 싫어하는 것이니 백성을 위해 싫어하고, 마음 놓고 편히 삶은 백성이 좋아하는 것이니 백성을 위하여 좋아합니다. 밤낮으로 근심하고 수고하면서 오직 백성만 생각하여, 작은 일 하나나 자잘한 법령 하나라도 백성을 해칠 수 있다면 폐해가 작다고 하여 시행해서는 안 되며, 백성을 이롭게 할 수 있다면 혜택이 작다고 하여 시행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백성의 원망이 있는 일은 궁방에 관계되어도 흔들리시는 일이 없어야 하고, 백성의 근심과 관련된 것은 권귀(權貴)와 관계되어도 봐주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세금을 줄이고 굶주림을 진휼함에 본심을 미루어 실효성 있는 정사를 행한다면, 가난한 이들이 어깨를 쉴 수 있는 기쁨이 있고 흉년에도 골짜기에서 굶어 죽는 환난이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다면 천명을 길이 보존하고 기틀을 공고히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동토(東土)의 창생은 조종께서 맡기신 것이고, 곤궁한 이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도 우리 조종께서 전수하신 것입니다. 부모가 사랑한 것을 나 또한 사랑하는 것이

67 선조께서는 … 나무라셨고: 선조가 호조로부터 백성에게 빌려준 양곡의 회수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를 독촉하여 거두지 말고 다음 해에 낼 수 있게끔 하라고 명하였다. (『宣祖實錄』 26년 10월 21일)

효자의 도리이니, 조종께서 돌보던 적자赤子를 어찌 위무하고 구휼하여 선대의 뜻을 잊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유념하고 유념하소서.



근정사勤政事

정사를 부지런히 하다

법조 法條

- || 하夏の 우임금은 즉위하여 한 번 밥을 먹는 동안에 열 번 일어나고 한 번 머리를 감는 동안에 세 차례 머리카락을 부여잡을 만큼 정사에 힘써, 천하의 백성들을 위로하였다. 【『봉주강감회찬』에 보인다.】
- || 초 장왕楚莊王¹이 국민國人을 다스리며 “민생을 안정시키기는 쉽지 않고 재앙은 기약 없이 닥치니,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훈계하였으며, ‘약오若敖와 분모蚘冒가 허름한 수레를 타고 누추한 차림으로 산림을 개척한 일’²로 훈계하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었다. “민생은 부지런함에 달려있으니 부지런하면 빈곤해지지 않는다.”라는 잠언箴言을 지어 경계하였다. 【『춘추좌씨전』에 보인다.】
- || 전한 선제前漢宣帝는 여염閭閻에서 살다가 즉위했기 때문에 백성의 삶이 고단함을 알았다. 정사를 직접 하게 되자 정신을 가다듬고 다스려 5일에 한 번 정사를 들었다. 승상 이하의 신하가 직책을 수행하고 그 일에 대해 상주하면 공적과 능력을 고과考課하니, 추기樞機가 치밀해지고 법식이 갖추어졌다.

1 초 장왕楚莊王: 춘추 시대 초의 군주로, 성씨는 미뽕, 씨씨는 웅熊이며, 이름은 려侶이다. 즉위한 지 3년 동안 정사를 돌보지 않고 술과 음악에 빠져 지내면서 조정의 상태를 관망하다가, 오거伍舉와 소종蘇從의 충간忠諫을 들은 뒤 태도를 바꾸고 국정에 힘써 패자霸者의 지위에 올랐다.

2 약오若敖와 … 일: 약오와 분모는 모두 초楚의 선군先君으로, 근검절약하여 국토를 개척한 것을 말한다.

- 남조南朝 진 문제陳文帝³는 가난과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괴로움과 고단함을 알았다. 밤마다 급히 쪽지로 보고된⁴ 바깥일을 가져다 처리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았는데, 전중殿中에서 쪽지를 교체하는 자에게 칙명을 내려, 반드시 섬돌 위로 쪽지를 던질 때, 종소리를 내게 하고 “내가 자고 있더라도 놀라 깨어나게 하라.”라고 하였다.
- 당 태종唐太宗은 매일 재상과 여러 신하를 만나 정사에 대해 두루 논의하고 한참이 지나서야 파하였다. 예전에 대제관待制官⁵을 설치했으나 소대召對한 적이 없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누차 불러 정사에 대해 물었다. 철조輶朝와 방조放朝를 모두 우일偶日⁶에 하게 하니,⁷ 조정의 안팎이 일제히 서로 축하하며 태평성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 당 헌종唐憲宗이 재상과 치도治道를 논의하고 있었는데, 날이 저물었는데도 더위가 극심하여 헌종의 옷이 땀으로 젖었다. 재상이 헌종의 옥체가 상할까 염려하여 물리나겠다고 청하자, 헌종이 이를 만류하며 말하였다. “내가 금중禁中에 들어가면, 함께 머무는 자들은 궁인과 환관뿐이다. 경들과 함께 정사를 다스리는 요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거우니, 전혀 피곤한 줄을 모르겠다.”
- 당 헌종이 연영전延英殿에 나오니, 이길보李吉甫⁸가 “천하가 태평해졌으므로 폐하께서는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이강李絳⁹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한

3 진 문제陳文帝: 522~566. 남조 진의 군주 진찬陳蒨으로, 재위 기간은 559년에서 566년이다. 시흥소열왕始興昭烈王 진도담陳道譚의 장남이며, 무제武帝의 조카로, 무제의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 백성의 고통을 헤아려 검소한 생활을 했다. 사리분별에 뛰어났고 신하들의 간악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았다. 재정이 부족해지자 소금과 술을 국가에서 전매하게 하였다.

4 급히 보고된: 원문의 “刺聞”를 번역한 말이다. 한밤중에 급히 알려 경계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궁중의 작은 문(闕) 사이로 쪽지 등을 던져(刺) 보고한 것이다.

5 대제관待制官: 당 태종 때 시작된 관명으로, 경관京官 중 5품 이상의 관원을 매일 교대로 중서성과 문하성에 대기하여 천자의 고문 역할을 하게 하였다. 이외에도 초척詔勅을 작성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6 우일偶日: 천간天干에 을乙, 정丁, 기己, 신辛, 계癸가 들어가는 날로, 모두 짝수에 속하므로 우일이라고 하였다. 유일柔日이라고도 한다.

7 철조輶朝와 … 하니: 철조는 국상이나 큰 번고가 있을 시에 임시로 조회를 정지하는 일이며, 방조放朝는 무더위나 장마철에 조회를 쉬는 것이다. 본래 천자는 기수奇數, 홀숫날의 날에만 정사를 보게 되어 있는데, 태종이 정사를 자주 보려고 조회를 정지하는 일을 우일偶日, 짝숫날에 하도록 정례화한 것이다.

8 이길보李吉甫: 758~814. 자는 흥헌弘憲, 시호는 충의忠懿이다. 평장사, 집현전 대학사, 감수국사監修國史를 지낸 뒤 조국공趙國公에 봉해졌다. 국조고실國朝故實에 정통했다. 저서에 『원화군현지元和郡縣志』, 『육대략六代略』, 『국계부國計簿』, 『고금문집략古今文輯略』, 『고금설원古今說苑』 등이 있다. (『舊唐書』「李吉甫傳」)

문제漢文帝 때, 병장기에는 칼날이 없고 집마다 여유롭고 사람마다 풍족하였는데도 가의賈誼는 오히려 ‘쌓아 놓은 땀감 아래에 불을 놓아 둔 격’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법령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곳¹⁰은 하남과 하북 50여 주州이고, 견용犬戎의 누린내가 경涇과 농隴 지방에 근접하고 있습니다.¹¹ 게다가 수재와 한재가 때로 일어나 창고가 텅 비었으니, 이는 폐하께서 해가 뜨기 전에 옷을 입고 해가 저문 뒤에 밥을 드셔야 할 시기입니다. 어찌 태평하다고 하여 갑자기 즐거움을 누린단 말입니까.” 헌종이 기뻐하며 물리가 좌우에게 “길보는 나를 기쁘게 하려고 아침만 한다. 이강과 같은 자가 참된 재상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 북송 인종北宋仁宗 때, 손석孫奭¹²이 「무일도無逸圖」¹³를 올리니 인종이 강독각講讀閣에 옮겨 놓으라고 명하였다. 또 이영각邈英閣과 연의각延義閣 두 전각을 지은 뒤, 조서를 내려 채양蔡襄¹⁴에게 전각의 병풍에 「무일」을 쓰게 하였다. 【『속자치통감』에 보인다.】

■ 명 세종明世宗 때, 태학사太學士 왕오王鏊¹⁵가 소를 올려 정사에 힘쓸 것을 청하였다. “지금 조회하는 예는 서너 시간에 그칠 뿐입니다. 어리석은 신은 생각건대, 옛 내조內朝의 법으로 돌아가는 것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무洪武 연간에 송렴宋濂¹⁶과 유기劉

9 이강李絳: 「개언로開言路」 법조法條 50번 각주 참조.

10 지금 … 곳: 저본의 원문에서 생략한 「자치통감」 「당기唐紀」의 “法令所不能制者”를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11 견용犬戎의 … 있습니다: 견용은 서쪽 오랑개의 별칭으로, 여기서는 토번吐蕃과 회흘回鶻을 가리킨다. 경涇은 감숙성甘肅省 경천현涇川縣이며, 농隴는 섬서성陝西省 농현隴縣이다. 서융의 무리가 경, 농지역을 자주 침범하여 봉화를 올리는 일이 잦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12 손석孫奭: 962~1033. 자는 중고宗古이다. 구경九經으로 급제하고, 이후 국자감직국監直講, 용도각대제龍圖閣待制 등을 역임하였다. 한림시강학사翰林侍講學士로 『진종실록眞宗實錄』 편찬에 참여하였다. 형병邢昺, 두호杜鎬 등과 함께 여러 경經의 「정의正義」와 「장자」, 「이아」의 석문釋文을 교정하였으며, 조기趙岐의 「맹자주孟子注」를 교정하고 육덕명陸德明的 「경전석문經典釋文」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였다. 그 밖에 「경전휘언經典徵文」, 「오경절해五經節解」 등 다수의 저술이 있으나 현재 전하지 않는다.

13 무일도無逸圖: 손석孫奭이 「서경」 「무일無逸」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서 인종에게 올린 것이다. 「무일」은 주공周公이 성왕成王에게 편히 놀지만 말고 농사일의 어려움을 알아야 한다고 훈계한 내용이다.

14 채양蔡襄: 「개언로開言路」 법조 54번 각주 참조.

15 왕오王鏊: 1450~1524. 자는 제지濟之이다. 시강학사侍講學士, 강관講官, 호부상서, 문연각대학사文淵閣大學士를 지냈으나, 유근劉瑾의 전횡을 막지 못했다고 자책하여 벼슬에서 물러나 학문에 전념하였다. 『효종실록孝宗實錄』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저서에 『수계필기守溪筆記』, 『진택기문農澤紀聞』, 『진택장어農澤長語』, 『진택집農澤集』, 『고소지姑蘇志』, 『춘추시명春秋詞命』, 『본초단방本草單方』 등이 있다.

基¹⁷, 영락永樂 연간에 양영楊榮¹⁸과 양사기楊士奇¹⁹ 같은 자들은 날마다 좌우에서 강론했으며, 건의蹇義²⁰와 하원길夏原吉²¹ 등은 항상 편전에서 물음에 대답하고 아뢰었습니다. 지금 문화전文華殿과 무영전武英殿에서 3일 혹은 5일에 한 번 대신을 만나보시고, 시종侍從과 대간臺諫이 입시하여 교대로 일을 보고하게 하고, 결정하기 어려운 일은 대신과 만나서 의논하신다면, 폐하께서 비록 구중궁궐에 계시지만 천하의 일이 모두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세종이 우조優詔로 답하였다.

■ 명 신종明神宗²²이 당 현종唐玄宗이 근정루勤政樓에서 안록산安祿山에게 연회를 베푼 일에 대해 장거정張居正과 이야기하였다. 신종이 말하였다. “누각 이름은 ‘근정勤政’인데 놀며 즐긴 것은 왜인가?” 장거정이 말하였다. “지난 시대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세종世宗께서는 즉위 초반에는 무일전無逸殿을 짓고 농경을 살펴 권면하시더니, 말년에는 도교와 양생술을 숭상하여 치평治平의 대업이 또한 침체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대보잡大

16 송렴宋濂: 1310~1380. 자는 경렴景濂, 호는 잠계潛溪이다. 원元 말기 전란을 피해 웅문산龍門山에 은거하여 저술에 전념하다가, 태조太祖가 세력을 잡은 뒤에 부름을 받아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 태조의 고문으로서 명의 의식儀式과 제도를 제정하는 데 기여하였다. 유기劉基, 고계高啓와 더불어 명초시문삼대가明初詩文三大家로 일컬어진다. 저서에 『송학사전집宋學士全集』, 『포양인물기浦陽人物記』 등이 있다.

17 유기劉基: 「애민생愛民生」 법조 30번 각주 참조.

18 양영楊榮: 1371~1440. 자는 만인勉仁이다. 혜제惠帝 때 진사시에 합격하여 한림원 편수에 임명되었으며, 성조成祖 때 문연각 대학사에 올랐다. 성조, 인종仁宗, 선종宣宗, 영종英宗 4대를 섬겼으며, 양사기楊士奇, 양부楊溥와 함께 ‘삼양三楊’으로 칭송되었다. 저서에 『양문민집楊文敏集』, 『후북정기後北征記』 등이 있다.

19 양사기楊士奇: 1365~1444. 이름은 우훤이며, 사기士奇는 자이다. 혜제惠帝 건문建文 초에 천거를 받아 한림에 들어가 『태조실록太祖實錄』 편찬에 참여했다. 청렴하고 유능하여 5대에 걸쳐 40여 년을 관직에 있었는데, 그 가운데 21년을 수부보輔로 지냈다. 특히 선종을 잘 보필하여 선정을 펼쳤다. 현신이라 일컬어져 양영楊榮, 양부楊溥와 함께 삼양三楊으로 불렸다. 저서에 『동리전집東里全集』, 『문연각서목文淵閣書目』 등이 있다.

20 건의蹇義: 1364~1435. 초명은 용평, 자는 의지宜之이다. 중서사인中書舍人, 이부상서吏部尚書, 보태자감국輔太子監國 등을 역임했다. 하원길과 함께 『태조실록太宗實錄』을 감수하였으며, 인종仁宗을 지지하여 제위에 올랐다.

21 하원길夏原吉: 1366~1430. 자는 유철維詰이다. 향전鄉薦으로 태학에 들어갔으며, 황제의 조령문을 필사하는 직책에 선발되어 태학생들의 비웃음을 사기도 하였다. 태조太祖가 그를 호부戶部의 주사主事로 임명하였는데, 번쇄한 업무를 조리 있게 잘 처리하여 인정을 받았다. 다섯 황제를 섬기면서 많은 치적을 쌓았고 중신重臣으로서 인종仁宗과 선종宣宗을 보좌하여 ‘인선지치仁宣之治’를 이루는 데 이바지하였다. (『明史』 「夏原吉傳」)

22 명 신종明神宗: 1563~1620. 명 제13대 황제 주익군朱翊鈞으로, 재위 기간은 1572년에서 1620년이다. 연호를 따라 ‘만력제萬曆帝’로 불린다. 목종穆宗의 셋째 아들로, 10세에 즉위하였다. 장거정에게 국정을 맡겨, 군비를 정비하고 토지를 측량하고 조세법으로 일조편법一條鞭法을 시행하는 등 개혁 조치를 시행하여 경제 발전과 민생의 안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장거정이 죽은 뒤, 국정을 돌보지 않고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서 민란이 일어났으며, 태자책봉 문제로 당쟁이 격화되어 나라가 점차 쇠퇴하게 되었다.

寶箴」²³에서 ‘백성이 그 처음을 좋아하나 그 끝이 어떠할지 보장할 수 없다.’라고 한 것 입니다.” 신종이 그의 말을 가납하였다. 【이상은 『명사강목』에 보인다.】

계조 戒條

|| 하 걸왕夏桀王이 연못을 파고 어두컴컴한 궁을 만들어 남녀와 뒤섞여 지내며 오랫동안 조회를 열지 않았다. 태사太史 종고終古가 나라의 도록圖錄과 법전을 가지고 와 올면서 간언하였으나 걸왕이 듣지 않으므로 결국 상商으로 달아났다. 걸왕은 경궁瓊宮과 요대瑤臺를 짓고, 백성들의 재물을 쏟아 부어 고기로 산을 만들고 포脯로 숲을 만들었다. 술로 채운 연못은 배를 띄울 수 있었으며, 술지게미 제방은 10리를 바라볼 수 있을 정도였다. 한 번 북을 치면 소처럼 고개를 쳐박고 마시는 자가 3,000명이었으니, 말희妹喜²⁴가 기뻐 웃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 상 주왕商紂王이 궁중에 아홉 개의 시전을 만들고 밤을 새워 술을 마시니, 백성들이 원망하였다. 【이상은 『봉주강감회찬』에 보인다.】

|| 후한 영제後漢靈帝²⁵가 궁중에 상점을 벌여두고 채녀采女들에게 서로 번갈아 물건을 팔게 하니, 채녀들이 도둑질하고 다투었다. 영제는 장사꾼의 옷을 입고 그들과 어울려 놀았다. 또 서원西園에서 개와 놀면서 개에게 진현관進賢冠²⁶을 씌우고 인끈을 채워주기도 하

23 대보잠大寶箴: 당탕의 장운고張蘊古가 지은 잠명箴銘으로, 태종太宗이 즉위한 초기에 규감規鑑이 되기 위해 올린 것이다. 대보大寶, 즉 천자의 자리를 지키기가 어려움을 경계한 내용이다.

24 말희妹喜: 걸왕이 유씨宓施氏를 정벌하고 얻은 미인이다. 걸왕이 말희를 총애하여 그녀가 원하는 것은 모두 들어주었는데, 경궁과 요대를 짓고 술과 고기로 향락을 벌여 국력을 극도로 피폐시켰다.

25 후한 영제後漢靈帝: 156~189. 후한 제12대 황제 유광劉宏으로, 재위 기간은 168년에서 189년이다. 장제 유달劉旦의 현손으로, 환제桓帝가 죽은 뒤에 외척 두무두武에 의해 옹립되었다. 두무는 이응李膺을 비롯한 청류당淸流黨에 속한 사람들을 등용하여 환관 세력을 물리치고자 하였으나, 이를 알아차린 환관들에 의해 거센 역습을 받아 실패하게 된다. 이에 두무는 자살하고, 이응, 두밀杜密 등 100여 명이 살해당하였으며, 600여 명이 금고형에 처해져 출사할 수 없게 되면서 환관들의 전횡을 막을 수 없게 되었다. 심상시+常侍에 의해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잇따른 재해와 황건적의 난이 이어지면서 한이 몰락하였다.

26 진현관進賢冠: 한대漢代에 황제를 조현할 때 쓰던 일종의 예모禮帽로, 문신이 착용하였다.

었다. 또 네 마리의 나귀가 끄는 수레를 영제가 직접 고삐를 잡고 돌아다녔는데, 경사의 사람들이 너도나도 이를 따라했으므로 나귀 값이 말과 비슷해졌다.

■ 남조南朝 진 후주陳後主 자신은 임춘각臨春閣에 거처하고, 장 귀비張貴妃²⁷는 결기각結綺閣에 거처하고, 공 귀빈龔貴嬪, 공 귀빈孔貴嬪 두 귀빈은 망선각望仙閣에 거처하였다.²⁸ 궁인 가운데 글재주가 있는 자를 여학사女學士로 삼고, 상서尚書 공범孔範을 압객狎客²⁹으로 삼았다. 후주는 술을 마실 때마다 여러 비빈과 여학사들로 하여금 압객과 함께 부와 시를 짓게 하고, 그 중 특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뽑아 새 곡조에 입히니, 「옥수후정화玉樹後庭花」,³⁰ 「임춘락臨春樂」³¹ 등이 그 곡이다. 후주는 정사에 태만하였으니, 백관의 계주啓奏가 모두 환관 채탈이蔡脫兒와 이선도李善度를 통해서 올라오면 후주가 은낭隱囊³²에 기대어 장 귀비를 무릎 위에 앉혀놓고 함께 정사를 결정하였다.

■ 당 중종唐中宗이 낙양洛陽의 남루南樓에 행차하여 발한호희潑寒胡戲³³를 구경하였다. 여원태가 “잘 도모하면 제때에 추운 법인데, 하필이면 발가벗고 물을 뿌리며 거리에서 북을 치고 춤을 추어 구한단 말입니까.”라고 상소하였다. 상소문이 올라갔으나, 받아들여지

27 장 귀비張貴妃: 남조 진 후주의 비인 장여화張麗華이다. 후주의 총애를 입어 후주의 무릎에 늘 안겨 정사를 결단하여 국정을 문란하게 하였다. 후주와 함께 수군隋軍에게 참살되었다.

28 진 후주陳後主 … 거처하였다: 남조 진 후주가 광소전光昭殿 앞에 임춘각, 결기각, 망선각을 세우고 자신과 장 귀비, 공 귀빈龔貴嬪, 공 귀빈孔貴嬪이 거처하면서 세 전각을 복도로 이어 왕래하였다. 또 왕 미인王美人 등 10여 인을 번갈아 그곳에 들어오게 하여 주색으로 날을 보냈다. (『南史』「張貴妃傳」)

29 압객狎客: 주인과 스스럼없이 가깝게 지내는 손님을 말한다. 진 후주가 정무는 돌보지 않고 강총江總, 공진현共陳暄, 공범孔範, 왕원王瑗 등 10여 인과 함께 후원에서 연회를 즐기며 염정시를 쓰니, 당시에 그들을 압객이라고 하였다. (『陳書』「江總傳」)

30 옥수후정화玉樹後庭花: 남조 진 후주가 궁중연회에서 지은 노래로, 그 내용은 장귀비와 공귀빈孔貴嬪의 자색을 찬미한 것이다. 가사가 방탕하고 곡이 지나치게 구슬퍼서 망국지음亡國之音으로 불린다.

31 임춘락臨春樂: 남조 진 후주가 임춘각을 세워 주색을 즐겼는데, 「임춘락」은 그 곳에서의 즐거움을 노래한 것이다.

32 은낭隱囊: 몸을 기대는 주머니라는 뜻으로, 옆으로 기대어 쉬 수 있도록 솜 따위의 부드러운 물건으로 속을 채운 용품이다.

33 발한호희潑寒胡戲: 서역에서 전래되어 당 초기에 유행한 유희이다. ‘발한호희’는 ‘결한호희’이라고도 하며, 몸을 드러내고 서로 물을 뿌리며 추위를 염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겨울의 첫 추위가 다음해 풍년을 예고하는 서설瑞雪을 예고하였기 때문이다. 서역에서 이미 대중 유희로 표현된 ‘발수결한호희’ 풍속에서 비롯된 발한호희는 대략 북주北周 청제靜帝 시기에 실크로드를 통해 중원에 전래되었으며, 당 초기에는 점차 새로운 가무가 배합되어 궁중과 민간에서 모두 성행했던 일종의 가무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발한호희가 문란한 풍습을 조장한다는 조정 신료들의 비판으로 현종玄宗은 발한호희 금단 칙령을 반포하였고, 그 이후에는 연출되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여승환, 「발한호희의 유래와 당대 금지 상소를 통해 살펴본 연출 상황 고찰」, 『중국문학연구』 49, 2012, 한국중문학회, 1~3쪽 참조.)

지 않았다. 또 현무문玄武門에 행차하여 궁녀들이 줄다리기[拔河]하는 것을 구경하였다. 또 궁녀는 시전 상인 역할을 하고 공경은 보부상 역할을 하여 서로 교역하게 명령하고, 이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면 중중은 황후와 구경하면서 즐거워하였다. 또 근신들과 연회에 모이면 각각 기예를 선보이게 하였다. 공부 상서 장석張錫은 「담용랑談容娘」³⁴을 추었으며, 장작대장將作大匠 종진경宗晉卿은 「혼탈渾脫」³⁵을 추었으며, 좌위장군 장흡張洽은 「황장黃囊」³⁶을 추었으며, 좌금오대장군 두원담杜元談은 「바라문주婆羅門呪」³⁷를 외웠으며, 중서사인 노장용盧藏用은 도사道士의 상장上章³⁸을 선보였다. 국자사업國子司業 곽산운郭山惲만이 홀로 “신은 보여 드릴 것이 없으니, 고시古詩를 노래할 것을 청합니다.”라고 하고, 「녹명鹿鳴」,³⁹ 「실솔蟋蟀」⁴⁰을 노래하였다. 또 이원梨園⁴¹의 격구장에 행차하여 3품 이상의 문무 관원들에게 포구抛毬를 하게 하고 편을 갈라 줄다리기를 하게 하였는데, 위거원韋巨源과 당휴경唐休璟은 노쇠하여 줄에 끌려가 땅에 엎어져 일어나지 못하였다. 방림원芳林苑에 놀러가서는 공경에게 말에 올라가 앵두를 따게 하였다.

|| 당 경종唐敬宗⁴²이 즉위하여 중화전中和殿에 행차하여 격구를 하였다. 조회를 보면 때면

34 담용랑談容娘: 남북조 북제北齊에서 기원하여 당대唐代에 성행한 춤의 이름으로, ‘담요랑踏謠娘’이라고도 한다. 소씨 성을 가진 남자가 주사가 심해 술을 마시면 그 부인을 때렸는데, 부인은 그럴 때마다 이웃에게 하소연 하였다. 사람들이 이 모습을 연출하여 유희로 만들어 즐겼다. 남자가 부인 옷을 입고 서서히 더딘 걸음으로 입장하면서 노래하기 때문에 ‘담요’라고 하였다. (『敎坊記』)

35 혼탈渾脫: 당唐 교방敎坊의 기녀 공손대랑公孫大娘이 짐승의 통가족으로 만든 모자渾脫을 쓰고 춘 춤의 이름이다. 초성草聖으로 불리는 장욱張旭은 그녀가 추는 혼탈무를 보고 초서의 오묘한 이치를 깨달았다고 한다.

36 황장黃囊: 당대唐代에 성행한 춤의 이름으로, “누런 노루, 누런 노루가 수풀 속에 숨었으니, 활을 당겨 너를 쏘아 다치게 하리라.[黃囊黃囊 草裏藏 彎弓射爾傷]”라는 노래가 불리고 얼마 뒤 거란이 반란을 일으켜 도독都督 조문예趙文懿를 살해하였다. 이로 인해 조인사曹仁師, 장현우張玄遇, 마이절麻仁節, 왕효걸王孝傑 등이 거란과 싸웠는데, 모두 황장곡黃囊谷에서 패배하여 수많은 군사가 사망하였다고 한다. (『全唐詩 黃囊歌』; 『太平廣記 黃囊歌』)

37 바라문주婆羅門呪: 바라문은 인도 카스트제도에서 가장 높은 성직자 계급인 ‘브라만Brahman’의 음역이다. 즉, 브라만교의 주문을 가리킨다.

38 도사道士의 상장上章: 도사가 재액災厄을 없애는 방술이다. 음양오행의 술수術數로 사람의 수명을 점치고, 마치 장표章表를 올리는 의식처럼 폐백을 갖추어 향을 사르고 ‘천조에게 아뢰노니 부디 재액해 주옵소서[奏上天書 請爲除厄]’라고 읊는다.

39 녹명鹿鳴: 『시경』 「소아小雅」의 편명으로, 임금이 어진 신하들을 불러 주연을 베풀면서 군신의 화락한 정을 노래한 것이다.

40 실솔蟋蟀: 『시경』 「당풍唐風」의 편명으로, 요임금의 옛 도읍지인 당풍이 아직도 요임금의 남긴 덕이 있어 백성들의 풍속이 부지런하고 검소하지만, 지나치게 즐겨 서로 본분을 잃지 말자고 경계한 것이다.

41 이원梨園: 당 현종唐玄宗 때, 악공과 기생 300명을 뽑아 음악과 노래를 가르치던 교육기관이다. 장안의 금원禁苑 안에 있었는데, 이원에서 배운 자들을 황제 이원제자皇帝梨園弟子라고 하였다. 음악과 연극에 관해 토론을 했던 장소가 배나무 밭이어서 ‘이원梨園’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늦어 해가 중천인데도 자리에 나오지 않으므로, 백관이 자신문紫宸門 밖에 서 있었는데, 늙고 병든 자는 거의 쓰러질 뻔하였다. 자리에 나온 백관이 물리간 뒤에 좌습유左拾遺 유서초劉棲楚⁴³가 홀로 남아 진언하였다. “폐하께서는 나이가 젊고 즉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응당 날이 밝기 전에 옷을 입고 나라를 잘 다스릴 것을 구해야 하는데, 잠자기를 좋아하고 여색을 즐겨 아침 늦게야 일어나시니 아름다운 명성이 드러나지 않고 나쁜 소문만 멀리 퍼집니다. 신은 궁궐 섬들에 머리를 쬐어 깨지게 함으로써 간관의 직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사죄드리고자 합니다.”

|| 당 경종이 아무 때나 놀러 나가고 소인 무리들과 가깝게 지내 조회를 보는 것이 한 달에 두세 번밖에 되지 않으니, 대신이 알현하는 것이 드물었다. 질서 관찰사浙西觀察使 이덕유李德裕⁴⁴가 단의육잠丹宸六箴⁴⁵을 바치니, 첫째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 옷을 입을 것[宵衣]’, 둘째 ‘의복을 단정히 할 것[正服]’, 셋째 ‘물건 진상을 그만두게 할 것[罷獻]’, 넷째 ‘충고를 받아들일 것[納諫]’, 다섯째 ‘부정을 분간할 것[辯邪]’, 여섯째 ‘사전에 예방할 것[防微]’이다.

|| 당 희종唐僖宗이 정사를 직접 하지 않고 오로지 유희에만 힘을 쏟았다. 말타기와 활쏘기, 검술과 창술, 법산法算에서 음률이나 장기, 바둑에 이르기까지 정통하여 뛰어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축국蹴鞠과 투계鬪鷄를 좋아하고 격구를 특히 잘했는데, 어느 날 광대 석야저石野豬에게 “내가 만일 격구 진사 시험에 응시한다면, 필시 장원이 될 것이다.”라고 하니, 석야저가 “만일 요임금과 순임금이 예부 시랑으로 있다면 아마도 폐하는 논박을 받아 추방됨을 면치 못하실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희종은 그저 웃기만 하였다.

42 당 경종唐敬宗: 809~826. 당 제13대 황제 이담李湛으로, 재위 기간은 824년에서 826년이다. 아버지 목종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14세에 즉위하여 정사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향락을 즐겼다. 즉위한 지 2년 만에 환관 유극명劉克明에게 시해되었다.

43 유서초劉棲楚: 776~827. 자는 선보善保이다. 벼슬은 형부시랑, 경조윤京兆尹, 계관 관찰사桂管觀察使를 역임하였다.

44 이덕유李德裕: 787~849. 자는 문요文饒이다. 이길보李吉甫의 아들로 6년을 정승으로 있으면서 번진藩鎭의 화를 예방한 치적을 이루었다. 선종宣宗 즉위 후 참소를 받아 애주 사호참군사崖州司戶參軍事로 좌천되어 그곳에서 죽었다. 저서에 『이문요집李文饒集』이 있다.

45 단의육잠丹宸六箴: 이덕유가 경종을 경계시키기 위해 올린 6조목의 잠언으로, 경종이 가삼히 여겨 단의에 붙였기에 ‘단의육잠’이라 불렀다. 단의는 임금의 조회를 볼 때 어탁御榻 뒤에 세우는 붉은 병풍이다. (『唐書』「李德裕傳」)

- || 후촉後蜀의 군주 맹창孟昶⁴⁶이 반재영潘在迎과 고재순顧在珣을 압객狎客으로 삼았다. 그들은 연회에서 군주를 모시고서 염가艶歌를 부르고 희롱하며 상스럽고 방자하게 굴었다. 반재영은 간언하는 자를 죽이라고 늘 군주를 부추겨 나랏일에 대해 비방하지 못하게 하였다. 선화원宣華苑에서 중양연重陽宴⁴⁷을 할 때 술자리가 무르익자, 가왕嘉王 왕종수王宗壽⁴⁸가 사직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극언하고 눈물을 흘리기를 멈추지 않았다. 반재영이 “가왕은 술만 취하면 잘 옵니다.”라고 하며, 웃어넘기고 술자리를 파하였다.
- || 거란契丹의 군주 술률述律⁴⁹은 젊을 때 유희에 빠져 직접 국사를 돌보지 않았다. 매일 밤마다 술을 즐겨 아침이 되어서야 잠이 들어 한낮에 일어나니, 나라 사람들이 그를 ‘잠자는 왕睡王’이라고 하였다.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 || 북송 휘종北宋徽宗⁵⁰ 때, 채유蔡攸⁵¹가 총애를 받아 황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군주는 응당 사해四海를 집으로 삼고 태평함을 즐거움으로 삼아야 합니다. 세월이 얼마나

46 맹창孟昶: 919~965. 오대십국 후촉의 제2대 군주로, 재위 기간은 934년에서 965년이다. 농업과 양잠을 발전시키고 문인의 보호에 힘을 기울이고 “너의 봉록은 백성들의 고혈이다. 아래 백성들을 학대하기 쉬우나 위의 하늘을 속이기는 어렵다.”는 글을 반포하여 관리의 기강을 세우기도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사치스러워 수도 성도成都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몰두하였다. 성도 여러 곳에 부용화를 심어 부용성芙蓉城으로 불렀다. 송이 건국되자 맹창은 북한北漢과 손을 잡고 송에 대항했으나, 결국 멸망하였다. 이 일화는 오대십국 전촉前蜀의 마지막 황제인 왕연王衍의 이야기인데, 편저자 홍봉한이 후촉의 마지막 황제인 맹창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47 중양연重陽宴: 음력 9월 9일인 중양절에 베푸는 잔치이다. 9는 양수陽數로, 양수가 겹쳤다는 뜻으로 중양이라 한 것이다.

48 왕종수王宗壽: 오대십국 전촉前蜀의 장수로, 자는 영년永年이다. 본래 허주許州 민가 출신이었는데 고조高祖 왕건王建이 성이 같다는 이유로 양자로 삼았다. 왕건이 즉위한 뒤 가왕嘉王에 봉해졌다.

49 술률述律: 931~969. 요철의 4대 군주 야율경耶律璟으로, 재위 기간은 931년에서 969년이다. 술률은 아명兒曷이다. 태종太宗 야율덕광耶律德光的 장남으로, 세종世宗을 암살하고 즉위하였다. 성격이 매우 잔인하고 고문을 즐겼으며, 사치를 일삼고 사냥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다가 시종들에게 암살당하였다.

50 북송 휘종北宋徽宗: 1082~1135. 북송 제8대 황제 조광趙佶로, 재위 기간은 1100년에서 1125년이다. 신종神宗의 열한째 아들로, 형인 철종哲宗이 병사한 뒤 상 태후向太后的 지지를 받아 즉위하였다. 즉위 초 상 태후의 섭정 아래 신구양법新舊兩法을 절충하여 시행했는데, 이듬해 태후가 죽고 친정을 시작하여 신법을 채용하였다. 그러나 정사를 신하들에게 맡겨버리고 자신은 미술품을 수집하고 서화院書畫院을 설치해서 궁정서화가를 양성하고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면서 호사스럽게 생활하였다. 그는 시문과 서화 등에 뛰어났는데, 특히 그림은 매우 수준이 높아 ‘풍류천자風流天子’라 불리기도 하였으며, 도교를 숭상하여 스스로 ‘교주도군황제教主道君皇帝’라 일컬었다. 여진족이 요철의 지배에서 벗어나 금을 세웠을 때, 금과 동맹하여 요를 공격하고, 옛 영토의 수복을 꾀하였으나, 오히려 금의 침공을 초래하였다. 휘종은 흥종에게 양위하고 책임을 모면하려 하였으나 재차 침공한 금에 의해 결국 포로로 사로잡히고 북송은 멸망하였다.

51 채유蔡攸: 1077~1126. 자는 거안居安이다. 휘종이 단양端王이던 시절부터 그를 잘 섬겨 휘종이 즉위하고서 총애를 받아, 용도각학사龍圖閣學士, 회강군 절도사會康軍節度使, 선화전대학사宣和殿大學士 등 요직을 역임하였다. 그의 부친 채경蔡京과 정치적으로 일력을 빛으면서 부자간에 문호門戶를 따로 세우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다.

되기에 쓸데없이 스스로를 수고롭게 한단 말입니까.” 황제가 그의 말을 깊이 새겨들었다. 그리하여 궁궐 안의 동산을 모두 강소江蘇와 절강浙江을 본떠 많은 촌거村居와 야점野店을 만들고 값지고 기이한 금수 수백 마리를 모아 그 안을 채웠다. 매년 가을바람이 이는 고요한 밤이면 금수의 울음소리가 사방으로 울려 퍼져 흡사 산림과 늪지 같았으니, 듣는 자는 그 소리를 상서롭지 못한 징조라고 여겼다.

|| 원 순제元順帝 때, 합마哈麻⁵²와 독로첩목아禿魯帖木兒 등이 서북 지역의 승려를 순제에게 은밀히 추천하여 연첩아법演揲兒法⁵³을 행하였다. 연첩아는 중국말로 ‘대희락大喜樂’이다. 황제가 궁녀 16인에게 춤을 만들게 하고 이름을 「천마무天魔舞」⁵⁴라 하였다. 또 궁궐의 안뜰에 용선龍船을 만들었다. 【『속자치통감』에 보인다.】

|| 명 무종明武宗 때, 교단郊壇⁵⁵의 금문禁門과 태묘太廟, 봉천전奉天殿에 천둥과 벼락이 쳤다. 내시 유근劉瑾⁵⁶ 등이 무종을 데리고 놀러나가자, 내각 유건劉健⁵⁷ 등이 상소하였다. “항상께서 너무 늦게 조회를 보시고 너무 자주 조회를 중지하시어 일을 아뢰는 것이 점점 늦어지고 유희가 점점 지나칩니다. 늦어짐에는 경연까지 정지하셨으니 천심이 경계를 보이는 것이 역시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52 합마哈麻: ?~1356. 지는 사람土廉이다. 그의 어머니가 영종寧宗의 유모였기 때문에 숙위宿衛로 궁에 들어갔다. 순제의 총애를 받아 진중시어사殿中侍御史, 예부상서 등을 역임하였다. 매제인 독로첩목아禿魯帖木兒와 방중술을 순제에게 배우게 하고 그를 향락에 빠뜨렸다. 후에 독로첩목아를 축출하려 하다가 독로첩목아가 순제에게 합마가 황위를 황태자에게 양위하도록 계획을 꾸었다고 밀고하여 장을 맞고 죽었다.

53 연첩아법演揲兒法: 라마교의 구파인 홍교紅敎의 밀법密法 중 하나로, 안세르파의 음역이다. 남녀 간의 성교를 통해서 도를 수행하고 열반에 이르는 수행법을 말한다.

54 천마무天魔舞: 궁궐에서 불사佛事가 있을 때 공연하는 여자들의 군무이다. 원 순제가 16인의 궁녀들에게 춤을 추게 하었기 때문에 「심육천마무+六天魔舞」라고도 한다. 음악을 연주하는 데에는 용적龍笛, 두관頭管, 소고小鼓, 징箏, 진篳, 비파琵琶, 생笙, 호금胡琴, 향판響板을 사용하였다. 비밀계秘密戒를 받은 공관宮官만이 「천마무」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다.

55 교단郊壇: 천자가 하늘과 땅에 지내는 제사인 교제郊祭를 지내기 위해 쌓은 단을 가리킨다. 혹은 교외郊外, 즉 동·서·남·북의 4교四郊에서 올리는 제사를 위해 쌓은 단이다. 교제는 도성에서 50리에서 100리 되는 곳이다.

56 유근劉瑾: 1451~1510. 환관으로, 원래는 담씨談氏였으나 중궁中宮 유씨劉氏에게 빌붙어 유성劉姓으로 행세하였다. 무종武宗 때 응견鷹犬, 가무歌舞, 각저角觥 등 잡기로 황제의 신임을 얻었으나, 뒤에 반역을 꾀하다가 복주伏誅되었다. (『明史』 「劉瑾傳」)

57 유건劉健: 1433~1526. 명 영종, 현종의 명신으로, 문연각대학사, 태자태부, 수보 등을 역임하였다. 재정 악화의 원인이 재초齠醜와 불필요한 관원, 과도한 궁궐 증축에 있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환관 유근 등을 주살할 것을 주청했지만 오히려 간당奸黨의 영수로 지목되어 삭탈관직 되어 평민이 되었다. 유근이 제거된 뒤 복직하였다. 장유張維는 『계곡만필齋谷漫筆』에서 ‘신하로서 수명과 귀함을 누린 才人壽貴之極者’로 한·漢의 장정과 송의 문언박과 명의 유건을 들었다.

정덕正德 9년(1514) 건청궁乾淸宮에 화재가 났다. 호과급사중戶科給事中 여경呂經⁵⁸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폐하께서 건청궁을 내버려 두고 멀리 표방豹房⁵⁹에 거처하시며 황태자를 홀대하고 의자義子를 많이 기르셨습니다. 유신儒臣을 멀리하고 서역에서 온 승려를 가까이 하시며 문덕文德을 지닌 이를 내치고 변방을 지키는 자들만 아껴 등용하셨습니다. 조정을 소홀히 하고 주점을 여셨으며 애송이 환관만을 믿고 날마다 방탕하게 노셨습니다. 그리하여 군신 사이가 틀어지고 기강이 해이해졌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지금 하늘의 꾸짖음을 계기로 목은 폐단을 혁파하십시오.” 상소가 올라갔지만 답하지 않았다.

- Ⅱ 명 목종明穆宗이 조서를 내려 조정의 의례를 중지하자, 급사중給事中 위시량魏時亮⁶⁰이 상언하였다. “황상께서 정사를 시작하신 지 겨우 십여 일인데 두 차례나 조회를 중지하시니, 아첨하는 자가 선제先帝[世宗]를 핑계로 삼아서가 아니겠습니까. 선제께서는 즉위 초년에 매일 경연에서 강론하시고 현자를 가까이하여 간언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만년에 비록 조회를 열지 않으셨다고는 하나 보신輔臣을 가까이하고 근습近習을 통제하여, 소인들이 법을 두려워하고 모든 정사가 문란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정사를 시작하자마자 태만할 수 있겠습니까.”【이상은 『명사강목』에 보인다.】

근안 謹按

삼가 살펴보건대, 역대 임금의 정사에 부지런한 것이 아름답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으나 실심實心으로 행하지 않고 그 명분으로만 행했습니다. 그러한 임금이 신료를 대할 때

58 여경呂經: 1476~1544. 자는 도부道夫이다. 예과급사중禮科給事中, 도찰원우부도어사都察院右副御史, 요동 순무遼東巡撫 등을 역임하였다.

59 표방豹房: 명 무종明武宗 때 만든 행궁行宮이다. 서화문西華門 밖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궁전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5년 동안은 24만여 냥을 들여 200여 칸의 규모로 지어졌다. 후인들이 “무종표방” 또는 “서원표방西苑豹房”이라고 불렀다. 심덕부沈德符의 『만력야획편萬曆野獲編』 따르면, 표방에는 표방 한 마리가 있었는데, 240명의 병사들이 배치되어 길렀다고 한다.

60 위시량魏時亮: ?~1585. 자는 공보工甫이다. 벼슬은 중서사인中書舍人, 남경 대리승南京大理丞 등을 역임하였다. 1567년 목종이 등극하였을 때 병과급사중兵科給事中으로서 한림검토翰林檢討 허국許國과 함께 등극조사登極詔使로 조선에 왔다. 저서에 『대유학수大儒學粹』 등이 있다.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은 상 고종高宗이 감히 태만하고 편안하지 못했다거나⁶¹ 주 문왕周文王이 해가 기울어도 밥을 먹으러 가지 않았다는⁶²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가롭게 거처할 때면 근습近習이 곁에 다가오고 놀릿감이 눈앞에 가득하여 절로 마음이 태만해지고 의지가 박약해져 날마다 편히 놀고 즐기는 데 빠졌으니, 덕과 법도를 잃어 혼란의 전철을 밟지 않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백성의 기쁨과 슬픔에 관심을 기울이고 나랏일의 잘잘못에 정신을 쏟아, 신린臣隣⁶³을 불러서 만나 보되 그 횡수가 빈번한 것을 꺼리지 말고 연석에서 강론하되 반드시 독실하게 하는 데 전심해야 합니다. 굽जू리고 목마른 듯이 조정의 책임자를 구하고 자나 깨나 초야의 현인을 찾는다면 비록 그 궁궐이 높고 크며 비단과 패물이 많고 화려하더라도 부지런히 일하느라 감히 안일할 겨를이 없을 것이니, 이렇게 정사에 부지런한 임금은 실심實心으로 행한 것이지 명분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렇지만 사소한 일에 부지런할 줄 알고 대체大體를 분별할 줄 모른다면, 진 시황秦始皇이 처리할 문서의 양을 저울로 잰 일⁶⁴과 수문제隋文帝가 시위병을 시켜 밥을 나르게 한 일⁶⁵처럼 비록 부지런히 힘쓴 것 같지만 도리어 자질구레하고 번잡한 결과를 면치 못할 것이니, 어찌 나라를 다스리는 도에 대해 함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세종대왕께서는 매일 사고四鼓⁶⁶에 일어나서 새벽에 조회를 받으신 뒤 정무를 보시고 그 다음에 윤대輪對하시고 그 다음 경연에 참석하시면서 짬을 내어 경서와

61 상 고종高宗이 … 못했다: 『서경』 「무일無逸」에 “고종 때에는 오랫동안 밖에서 일하여 백성들과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즉위하여 곧 양암에서 3년 동안 말씀하지 않았으나 말씀하면 화하였으며, 감히 게으르고 편안하지 아니하여 은을 아름답게 하고 안정시켜 작고 큰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이에 혹시라도 원망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고종의 향국이 59년이었습니다. [其在高宗時 舊勞于外 爰暨小人 作其卽位 乃或堯陰三年 不言 其惟不言 言乃雍 不敢荒寧 嘉靖殷邦 至于小大 無時或怨 肆高宗之享國 五十有九年]”라고 하였다.

62 주 문왕周文王이 … 않았다: 『서경』 「무일無逸」에 “아름답고 부드러우며 공손하여 백성을 보호하고 홀아비와 과부를 아껴 아침부터 한낮과 저녁이 되도록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만민을 평화롭게 하였다. [徽柔懿恭 懷保小民 惠鮮鰥寡 自朝至于日中 不違暇食 用咸和萬民]”라고 하였다.

63 신린臣隣: 임금을 좌우에서 보필하는 근신이다. 『서경』 「익직익稷」에 “신하가 이웃이며 이웃이 신하이다. [臣哉鄰哉 鄰哉臣哉]”라고 하였다.

64 진 시황秦始皇이 … 일: 진 시황이 사소한 일까지 모두 자기가 직접 결재하면서 시간과 힘을 낭비한 일을 말한다. 『사기史記』 「진시황본기秦始皇本紀」에 “천하의 일은 대소와 상관없이 모두 황상上이 결정하였다. 황상은 저울대와 저울추로 문서를 달아 낮과 밤에 처리해야 할 분량을 정하고,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쉬지 않았다. [天下之事無小大 皆決於上 上至以衡石量書 日夜有程 不中程 不得休息]”라고 하였다.

65 수 문제隋文帝가 … 일: 수 문제가 정무에 바빠 끼니를 놓쳐 호위병을 시켜 밥을 날라다 먹으면서 정무를 처리한 일을 말한다.

66 사고四鼓: ‘사경四更’, ‘정야打夜’라고도 한다. 오전 2시~4시 사이에 치는 북소리를 말한다.

사서를 열람하셨습니다.⁶⁷ 문종대왕께서는 성체聖體가 미령하셨기에 하루걸러 정무를 볼 것을 청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탐락에 빠진다면 비록 천년도 부족할 것이니, 마땅히 나라를 걱정하고 정사에 부지런히 힘써 안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⁶⁸ 인묘仁廟[인조]께서는 「복주도覆舟圖」를 만들어 편안히 거처할 때 위태로울 것을 생각하는 뜻을 담았습니다.⁶⁹ 효묘孝廟[효종]께서 「숙흥잠夙興箴」을 쓰신 것⁷⁰과 숙묘肅廟[숙종]께서 「무일도無逸圖」를 거신 것⁷¹ 또한 잠시도 태만하지 않도록 경계에 힘쓰신 것입니다. 우리 열성列聖들의 크게 빛나는 공렬은 ‘근勤’ 한 글자를 바탕에 두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천하의 사변事變은 끝이 없고 임금의 근심과 책임은 막중합니다. 만약 훌륭한 임금이 대대로 나와 태평을 누린 뒤라서 우려할 만한 것이 없다고 여겨 혹여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다면, 또한 어찌 안일한 마음이 그 틈을 타지 않겠습니까. 아, 치란治亂과 안위安危의 기미는 오직 부지런하냐 태만하냐에 달려 있으니, 몸이 부지런한 것은 마음이 부지런한 것만 못합니다. 은미한 곳에서 살펴 오만한 싹을 잘라버리고 한가로운 사이에 경계하여 태만한 뿌리를 제거한다면, 청명淸明이 몸에 있어 지기志氣가 신명과 같게 될 것입

67 세종대왕께서는 … 열람하셨습니다: 명명에 세종의 부고를 알리고 시호를 청하기 위한 글에 “왕은 매일 4고에 일어나서, 동이 트면 군신의 조침을 받은 연후에 정사를 보며, 모든 정사를 처결한 연후에 운대를 행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를 묻고, 수령의 하직을 고하는 자를 불러 보고 면담하여, 형벌 받는 것을 불쌍하게 생각하며, 백성을 사랑하라는 뜻을 타이른 연후에, 경연에 나아가 성학에 잠심하여 고금을 강론한 연후에 내전으로 들어가서 편안히 앉아 글을 읽으시되, 손에서 책을 떼지 않다가, 밤중이 지나서야 잠자리에 드셨습니다.”라고 하였다. (『世宗實錄』 32년 2월 22일)

68 문종대왕께서는 … 하셨습니다: 문종의 묘지誌에 “병환이 나고 상중喪中에 거처한 이후로는 임금의 육체가 아직 편안하지 못하였는데도 나라를 근심하고 정사를 부지런히 하는 일에 지나치지, 어떤 사람이 하루걸러 정사를 보고 정신을 편안히 수양하기를 청하는 이가 있었다. 전하가 ‘군주가 향락을 즐긴다면 비록 천년을 살더라도 부족하겠지마는, 그렇지 않으면 비록 1년이라도 만족할 것이다. 반드시 나라를 근심하고 정사를 부지런히 해야 할 것이고 스스로 안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文宗實錄』 2년 9월 1일)

69 인묘仁廟께서는 … 담았습니다: 「복주도覆舟圖」는 배를 5번씩 뒤집어 이상 유무를 철저히 살핀 다음 배를 타고 나가 다랑어를 직접 잡아서 종묘에 올리고 보리가 익기를 기원하는 내용의 그림이다. 인조가 정비인 인열왕후仁烈王后的 국장 도감에 내린 하교에 “내가 전에 「복주도」를 그려서 벽 위에 붙였었는데, 왕후가 ‘이 그림을 단지 보기만 할 뿐이라면 끝내는 아무런 보탬이 없을 것입니다. 보실 때마다 반드시 위태로움을 생각하시어 실효가 있도록 힘쓰소서.’”라고 하였다. (『仁祖實錄』 14년 2월 3일)

70 효묘孝廟께서 … 것: 시독관 홍명하洪命夏가 「숙흥야매잠夙興夜寐箴」이 공부하는 데 가장 절실한 것이라며 병풍에 써서 관람할 것을 건의하자, 효종이 병풍을 만들고 옥당 유신이 써서 올리게 하였다. (『孝宗實錄』 2년 8월 25일) 「숙흥야매잠」은 송송의 진백陳栢이 스스로를 경계하기 위해 지은 글로, 조선에서는 소재蘇齋 노수신盧守愼이 진도에서 귀양살이할 때, 「숙흥야매잠」에 주해를 한 이후 선비들의 공부와 수양에 필요한 지침으로 중시되었다.

71 숙묘肅廟께서 … 것: 숙종이 「무일도」를 걸었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으나, 『열성어제열聖御製』에 「제당현종관무일도題唐玄宗觀無逸圖」란 글이 남아있다.

니다.⁷² 그리하여 정사에 임하면 면려하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면려하고, 어떤 일이 생기든 분발하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분발하여, 모든 정사가 거행되지 않음이 없고 온갖 법도가 닳이지 않는 것이 없어, 나라 안 모든 백성이 편안한 다스림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서경집전書經集傳』에 “어진 이를 구하느라 수고롭지만, 책임자에게 맡겨 편안하다.”⁷³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인재를 알맞은 예로 부르고⁷⁴ 폐백을 갖춰 초빙함으로써 자신의 정성과 예의를 다하여, 재능과 학식이 뛰어난 인재가 조정에 함께 나와 늘어서고 대관大官과 백관이 각각 자신의 직임을 다한다면, 위에 있는 임금도 수고롭게 일하지 않아도 근엄하게 팔짱을 끼고 편안한 아름다움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수고롭지만 뒤에는 편안하다.’는 것이니, 제왕의 능사能事는 여기에서 끝납니다. 유념하고 유념하소서.

72 청명清明이 … 것입니다: 『예기』 「공자한거孔子閑居」에 “청명함이 내 몸에 있으면, 기운과 뜻이 신과 같이 된다.[清明在躬 氣志如神]”라고 하였다.

73 어진 … 편안하다: 『서경』 「입정立政」에 “문왕은 호령과 옥사와 금계禁戒를 도맡아 처리하지 않았다. [文王罔攸兼于庶言庶獄 庶慎 惟有司之牧夫 是訓用達]”라고 하였는데, 『집전集傳』에서 “한漢의 공씨孔氏공안국孔安國가 ‘인재를 구할 적에는 수고롭지만 어진 이에겐 맡긴 뒤에는 편안하다.’라고 하였다.[漢孔氏曰 勞於求才 逸於任賢]”라고 주석하였다.

74 인재를 알맞은 예로 부르고: 원문의 “弓旌之招”를 풀이한 말이다. 궁정弓旌은 옛날 어진 이를 초빙할 때 쓰던 예물로, 사士를 부를 때는 활을 쓰고 대부大夫를 부를 때는 정旌을 사용하여 각각 예에 맞게 인재를 초빙하였다.

절재용節財用

재용을 절약하다

법조 法條

|| 전한 문제前漢文帝가 노대露臺¹를 지으려고 장인匠人을 불러 예산을 따져보니 금金 100근이 필요하였다. 이에 문제가 “금 100근은 일반 백성 열 가구의 재산이다. 내가 선제先帝의 궁실을 이어받아 늘 욕되게 할까 두려우니, 어찌 노대를 짓겠는가.”라고 하였다.

|| 전한 문제 때의 일이다. 조조晁錯²가 문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요임금 때는 9년의 흉수가 있고 탕왕湯王 때는 7년의 가뭄이 있었지만, 나라에 굶어 죽는 우환이 없었던 것은 비축해 놓은 것이 많아서 미리 대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토지는 다 쓰지 못한 것이 있고 백성은 남아도는 힘이 있는데도, 곡식이 나는 땅을 다 개간하지 않고 산천의 이로움을 다 거두지 않으며, 놀고먹는 백성들을 다 돌아가 농사짓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급선무는 백성들을 농사에 힘쓰게 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백성들이 농사에 힘쓰게 하고자 한다면 곡식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문제가 이 말을 따랐다.

|| 전한 선제前漢宣帝 때의 일이다. 대사농大司農 경수창耿壽昌³이 “해마다 풍년이 들어 곡식 값이 싸져 농민들의 수입이 줄었습니다. 삼보三輔와 홍농군弘農郡, 하동군河東郡, 상당군上

1 노대露臺: 지붕이 없는 누대로, 영대靈臺라고도 하며, 천자가 관상觀象하는 곳이다.

2 조조晁錯: 『애민생愛民生·부附 경요역輕徭役』 법조 46번 각주 참조.

3 경수창耿壽昌: 상평창常平倉을 설치하도록 건의하였으며, 이에 관내후關內侯에 봉해졌다. 저서에 『월행백도月行帛圖』가 있다.

黨郡, 태원군太原郡에 있는 곡식을 사들이면 경사京師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고 관동關東에서 조운漕運하는 병졸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⁴”라고 상주하니, 선제가 이 계책을 따랐다. 경수창이 또 아뢰어, 변방 고을에 모두 창고를 지어 곡식값이 싸지면 값을 올려 사들이고 곡식값이 비싸지면 값을 내려 팔도록 하고, 이를 ‘상평창常平倉’이라 하니, 백성들이 이를 편리하게 여겼다.

- 북위 세조北魏世祖가 늘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재용財用은 군대를 운용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니, 가벼이 쓸 수 없다. 상을 내리는 것은 모두 순국殉國하거나 공훈을 쌓은 집안을 대상으로 하였으니, 친척이나 권귀權貴에게는 마음대로 상을 내린 적이 없다.”
- 북위 효문제北魏孝文帝 때, 비서승祕書丞 이표李彪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한대漢代에는 상평창을 설치하여 궁핍한 이들을 구제하였습니다. 주군州郡에서 정기적으로 거두는 세금의 9분의 2와 경사京師에서 매년 지출하고 남은 비용을 떼어내 관사官司를 설치하여 풍년이 들면 창고에서 곡식을 사들이고 흉년이 들면 소출의 10분의 2를 더하여 다른 사람에게 팔도록 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면 백성들이 반드시 농사에 힘써 관가의 비단을 사고 재물을 쌓아 관가의 곡식을 살 수 있으니, 몇 년 안에 곡식이 쌓이고 백성들이 풍족해져서 해마다 피해를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 당 현종唐玄宗이 칙령을 내려 올해 풍년이 들어 곡식 값이 싸져서 농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시가에 10분의 2 또는 3 정도를 더해 동기東畿와 서기西畿에서 각 수백만 곡斛을 화적和糶⁵하고, 올해 장강長江과 회수淮水에서 오는 조운을 중지하라고 명하였다. 이후로 관중關中에 쌓인 곡식이 많아졌다.

4 삼보三輔와 … 있습니다: 이전에 관동關東 지역에서 곡식 400만 곡斛을 경사京師에 공급하면서 6만 명의 군사들이 동원되었으므로, 장안長安 근처에 있는 삼보와 흉농군, 하동군, 상당군, 태원군의 곡식을 경사에 공급하고자 한 것이다.

5 화적和糶: 북위北魏 때 시작된 제도로, 관청에서 팔고 사는 값을 정하여서 양쪽에 손해가 없게 곡식을 사들이는 일을 말한다. 『신당서新唐書』 「고력사전高力士傳」에 “화적을 중지하지 않으면 사장私藏의 곡식이 고갈되어 말단의 이 곳을 좇는 자가 많아질 것이다.[和糶不止 則私藏竭 逐末者眾]”라고 하였다.

- || 당 덕종唐德宗 때의 일이다. 유안劉晏⁶이 전운사戰運使가 되어 재물의 있고 없음을 변통함에 절묘하게 잘 운용하니, 국가는 이익을 얻고 천하는 물가가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근심이 없었다. 그는 늘 “여러 가지 일을 잘 수행하는 것은 책임자를 얻는 데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일에 통달하고 민첩하고 정밀하고 굳세고 청렴하고 부지런한 선비를 가려 등용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유안은 또 “재물을 운용할 때에는 백성을 기르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 여러 도에 각각 지원관知院官을 두고, 순월旬月마다 주현州縣에 비나 눈이 오는 기후와 풍년이냐 흉년이 든 상황을 갖추어 전운사사轉運使司에게 보고하여 풍년이 들면 곡식을 비싸게 사들이고 흉년이 들면 곡식을 싸게 팔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 || 당 헌종唐憲宗 때의 일이다. 이강李絳⁷이 헌종이 재물을 모으는 일에 대해 조용히 간언하자, 헌종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하남河南과 하북河北의 수십 주州는 모두 국가의 명령이 미치지 않으며, 하황河隍 지역은 수천 리나 떨어져 있어 오랑캐의 풍속에 빠져 있다. 짐이 밤낮으로 조종의 수치를 씻을 것을 생각하지만 재력이 부족하니, 재물을 모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짐이 궁중에서 쓰는 재물이 매우 검소하고 적으니, 재물을 많이 모아 어디에 쓰겠는가.”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 || 송 태조宋太祖가 봉장고封樁庫⁸를 설치하여 한 해 동안 사용하고 남은 비용을 모두 여기에 보관하여 전쟁이나 기근에 대비하였다.
- || 북송 진종北宋眞宗 때, 진서陳恕⁹가 오랫동안 삼사사三司使를 지내고 있었다. 진종이 즉위

6 유안劉晏: 716~780. 자는 사안士安이다. 전운법轉運法을 수정하고 평준법平準法을 시행하여, 안사安史의 난으로 궁핍해진 정부 재정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였다. 덕종德宗이 즉위한 뒤 반대파 양염楊炎에 의해 충주 자사忠州刺史로 좌천되고, 얼마 뒤 사사賜死되었다.

7 이강李絳: 「개언로開言路」 법조 50번 각주 참조.

8 봉장고封樁庫: 송대宋代에 만들어진 내고內庫 중 하나로, 태조太祖가 형荆, 호湖, 서촉西蜀을 평정하고 나서 재화를 수습하여 저장해 둔 곳이다. 본래 거란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후에 연말에 쓰고 남은 재화를 모두 그곳에 보관해 두었다가 군사의 식량이나 흉년의 구휼에 대비하였다. (『宋史紀事本末』 「太祖乾隆以來諸政」)

9 진서陳恕: 945~1004. 자는 증언仲言이다. 오랫동안 엄철사鹽鐵使와 삼사사三司使를 맡으면서 국가 재정을 도맡아 잘 다스려 황제의 신임을 얻었다. 태종이 그를 위해 “참으로 소금과 철 같은 진서眞鹽鐵陳恕”라는 글을 써서 궁전 기둥에 붙여 두었다고 한다.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외中外의 전곡錢穀을 조목조목 갖추어 아뢰라고 하였으나, 진서가 오랫동안 올리지 않았다. 이에 진종이 누차 조서를 내려 부르니, 진서가 “폐하께서는 춘추가 짧으시니, 만약 창고가 가득한 것을 아시면 사치스러운 마음이 생길까 염려되었기에 감히 올리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였다. 진종이 이를 가상히 여겼다.

■ 북송 신종北宋神宗이 남교南郊에서 제사를 지낼 적에 집정執政이 “하삭河朔 지역에 가뭄이 들어 국용國用이 부족하니, 바라건대 남교에서 금이나 비단을 내리지 마십시오.”라고 하니, 조서를 내려 학사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사마광司馬光¹⁰이 “재해를 구제하고 재용을 아끼는 것은 귀하고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야 하니, 들어주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 북송 신종이 “우리 조종은 모두 하늘이 낸 만물을 사랑하고 아껴 함부로 쓰지 않았다. 한 문제漢文帝는 ‘짐은 천하를 위해 재물을 지킬 뿐이다.’라고 하였다.”라고 하니, 왕안석王安石이 “검소와 절약을 편안히 여기는 것은 본래 성대한 덕입니다.”라고 하였다.

■ 원 인종元仁宗이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태부감 승太府監丞에게 유시諭示하였다. “재용이 충분하면 만백성을 기르고 군대를 운용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작은 비단 한 조각이라도 짐에게 고하지 않고서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라.”【이상은 『속자치통감』에 보인다.】

■ 명 선종明宣宗이 『대학』 전傳 10장章을 강론할 적에 시신侍臣에게 말하였다. “천하와 국가를 다스리는 데에 있어서 재화가 없어서는 안 된다. ‘생산하는 자가 많아야 한다.’¹¹는 말이 정말 행해질 수 있다면, 굳이 가혹하게 거두지 않아도 국용國用이 넉넉할 것이다.”

10 사마광司馬光: 1019~1086. 송 신종宋神宗, 철종哲宗 때의 대신으로, 자는 군실君實, 호는 우부迂夫 또는 우수迂叟,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신종이 즉위한 뒤 한림학사翰林學士, 어사중승御史中丞에 제수되었다. 신종이 왕안석王安石을 발탁하여 신법新法을 단행하자, 이에 반대하여 사퇴하고 지방으로 나가 『자치통감資治通鑑』을 완성하였으며, 철종哲宗이 즉위하고 나서 중앙에 복귀하였다. 저서에 『자치통감』, 『독락원집獨樂園集』, 『서의전가집書儀傳家集』 등이 있다. (『宋史』 「司馬光傳」)

11 생산하는 자가 많아야 한다: 『대학』에 “국가 재정을 늘리는 데는 대원칙이 있으니, 생산하는 자가 많고 소비하는 자가 적으며 만들기를 빨리 하고 쓰기를 느리게 하면, 재물이 항상 풍족할 것이다. [生財有大道 生之者衆 食之者寡 爲之者疾 用之者舒 則財恒足矣]”라고 하였다.

|| 명 영종明英宗이 이현李賢¹²에게 “지금 부고府庫에 곡식이 들어오는 것은 적고 나가는 것은 많으니, 어째서인가?”라고 하니, 이현이 “예로부터 국가는 오로지 하는 일 없이 먹는 것을 염려합니다. 지금 하나의 위관衛官에 2천여 명이 있으니, 경사京師에 있는 군관 중에 노약하고 질병이 있는 자들은 병부兵部로 하여금 점차 골라내어 쓸데없는 비용을 줄이도록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 명 목종明穆宗이 호부戶部に 경사의 금고에 보관된 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몇 년을 쓸 수 있을지 물었다. 이에 호부 상서戶部尙書 마삼馬森¹³이 말하였다. “태창太倉의 은고銀庫¹⁴는 한 해에 겨우 203만이 들어오는데, 한 해의 지출에도 모자란 수량입니다. 혹여 [1년에 필요한 경비인] 395만에 이르더라도 3년의 비축¹⁵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목종이 크게 놀라 “군수물자가 모자란 것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짐은 정해진 세금 외에는 조금도 허투루 쓴 것이 없으니, 경은 마음을 다해 다스리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이상은 『명사강목』에 보인다.】

계조 戒條

|| 상 주왕商紂王이 세금을 무겁게 거두어 녹대鹿臺¹⁶를 재물로 채우고, 거교鉅橋¹⁷를 곡식으로 채웠으며, 개와 말, 기이한 물건들을 거두어 궁궐을 가득 채웠다. 【『봉주강감회찬』에 보인다.】

12 이현李賢: 「양사기養士氣」 계조 36번 각주 참조.

13 마삼馬森: 1506~1580. 자는 공양孔養이다. 대리시 경大理寺卿으로 있으면서 여러 차례 의옥疑獄을 따져 형부 상서刑部尙書 정호鄭曉, 도어사都御史 주언周延 등과 함께 ‘삼평三平’으로 불렸으며, 관직이 호부상서戶部尙書에 이르렀다. 저서에 『공민공집恭敏公集』이 있다.

14 태창太倉의 은고銀庫: 명대明代에 설치된 관서로, 부세賦稅로 거두는 절은折銀이나 규례대로 상납한 은을 저장하는 곳이다.

15 3년의 비축: 『예기』 「왕제王制」에 “나라에 9년의 비축이 없으면 부족하다고 하고, 6년의 비축이 없으면 급하다고 하고, 3년의 비축이 없으면 그 나라가 나라가 아니라고 한다. 3년을 경작하려면 반드시 1년치 양식을 비축해야 하고, 9년을 경작하려면 반드시 3년치 양식을 비축해야 한다. [國無九年之蓄曰不足 無六年之蓄曰急 無三年之蓄曰國非其國也 三年耕必有一年之食 九年耕必有三年之食]”라고 하였다.

16 녹대鹿臺: 「개언로開言路」 법조 33번 각주 참조.

17 거교鉅橋: 「애민생愛民生·부附 진저賑濟」 법조 58번 각주 참조.

|| 후한 영제後漢靈帝는 사사로이 축재하기를 좋아하여 천하의 진귀한 재화를 거두어 모았다. 군국郡國에서 공물을 바치려면 먼저 이른바 ‘도행비導行費’¹⁸를 중서中書로 보내게 하였다. 이에 중상시中常侍 여강呂強¹⁹이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천하의 재물은 음양에서 나와서 폐하에게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없으니, 어찌 공사公私의 구분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중상방中尙方에서는 여러 군郡의 보물을 거두어 모으고 중어부中御府에서는 천하의 비단을 쌓아두고 있으며, 서원西園은 사농司農에 있어야 할 전곡田穀을 가져다 놓고 중구中廩에는 태복太僕에 있어야 할 말을 모아두었는데, 각 부로 보낼 때마다 도행비가 발생합니다. 징발하는 물자가 많아지니 백성들이 곤궁해지고 경비가 늘어나니, 바치는 공물이 적어집니다. 이로 인해 간사한 아전들은 이익을 취하고 백성들은 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주청한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북위 선무제北魏宣武帝 때의 일이다. 누대에 걸쳐 국력이 강성하여 부고府庫가 차고 넘쳤다. 호 태후胡太后²⁰는 늘 비단이 보관된 창고에 행차하여 왕공王公과 비빈, 공주를 수행하는 자 100여 인에게 각자의 힘에 맞게 비단을 지고 나오게 하였는데, 적게 지는 자도 최소 100여 필帛을 들고 나왔다. 상서령尙書令 겸 의동삼사儀同三司인 이승李崇²¹과 왕융王融은 짊어진 비단이 너무 무거운 나머지 땅에 엎어져 이승은 허리를 다쳤고 왕융은 발을 다쳤다.

|| 당 중종唐中宗 때의 일이다. 황후와 공주가 절을 많이 짓자, 좌습유左拾遺 신체부辛替否가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음양을 솟으로 삼고 만물을 동銅으로 삼아²² 먹지 않아도 되

18 도행비導行費: 공물 바치는 것을 인도하는 비용으로, 군국郡國에서 공물貢物을 바칠 때마다 바치는 공물貢物 외에 별도로 중서中書에 뇌물을 바친 것을 말한다.

19 여강呂強: ?~184. 자는 한성漢盛이다. 당시 권력을 농단하던 환관에 대해 극간極諫하였으나 후에 중상시中常侍 조훈趙暉의 모함으로 인해 자살했다.

20 호 태후: 북위北魏의 황태후 호선진胡仙眞(?~528)을 가리킨다. 사도司徒인 호국진胡國珍의 장녀로, 선무제宣武帝와 혼인하여 효명제孝明帝 원후元詡(탁발후拓跋珪)를 낳아 비빈妃嬪에 올랐으며, 효명제가 즉위한 뒤 황태후가 되었다. 어린 아들을 대신해 섭정하면서 권력을 믿고 방탕하게 생활하였으며, 시동생인 문헌왕文獻王 원역元譚, 명장名將 양대안楊大眼의 아들 양백화楊白花와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후에 대도독大都督 이주영爾朱榮이 하음河陰의 변을 일으키면서 독살당하였다.

21 이승李崇: 454~525. 자는 계장繼長이며, 문성원황후文成元皇后的 조카이다. 다섯 차례 도독장군都督將軍에 배수되었으며, 여러 번 변구邊寇를 토벌하여 ‘와호臥虎’라고 불렸다.

22 음양을 … 삼아: 가의賈誼의 「복조부鵝鳥賦」에 “천지는 주물 단지요, 조물주는 장인이네. 음양은 솟이 되고, 만물은 동銅이라네. 사물이 생성과 소멸하는 데 어찌 불변의 법칙이 있겠는가.[天地爲爐兮 造化爲工 陰陽爲炭兮 萬物爲銅 合散消息兮 安有常則]”라고 하였다.

는 병사와 입지 않아도 되는 사인을 부려도 오히려 부족할까 두려운데, 하늘이 낱고 땅이 길러 주며 바람이 어루만지고 비가 적셔 준 뒤에야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전쟁이 다시 발생하고 재해가 연이어 일어난다면, 승려들은 창과 방패를 잡을 수 없고 사탑^{寺塔}은 기근을 떨쳐낼 수 없으니, 신은 이것이 안타깝습니다.” 주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당 현종이 백관^{百官}을 이끌고 좌장고^{左藏庫}²³를 둘러보다가 품계에 따라 차등을 두어 비단을 내려주었다. 현종은 나라의 재용이 넉넉했기 때문에 금이나 비단을 썩은 흙덩이처럼 여겨서 권귀^{權貴}의 집에 하사하기가 끝이 없었다.
- 당 현종이 백관에게 명하여 해마다 국가에 바치는 공물^{貢物}을 상서성^{尚書省}에서 점검하도록 하고, 얼마 뒤 모두 수레에 실어 이임보^{李林甫}²⁴의 집에 하사하였다.
- 당 현종 때의 일이다. 우문융^{宇文融}²⁵이 부세^{賦稅}를 잘 다스려 현종에게 총애를 받게 되자, 권농판관^{勸農判官}을 널리 두어 앞다투어 거두어들이게 하였다.²⁶ 이로 말미암아 백관들은 점차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현종은 더욱 사치를 부리니, 백성들이 원망하고 괴로워하였다.
- 당 현종 때의 일이다. 왕홍^{王鉷}²⁷이 호구색역사^{戶口色役使}가 되어 가렴주구에 뜻을 두어서

23 좌장고^{左藏庫}: 중국 고대 국고^{國庫} 중의 하나로, 왼쪽에 위치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당대^{唐代}에는 이곳에 돈과 각종 비단을 보관하였으며, 우장^{右藏}에는 각종 금은보화를 보관하였다.

24 이임보^{李林甫}: ?~752. 자는 가노^{加奴}, 호는 월당^{月堂}이다. 사람 됨됨이가 겉과 속이 달라 '구밀복검^{口蜜腹劍}'이라 불렸다. 19년 동안이나 재상의 지위에 있으면서 자기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모두 배척하고 도당을 만들어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였다.

25 우문융^{宇文融}: ?~729. 북주^{北周}의 종실인 우문씨^{宇文氏}의 후손이다. 호적에서 빠진 호구^{戶口}와 전토^{田土}를 적발하여 균전제^{均田制}를 재정비하였으며, 그 공으로 재상의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100일 만에 쫓겨나 유배 도중에 병사하였다.

26 권농판관^{勸農判官}을 ... 하였다: 우문융^{宇文融}은 복전권농사^{覆田勸農使}가 되어 29명의 권농판관^{勸農判官}을 파견하여 임시로 어사^{御史}의 직임을 맡기고 지역을 나누어 천하를 순행해서 누락된 호구^{戶口}와 전지^{田地}를 조사하여 밝히게 하였다. (『新唐書』「宇文融傳」)

27 왕홍^{王鉷}: ?~752. 호부낭중, 호구색역사^{戶口色役使}, 어사중승 등을 지냈다. 후에 아우 왕한^{王鐔}이 형제^姪와 역모를 꾸미다가 발각되어 함께 사사^{賜死}되었다.

호적을 조사하여 [변방에서 수자리 사는 6년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조租와 용庸을 모두 징수하였는데, 30년 치를 한꺼번에 징수한 경우도 있었다. 현종이 상을 하사함에 절제가 없었는데, 좌장고左藏庫와 우장고右藏庫에 보관된 것을 가져다 하사품으로 쓰려고 하지 않았다. 이에 왕흥이 현종의 뜻을 알아차려 매년 바치는 액수 외에 돈과 비단 억만금을 내고內庫에 비축하여 궁중의 잔치 용품과 하사품으로 공급하고 “이는 모두 조·용·조租庸調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국가의 경비와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하니, 현종은 왕흥이 나라를 부유하게 한다고 하여 후하게 대우하였다.

■ 당 덕종 때의 일이다. 호부시랑戶部侍郎 배연령裴延齡²⁸이 “여러 주州에서 흠부전欠負錢 800여만 민縑을 색출하고 추관전抽貫錢²⁹ 300만 민과 정양물呈樣物 300여만 민을 거두었으니, 별도로 흠고欠庫, 부고負庫, 모고耗庫, 잉고騰庫를 설치하여 관장하고 염색한 직물은 월고月庫를 설치하여 관장하기를 청합니다.”³⁰라고 아뢰니, 덕종이 이를 따랐다. 흠부전은 모두 가난한 사람이 상환하지 못해 장부에 숫자만 남아 있는 돈이고, 추관전은 비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곧바로 고갈되는 돈이고, 정양물과 염색한 직물은 모두 규정상 좌장左藏에 있어야 할 재물이었다. 그런데 배연령이 이 물자를 별고別庫를 설치하여 옮기고 품목과 수량을 허위로 부풀려 덕종을 현혹시키니, 덕종은 이를 믿고 배연령이 국고를 풍족하게 만들었다고 여겨 총애하였다.

■ 당 덕종이 행궁의 행랑 아래에 여러 도에서 바친 물건을 저장하고, ‘경림고瓊林庫’, ‘대영고大盈庫’라고 방榜을 달았다. 육지陸贄³¹가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천자는 사해四海를 집으로 여기니, 어찌하여 굳이 공평하고 올바른 법도를 폐기하고 사사로운 재화를

28 배연령裴延齡: 728~796. 사농소경司農少卿과 탁지度支를 맡으면서 재화를 빼돌려 황제에게 상납하여 총애를 받으려 하였다. 당시 재상 육지陸贄를 모함하여 폄직당하게 하였는데, 덕종이 육지를 대신하여 재상으로 삼으려 하였으나 간의대부諫議大夫 양성陽城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29 추관전抽貫錢: 당대唐代 부세의 한 가지로, 평소 거두어들이는 부세 이외에 관전貫錢에 따라 추가로 약간의 문물을 징수한 부세를 말한다.

30 여러 … 청합니다: 『신당서新唐書』 「배연령전裴延齡傳」에 천하의 오래도록 체납된 세금 800만 민을 부고負庫에 나누어 두고, 추관抽貫 300만 민을 잉고騰庫에 두고, 양물樣物 30만 민을 계고季庫에 두고, 염색한 직물은 월고月庫에 두었다.[於是以天下宿負八百萬緡析爲負庫 抽貫三百萬緡爲騰庫 樣物三十萬緡爲季庫 帛以素出以色入者爲月庫]라고 하였다.

31 육지陸贄: 「개언로開言路」 계조 95번 각주 참조.

모아서, 지존의 지위를 낮추어 유사有司의 직무를 대신하고 만승萬乘의 천자를 욕되게 하여 필부의 축재를 본받으십니까. 진실로 두 창고에 있는 재물을 모조리 꺼내어 공적이 있는 이에게 하사하고 진귀한 재화를 얻을 때마다 먼저 군대에 상여賞與로 지급하신다면, 혼란은 반드시 안정되고 적은 반드시 평정될 것입니다. 이것이 적은 저축을 흠여서 큰 저축을 이루고 작은 보물을 털어서 큰 보물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 당 목종唐穆宗이 복도를 통해 흥경궁興慶宮에 행차할 적에 통화문通化門의 문루에 이르러 비단 200필을 내어 신승山僧에게 보시하였다. 목종이 함부로 하사함이 대부분 이런 식이었다.

|| 후당 장종後唐莊宗³² 때의 일이다. 환관이 재물을 내부內府와 외부外府에 나누어 주현州縣에서 진상하는 것은 외부로 들여 경비로 충당하고, 방진方鎭에서 바치는 물건은 내부로 들여 연회나 좌우에 하사하는 비용으로 충당하도록 권하였다. 이에 외부는 늘 텅 비어 남은 것이 없고 내부는 산더미처럼 재물이 쌓였다. 유사有司가 교사郊祀 지낼 준비를 할 적에 노군전勞軍錢이 부족해지자, 곽송도郭崇韜³³가 장종에게 “바라건대 내부의 재물을 내어 유사에게 내리십시오.”라고 하였다. 이에 장종이 이계도李繼韜³⁴의 사저에서 금과 비단 수십만을 가져다 유사에게 보태주었으나 군사들의 성에 차지 않으니, 이때부터 원망을 품게 되었다.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 북송 휘종北宋徽宗 때의 일이다. 채경蔡京³⁵이 임금을 사치하도록 유도하는 데 힘써 걸핏 하면 『주례周禮』에 ‘왕의 필요에 의한 비용은 회계會計에 넣어 따지지 않는다.’라고 한

32 후당 장종後唐莊宗: 885~926. 오대 후당 군주 이존욱李存勳으로, 재위 기간은 923년에서 926년이다. 진왕晉王 이극용李克用的 장남으로, 즉위하여 국호를 당唐이라 하고 후량後梁을 멸망시키고 낙양에 도읍하고 이듬해 전촉前蜀도 병합하였다. 뛰어난 무장이었으나 측근들에게 정치를 맡기고 사치에 빠져 부하 곽종근에게 시해되었다.

33 곽송도郭崇韜: ?~926. 오대십국 후당의 명장名將으로, 자는 안시安時이다. 이존욱이 후당을 건국하고 병부상서, 추밀사에 임명하였다. 이 해에 뛰어난 계책으로 8일 만에 양梁을 멸망시키고 시중侍中이 되었으며, 이존욱의 장남 이계급과 함께 촉蜀을 멸망시켰다. 충간을 하고 전공을 세우며 왕실을 보호했지만, 환관과 이존욱의 왕후인 신민경황후神閔敬皇后의 모함으로 죽임을 당하였다. 주위 사람이 아부하기 위해 그와 성씨가 같다는 이유로 당의 명장 곽자의의 후손일 것이라고 부추겼는데, 이를 사실로 여기고 촉을 정벌하러 가는 길에 곽자의의 묘에 들러 절하여 사람들의 비웃음을 산 일이 있다.

34 이계도李繼韜: ?~923. 자는 유득留得이다. 부친 이사소李嗣昭가 장종의 부친 이극용李克用的의 양자가 되면서 황족이 되었다. 후량後梁을 섬기다가 장종이 후량을 멸망시켰다는 말을 듣고 귀순하여 입조하였다. 후에 유후留侯가 되었으나 신임을 받기 위해 모략을 꾸미다가 발각되어 죽임을 당했다.

말을 들먹였고, 전조前朝에서 재화를 아껴 비용을 줄인 일을 언급할 때마다 반드시 고루 하다고 하였다. 토목 사업을 일으키거나 건물을 지을 때는 대부분 이전의 규모를 따져서 훗날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과시하고자 하여 재물을 썩은 흙덩이 보듯 하니, 누대에 걸쳐 비축해놓은 것이 모조리 없어졌다.

■ 남송 효종南宋孝宗 때의 일이다. 주희朱熹가 승정전설서崇政殿說書가 되어 봉사封事를 올리니,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우윤문虞允文³⁶이 재상이 된 뒤로 판조版曹[戶曹]의 세입歲入으로 정해진 항목 가운데 반드시 거둘 수 있는 것을 모두 취하여, 한 해 동안 사용하고 남은 수량이라고 하여 내탕고內帑庫로 실어 보내고, 도리어 명목만 있고 실제로 거두지 못하는 것, 누적된 미납세, 장부에 허투루 기재한 것을 판조로 돌렸습니다. 판조의 경비가 날이 갈수록 궁핍해지자, 감사監司와 군수郡守의 고과考課를 따지는 법³⁷을 만들어 더 거두도록 압박하였습니다. 이에 안팎으로 경쟁하듯이 가렴주구를 행하니, 이것이 민력民力이 곤핍해진 이유입니다.” 【『속자치통감』에 보인다.】

■ 명 신종明神宗 때의 일이다. 여러 곳에 광산礦山을 열었으나 광세礦稅로 이익을 보지 못하자, 백성들에게 강제로 은을 징수하였다. 이에 산서 순무山西巡撫 위운정魏允貞³⁸이 “광세의 폐단이 형여刑餘³⁹로 하여금 패악을 부리도록 하였습니다.” 라고 상주奏上하니, 신종이 그를 매우 질책하였다. 【『명사강목』에 보인다.】

35 채경蔡京: 1047~1126. 자는 원장元長이다. 환관 동관童貫을 통해 52세에 재상이 된 뒤 여러 차례 파직과 재기를 반복하여 16년 동안 재상 자리에 있었다. 금수와 동맹하여 요遼를 멸망시킨 것은 그의 공적이라 할 수 있으나 휘종에게 사치를 조장하여 재정을 궁핍하게 만들고 세금을 증액하여 민심의 이반을 초래하였다. 흠종이 즉위한 뒤 동관, 왕보, 양사성 등과 결탁하여 사마광 등 구법당을 배척하고 왕안석의 신법을 시행하는 등 국정을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육적六賊으로 지목되어 실각하였다.

36 우윤문虞允文: 1110~1174. 자는 빈보彬甫이며 문신文臣이자 장수將帥로서 공을 세웠다. 금군이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와 채석산采石山 아래 진을 치고 장강長江 이남으로 도강하려 하자, 소수의 패잔병을 수습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공격하여 격파하였다. 이후로도 출장임상出將入相의 활약을 보였으며 벼슬은 좌상상에 이르렀고 몽국公雍國公에 봉해졌다.

37 고과考課를 따지는 법: 원문의 “殿最”를 번역한 말이다. ‘전최’는 관원들의 근무 성적 고과를 가리키는 말로, 상소를 ‘최最’, 하사를 ‘전殿’이라고 하였다.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감사監司가 관아 각 고을의 수령들의 성적을 고과하여 중앙 정부에 보고하였다.

38 위운정魏允貞: 1542~1606. 자는 무충懋忠이다. 그의 아우 위운중魏允中과 위운부魏允孚와 함께 ‘남동의 삼위[南東三魏]’라 불렸으며, 관직이 병부우시랑兵部右侍郎에 이르렀다.

39 형여刑餘: 형벌로 인해 불구가 된 자를 가리키는 말로, 여기서는 공형宮刑을 받은 환관을 가리킨다.

근안 謹按

삼가 살펴보건대, 천지가 재물을 냄에는 일정한 수가 있으니 재물이 위에 있지 않으면 아래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으면 위에 있을 뿐입니다. 태평한 시대에는 창고가 차고 넘쳐 백성들 또한 집집마다 사람마다 풍족하고, 혼란한 시대에는 창고가 고갈되어 백성들 또한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는 것은 어찌서겠습니까? 임금이 국용國用을 절약하면 재화가 절로 여유로워져 백성과 나라 모두 넉넉해지고, 임금이 국용을 절약하지 않으면 재화가 절로 궁핍해져 공사公私가 모두 피해를 집니다. 이 때문에 송宋의 소식蘇軾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는 만세의 장구한 계책도 있고 한 시기의 계책도 있으며 한 달도 채 가지 못할 짧은 계책이 있습니다. 한 해에 쓸 비용이 충분하고 9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비축이 있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도적의 근심이 있더라도 관아에서 스스로 잘 처리할 수 있어 백성들은 재난이 닥친 줄도 모릅니다. 이처럼 하면 하늘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못하고 땅이 백성을 가난하게 하지 못하고 도적들이 백성을 곤궁하게 하지 못하니, 이것이 만세의 장구한 계책입니다. 이와 달리 한 해의 수입이 겨우 한 해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따름이어서, 평소에 비록 백성들에게 포악하게 거두진 않으나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세금을 무겁게 거둘 수밖에 없으니, 이것이 한 시기의 계책입니다. 지출에 따라 그때그때 거두어들이다가 쓰는 것이 넉넉하지 못하면 취하기를 더욱 번다하게 하니, 만일 위급한 일이 있게 되면 장차 어떻게 세금을 더 거둘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한 달도 채 가지 못할 짧은 계책입니다.”⁴⁰ 예로부터 재물에 대해 논한 말 중에 이보다 상세한 것이 없습니다.

아!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수적인 것은 재화보다 시급한 것이 없으니, 위로는 능驥과 종묘에 제사 지내고 아래로는 백관에게 녹봉을 지급하며, 가까이로는 궁중의 비용과 멀게는 국경 밖에서의 비용까지 어딜 가더라도 재화가 들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나라를 넉넉하게 하는 방도는 소금과 철을 실어 나르고 선박과 수레에 세금을 매기고 산과 못에서 거두어들이는 데 있지 않으니, 세입의 수를 헤아려 평소 비용을 줄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40 나라를 … 계책입니다: 북송 인종北宋仁宗 때, 소식이 제과制科에 응시하여 올린 책문策文 25편 중 「후화제厚實財」의 글로, 제목은 ‘생비용省費用’이다.

공사 간에 중요하지 않은 비용은 마땅히 줄여야 하고, 대소를 막론하고 무익한 비용은 덜어내야 합니다. 안으로는 내탕고內帑庫와 밖으로는 국고國庫에 이르기까지 모두 미려尾闢⁴¹와 같은 구멍을 막는다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의 넉넉함이 있어 작은 것을 쌓아 큰 것을 이루어 저절로 쌀이 차고 넘쳐 붉게 썩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송宋의 왕안석王安石⁴²은 이러한 방법을 알지 못하고 청묘염산靑苗斂散⁴³의 제도를 만들었으니,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병들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한기韓琦⁴⁴가 그를 책망하며 ‘임금이 절약하고 검소하면 이익을 내려고 도모하지 않아도 재화가 저절로 풍족해질 것이다.’ 라고 한 이유입니다.

생각건대, 우리나라의 성스럽고 신령스러운 왕께서는 대대로 절약을 급선무로 여기셨습니다. 태종 때는 예빈시禮賓寺에서 물고기를 기르는 데 매달 10 말의 쌀을 사용하였는데, 백성들의 굶주림을 생각하여 그 관례를 폐지하라 명하셨습니다.⁴⁵ 세종 때는 제주濟州에서 해마다 1만 필의 말을 진상하였는데,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그 수를 줄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세조 때는 쓸데없이 녹봉을 먹는 인원을 덜어내어 국용을 풍족하게 하였고, 성종 때에는 횡간橫看⁴⁶에 대한 법령을 재정비하여 경비를 줄이셨습니다. 선묘宣廟[선조] 때는 섬나라 오랑캐의 난리를 겪었음에도 4만 석의 창곡倉穀이 남았으니, 비용을 아

41 미려尾闢: 바닷물이 쉴 새 없이 빠져나가는 큰 구멍으로, 한정 없이 새어나가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장자』 「추수秋水」에 “미려에서 잠시도 쉬지 않고 바닷물을 빼내는데도 바닷물은 줄어들지 않는다.[尾闕泄之 不知何時已而不虛]” 라고 한 데서 나왔다.

42 왕안석王安石: 1021~1086. 자는 개보介甫, 호는 반산半山이다.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이다. 지방관으로 근무하면서 수리시설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양곡을 대여하면서 제도를 엄수하여 치적을 쌓았다. 1만 자에 이르는 만언서萬言書를 작성하여 자신의 정치적 이상 실현을 위한 변법개혁과 인재의 양성 등의 구체적인 정책을 주장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신종이 즉위한 뒤 중용되어 신법新法을 추진하여 부국강병을 도모했지만 반대파의 저항으로 인해 무산되고 벼슬에서 물러났다.

43 청묘염산靑苗斂散: 청묘법靑苗法을 말한다. 염산은 봄에 빌려주고秋收, 가을에 거두어들였기斂 때문에 이름한 것이다. 왕안석王安石의 신법新法으로 실시된 농민에 대한 저리低利 금융정책이다. 상평급렴법常平給斂法 또는 상평염산법常平斂散法이라고도 한다. 상평창과 광혜정廣惠倉에 쌓아 둔 돈과 곡식을 자본으로 하여 봄에 빌려줬다가 여름에 거두어들이고 여름에 빌려줬다가 가을에 거두어들였는데, 2분의 이자를 받았다. 보래 이자를 낮게 책정하여 토호들의 횡포를 막고 백성들의 부담을 건감하려는 의도였으나, 시행 중에 온갖 폐단이 발생한 데다 보수파가 반대하여 폐지되었다.

44 한기韓琦: 1008~1075. 자는 치규稚圭이다. 흥년이 들자 탐관오리를 벌하고 세금과 부역을 줄여 기민을 구제하였으며, 서하西夏의 침입을 물리쳐 공을 세웠다. 이후 재상에 올랐으나 왕안석과 대립하다 관직에서 물러났다.

45 태종 … 명하셨습니다. 예빈시禮賓寺에서 모화루慕華樓의 남쪽 못에 물고기를 길렀는데, 매달 10말의 쌀을 사용하였다. 태종이 이 말을 듣고 “쌀이 묵어 썩어난다 해도 채소를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사람이 굶주리는데도 구제하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물고기에게 먹이는가.”라고 하고, 이를 중지하라고 명하였다. (『太宗實錄』 13년 6월 20일)

46 횡간橫看: 칸을 나누어 물물物目을 적은 재정 세출표로, 상공上供, 국용國用, 녹봉祿俸, 군사軍資, 의창義倉, 의료醫療 등의 비목費目이 있다. 세조 1464년(세조 10)에 처음 횡간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였고, 1474년(성종 5)에 개정되었으며, 그 뒤부터는 개정되지 않았다.

긴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묘仁廟[인조] 때는 금한金汗[포]에 수탈을 당하였음에도 안팎으로 국력을 유지하였으니, 씹씹이를 줄인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계획은 조종祖宗의 마음을 본받아 궤내에 공급하는 것과 관련 있더라도 낭비의 기미가 보이면 없앨 것을 생각하고, 궁중과 관계되었더라도 남용하는 데에 가까우면 내칠 것을 생각하며, 오군문五軍門⁴⁷은 시의時宜를 참작하여 인습하거나 개혁하고, 선혜청宣惠廳은 옛 제도를 따라 재단하여 바로 잡아야 합니다.

대개 그 밖에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재화를 상하게 하는 것은 그때그때 변통해야 하지 오래된 폐단이라 하여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사소한 비용이라 하여 등한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을 맡은 자도 원망을 받더라도 비용을 절약하고 마음을 다해 재화를 다스리면, 하루 만에 효과를 거두기는 부족하겠지만 한 달 만에 효과를 거두는 계획으로는 충분할 것입니다.⁴⁸ 그렇게 하면 소식이 말한 만세의 장구한 계획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니,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유념하고 유념하소서.

47 오군문五軍門: 훈련도감訓鍊都監, 총융청總戎廳, 수어청守禦廳, 어영청御營廳, 금위영禁衛營의 다섯 군영으로, 임진왜란 이후 기존의 군영체제인 오위五衛를 고친 것이다.

48 하루 ... 것입니다. 『후한서』 「숙종효장제기肅宗孝章帝紀」에 “안온하고 조용한 관리는 꾸밈없이 진실하여, 하루 만에 효과를 거두기는 부족하겠지만 한 달 만에 효과를 거두는 계획으로는 충분하다.[安靜之吏 愜福無華 日計不足 月計有餘]”라고 하였다.

간행행 簡行幸

행행을 삼가다

법조 法條

■ 전한 문제前漢文帝가 패릉瀟陵 위에서 말을 달려 가파른 언덕을 내려오려 하자, 중랑장中郎將 원앙袁盎¹이 말고삐를 잡아당기며 말하였다. “신이 들으니, 천금의 자산을 가진 집의 자제는 기왓장이 떨어질까 마루 끝에 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군聖君은 위험한 것을 타지 않고 요행을 바라지 않는 법인데, 지금 폐하께서는 날 듯이 빠른 여섯 마리 말을 몰아 가파른 산에서 내려가려 하십니다. 혹여나 말이 놀라 수레가 전복되기라도 하면 폐하께서는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신다지만 고묘高廟[고조高祖의 사당]와 태후는 어찌하시렵니까.” 이에 문제가 그만두었다.

■ 전한 무제前漢武帝가 상림원上林苑을 만들어 직접 곰과 돼지를 때려잡는 것을 즐겨하니, 사마상여司馬相如²가 상소하여 간언하였다. “폐하께서 날래고 강한 짐승을 마주쳐 위험한 상황에 놀라고 그 짐승이 폐하께서 타고 계신 수레를 덮친다면, 수레는 미처 끝채를 돌리지 못할 것이요 사람은 사냥 솜씨를 부릴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위태롭지 않겠습니까. 신은 삼가 폐하를 위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무제가 그를 훌륭하게 여겼다.

1 원앙袁盎: ?~기원전 148. 자는 사絲이다. 평소 직간直諫을 잘하였고, 이로 인해 좌천되기도 하였다. 경제가 자신의 친제親弟인 양 효왕梁孝王을 후사로 삼으려 하자 원앙이 저지하였고, 양 효왕이 이에 원한을 품어 원앙을 암살하였다.

2 사마상여司馬相如: 기원전 179~기원전 117. 자는 장경長卿이다. 사부辭賦에 능통하였고, 「자허지부子虛之賦」를 지어 이름을 떨쳤다. 무제武帝 때 중랑장中郎將이 되어 촉에 사신으로 가서 격문檄文을 지어 부모父老들을 책망하자, 촉 사람들이 모두 안정되었다고 한다.

|| 전한 원제前漢元帝가 가을에 주주酎酒³를 올려 종묘에 제사 지낼 적에 편문便門으로 나와 누선樓船을 타려고 하였다. 설광덕薛廣德⁴이 황제의 수레를 가로막고는 관을 벗고 머리를 조아리며 “다리를 통해 가셔야 합니다. 폐하께서 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신은 스스로 목을 베어 그 피로 수레바퀴를 더럽힐 것이니, 그렇게 되면 폐하께서는 종묘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하니, 광록대부 장맹張猛⁵이 앞으로 나와 말하였다. “신이 들으니, 군주가 어질면 신하가 곧다고 하였습니다. 누선을 타는 것은 위험하고 다리로 가는 것은 안전하니, 어사대부의 말을 들을 만합니다.” 이에 원제가 다리를 통해 갔다.

|| 후한 광무제後漢光武帝가 사냥을 나갔다가 거가車駕가 밤에 돌아왔는데, 상동문上東門의 문후門候⁶ 질운鄧暉이 관문을 막고 열어주지 않았다. 광무제가 종자로 하여금 문 사이로 얼굴을 보여주게 하자, 질운이 “불빛이 너무 멀다.”라고 하며 끝내 명령을 듣지 않았다. 이에 광무제가 중동문中東門으로 돌아서 들어갔다. 이튿날 질운이 글을 올려 간하였다. “폐하께서 멀리 산림까지 나가 밤새도록 사냥하시니, 종묘와 사직은 어찌하시렵니까.” 글을 아뢰자, 질운에게 포布 100필을 내리고 중동문의 문후를 좌천시켰다.

|| 진왕秦王 부견苻堅⁷이 업鄴에 가서 서산에서 사냥하다가 열흘이 넘었는데도 돌아갈 줄 모르자, 영인伶人 왕락王洛이 말고삐를 잡아당기며 말하였다. “폐하께 군생群生이 달려있는데 지금 오랫동안 사냥을 하시고도 돌아가지 않으십니다. 예상치 못한 환란이 생기면 태후와 천하는 어찌하시렵니까.” 부견이 왕락으로 인해 사냥을 그만두고 돌아가 이후로 다시 사냥하지 않았다.

3 주주酎酒: 청주淸酒의 일종으로, 세 번 빚어 물을 타지 않고 곧바로 걸러낸 전국주를 말한다. 한·한의 제도에서는 고조高祖의 사당에 주주를 썼는데, 정월에 빚어 8월에 완성하였다.

4 설광덕薛廣德: 자는 장경長卿이다. 소망지蕭望之의 천거로 관직에 진출하여 경학박사經學博士, 간의대부諫議大夫, 장신소부長信少府, 어사대부御史大夫 등을 역임하였다. 성품이 강직하여 삼공三公에 올라서도 직언으로 간쟁하다가 결국 사직하였다.

5 장맹張猛: ?~기원전 40. 자는 자유子游이다. 광록대부光祿大夫, 급사중給事中을 역임하였는데, 석현石顯의 참소를 받아 자결하였다.

6 상동문上東門의 문후門候: 상동문은 낙양의 12문 중의 하나로 인방寅方의 문이다. 문후는 문을 지키는 관원이다.

7 부견苻堅: 338~385. 오호십육국 전진前秦의 제3대 군주 문욱文武으로, 재위 기간은 357년에서 385년이다. 시호는 선소황제宣昭皇帝이다. 스스로 대진천왕大秦天王이라 칭하고 왕맹王猛을 발탁하는 등 전진의 전성기를 이루었으나, 왕맹이 죽은 후 내치에 치중하려는 당부를 잊고 동진東晉을 정벌하다가 대패하고 멸망하였다.

- || 당 고종⁸唐高宗이 사냥을 나갔을 적에 비가 내리자, 간의대부⁹諫議大夫 곡나울⁸谷那律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유의⁹油衣에 물이 새지 않겠는가?” 곡나울이 대답하였다. “기와로 옷을 삼으면 반드시 물이 새지 않을 것입니다.”¹⁰ 고종이 기뻐하며 이 일로 사냥을 그만 두었다.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 || 명 선종¹¹明宣宗이 미행¹¹微行을 매우 좋아하였다. 어느 날 밤에 궁을 나와 양사기¹¹楊士奇의 집에 거둥하자, 양사기가 엎드려 말하였다. “만에 하나라도 창졸간에 변고라도 생긴다면 어찌 대비하시렵니까.” 열흘이 지난 후에 도적들이 옥천사¹¹玉泉寺에서 거가¹¹車駕를 기다렸다가 난을 일으키기로 약속하였는데, 결국 금의위¹¹錦衣衛에게 사로잡혔다. 선종이 이에 감탄하며 “양사기의 말은 허언이 아니었다.”라고 하고 다시 미행하지 않았다. 【『명사강목』에 보인다.】

계조 戒條

- || 하¹²의 태강¹²太康이 즉위하여 국사를 돌보지 않고 낙수¹²가로 사냥을 나가 열흘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자 궁¹²의 임금 예¹²羿가 백성의 원망을 이유로 하수¹²河水에서 태강을 막았다.
- || 주 목왕¹³周穆王이 여덟 마리의 준마를 얻었는데 조보¹³造父란 자가 말을 잘 몰아 목왕에게 충애를 받았다. 목왕이 마음 내키는 대로 천하를 두루 돌아다녀 수레바퀴 자국과 말발

8 곡나울⁸谷那律: ?~650. 국자박사, 간의대부, 홍문관 학사 등을 역임하였다. 경학에 뛰어나 저수량⁸褚遂良이 구경고⁸九經庫라고 칭하였으며, 『오경정의⁸五經正義』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9 유의⁹油衣: 비를 막기 위해 종이나 포목⁹布木으로 만들어 기름을 먹인 옷이다.

10 기와로 … 것입니다: 기와집 속에 앉아서 사냥하러 나가지 않으면 비를 맞을 걱정이 없다는 말로, 곡나울이 사냥을 좋아하는 고종을 풍자한 것이다.

11 양사기¹¹楊士奇: 「근정사¹¹勤政事」 법조 19번 각주 참조.

12 태강¹²太康: 하¹²의 왕으로, 우¹²의 손자이며 계¹²의 아들이다. 즉위한 뒤, 매일 사냥에만 골몰하고 정사는 돌보지 않자, 궁¹²의 임금 예¹²羿에 의해 하수를 건너 도읍으로 돌아오지 못하여 왕위에서 쫓겨났다.

13 주 목왕¹³周穆王: 주의 왕 희만¹³姬滿으로, 소왕¹³昭王의 아들이다. 소왕이 원정 도중에 행방불명되자 즉위하였다. 8마리 준마를 몰아 건용¹³犬戎을 토벌하고 서역¹³西域을 순수¹³巡狩하였다. 목왕이 오랫동안 서역에서 유람하며 돌아오지 않자, 서¹³徐가 반란을 일으켜 주의 동쪽 지역을 장악하였다. 이에 황급히 돌아와 서를 공격하여 멸망시키고 영토를 수복하였다.

굽 자국을 남기려고 하였다. 【이상은 『봉주강감』에 보인다.】

- || 노 은공魯隱公¹⁴이 당棠 땅에 가서 고기잡이하는 것을 구경하려 하자, 장희백臧僖伯¹⁵이 다음과 같이 간언하였다.** “어떤 일이 대사大事제사와 전쟁을 익히기에 부족하거나 그 재목이 기용器用을 갖추기에 부족하다면 임금은 거동하지 않습니다. 봄 사냥蒐, 여름 사냥苗, 가을 사냥罔, 겨울 사냥狝은 모두 농한기에 무예의 일을 익히는 것입니다.¹⁶ 제기에 올리지 않을 고기나 기물로 쓰지 않을 피혁皮革, 치어齒牙, 골각骨角, 우모毛羽는 사냥하지 않는 것이 옛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은공은 간언을 듣지 않고 결국 가서 어구漁具를 늘어 놓고 구경하였다.
- || 노 장공魯莊公이 제齊에 가서 사제社祭¹⁷를 구경하러 하니, 조귀曹劌가 간언하였다.** “회동會同하여 상하의 법칙을 훈시訓示하고 채용의 절도를 제정하며, 조회朝會하여 작위에 따라 서열을 정하는 의미를 바로잡고 나이가 많고 적음의 질서를 통솔합니다. 이런 일이 아니면 임금은 거동하지 않습니다. 임금의 거동은 반드시 기록합니다. 기록되었는데 본받을 만한 것이 못된다면, 뒤를 잇는 임금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 || 노 장공이 조洮에서 기백희杞伯姬를 만났는데, 국사國事와 무관했다.¹⁸ 천자는 덕의德義를 펴는 일이 아니면 순수巡守¹⁹하지 않고, 제후는 백성을 위한 일이 아니면 거동하지 않으며, 경卿은 임금의 명이 아니면 국경을 넘지 않는다.**

14 노 은공魯隱公: 춘추 시대 노의 군주로, 성은 희姬, 이름은 식고息姑이다. 해공惠公의 서자로, 해공이 죽자 적자臧子 윤후이 너무 어렸으므로 섭정의 자격으로 추대되었다. 공자 휘가 태자를 죽이고 정식으로 즉위할 것을 권하자, 태자가 장성하면 정권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거절하였다. 이후 전공을 세워 권력을 장악한 공자 휘가 태자와 함께 그를 죽이고 태자를 즉위시켰다.

15 장희백臧僖伯: 춘추 시대 노홀의 대부로, 성은 희姬, 이름은 구雍이다. 희는 시호이다. 자는 자장子臧인데, 이 '장臧'이 그 후손의 씨씨가 되었다. 해공惠公의 동생이며 은공魯公의 숙부로, 직언으로 은공을 보필하였다.

16 봄 … 것입니다: 『춘추좌씨전』 은공魯公 5년에 보이는 내용인데, 두예杜預의 주에 “‘수蒐’는 찾는 것이니 잉태하지 않은 짐승을 골라잡는 것이다. ‘묘蒐’는 곡식의 싹을 위해 해로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선獮’은 죽이는 것이니 죽임으로 이름한 것은 가을의 기운을 따른 것이다. ‘수狩’는 포위해 지키는 것이니 겨울에는 동물이 모두 성장하였기 때문에 잡히는 대로 취하고 선택하는 바가 없는 것이다.[蒐 擇取不孕者 苗 爲苗除害也 獮 殺也 以殺爲名 順秋氣也 狩 圍守也 冬物畢成 獲則取之 無所擇也]”라고 하였다.

17 사제社祭: 토지신에게 지내는 제사로, 봄과 초겨울에 지낸다.

18 노 장공이 … 무관했다: 기백희는 장공의 딸이다. 조洮 땅에서 자신의 딸을 만난 것은 사사로이 부녀간의 상봉이지 국사는 아니었음을 말한 것이다.

19 순수巡守: 천자가 제후의 나라를 두루 다니며 살펴보는 일을 말한다. ‘순수巡狩’라고도 한다.

|| 초 영왕楚靈王이 주래州來로 겨울 사냥을 나가 영수潁水 가에 머물렀다가 건계乾谿에 머물렀다.²⁰ 이때 눈이 내리자 왕이 가죽 관을 쓰고 진秦이 보내준 복요復陶[우의羽衣]를 입고 비취翡翠의 깃으로 장식한 망토를 걸치고 표범 가죽으로 만든 신발을 신고서 채찍을 잡고 나갔다. 공자 비比,²¹ 공자 흑굉黑肱, 공자 기질棄疾, 만성연蔓成然, 채蔡의 조오朝吳와 진陳, 채蔡, 불갱不羹, 허許, 엽葉의 군대가 반란을 일으켜 군대를 이끌고 건계로 가니, 영왕이 우윤芋尹 신해씨申亥氏의 집에서 목을 매어 죽었다. 【이상은 『춘추좌씨전』에 보인다.】

|| 전한 창읍왕前漢昌邑王 유하劉賀²²가 유람과 사냥을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방여方輿로 놀러 나갔을 적에 만나절도 되지 않아 200리를 내달렸다. 중위中尉 왕길王吉²³이 상소하여 간언하였다. “대왕께서 시서詩書와 치술治術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말을 타고 돌아다니기를 그치지 않으시니, 손은 채찍과 고삐에 고달프고 입은 고함을 지르느라 피곤하며 아침에는 안개와 이슬을 맞고 낮에는 먼지를 뒤집어쓰고 여름에는 심한 더위가 살을 태우고 겨울에는 매서운 바람이 살을 앓니다. 이것은 수명을 온전히 하는 방법이 아니며, 인의의 용성함에 나아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 전한 성제前漢成帝는 미행微行을 나갈 적에 기문랑期門郎²⁴ 혹은 사노私奴 10여 인을 데리고 저자와 마을, 교외를 출입하고, 멀리는 장안 주변의 현縣인 감천甘泉, 장양長楊, 오작五柞

20 초 영왕楚靈王이 … 머물렀다: 초 영왕이 주래로 사냥을 나가 영수 가에 주둔하여 대부 탕후탕侯, 반자潘子, 사마독司馬督, 효윤오궈尹午, 능윤희陵尹喜에게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오호의 우방友邦인 서徐를 포위하여 오를 위협하게 하였다. 그리고는 자신은 건계乾谿에 주둔하여 다섯 대부를 후원하였다. (『春秋左氏傳』 昭公 13年)

21 공자 비比: ?~기원전 529. 초楚의 공자로, 비는 그의 이름이며 자는 자간子干, 자오譽敖이다. 공왕共王의 삼남으로, 영왕靈王의 동생이자 평왕平王의 형이다. 공자 위圍가 정변을 일으켜 협오鄭敖를 죽이고 영왕이 되었을 때, 아우 흑굉黑肱과 함께 각각 진표, 정鄭으로 망명하였다. 기원전 529년에 영왕이 건계乾谿에 머물자, 비가 아우 흑굉, 기질棄疾과 반란을 일으켜 궁을 점령하였다. 비는 스스로 왕이 되었고, 흑굉은 영윤, 기질은 사마로 삼았다. 이후 기질이 거지로 소동을 일으켜 영왕이 돌아왔다고 알리니, 두려움에 흑굉과 함께 자살하였다. 자밭 땅에 묻혔으므로 자오라 하였다.

22 전한 창읍왕前漢昌邑王 유하劉賀: 기원전 92~기원전 59. 소제昭帝의 뒤를 이어 즉위했으나, 항락과 음란을 일삼다가 즉위한 지 27일 만에 폐위되었다.

23 왕길王吉: ?~기원전 48. 자는 자양子陽이다. 오경五經에 능통해 현량賢良으로 천거되어 창읍왕의 중위中尉가 되었다. 선제 때에 간대부諫大夫가 되어 상소로 황제의 잘잘못을 논하였는데, 선제가 받아들이지 않자 병을 핑계로 낙향하였다. 그 후 원제元帝가 즉위하여 다시 간대부로 불렸으나 병사하였다. (『漢書』 「王吉傳」)

24 기문랑期門郎: 병기를 지닌 채 사람을 전송하고 수행하는 관직이다. 무제武帝가 처음 설치하였는데, 모두 낭관郎官으로 정원에 제한이 없어서 많으면 1,000명에 이르렀다.

까지 다녔다. 닭싸움과 말 경주를 구경할 때면 항상 부평후富平侯라고 자칭하였는데, 부평후는 경무공주敬武公主 아들인 장방張放²⁵이었다.

|| 후한 환제後漢桓帝²⁶가 미행하여 하남윤河南尹 양윤梁胤의 집에 갔는데, 이날 바람이 크게 불어 낮인데도 어두웠다. 상서尙書 양병楊秉²⁷이 “지존至尊은 출입에 일정한 법도가 있으니, 교제郊祭와 묘제廟祭가 아니면 난기鑾旗²⁸를 쫓은 수레를 몰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왕의 법복法服²⁹을 입고 사사로이 놀러 나오셔서 시위侍衛가 빈 궁을 지키고 옥새와 인끈은 신첩臣妾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가령 뜻밖에 변고가 생긴다면 위로는 선제先帝를 저버리고 아래로는 후회한들 되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상소하였으나, 환제는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남조南朝 제 동훈후齊東昏侯³⁰가 즉위하고 나서 보통 한 달에 20여 차례 밖으로 나갔다. 항상 3, 4경更이 될 즈음에 북소리가 사방에서 울리고 불빛이 하늘을 밝히며 번기幡旗와 창을 잡은 군사들이 길을 가로질렀다. 이에 앞서, 지나가는 곳에 인가人家가 있으면 사람들을 쫓아 버리고 빈집만을 남겨 두었니, 사민士民들은 소리를 지르며 달아나고 울부짖는 소리가 길을 가득 메웠다. 어느 날 심공성沈公城에 갔는데, 한 부인이 출산이 임박해서 떠나지 않고 있자 배를 갈라 그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보았다. 또 정림사庭林

25 장방張放: ?~기원전 6년. 장안세張安世의 4대손으로, 어머니가 원제元帝의 누이동생인 경무공주敬武公主였기 때문에 원제의 뒤를 이은 성제成帝의 총애를 받았다. 시중侍中과 중랑장中郎將의 관직을 받았으며, 허 황후許皇后의 여동생과 혼인하였다.

26 후한 환제後漢桓帝: 132~167. 후한 제11대 황제 유지劉志로, 재위 기간은 146년부터 167년이다. 대장군 양기梁冀에 의해 옹립되어 제위에 올랐다. 양기를 비롯한 외척들이 횡포를 부리자, 환제는 환관 선초單超와 모의하여 양씨를 숙청하였다. 그러나 이로부터 환관이 국정을 전횡하게 되었고, 이에 맞서는 이응李膺 등의 청류당清流黨 200여 명이 종신토록 출사하지 못하게 되는 당고黨錮의 화를 초래하였다.

27 양병楊秉: 92~165. 자는 숙절叔節이다. 상서구양씨학尙書歐陽氏學의 대가였던 양진楊震의 아들로, 청백리로 명성이 높았다. 예주豫州, 형주荊州, 서주徐州, 연주兗州의 자사를 역임하고 태위太尉에 올랐다. (『後漢書』「楊秉傳」)

28 난기鑾旗: 방울 장식이 달린 깃발로, 천자의 거가車駕에 세운다.

29 선왕의 법복法服: 고대의 성왕聖王이 예법에 맞게 차등을 두어 제정했다는 옷으로, 천자 이하 다섯 등급으로 나눈 오복五服 제도가 있었다고 한다. 『효경』「경대부卿大夫」에 “선왕의 법복이 아니면 감히 입지 않는다. [非先王之法服 不敢服]”라고 하였다.

30 제 동훈후齊東昏侯: 483~501. 남조 제 6대 군주 소보권蕭寶卷으로, 재위 기간은 498년에서 501년이다. 명제의 둘째 아들로, 폐위되었기 때문에 사후에 동훈후로 격하되었다. 세금을 가혹하게 걷고 간신배들을 가까이하면서 서효사徐孝嗣 등의 대신大臣을 죽였다. 당시 빈번한 전쟁으로 국가 재정이 어려웠는데도 대규모 공사를 벌이는 등 사치를 일삼았다. 이로 인해 국세가 기울고 결국 소연蕭衍에 의해 폐위되었다.

속에 갔는데, 늙고 병이 들어 떠나지 못한 승려가 있자 좌우에게 그를 쏘라고 명하니 화살 백 발이 모두 발사되었다. 항상 직물로 만든 고습袴褶³¹을 입고 금박을 입힌 모자를 썼으며, 칠보로 장식한 창을 잡고서 교외로 나가 꿩을 사냥하였다.

|| 북제 현조北齊顯祖가 유람할 적에 머리를 풀어헤치고 호복胡服을 입거나, 분대粉黛를 칠하거나, 소와 나귀, 낙타, 흰 코끼리를 타고서 안장과 고삐를 채우지 않거나, 최계서崔季舒와 유도지劉桃枝에게 자신을 업고 가게하고는 호고胡鼓를 메고 두드렸다. 저자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거리에 앉고 골목에서 자기도 하였다. 어느 날 길에서 어떤 부인에게 “천자는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부인이 “미련하고 어리석으니 어찌 황제노릇을 하겠소.”라고 하니, 현조가 그녀를 죽여버렸다.

|| 북주 선제北周宣帝³²가 태자에게 양위하고 스스로 천원황제天元皇帝라 칭하고 네 황후를 세웠다. 낙양洛陽에 갈 때, 친히 역마를 몰아 하루에 300리를 갔는데, 네 황후와 문무시위가 모두 역마를 타고 따라서 나란히 함께 달렸다. 동주同州에 갈 때, 응문應門³³에서 적안택赤岸澤까지 수 십리가 번기幡旗로 뒤덮였고 음악이 연주되었다.

|| 수 양제隋煬帝의 거가車駕가 유림榆林에서 출발하여 운중雲中을 지나 금하金河를 거슬러 올라갔다. 갑사甲士가 50여 만이었고 기치旗幟와 짐수레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우문개宇文愷³⁴ 등에게 관풍행전觀風行殿³⁵을 짓고 단청으로 꾸미게 하였는데, 호인胡인들이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

31 고습袴褶: 응복戎服을 입고 말을 탈 때에 두 다리를 가리던 아랫도리이다.

32 북주 선제北周宣帝: 559~580. 북주 제4대 군주 우문윤宇文贇으로, 재위 기간은 578년에서 580년이다. 무제의 맏아들로 태자에 책봉되었는데, 자질을 의심받아 아버지로부터 엄격한 교육을 받았다. 즉위하여 아버지의 신하를 숙청하고 대규모 궁전을 축조하고 사치를 일삼고 주색에 빠져 정무를 외척에게 일임하여 결국 멸망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33 응문應門: 천자의 궁궐 문 가운데 하나이다. 천자의 궁궐 문은 다섯으로, 바깥에서부터 고문阜門, 고문庫門, 치문雉門, 응문應門, 노문路門이 있었다.

34 우문개宇文愷: 555~612. 자는 안락安樂이다. 선비족 출신으로 건축 기예에 뛰어나 토목 사업에 종사하였다. 문제文帝의 명을 받아 위수渭水를 끌어 황하로 잇는 운하를 조성하였고, 문헌황후文獻皇后의 능을 쌓았다. 양제 때는 공부상서에 임명되었다. 저서에 『동도도기東都圖記』, 『명당도의明堂圖議』 등이 있다.

35 관풍행전觀風行殿: 수 양제가 우문개 등에게 만들게 한 이동식 궁궐이다. 전상殿上에는 수백 명을 수용할 수 있었고, 조립하고 해체할 수 있었으며, 바퀴가 있어 이동할 수 있었다.

- || 당 경종唐敬宗이 여산驪山의 온천에 가려고 하자, 습유拾遺 장권여張權輿가 머리를 조아리고 간언하였다. “주 유왕周幽王은 여산에 거동했다가 견융戎에게 피살되었고,³⁶ 진秦은 시황始皇을 여산에 장사지내자 나라가 망했습니다. 현종玄宗께서는 여산에 궁을 짓자 안녹산安祿山이 반란을 일으켰고, 선제先帝[穆宗]께서는 여산에 거동하셨다가 오래 살지 못하셨습니다.” 이에 경종이 “여산이 것처럼 흉한 곳인가. 내가 한번 가서 저 말을 시험해보겠다.”라고 하였다. 결국 온천에 갔다가 그날 환궁하고는 “저 머리를 조아리던 자의 말을 어찌 믿을 만하겠는가.”라고 하였다.
- || 당 의종唐懿宗³⁷ 때, 곡하曲河, 곤명昆明, 패산灊灊, 남궁南宮[興慶宮], 북원北苑, 소응昭應, 함양咸陽³⁸ 등 가고 싶은 곳으로 즉시 떠났는데, 물자를 마련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항상 유사有司가 음악, 음식, 장막을 갖추고, 제왕諸王은 말을 세워놓고 황제를 모시고 따라갈 것에 대비하였다. 거동할 때마다 내외 여러 관사의 호종하는 사람이 십여만 명이었고 드는 비용은 이루 기록할 수 없었다.
- || 후촉後蜀의 군주 맹창孟昶³⁹이 미행微行하기를 좋아하여 가지 않은 술집이나 기생집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알아보는 것이 싫어서 사민에게 명을 내려 커다란 재모裁帽를 쓰게 하였다.
- || 후당 노왕後唐潞王은 끊임없이 사냥을 하러 나갔다. 백사白沙에서 사냥을 하는데 폭설이 내려 이졸吏卒이 도로에 넘어지기도 하였다. 이수伊水와 여수汝水 사이가 기근이 심했는데 호위병들은 지나는 곳마다 음식을 내주기를 요구하였고 주지 않으면 집기什器를 훼손하였으며, 가옥들을 철거하여 빨감으로 썼다. 하는 짓이 도적보다 심하니 현리縣吏가

36 주 유왕周幽王은 … 피살되었고: 주 유왕이 애첩 포사褒姒를 웃게 하려고 거짓으로 여산에 봉화를 올려 제후들이 군사를 이끌고 달려오게 하였다. 그 뒤에 견융이 침입하여 봉화를 올렸으나, 제후들이 믿지 않고 군사를 보내지 않아 국도國都가 함락되고 유왕은 여산 아래에서 처형되었다. (『史記』「周本紀」)

37 당 의종唐懿宗: 833~873. 당 제20대 황제 이최李漼로, 재위 기간은 859년에서 873년이다. 아버지 선종宣宗이 병으로 사망한 뒤 환관들의 옹립으로 제위에 올랐다. 정사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사치스런 생활을 하였고 여인들과 술에 빠져 있어서 백성은 무거운 세금으로 고통을 당하였다.

38 소응昭應, 함양咸陽: 소응에는 화청궁華清宮이 있었으며, 함양에는 망현루望賢樓가 있었다.

39 맹창孟昶: 「근정사勤政事」 계조 46번 각주 참조.

모두 산골짜기로 숨어버렸다.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 북송 휘종北宋徽宗이 미행하자, 비서정자秘書正字 조보曹輔⁴⁰가 상소하여 간언하였다. “폐하께서 법궁法宮에 있기를 싫어하여 때로 소련小輦을 타고 저잣거리나 교외 밖을 출입하시니 편안히 놓고 위험을 경시하는 것이 똑같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만에 하나라도 폐하께서 막 어가를 타고 경계하지 않는 때에 한 사람이라도 불령한 마음을 품는다면 위엄을 손상시키는 일입니다.” 휘종이 상소문을 도당都堂으로 보내 자세히 묻게 하였다. 왕보王黼⁴¹가 장방창張邦昌과 왕안중王安中을 돌아보고 “이런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자, 조보가 말하였다. “이 일은 비록 동네 골목의 소민도 아는 것인데 상공께서는 나라를 다스리시는데도 모르신단 말입니까. 전에 이것을 알지 못했다면 그런 재상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마침내 빈주彬州로 편관編管⁴²하였다. 【『속자치통감』에 보인다.】

■ 명 무종明武宗이 교사社社를 지내고 밤에 사냥하러 나갔는데, 동이 틀 무렵 문무 대신이 비로소 쫓아가 한밤중이 돼서야 어전御殿에 들어왔다. 열흘 동안 남해자南海子⁴³에서 사냥하였다. 서북 지방으로의 순행巡行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 명 무종 때, 강빈江彬⁴⁴이 선부宣府는 즐길 만한 곳이라고 자주 말하였다. 무종이 창평昌平에 거동했다가 마침내 거용관居庸關⁴⁵을 나가 선부에 이르렀다. 순관어사巡關御史 장흠張

40 조보曹輔: 1068~1127. 자는 재덕載德이다. 비서성정자秘書省正字로 휘종에게 간언하다가 빈주彬州로 좌천되었는데, 후에 감찰어사, 추밀원사樞密院使를 역임하였다.

41 왕보王黼: 1079~1126. 초명은 보甫이며 자는 장명將明이다. 채경蔡京이 재상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도와 권세를 잡았다. 집정관 후 재물을 가혹하게 착취하여 사유하였으며, 빈 성城 5~6개를 돈으로 사서 수리하고 태부太傅의 자리에 올랐으나 흠종欽宗 즉위 후 주류당하였다. 채경蔡京, 주면朱勳, 이언李彦, 동관東貫, 양사성梁師成과 함께 송을 망친 육적六賊으로 평가된다.

42 편관編管: 송말의 형벌 중 하나로, 죄인의 얼굴에 자자刺字하지 않고 변방의 고을로 귀양을 보내, 그 고을의 수령이 편호編戶로서 관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43 남해자南海子: 북경의 영정문永定門 밖에 있던 원유園風로, 영력永曆 연간에 만든 것이다. 가운데에 해자가 있는데, 그 물이 사철 마르지 않았다. 금성禁城 북쪽에 북해자北海子가 있어서 별칭 남해자라 하였다.

44 강빈江彬: ?~1521. 선부宣府 출신이며 자는 문선文宣이다. 유육劉六[劉龍], 유철劉七[劉宸] 형제가 난을 일으켰을 때 토벌군으로 공을 세워 무종에게 발탁되었다. 성품이 교활한 데다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았으므로 무종에게 총애를 받아 도지휘첨사都指揮僉事가 되어 군사통수권을 쥐는 등 권세가 막강하고 횡포가 심하였다. (『明史』)

45 거용관居庸關: 북경의 서북방에 있는 만리장성의 한 관문으로, 지금의 북경시 창평구昌平區에 있는데, ‘천하제일웅관天下第一雄關’이라고도 불린다.

欽⁴⁶이 관문을 닫고 세 번 상소하였으나, 답하지 않았다. 강빈이 무종을 위해 선부에 제택을 짓고 민가에 들어가 부녀자들을 찾아서 바치니, 무종이 즐기며 돌아갈 줄 몰랐다. 대동大同으로 거동하여 양화陽和에서 사냥하였다.

|| 명 목종明穆宗이 구저舊邸에 행차하려자, 예부상서 고의高儀⁴⁷가 명분 없는 순행巡幸이 방탕하게 노는 단초를 열까 염려된다는 내용으로 상소하여 그만둘 것을 청하였으나, 목종이 따르지 않았다.

|| 명 목종이 천수산天壽山에 가서 추제秋祭의 예를 행하려고 하였다. 대학사大學士 서계徐階⁴⁸가 “누조累朝에서 제사는 태묘太廟의 제사만 황제가 친히 참관하였고 산릉의 제사에는 관리를 보냈습니다. 천수산 뒤는 곧 황화진黃花鎮⁴⁹이고 황화진 밖은 곧 오랑캐의 땅입니다. 신 등은 실로 감히 가벼이 시험 삼아 국가의 일을 위협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라고 아뢰었으나, 목종은 결국 천수산에 갔다.

|| 명 희종明熹宗⁵⁰이 방택方澤⁵¹에 제사지내고 환궁하자마자 서원西苑으로 갔다. 위충현魏忠賢⁵²과 객씨客氏⁵³는 큰 배를 타고 술을 마시며 한껏 즐겼으며, 희종은 어린 환관 두 사람과 작은 배를 띄워놓고 출렁이며 몸소 배를 저었다. 그런데 갑자기 인 바람에 배가 뒤

46 장흥張欽: 자는 경지敬之이다. 진사에 급제하여 감찰어사가 되어 거용관居庸關을 순시하였다. 무종이 강빈의 참언을 듣고 거용관을 나가 선부에 가려고 하자, 장흥이 토목土木의 변을 예로 들며 세 차례 상소하여 이를 저지하였다.

47 고의高儀: 1517~1572. 자는 자상子象이다. 예부상서를 지냈는데, 목종穆宗이 즉위할 무렵에 제대전례諸大典禮를 모두 그가 배정配定하였다.

48 서계徐階: 1503~1583. 자는 자승子升이다. 국자 좌주國子祭酒, 예부시랑, 한림원 학사, 예부상서 등을 역임하였다. 권신 엄송嚴嵩을 실각시키고 세종世宗, 목종 밑에서 인심을 수습하고 선정을 펴 명재상으로 칭송되었다. 저서에 『세경당집世經堂集』이 있다.

49 황화진黃花鎮: 북경 북쪽 관문의 이름이다.

50 명 희종明熹宗: 1605~1627. 명 제15대 황제 주유교朱由校로, 재위 기간은 1620년에서 1627년이다. 연호를 따라 ‘천계제天啓帝’로 불린다. 즉위한 후, 환관 위충현魏忠賢과 유모 객씨客氏에게 정사를 내맡기고 자신은 목공예木工藝와 귀뚜라미 싸움에 몰두하였다. 재위 기간 동안 정치 부패와 가혹한 조세 수탈이 이어져 궁핍해진 백성들이 곳곳에서 폭동과 반란을 일으켰다. 또한 후금後金이 심양瀋陽과 요양遼陽을 함락하고 요하遼河를 건너 광녕廣寧을 격파하였지만 이를 막지 못하였다.

51 방택方澤: 땅에 제사 지내는 곳으로, 저수지를 네모나게 파서 물을 채우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낸다.

52 위충현魏忠賢: ?~1627. 본명은 이진충李進忠이다. 스스로 거세하여 환관이 되었으며, 희종의 총애를 받아 충현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았다. 희종의 유모 객씨客氏와 내통하여 조정을 장악하고, 전권을 휘둘러 공포정치를 행함으로써 명의 멸망을 촉진했다. (『明史』「魏忠賢傳」)

집혀 희종과 두 환관 모두 물속에 빠졌다. 두 환관은 죽었으나 희종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이상은 『명사강목』에 보인다.】

근안 謹按

삼가 살펴보건대, 하룻의 민요에 “우리 왕이 유람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이며, 우리 왕이 즐기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받겠는가. 한 번 유람하고 한 번 즐기는 것이 제후의 법도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⁵⁴ 아, 당시 순유巡遊하는 제도는 비록 자제하지는 않지만, 하후夏后의 시대에는 검소함을 가법家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임금이 출입하고 유람하며 즐기는 동안에, 위의威儀는 필시 검약하고 거마와 종복從服은 필시 단출하여 길을 치우는 일이나 식량을 공급하는 비용으로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고, 오직 봄에 밭갈이를 살펴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고 가을에 수확을 살펴 넉넉하지 못한 것을 보태 주어 은혜가 아랫사람에게 미쳤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달마다 순수하더라도 시기를 헤아려 사방을 순시하면 백성들이 번거롭다고 여기지 않고 종고鐘鼓와 관악管籥의 아래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⁵⁵ 그러나 후세에는 임금이 한 번 나가면 난기鸞旗가 앞에 서고 천자의 부거副車가 뒤를 따르며, 노부鹵簿⁵⁶와 호위가 도로를 꽉 채우고 주현州縣에서는 짐수레와 주전廚傳이 소란합니다.⁵⁷ 또 식량을 마련하여 접대하는 소민小民들은 겨울

53 객씨客氏: ?~1627. 명 희종明熹宗의 유모로, ‘객인월客商印月’ 또는 ‘객파파客商巴巴’로 불린다. 원래 하북河北 정흥定興 지역의 농부 후파아侯巴兒의 처였다가 1남1녀를 낳고 18세에 궁중으로 들어가 희종의 유모가 되었다. 희종이 황태손으로 봉해지는 데 큰 역할을 하여 희종 즉위 이후 봉성부인奉聖夫人에 봉하여졌으며, 환관 위충헌과 내통하여 권력을 천단하다 장살되었다. (『明史』「魏忠賢傳」)

54 하룻의 … 하였습니다: 『맹자』「양혜왕梁惠」에 “우리 왕이 유람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쉬며 우리 왕이 즐기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받겠는가. 왕이 한 번 노닐고 한 번 즐기는 것이 제후의 법도가 된다.【昏王不遊 吾何以休 昏王不豫 吾何以助 一遊一豫 爲諸侯度】”라고 한데서 보인다.

55 백성들이 … 것입니다: 임금의 행차가 자신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임금의 행차를 기뻐하는 것이다. 종고鐘鼓와 관악管籥은 임금이 행차할 때 울리는 악기 소리이다.

56 노부鹵簿: 천자가 거동할 때의 의장儀仗으로, 규모에 따라 법가 노부法駕鹵簿, 난가 노부鸞駕鹵簿, 기가 노부騎駕鹵簿로 구분한다.

57 주전廚傳이 소란합니다: 임금에게 숙식과 거마 등을 제공하느라 분주함을 말한다. ‘주전’은 사신이나 관원이 경유하는 역참에서 제공하는 음식과 거마를 가리킨다. ‘주廚’는 음식을 제공하는 주포廚鋪, ‘전傳’은 역마를 내주는 역전驛傳 또는 숙소인 전사傳舍를 의미 한다.

이 없을 정도로 바빠서,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많고 저장해 둔 양식이 쉬이 비는지라 서로 헐뜯는 탄식이 이르고야 말 것입니다. 저장해 둔 양식이 비게 되면 서로 헐뜯는 탄식이 반드시 이를 형세이니, 그렇다면 옛날에 말한 ‘법도가 된 유람’은 이미 더 이상 볼 수 없는데 또 하물며 자주 어가를 대령할 것을 명하기까지 한단 말입니까.

아, 임금의 유행遊幸은 다만 번거로운 비용을 유념해야 할 뿐만이 아닙니다. 산천을 구경하고 원야原野를 내달리는 일은 심지心志를 손상시키고 태만을 자라게 하는 일입니다. 한, 당, 송, 명 등 멀리까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승국勝國[고려] 말세의 임금은 2경京 사이를 유연하고⁵⁸ 백 리 밖으로 사냥을 나갔으며, 벼 논둑을 짐승을 잡는 사냥터로 쓰고 누선樓船을 풍악을 신는 놀 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제신諸臣들이 간언하였으나 듣지 않았고 군생群生들이 이마를 찌푸렸으나 돌보지 않다가 끝내는 삼국을 통일한 기업基業을 보존하지 못하였으니, 『고려사高麗史』를 볼 때마다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대개 어가의 행차는 간략함을 따르지만 또한 건성으로 대충하기는 어렵습니다. 삼군三軍이 호위하고 백관이 모시고 따라 새벽부터 저녁까지 햇불을 세우고 멀리서부터 가까이까지 휘장을 설치하여 공적으로 사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선왕들의 동지動止에는 본디 정해진 제도가 있었으니, 원릉園陵에 배알하는 것은 효사孝思와 관계된 일이라 비록 그만둘 수 없다고 하더라도 대수롭지 않은 일에 출행하는 일은 어렵게 여기고 신중해야 합니다. 나가야 하고 나가면 안 되는 사이에서 항상 폐단을 해결하는 방도를 고민하고, 거동해야 하고 거동하면 안 되는 갈래에서 늘 비용을 줄일 방법을 우선시한다면, 한 번 나가고 한 번 움직임도 간략해야 하고 빈번하게 하면 안 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아, 거룩하고 현원함이 하늘의 도가 아니겠습니까. 그 운행과 운수는 백성이 엿보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임금의 도 또한 그러하여 엄숙한 궁궐에서 거룩하게 있으면서 그 행동을 삼가고 그 외출을 간소하게 해야 하니 그런 후에야 준엄함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시도 때도 없이 돌아다니고 절제 없이 행행한다면 도리어 경솔하다는 탄식이 있고 ‘하늘의 도를 본받는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념하고 유념하소서.

58 2경京 사이를 유연하고: 2경은 고려의 수도인 개경開京과 남경南京[漢陽]을 의미하는 듯하다. 『고려사』에 “우왕禎王이 말을 달려 신경新京으로 갔다가 해풍군海豐郡까지 가서 온갖 놀이를 즐겼으며, 사랑하는 여러 기생들과 대낮에 음란한 짓을 벌였다.”는 기사가 보이는데, 여기서 신경은 남경을 가리키는 것으로, 공민왕恭愍王 9년에 백악에 궁궐을 지어 남경으로 도읍을 옮기려고 하였다가 그만둔 일이 있다. (『高麗史』「世家」恭愍王 9年; 「列傳」禎王 10年)

正史彙鑑

권
7

수법제 守法制

법제를 지키다

법조 法條

- || 진 도공 晉悼公의 아우 양간 楊干이 곡량 曲梁에서 군대의 행렬을 어지럽히자 위강 魏絳이 양간의 마부를 죽였다. 이에 도공이 노하니 위강이 와서 중복에게 글을 주고 칼에 얹드려 죽으려 하였다. 그 글에 “군주가 제후와 회합하는데, 군주의 군대는 위엄이 없고 집사 執事는 불경하다면 이보다 큰 죄는 없습니다. 신이 도끼를 써서 처형하기에 이르렀으니, 사구 司寇에게 가서 사형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공이 맨발로 나와 “그대가 처형한 것은 군법을 따른 것이다. 과인이 아우를 잘 가르치지 못하여 군명 軍命을 범하였으니, 과인의 잘못이다.”라고 하고, 그를 신군 新軍의 좌 佐¹로 삼았다. 【『춘추좌씨전』에 보인다.】
- || 위 사군 衛嗣君 효양후 孝襄侯² 때의 일이다. 어느 죄수가 위 魏로 달아나서 위 魏 왕후 王后의 병을 치료해주었다. 사군이 사자에게 50금을 보내 죄수와 바꿀 것을 청하여 다섯 차례나 왕래하였으나 위가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사군이 좌지 左氏³ 읍과 바꾸려 하자, 주위의 신하들이 “도읍 하나로 죄수 한 명을 사는 것이 가당하겠습니까?”라고 간언하였다. 사군이 “법이 서지 않고 벌이 집행되지 않으면 비록 10개의 좌지를 가졌더라도 이

1 신군 新軍의 좌 佐: 신군은 진 晉의 여러 편대 編隊 중 하나이다. 좌는 직책명이다.

2 위 사군 衛嗣君 효양후 孝襄侯: 전국 시대 위 衛 군주이다. ‘성양후 成襄侯’라고도 한다. 조부 성후 成侯는 진 秦이 강성하자 자신을 후 侯로 낮추어 부용국 附庸國을 자처하였는데, 사군은 스스로를 다시 낮춰 군 君이라 불렀다. 당시 영토는 북양 滎陽을 겨우 지키는 처지였다.

3 좌지 左氏: 『사기』, 『한서』 등에서 국명 國名 또는 지명 地名으로 ‘月氏’, ‘烏氏’, ‘關氏’가 등장하는데, 여러 주석가들은 ‘氏’의 음을 ‘지 支’로 풀이하였다. 맥락상 원문의 ‘左氏’는 성씨가 아닌 지명이므로, ‘좌지’라 표기하였다.

로울 것이 없다. 법이 서고 벌이 집행되면 비록 10개의 좌지를 잃더라도 해로울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 위왕魏王이 이를 듣고서 죄수를 수레에 실어 보내어 그냥 주었다.

|| 조 효성왕趙孝成王 때의 일이다. 조사趙奢⁴가 전부田賦를 징수하는 관리가 되어 조세를 거두었는데 평원군平原君의 집안이 내려 하지 않았다. 조사가 법에 따라 관계된 자 9명을 죽이니, 평원군이 노하여 그를 죽이려 하였다. 조사가 “지금 만약 군의 집안이 공실公室을 받들지 않으면 법이 손상되고, 법이 손상되면 나라가 약해지고, 나라가 약해지면 제후가 치러 올 것이니, 그렇게 되면 군께서 어떻게 지금과 같은 부유함을 누리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니, 평원군이 그를 훌륭하다 여기고 왕에게 말하여 나라의 세금을 맡아 다스리게 하였다.

|| 전한 문제前漢文帝 때, 장석지張釋之가 정위廷尉였다. 문제가 궁을 나서 중위교中渭橋를 지나는데, 어떤 사람이 다리 아래에서 튀어나오는 바람에 어가를 끄는 말이 놀랐다. 그를 잡아서 정위에게 보내니 장석지는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아뢰었다. 문제가 노하여 “이 사람이 접근해서 내 말을 놀라게 하였는데, 정위는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하는가.”라고 하니, 장석지가 “법은 천하의 공평한 것입니다. 지금 법이 이와 같은데 다시 무겁게 벌을 내리시면, 백성들이 법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라고 하였다. 문제가 한참 뒤에 “정위의 말이 옳다.”라고 하였다. 그 후 어떤 사람이 고조高祖의 사당에서 옥가락지를 훔쳤는데, 그를 정위에게 보내 다스리게 하자 장석지가 기시형棄市刑에 해당한다고 아뢰었다. 문제가 크게 노하여 “사람이 선제先帝의 기물을 훔쳤으므로 나는 일족을 모두 처벌하고자 한다. 그대가 법을 근거로 아뢰니, 이는 내가 종묘를 공경히 받드는 뜻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장석지가 “법에는 이와 같으면 충분합니다. 가령 어리석은 백성이 장릉長陵의 흙을 한 그릇 퍼간다면, 어떤 법을 적용하겠습니까.”라고 하니, 문제가 그제야 받아들였다.

|| 전한 무제前漢武帝 때, 무제의 여동생 용려공주隆慮公主의 아들인 소평군昭平君이 무제의 딸과 혼인하였다. 용려공주가 병이 위독해지자 금 1천 근과 10만 전으로 소평군을 위

4 조사趙奢: 이전에 진솔이 한韓을 공격하자 한이 조에게 구원을 요청한 적이 있었다. 이에 조사가 출전하여 진의 군대를 격파하고 한을 구원하였다. 조사는 그 공으로 마복군馬服君에 봉해졌다.

해 미리 속죄금을 내니,⁵ 무제가 받아들였다. 용려공주가 죽고 난 뒤, 소평군이 술에 취해 주부主簿를 죽여서 옥에 갇혔다. 정위가 공주의 아들을 처벌하자고 청을 올렸는데 주위에서는 전에 속죄금을 낸 일을 말하였다. 무제가 “내 동생이 늘그막에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죽으면서 나에게 맡겼다.”라고 하고 눈물을 흘리더니, 한참 뒤에 “동생 때문에 선제의 법을 헛되게 만들면 내가 무슨 면목으로 고조의 사당에 들어가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정위의 주청을 들어주고 애통해함을 그치지 못하니, 주위 사람들 모두 슬퍼하였다.

|| 후한 광무제後漢光武帝 때, 동선董宣이 낙양령雒陽令이었는데, 호양공주湖陽公主[광무제의 누이]의 노비가 사람을 죽이고 공주의 집에 숨었다. 공주가 출행할 때 그 노비가 말을 몰았는데, 동선이 하정문夏亭門에서 기다렸다가 노비를 꾸짖어 수레에서 내리게 하고 격살하였다. 공주가 곧장 광무제에게 하소연하자 광무제가 동선을 불러 공주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사과하게 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광무제가 사람을 시켜 억지로 머리를 조아리게 하자 동선이 두 팔로 땅을 짚고 버티며 끝내 굽히려 하지 않았다. 공주가 “문숙文叔[광무제의 자칭]이 백의白衣 시절에는 도망자와 살인자를 숨겨주고 관리가 감히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더니, 지금 천자가 되어서는 위엄이 한 현령에게 행해지지 못하는가.”라고 하자, 무제가 웃으면서 “천자는 백의와 다릅니다.”라고 하고, 조칙을 내려 ‘강항령強項令[고개를 굽히지 않은 수령]’이라 하고 30만 전을 내렸다.

|| 후한 광무제 때의 일이다. 회현懷縣의 호족인 이자춘李子春의 두 손자가 사람을 죽이자 현령 조희趙熹가 이자춘을 잡아들였다. 마침 조 효공趙孝公 유량劉良이 병에 걸렸는데, 광무제가 그에게 가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유량이 “평소 이자춘과 사이가 돈독하였는데, 지금 현령 조희가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의 목숨을 구해주셨으면 합니다.”라고 하니, 광무제가 말하였다. “관리는 법률을 받드는 자이니, 훼손해서는 안 된다. 다른 하고 싶은 말을 해보라.”

5 미리 속죄금을 내니: 용려공주隆慮公主가 늦은 나이에 소평군昭平君을 낳았는데, 소평군이 잘못을 저질러도 엄히 다스리지 못하여 그의 성격이 교만 방자하였다. 더하여 무제의 사위가 되면서 그의 성격은 더욱 나빠졌다. 공주는 아들 소평군의 포악한 성격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를 염려하여 죽음을 앞두고 무제에게 속죄금을 낸 것이다.

|| 후한 환제(後漢桓帝) 때, 이응(李膺)이 사예교위(司隸校尉)에 제수되었다. 소황문(小黃門) 장양(張讓)의 아우 장삭(張朔)이 야왕(野王)의 수령이 되어 탐욕스럽고 잔학하게 굴었는데, 이응을 두려워하여 달아나 형의 집 합주(合柱)⁶ 속에 숨었다. 그러자 이응이 아전과 병졸을 데리고 합주를 부수고 장삭을 붙잡아 옥리에게 넘겨 죽였다. 장삭을 주벌하겠다는 뜻을 먼저 청하지 않았다고 환제가 이응을 꾸짖자, 이응이 대답하였다. “중니(仲尼)가 노魯의 사구(司寇)가 된 지 7일째에 소정묘(少正卯)⁷를 죽였습니다. 지금 신이 관직을 맡은 것이 이미 열흘이 지났으니, 더 지체하였다가 허물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 전진 세조(前秦世祖) 부견(苻堅)⁸이 왕맹(王猛)⁹을 시중(侍中)으로 삼고 경조윤(京兆尹)을 겸하게 하였다. 태후(太后)¹⁰의 아우 광록대부(光祿大夫) 강덕(强德)이 술에 취하면 난폭해져 남의 재물과 자녀를 약탈하였다. 이에 왕맹이 강덕을 잡아들인 후, 회답이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강덕을 기시하였다. 부견은 급히 사람을 보내 사면하려 하였으나 제때 이르지 못하였으니, 탄식하면서 “내 비로소 천하에 법이 있음을 알았다.”라고 하였다.

|| 남조(南朝) 양 무제(梁武帝)¹¹ 때의 일이다. 임천왕(臨川王) 소굉(蕭宏)¹²의 첩의 아우 오법수(吳法壽)가 사람을 죽이고 소굉의 집에 숨었다. 무제가 칙령을 내려 소굉에게 그를 내놓게 하고 그날 바로 처형하였다. 남사(南司)¹³에서 소굉을 면직해야 한다고 아뢰자, 무제가 눈물을

6 합주(合柱): 나무들을 모아 하나의 큰 기둥을 만든 것으로, 그 중심은 텅 비어 사람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다.

7 소정묘(少正卯): 춘추 시대 노魯의 대부이다. 공자(孔子)가 대사(大司寇)에 임명된 후, 국정을 문란하게 하였다는 죄목으로 그를 처형하였다. (『史記』 「孔子世家」)

8 전진 세조(前秦世祖) 부견(苻堅): 「간행행(簡行幸)」 법조 7번 각주 참조.

9 왕맹(王猛): 325~375. 자는 경락(景略)이며, 젊은 시절 빈한하였으나 병략에 조예가 깊었다. 부견에게 발탁되어 신뢰를 받아 전진이 부국강병을 이룩하고 북방을 통일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10 태후(太后): 전진(前秦)의 2대 군주 부생(苻生)의 어머니이자 부견의 백모(伯母)인 명덕황후(明德皇后) 강씨(强氏)를 가리킨다.

11 양 무제(梁武帝): 464~549. 남조 양 제1대 군주 소연(蕭衍)으로, 재위 기간은 502년에서 549년이다. 문무를 겸비하여 문학, 음률, 서예 등에 두루 뛰어났다. 남조 제齊의 응주 자사(雍州刺史)를 지내다가, 동훈(東昏侯)가 폭정을 행하자 병사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고 화제(和帝)를 옹립하였다. 이후 화제를 폐위하고 제위에 올라 국호를 ‘양(梁)’으로 고쳤다. 유학을 장려하고 공헌(貢獻)을 폐지하고 호적과 토지 제도를 개혁하는 등 선정을 펼쳤다. 그러나 불교를 지나치게 숭상하여 거대하고 화려한 동태사(同泰寺)를 건축하고 세 번이나 출가하면서 국가에 혼란을 초래하였다. 이에 불교는 융성해졌으나 양의 국세는 기울었다. 이후 후경(侯景)이 반란을 일으켜 수도를 함락하니, 궁 안에 유폐되어 굶어 죽었다.

12 소굉(蕭宏): 남조(南朝) 양 무제의 아우로, 자는 선달(宣達)이다. 탐욕스럽고 여색을 밝혔으나 정치적 야심이 없었기 때문에 무제는 그를 용인하고 형제로서 아껴주었다.

흘리면서 말하였다. “소공을 감싸는 것은 형제로서의 사사로운 정이고 소공을 면직하는 것은 공적인 법이니, 상주한 말이 옳다.”

|| 북위 경종元魏敬宗¹⁴의 누이 수양공주壽陽公主가 길을 가다가 청로淸路를 범하자¹⁵ 어사 중위御史中尉 고도목高道穆¹⁶이 병졸을 시켜 그 수레를 부수었다. 공주가 경종에게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니 경종이 “고 중위가 행한 것을 어찌 사사로운 이유로 책망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도목이 경종을 알현하자, 경종이 말하였다. “우리 누이가 길을 가다가 청로를 범하였으니,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

|| 남조南朝 진 문제陳文帝 때의 일이다. 안성왕安城王 진옥陳頊¹⁷은 문제의 아우로, 조야朝野에 권세를 휘둘렀다. 직병直兵¹⁸ 포승예鮑僧奢가 진옥의 권세를 믿고 불법을 저지르자 어사 중승御史中丞 서릉徐陵¹⁹이 이를 탄핵하였다. 당시 진옥이 전殿 위에 있었는데, 서릉이 전 중시어사殿中侍御史를 보내 진옥을 전 아래로 끌어내렸다. 문제가 이 일로 진옥을 시중侍中과 중서감中書監에서 면직시키니 조정이 숙연해졌다.

13 남사南司: 남대南臺라고도 한다. 어사대御史臺 또는 어시중승御史中丞을 가리킨다. 남북조南北朝 시대에 남조에는 어사대가 상서성尚書省의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

14 북위 경종元魏敬宗: 507~530. 북위 제10대 군주 원자유元子攸(탁발자유拓跋子攸)로, 재위 기간은 528년에서 531년이다. 시호는 효장제孝莊帝이다. 헌문제獻文帝的 손자로, 팽성왕彭城王 원협元勰의 셋째 아들이다. 효문제孝明帝가 죽은 뒤 육진六鎮의 난을 진압하고 대군벌로 성장한 흉노족 이주영爾朱榮에 의해 옹립되었다. 이주영이 자신의 딸을 황후로 세워 인척으로 감시하고 압박하자 그를 숙여 주살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이를 빌미로 군사를 일으킨 이주조爾朱兆등에게 패하고 유폐당하여 살해당하였다.

15 청로淸路를 범하자: 제왕이나 대신이 지나가기 위해 비워둔 길에 진입함을 말한다. 당시에 적봉赤棒을 든 병사가 경고하였으나 수양공주가 무시하였다. (『魏書』)

16 고도목高道穆: ?~531. 고공지高恭之를 가리킨다. 도목은 그의 자이다. 어사중위, 상서우복야(尚書右僕射, 남도대행대南道大行臺 등을 역임하였다. 명사名士를 선발하여 어사御史로 총원하고, 정위廷尉를 두어 법의 기강을 바로잡았다.

17 진옥陳頊: 530~582. 남조 진 제4대 군주 효선제孝宣帝로, 재위 기간은 569년에서 582년이다. 묘호는 고종高宗이다. 2대 군주 문제文帝 진진陳蒨의 아우이다. 문제의 아들 진백종陳伯宗이 즉위하자 그를 보좌하였으나, 실권을 장악한 후 진백종을 폐위시키고 스스로 황제로 즉위하였다. 강북으로 영토를 넓혔다가 북주北周에게 강북의 영토를 잃고 실의에 빠져 사망하였다.

18 직병直兵: 왕이나 공의 직속 병사이다. 『자치통감』 호삼성胡三省 주자에 “진 이후로 왕공의 부府에는 모두 직병을 보유했다.[自秦以來 王公府皆有直兵]”라고 하였다.

19 서릉徐陵: 507~583. 자는 효목孝穆이다. 문명文名이 높았고 상서복야(尚書僕射, 시중侍中, 중서감中書監 등을 역임하였다.

- || 수 문제隋文帝 때의 일이다. 형부시랑刑部侍郎 신단辛亶이 붉은 속바지²⁰를 입은 적이 있는데, 문제가 이를 염고厭蠱²¹라고 여겨 참하려 하였다. 대리 소경大理少卿 조작趙綽²²이 “법으로는 죽을 죄가 아닙니다.”라고 하자, 문제가 더욱 노하여 조작을 끌고 와 참하라고 하였다. 조작은 “신은 죽이실지라도 신단은 죽이셔서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였다. 조당에 이르러 옷을 풀어 해치고 참형을 당하려 할 때, 문제가 사람을 시켜 조작에게 “이제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물으니, 조작이 “온 마음을 다해 법을 지킬 뿐이니, 죽더라도 후회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문제가 한참 후에 풀어주고, 다음 날 명주 300단을 하사하여 위로하였다.
- || 수 문제의 아들 진왕秦王 양준楊俊은 병주 총관并州總管으로 있으면서 궁실을 성대하게 꾸미고 법을 어겨가면서 사치하니, 문제가 노하여 양준을 면직시켰다. 좌무위장군左武衛將軍 유승劉昇이 “진왕이 관아의 물자를 써서 관사를 지었을 뿐이니, 신의 생각에는 용서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문제가 “나는 다섯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만백성의 아버지이기도 하지 아니한가. 공의 의견대로라면, 천자의 자식을 위한 법을 따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고,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 || 당 고조唐高祖 때의 일이다. 어떤 자가 법을 어겼지만 사형에 해당하지 않았는데, 고조가 특별히 명하여 죽이게 하였다. 감찰어사監察御史 이소립李素立이 “삼척법三尺法²³은 왕이 된 자가 천하 사람들과 함께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이 한 번 흔들리면 백성들은 손발을 둘 곳이 없게 되니, 폐하께서 어떻게 법을 버리시겠습니까. 신은 감히 조칙을 받들지 못하겠습니다.”라고 간언하자, 고조가 이를 따랐다.
- || 당 태종唐太宗이 선인選人 가운데 거짓으로 자음資蔭²⁴된 자들에게 칙령을 내려 자수하게 하고 자수하지 않는 자는 사형을 내리겠다고 하였다. 어떤 자가 속인 것이 발각되어 태

20 붉은 속바지: 『자치통감』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에 붉은 속옷을 입으면 관운官運이 좋아진다는 속설이 있었다고 한다.

21 염고厭蠱: 원래 주술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하나 여기에서는 모범을 보여야 할 관원이 미신을 믿는다고 책망하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22 조작趙綽: 540~600. 자는 사탁士倬이며, 대리승大理丞, 대리정大理正, 형부시랑 등을 역임하였다. 수 문제가 감정에 따라 과중한 형벌을 시행하려고 하면, 조작이 여러 차례 직간을 하였다.

23 삼척법三尺法: 법전을 이르는 말로, 법률을 석 자 길이의 죽간에 기록한 데서 유래하였다.

24 자음資蔭: 선대先代의 공훈으로 관직을 제수받거나 봉직封爵되는 것이다.

종이 그를 죽이려 하자, 대리소경大理少卿 대주戴胄가 법으로는 유배에 해당한다고 아뢰었다. 태종이 노하여 “경은 법을 지키려고 짐으로 하여금 신뢰를 잃게 하는가.”라고 하였다. 대주가 “칙령은 한때의 감정에서 나온 것이지만, 법은 국가가 천하에 큰 신뢰를 펼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니, 태종이 “경이 법을 잘 지켜주고 있으니, 짐이 또 무엇을 걱정하겠는가.”라고 하였다.

■ 당 태종이 전각을 가리키면서 시신侍臣에게 말하였다.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이 전각을 세우는 것과 같다. 완성하고 나면 자주 고치거나 바뀌서는 안 되니, 서까래 하나를 바꾸거나 기와 하나를 바로잡을 때에도 밟거나 흔들면 반드시 탈이 나는 법이다. 만약 남다른 공로를 세우려 법도를 바꾼다면, 그 덕은 오래가지 못하고 고달픔만 많아질 것이다.”

■ 당 고종唐高宗 때의 일이다. 대리시大理寺에서 아뢰길, 좌위위대장군左威衛大將軍 권선재權善才와 우감문중랑장右監門中郎將 범희의范懷義가 소릉昭陵²⁵의 측백나무를 실수로 베었으니, 그 죄가 제명除名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고종이 특명으로 죽이라 하면서 “내가 죽지 않는다면 불효를 저지르는 것이다.”라고 하자, 대리승大理丞 적인걸狄仁傑²⁶이 말하였다. “법에 따르면 사형까지 이르지 않는데, 폐하께서 특별히 죽이시면 법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한 그루의 측백나무 때문에 두 장군을 죽인다면, 후대 사람이 폐하를 어떤 군주라고 말하겠습니까. 신이 감히 조칙을 받들지 못하는 것은 지하에서 장석지張釋之²⁷를 만나기가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들을 영남嶺南으로 유배 보냈다.

25 소릉昭陵: 당 태종의 무덤이다.

26 적인걸狄仁傑: 630~700. 자는 회영懷英이다. 측천무후則天武后가 중종中宗을 폐위시키고 스스로 제위에 오른 후, 적인걸을 재상으로 임명하고 항상 존중하였다. 적인걸은 장간지張柬之 등을 추천하여 요직에 임명하고 은밀히 그들과 함께 중종 복위를 모의하였다. 적인걸이 죽은 뒤 장간지 등 6명이 적인걸의 뜻을 이어 측천무후를 폐위시키고 중종을 복위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27 장석지張釋之: 문제文帝 때 종묘의 옥환玉環을 훔친 도둑에 대해 당시의 판관인 장석지가 기시형棄市刑을 내리자, 문제는 그에 대해 삼족三族을 멸하지 않는다고 노하였다. 이에 장석지는 “종묘의 그릇을 훔쳤다고 삼족을 멸한다면 장릉의 흙 한 줌을 훔친 경우 무슨 죄로 다스리겠습니까.” 하여, 문제의 노기를 풀었다고 한다. 『수법제守法制』 법조法條 기사에 보인다.

- || 당 헌종唐憲宗 때의 일이다. 유공작柳公綽이 경조윤京兆尹으로 부임할 때, 어느 신책군神策軍 소장小將이 말을 달려 갑자기 전도前導와 부딪히자 유공작이 그를 장살하였다. 다음 날 연영전延英殿에 입대入對함에 헌종이 독단으로 장살한 일을 나무라자 유공작이 대답하였다. “경조는 황제의 상징인데 소장이 감히 갑자기 뛰어 들었으니, 이는 폐하의 조칙을 가벼이 여긴 것입니다. 신은 무례한 자를 장살해야 한다는 것만 생각했지, 그가 신책군의 장군인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헌종이 물러나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모름지기 이 사람처럼 마음을 먹어야 하니, 짐도 경외한다.”
- || 당 목종唐穆宗 때의 일이다. 숙주 자사宿州刺史 이직신李直臣이 뇌물 수수에 연좌되어 사형을 받아야 했는데, 환관이 그의 뇌물을 받고 구명을 청하였다. 목종이 어사중승御史中丞 우승유牛僧孺에게 “이직신은 재능이 있으니, 죽이기 아깝다.”라고 하자, 우승유가 “법령은 재능있는 자도 통제하는 것입니다. 안록산安祿山과 주자朱泚는 모두 재능이 남보다 뛰어나지만, 법이 통제하지 못한 경우입니다.”라고 대답하니, 목종이 그의 말을 따랐다.
- || 당 선종唐宣宗²⁸ 때의 일이다. 악공樂工 나징羅程이 비파 연주를 잘하여 총애를 받았는데, 은총을 받고 횡포를 부리다가 사람을 죽여 경조京兆의 옥에 갇혔다. 악공들이 눈물을 흘리며 선종에게 “신들은 천하에 뛰어난 그의 기예가 더는 연회에서 쓰이지 못할 것이 안타깝습니다.”라고 호소하자, 선종이 “너희들이 아끼는 것은 나정의 기예이고, 짐이 아끼는 것은 고조高祖와 태종太宗께서 제정하신 법령이다.”라고 하고, 끝내 그를 장살하였다.
- || 후주 태조後周太祖²⁹ 때의 일이다. 내주 자사萊州刺史 섭인로葉仁魯가 태조의 옛 관리였는데, 비단 1만 5천 필과 돈 1천 민을 뇌물로 받은 죄로 사사되게 되었다. 태조가 중사中

28 당 선종唐宣宗: 810~859. 당 제16대 황제 이침李忱으로, 재위 기간은 847년에서 859년이다. 헌종의 아들이자 목종穆宗의 이복동생이며 무종武宗의 숙부이다. 어리석은 척하고 출가하여 승려 생활을 하던 중, 환관 마원지馬元贄 등이 그를 조종하기 쉬운 것이라 판단하고 옹립했다. 즉위한 뒤 감추고 있던 총명함을 드러내어 국가 재건에 힘썼다. 중신들의 파벌 싸움과 환관 세력을 억제하면서도 온건 정책을 채용하여 안정을 도모하였다. 티베트, 위구르가 쇠약해진 틈을 타서 군대를 보내 하황河湟 땅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만년에 도교에 심취하여 단약丹藥을 남용해 중독 증상으로 사망하였다.

29 후주 태조後周太祖: 904~954. 오대십국 후주 제1대 군주 광위郭威로, 재위 기간은 951년에서 954년이다. 후당後唐, 후진後晉, 후한後漢에서 벼슬하였는데, 후한 은제隱帝가 공신들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싫어하여 그를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자, 격분하여 병사를 일으켜 은제를 시해하고 유운劉贇을 임금으로 삼았다. 얼마 뒤 병변을 일으켜 스스로 즉위하여 국호를 주周라고 하였다.

使를 보내어 술과 음식을 내려주고 말하였다. “네가 스스로 국법을 어겼으니, 내가 어떻게 해 줄 방법은 없으나 너의 집안은 돌봐주겠다.” 섭인로가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 송 태조宋太祖 때의 일이다. 내시內侍 진이용陳利用이 정주鄭州의 단련사團練使³⁰가 되어 불법을 자행하여 거처와 복식, 기물, 수레를 황제처럼 사용하였다. 조보趙普³¹가 10가지 죄목으로 그를 탄핵하고 주살할 것을 청하니, 태조가 “어떻게 만승의 군주가 사람 하나를 비호할 수 없단 말인가.”라고 하였다. 조보가 “폐하께서 주살하지 않는다면 천하의 법을 어지럽게 할 것입니다. 천하의 법을 아껴야지, 어찌 이런 놈 하나를 아끼십니까.”라고 하니, 태조가 어쩔 수 없이 사사하였다.

|| 북송 신종北宋神宗이 사마광司馬光³²에게 “한漢 황제들이 소하蕭何의 법³³을 지키면서 바꾸지 않았는데, 괜찮은 것인가?”³⁴라고 물으니, 사마광이 대답하였다. “어찌 한의 법뿐이겠습니까. 삼대의 군주도 항상 우임금, 탕왕湯王, 문왕文王 및 무왕武王의 법을 지켰으니, 지금 시대에 지킨다 해도 괜찮습니다. 한 무제漢武帝가 고조高祖의 약속을 어지러이 바꾸자³⁵ 도적이 천하의 절반을 차지하였고, 원제元帝가 효선제孝宣帝의 다스림을 고치자³⁶ 한의 왕업이 결국 쇠퇴하였습니다. 이로써 본다면, 조종祖宗의 법은 바꾸어서는 안 됩니

30 단련사團練使: 해당 지역민을 선발하여 조직한 방위 부대를 단련團練이라 한다. 단련사는 이들을 통솔하는 군사 관직으로, 절도사節度使보다는 직급이 낮았다.

31 조보趙普: 922~992. 자는 칙평則平이다. 후주後周 때 조광윤趙匡胤의 막료가 되어 장서기掌書記를 맡았고, 진교병변陳橋兵變을 꾸며 개국을 도왔다. 개국한 뒤 태조는 북방의 태원太原(북한北漢)을 정벌하고자 하였으나, 조보는 태원이 거란의 원조를 받고 있어 공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하였으며, 먼저 남방 지역을 평정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태조는 남방의 남한南漢, 남당南唐을 차례로 함락시켰으며, 북방 지역의 평정은 태종 때에 가서 이루어졌다.

32 사마광司馬光: 「절재용飾財用」 법조 10번 각주 참조.

33 소하蕭何의 법: 한의 개국공신이자 상국相國이었던 소하가 제정한 구장률九章律을 가리킨다. 고조가 선포한 약법삼장約法三章을 기초로 삼고 진秦의 육법六法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34 괜찮은 것인가: 당시 신종은 왕안석王安石의 신법新法 추진을 반대하는 사마광의 상소를 읽다가, 이러한 질문을 하였다.

35 한 무제漢武帝가 … 바꾸자: 한 무제 때 장탕張湯과 조우趙禹에 의해 여러 법령이 추가 제정되었는데, 그 법령이 매우 세밀하고 엄격하여 사람들의 원성이 높았다.

36 원제元帝가 효선제孝宣帝의 다스림을 고치자: 효선제는 법가주의에 입각하여 내정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쳤고, 무제 이후 피폐해진 국가 경제를 개선시켰다. 뒤를 이어 즉위한 원제는 유교 이상론에 입각한 정책을 펼쳤고, 전매제를 폐지하여 큰 재정적 손실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외척과 환관을 중용하고 지나친 유가 숭상 정책을 실시하여 외척 왕망王莽이 왕위를 찬탈하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다.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집이 낡으면 수리하고 크게 무너지지 않는 이상 다시 짓지 않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 원 영종元英宗³⁷ 때의 일이다. 중서성사中書省事 결실람乞失藍이 관직을 팔아먹은 죄를 저질렀다. 형부에서 법에 따라 장형을 내리니, 태후가 태형을 내리라고 명했다. 영종은 “법은 천하의 공변된 것이니, 사사로운 이유로 경중을 달리함은 천하에 공변됨을 보이는 방법이 아닙니다.”라고 하고, 끝내 그 죄에 마땅한 형벌을 내렸다. 【『속자치통감』에 보인다.】

|| 명 성조明成祖가 조정에서 정사를 살피면서 건문제建文帝가 관제를 바꿔 어지럽힌 것³⁸에 대해 묻고, 크게 탄식하며 “무릇 창업 군주는 경험이 많고 사려가 깊어, 하는 일마다 반드시 헤아려 보고 실행하였다. 그런데 후세의 군주는 그저 사사로운 지혜와 좁은 소견으로 조종朝宗의 법을 고쳐 사직을 잃는 데까지 이르니,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고, 옛 제도를 모두 복구하라고 명하였다.

|| 명 영종明英宗 때의 일이다. 홍무洪武와 영락永樂 시기에 만든 법제 중 고칠 것이 있다고 말하는 자가 있으니, 영종이 말하였다. “완성된 법을 삼가 지키면 충분히 천하를 보전할 수 있으니, 만약 충명을 발휘하여 고치면 화란이 일어남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당唐은 부병제府兵制를 고쳐 방진方鎮의 권력이 강성해졌고,³⁹ 송宋은 신법을 시행하여 나랏일이 날마다 잘못되었으니,⁴⁰ 모두 거울로 삼을 만하다.” 【『명사강목』에 보인다.】

37 원 영종元英宗: 1303~1323. 원 제5대 황제 시디발라碩德八剌로, 재위 기간은 1320년에서 1323년이다. 인종仁宗의 장남으로, 즉위 초기에는 조모祖母인 다기[총리]와 중서우승상 테무데루[鐵木進兒]의 허수아비에 불과하다가 1322년 다기와 테무데루가 죽은 뒤 친정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테무데루의 양자 테그시[鐵失]에 의해 암살당했다.

38 건문제建文帝가 … 것: 건문제는 통정사通政司를 통정사通政寺로, 대리사大理寺를 대리사大理司로, 태상시경太常寺卿을 태상경太常卿, 광록시경光祿寺卿을 광록경光祿卿으로 바꾸는 등 『주례周禮』 등에 근거하여 여러 관직명을 고쳤는데, 실상은 이름만 바꾼 것이어서 혼란과 불편을 가중시켰다.

39 당唐은 … 강성해졌고: 부병제는 절충부折衝府가 설치되어 있는 주의 주민百姓이 평소에 농업을 하다가 농한기에 훈련을 받고 조를 짜서 교대로 수도에 가서 수비를 하거나 변경에 가서 수자리를 서는 것이다. 외적의 움직임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점차 상비군이 필요해졌고, 아예 변경에서 모병하여 병사들이 둔전을 경작하며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제도가 자리 잡게 되었다. 절도사는 중앙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세금을 거두어 운영하고 독자적인 군사력을 지닌 절도사의 권한이 막강해졌고 일부는 해당 직을 세습하기에 이르렀다.

40 송宋은 … 잘못되었으니: 송 신종神宗 때 왕안석을 중심으로 신법을 시행하여 재정 확보와 행정 효율성 증대 등의 효과를 거두었지만, 세역稱役의 증대와 영세농민의 몰락을 초래하는 등 여러 폐단이 발생하였다.

계조 戒條

- || 후한 환제(後漢桓帝) 때의 일이다. 주목(朱穆)이 기주 자사(冀州刺史)였는데, 환관 조충(趙忠)이 옥갑(玉匣)⁴¹을 써서 부친의 장례를 치르자 주목이 묘를 파헤치고 관을 열어 안치된 시신을 꺼내었다. 환제가 주목을 잡아들여 정위(廷尉)에게 보내 좌교(左校)⁴²에서 노역하게 하였다.
- || 당 현종(唐玄宗) 때의 일이다. 장수규(張守珪)⁴³가 안녹산(安祿山)에게 해奚⁴⁴와 거란을 토벌하게 하였다. 안녹산이 그들에게 패하자 장수규가 그를 잡아서 경사로 보냈는데,⁴⁵ 장구령(張九齡)⁴⁶이 “군령대로 집행한다면,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현종은 그의 재능을 아껴 칙령을 내려 면직시키고 백의종군하게 하였다. 장구령이 강경하게 간쟁하여 “안녹산은 군율을 어기고 군대를 잃었으니, 군법상 죽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였으나, 현종은 끝내 그를 사면하였다.
- || 당 숙종(唐肅宗) 때의 일이다. 장군 왕거영(王去榮)이 사적인 원한 때문에 본현(本縣)의 현령을 죽여 사형에 처하게 되었다. 숙종이 그가 투석기를 잘 다룬다는 이유로 칙령을 내려 죽음을 면하게 해주자, 중서사인(中書舍人) 가지(賈至)⁴⁷가 표를 올려 말하였다. “폐하께서 만약 투석기를 잘 다루는 한 가지 재능 때문에 바로 죽음을 면하게 하신다면, 지금 남다른 기예를 가진 수많은 군졸이 틀림없이 그 재능을 믿고 소속된 곳에서 윗사람을 범할 것

41 옥갑(玉匣): 옥 조각들을 금실로 이어붙여 갑옷처럼 만든 옷으로, 황제의 시신에 입히는 부장품이다.

42 좌교(左校): 궁실, 능침, 종묘 등의 건축과 관련한 일을 담당하는 장작감(將作監)의 하부 관서이다.

43 장수규(張守珪): 684~740. 당(唐)의 장군으로, 자는 원보(元寶)이다. 토번(吐蕃)과 거란을 격파하고 과주(瓜州)를 평정하였다. 유주절도사(幽州節度使) 시절에 안녹산을 편장(偏將)으로 발탁하고, 그를 양자로 삼았다.

44 해奚: 4세기경부터 몽고 동부 지역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선비족의 하나로, 본래 ‘고막해(庫庫莫奚)’라고 불렸다. 후에 흉노에게 멸망 당하였다.

45 장수규가 … 보냈다: 장수규는 본래 사형을 집행하려 하였으나, 안녹산의 용맹함을 아껴 차마 죽이지 못해 경사로 보낸 것이다.

46 장구령(張九齡): 673~740. 자는 지수(子壽)이다. 장열(張說)의 추천을 받아 중서사인(中書舍人)을 거쳐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에 이르렀다. 이임보(李林甫)의 모함을 받아 재상직에서 물러났으며, 안녹산이 위험인물임을 간파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47 가지(賈至): 718~772. 자는 유린(幼鄰) 혹은 유기(幼幾)이다. 현종이 그가 작성한 조칙문(詔敕文)을 읽고 그 문장이 아름답다고 칭찬하였다. 중서사인, 산기상시(散騎常侍) 등을 역임하였다. 시명(詩名)이 높아 두보(杜甫)와 시를 수창(攄唱)한 적이 있으며, 그가 왕유(王維), 잠삼(岑參)과 창화(唱和)한 시 「조조대명궁(朝大明宮)」이 유명하다.

이니, 또 어떻게 막으려 하십니까.”【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 북송 신종北宋神宗 때의 일이다. ‘상평급렴법常平給歛法’⁴⁸을 입법하여 집집마다 돈을 빌려주고 2푼의 이자를 내게 하였으니, 곧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거두는 청묘법靑苗法⁴⁹이다. 이에 소철蘇轍⁵⁰이 말하였다. “백성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본래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출납하는 사이에 아전이 농간을 부립니다. 돈이 백성의 수중에 들어가면 선량한 백성이라도 함부로 쓰고, 돈을 납부할 때가 되면 부유한 백성이라도 기한을 넘기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다면 틀림없이 매질을 해야 할 것이니, 주현州縣의 일이 번다해져서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북송 신종 때의 일이다. 섬서 안무사陝西安撫使 한기韓琦⁵¹가 신법을 폐지하길 청하는 소를 올려 “폐하께서 몸소 절약과 검소를 행하시면 자연히 나라의 비용이 부족하지 않게 될 것인데, 하필 이익을 꾀하는 신하를 여기저기 사방으로 보내어 원근遠近의 의심을 초래하십니까. 옛 법대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왕안석王安石은 신법을 더욱 굳건히 고집하였다.【이상은 『속자치통감』에 보인다.】

■ 명 효종明孝宗 때의 일이다. 호부 주사戶部主事 이몽양李夢陽⁵²이 상소하였다. “법이라는 것은 조종朝宗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천하의 공정한 것이어서 천자가 자기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범인犯人 왕례王禮가 이승夷僧에게서 재물을 빼앗아 국체를 손상시켰는데, 옥안獄案이 갖춰졌음에도 폐하께서 사면해주셨습니다. 무죄라면 그 재물을 보상해

48 상평급렴법常平給歛法: 상평창常平倉의 돈과 광혜창廣惠倉의 곡식을 자본으로 삼아 농민에게 농업의 자금을 지원하여 대지주의 고리대로부터 빈농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결국 국가가 백성에게 이자를 수취하는 셈이었고, 시행 과정에서 갖은 폐단이 발생하였다.

49 청묘법靑苗法: 「절재용節財用」 근안 43번 각주 참조.

50 소철蘇轍: 1039~1112. 자는 자유子由이다. 북송 신종 때 왕안석의 신법에 반대하여 지방관리로 좌천되었다가, 철종哲宗 때 우사간右司諫, 상서우승尙書右丞을 거쳐 문하시랑門下侍郎 등을 역임하였다. 아버지 소순蘇洵, 형 소식蘇軾과 함께 문명이 높아 ‘삼소三蘇’라 병칭되고,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 중 한 명으로 꼽힌다.

51 한기韓琦: 「절재용節財用」 근안 44번 각주 참조.

52 이몽양李夢陽: 1475~1529. 자는 헌길獻吉이다. 강직한 성품 탓에 옥고를 세 번이나 치르기도 했다. 이른바 ‘전칠자前七子’의 필두로 꼽히는 문인으로, “문은 반드시 진·한의 것이어야 하고, 시는 성당 때의 것이어야 한다.[文必秦漢 詩必盛唐]”의 기치 아래 시문詩文的 복고復古를 주창하여 문단을 주도하였다.

야 할 것이고, 유죄라면 놓아 주셔서 안 됩니다.” 상소가 들어가자 하옥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풀어주었다. 【『명사강목』에 보인다.】

근안 謹按

삼가 살펴보건대, 성왕이 단단히 잡고서 천하를 다스린 수단은 오직 법제입니다. 법제가 정해져야 질서가 정연해지고, 법령이 갖춰져야 통제가 분명해집니다. 삼대 이후로 대를 이은 군주 가운데 치안^{治安}을 유지한 자는 그 법을 지킨 자이고, 쇠란^{衰亂}을 불러온 자는 그 법을 지키지 않은 자입니다. 개창한 군주가 제정한 법은 비록 동이^{同異}와 통변^{通變}에 대해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시대에 따라 적합하게 조치하여 저마다 그렇게 한 까닭이 있으니, 후세의 왕이 이를 따르고 벗어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그 법을 존치하더라도 괜찮을 것입니다. 만약 관석^{關石}⁵³의 옛 법규를 소홀히 여기고 상위^{象魏}⁵⁴의 옛 명령을 가벼이 여겨서, 사사로운 지혜를 따르고 법을 따르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경중을 달리하고 제멋대로 변개한다면, 아전은 농간을 부리고 백성은 취할 기준이 없어 전도되고 혼란스러워져서 저절로 위망의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니, 삼가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태조와 태종께서는 웅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처음으로 제도를 갖추셨습니다.⁵⁵ 세종 때에 이르러서는 멀게는 『주관^{周官}』⁵⁶의 제도를 본받고 가까이는 『대명률^{大明律}』⁵⁷을 참고하셔서 금과옥조^{金玉條}가 찬연하여 볼 만하였습니다.⁵⁸ 이에 세조께서 하나

53 관석^{關石}: 『서경』 「오자지가五子之歌」의 “어디서나 통하는 석과 누구에게나 공평한 균^鈞이 왕부에 있다.〔關石和鈞 王府則有〕”에서 유래한 말로, 표준이 되는 법칙 또는 도량형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전하여 선왕들이 제정한 법전과 제도를 의미하기도 한다.

54 상위^{象魏}: 국가의 교령이나 법령을 반포하여 게시하던 누대^{樓臺}로, 법령 또는 궁궐을 의미한다.

55 태조와 … 갖추셨습니다: 태조가 간행한 『경제육전^{經濟六典}』과 태종이 간행한 『경제속육전^{經濟續六典}』을 가리키는 것으로, 오늘날에는 전하지 않는다. 『경제육전』은 1397년(태조 6)에 정도전^{鄭道傳} 등이 육전^{六典}의 형식을 갖추어 편찬한 기본 법전이고, 『경제속육전』은 1413년(태종 13)에 하륜^{河崙} 등이 『경제육전』 이후에 나온 교지와 조례 등을 모아 편찬한 법전이다.

56 주관^{周官}: 『서경』의 편명으로, 주周的 관직 제도가 설명되어 있다.

57 대명률^{大明律}: 중국 명명의 형법전^{刑法典}으로, 당唐의 법률을 참고하여 편찬하였다. 「명례율」, 「이율」, 「호율」, 「예율」, 「병률」, 「형률」, 「공률」 7편으로 이루어졌다. 조선의 『경제대전』 및 『경제육전』의 제정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58 세종 … 볼 만하였습니다: 세종이 『경제속육전』을 개수하여 1428년(세종 10)에 간행한 『신속육전^{新續六典}』과 1433년(세종 15)에 간행한 『신찬경제속육전^{新撰經濟續六典}』을 가리키는 것으로, 오늘날에는 전하지 않는다.

의 체제로 모아 육관六官으로 구분하셨는데,⁵⁹ 그 책이 성종 때 완성되었으니 이것이 『경국대전經國大典』⁶⁰입니다. 중종, 명종 이래로 속고肅考[속종]에 이르기까지 『대전속록大典續錄』,⁶¹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⁶²과 『청송지남聽訟指南』⁶³이 있었고, 『전록통고典錄通考』⁶⁴와 『수교집록受教輯錄』⁶⁵도 있었으니, 요컨대 모두 육전六典의 뜻에 근본한 것이었습니다. 또 우리 대조大朝[영조]께서 『속대전續大典』⁶⁶을 찬수하셔서 400년의 위대한 계책을 크게 이어 받으셨으니, 책을 열어 보면 뚜렷하게 보입니다. 조종께서 만드신 이 법은 기록으로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정사에 대부분 시행되어온 바, 사계절이 제때 운행하는 것처럼 행해지고 만세의 규범으로 전해내려 왔습니다. 후손이 이 법을 준수하여 바꾸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아! 법은 한 사람의 손에 쥐어져서 온 나라에 시행되는 것이라서 아침저녁으로 호령할 수도 없고, 가가호호 알려줄 수도 없으니, 그 요체는 공정함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마음이 치우치거나 얽매이지 않아야 전장典章이 적절함을 얻을 수 있고, 일이 휘둘리지 않아야 행정刑政이 공정함을 잃지 않습니다. 예외 없는 규범에 사의私意를 개입시키지 않고 지켜 내려온 제도에 전규前規를 변경함이 없게 하려면, 군주의 친인척 가운데 법을 어긴 자가 있거든 두려워 경계하고 군주와 친밀한 자 가운데 법을 어긴 자가 있거든 얼굴을 붉히

59 세조께서 … 구분하셨는데: 『경국대전』의 이전使典, 호전戶典, 예전禮典, 병전兵典, 형전刑典, 공전工典 체제를 가리킨다. 세조가 육전상정소六典詳定所를 설치하고 최항崔恒 등에게 기존의 법을 조직적이고 통일된 법전을 편찬하라고 명하여 완성된 것이 『경국대전』이다.

60 경국대전經國大典: 조선 왕조의 근간이 되는 법전으로, 고려 말부터 성종 때까지 약 100년간에 반포된 여러 법령, 교지敕旨, 조례 및 관례 따위를 총망라하였다. 세조 때 최항崔恒 등이 편찬하기 시작하여 1485년(성종 16)에 간행한 것으로, 6권 3책이다.

61 대전속록大典續錄: 조선 시대 『경국대전』이 간행된 이후의 법령을 수집하여 편찬한 법령집으로, 왕명을 받아 이극중李克增 등이 1492년(성종 23)에 완성하였다. 6권 1책이다.

62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대전속록』 이후의 법령을 정리하여 편찬한 법령집으로, 왕명을 받아 윤은보尹殷輔 등이 1543년(중종 38)에 완성하였다. 6권 1책이다.

63 청송지남聽訟指南: 조선 명종 때 김백간金伯幹이 민사소송의 처리에 참고할 수 있는 법령을 편집한 법제서이자 지침서로, 1585년(선조 18)에 그의 아들 김태정金泰廷이 간행하였다. 1책이다.

64 전록통고典錄通考: 조선 시대 『경국대전』, 『대전속록』, 『대전후속록』, 『수교집록』 등의 여러 법령집의 조문을 분류하고 통합한 법전으로, 왕명을 받아 최석장崔錫鼎 등이 1706년(숙종 32)에 완성하였다. 14권이다.

65 수교집록受教輯錄: 『대전후속록』 이후 각 도 및 관청에 내린 왕의 명령을 모아 편찬한 법제서로, 왕명을 받아 이익李漢 등이 1698년(숙종 24)에 완성하였다. 6권 2책이다.

66 속대전續大典: 『경국대전』 이후의 교령敕諭과 조례를 모아 편찬한 법전으로, 왕명을 받아 김재로金在魯 등이 1746년(영조 22)에 간행하였다. 6권 4책이다.

면서 더욱 신칙해야 합니다. 이를 미루어 상벌을 모두 법에 따라 행하면서 사의를 개입시키지 않으면 지위를 막론하고 나라 안팎의 사람들이 모두 삼가고 두려워하여 서로 권계할 것이니, 널리 공포하거나 타이르지 않아도 저절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알기 쉬운 예를 들자면, 길거리에 있던 사람이 종소리를 들으면 집으로 달려가 문을 닫는 것은 야간에 통행을 금지하는 법이 이미 오랫동안 시행되어 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육전의 율령이 백성들에게 믿음을 얻기가 거리의 종을 치는 법과 같다면, 사람들이 삼가 지키고 따라서 혹시라도 어기게 될까 두려워할 것이니, 어찌 법이 존중받지 못하고 명령이 엄하지 못함을 걱정하십니까. 소순蘇洵은 “법은 이미 일어난 후에 금하는 것이고 예는 아직 일어나기 전에 금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진실로 예로써 아래를 인도하여 엄치를 길러주고 두려워 삼갈 줄 알게 한다면, 저절로 악하거나 그릇된 일을 하는 데 이르지 않게 되어 법을 쓸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신이 이 때문에 그와 관련하여 “예가 법보다 우선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유념하고 유념하소서.

입기강立紀綱

기강을 세우다

법조 法條

- || 우임금이 회계會稽에 군신群臣을 불러 모았는데, 방풍씨防風氏¹가 늦게 도착하자 우임금이 그를 법으로 다스려 죽였다. 【『봉주강감회찬』에 보인다.】
- || 진 문공晉文公이 주 양왕周襄王을 낙읍洛邑으로 들여보냈다.² 양왕이 단술을 대접하고 폐백을 내리라고 명하였는데, 문공이 수장隧葬³을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이에 양왕이 “이는 왕의 법도이다. 주周의 통치를 대신할 나라가 아직 없는데 두 왕이 있는 것은 숙부께서도 싫어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땅을 주었다.
- || 초 장왕楚莊王이 육혼陸渾 지역의 용족戎族을 토벌하고 주周 국경에서 군대를 사열하니, 주 정왕周定王이 대부 왕손만王孫滿을 보내 장왕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이에 장왕이 구정九鼎의 경중과 대소에 대해 묻자, 왕손만이 “덕에 달린 것이지, 구정에 달린 것이 아니다. 주 왕실의 덕이 쇠미해졌으나 천명이 아직 바뀌지 않았으니, 구정의 경중에 대해 묻어서는 안 된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상은 『춘추좌씨전』에 보인다.】

1 방풍씨防風氏: 고대 전설상 부족장의 이름으로, 왕망씨汪芒氏라고도 한다. 『국어』에 “봉산과 우산을 지키는 사람으로, … 하와 상에서는 ‘왕망씨’라 하였고, 주에서는 ‘장적’이라 하였다.[守封嶠之山者也 … 在虞夏商爲汪芒氏 於周爲長翟]”라고 하였다.

2 진 문공晉文公이 … 들여보냈다: 주 양왕의 아우 태숙太叔 대부가 적狄 출신의 왕후인 외후隗后와 사통하여 발각되자 반란을 일으켜 양왕을 축출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양왕은 정鄭으로 도망친 뒤 진 문공晉文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진 문공이 이에 출정하여 대를 사로잡고, 양왕을 호송하여 낙읍으로 돌려보냈다.

3 수장隧葬: ‘수隧’는 땅에 굴을 파서 만든 통로로, 천자의 장례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진 문공이 천자의 예를 사용하여 자신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청한 것이다. (『春秋左氏傳』 杜預注; 楊伯俊注)

■ 전한 고제前漢高帝 때의 일이다. 군신群臣이 공을 다투다가 술에 취해 검을 뽑아 기둥을 치기도 하니, 숙손통叔孫通⁴이 황제에게 “노魯 지방의 유생들을 불러 신의 제자와 함께 준비尊卑의 위치를 표시하여⁵ 야외에서 조정의 예의를 익혔으면 합니다.”라고 유세하였다. 장락궁長樂宮이 완성되어 군신이 모두 조하朝賀하였는데, 알자謁者が 차례대로 인도하여 들이니, 제후왕 이하 신하들 중 두려워하고 공경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조하례朝賀禮가 끝나고 다시 궁정 연회를 베푸니, 전殿 위에서 황제를 모시고 앉은 군신이 모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고 준비의 순서에 따라 일어나 축수祝壽하였다. 법을 집행하는 어사御史가 의례대로 하지 않은 자를 번번이 끌어내자, 조하례를 마치고 연회가 끝날 때까지 감히 떠들거나 예법을 어기는 자가 없었다. 이에 황제가 “오늘날에야 비로소 황제의 존귀함을 알았다.”라고 하였다.

■ 전한 문제前漢文帝 때의 일이다. 승상 강후絳侯 주발周勃⁶이 조회가 끝나고 종종걸음으로 나갈 때마다 매우 득의양양하였는데, 문제가 그를 공손히 예우하고 항상 눈길을 주어 배웅하였다. 이에 낭중郎中 원앙袁盎⁷이 “지금 승상은 군주에게 교만한 기색이 있는데, 폐하께서는 겸양하시어 신하와 군주 간에 예를 잃었으니, 삼가 폐하께서 취할 것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였다. 그 뒤로 조회할 때 문제가 더욱 장엄한 기색을 취하자 승상이 더욱 경외하였다.

■ 후한 환제後漢桓帝 때의 일이다. 정월 초하루 조하례朝賀禮에 양기梁冀⁸가 칼을 차고 궁중으로 들어오자, 상서尙書 장릉張陵이 큰 소리로 꾸짖으며 그를 쫓아내고 우림羽林과 호분

4 숙손통叔孫通: 태상太常, 태자태부太子太傅 등을 역임하였다. 예악과 조정 의례를 새롭게 제정하였으며, 혜제惠帝 때 종묘의 법宗廟儀法을 제정하였다.

5 준비尊卑의 위치를 표시하여: 원문의 “綿繅”을 풀이한 말이다. 새끼를 꼬아 줄을 두르는 것을 ‘면繽’이라 하고, 띠를 묶어 위치를 표시하는 것을 ‘체繅’라고 하니, 새끼줄을 치고 띠를 묶어 준비의 위치를 표시한다는 뜻이다. ‘綿繅’은 ‘면繽’로도 읽는다.

6 주발周勃: 한 고조漢高祖를 도와 천하를 통일한 개국공신으로, 강후絳侯에 봉해졌다.

7 원앙袁盎: 「간행행簡行幸」 법조 1번 각주 참조.

8 양기梁冀: 후한 순제後漢順帝의 황후인 순열황후順烈皇后的 오라비이다. 대장군이 되어 권력을 남용하였으며, 질제質帝를 옹립하였으나 자신의 권력 남용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독살하고 환제를 다시 옹립하였다. 집안이 크게 번창하여 한 가문에 다섯 명의 형제가 모두 후후에 봉해져 부귀가 극에 이르렀으나, 결국 환제에게 처단되었다. (『後漢書』「梁冀傳」)

虎賁⁹에게 양기의 칼을 빼앗으라고 명령하였다. 양기가 무릎을 꿇고 사죄하였으나 장릉은 양기를 탄핵하고 정위¹⁰에게 그를 논죄하도록 청하였다. 후에 조서를 내려 1년치 녹봉으로 속죄하도록 하니, 백관百官이 조심하게 되었다.

|| 진 원제¹⁰가 황제의 자리에 오른 뒤, 왕도¹¹에게 어상¹²에 올라와 같이 앉으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왕도가 거듭 사양하며 “태양이 내려와 만물과 같은 위치에 있다면 백성들이 어떻게 그 빛을 우리러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니, 원제가 바로 그만 두었다.

|| 북위 선무제¹³가 장릉¹²에 알현할 적에 오랏 출신의 백의¹⁴ 여호¹⁵를 함께 수레에 태우려 하니, 여호가 옷자락을 털고 수레에 오르려 하였다. 이에 급사황문시랑¹⁶ 원광¹⁷이 나아가 간언하자 선무제가 그를 밀쳐 내리게 하니, 여호가 어쩔 줄 몰라 하였다.

|| 당 태종¹⁸ 때의 일이다. 위왕¹⁹ 이태²⁰[태종의 넷째 아들]가 관사²¹를 크게 짓고 당시 준걸한 인재를 널리 끌어모았는데, 매달 이태의 관사에 지급되는 물품이 태자보다 많았다. 이에 간의대부²² 저수량²³이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성인은 예법을 제정하면서 서지를 낮추고 적자를 존중하였습니다. 서자가 비록 사랑스러워도 적자를 넘어설 수는 없는 것은, 혐의를 받을 조짐을 막고 화란의 근원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지금 위왕이 새로 출함²⁴할 시점에 예절과 법칙을 보이고 겸손과 검약을 가르쳐

9 우림^{羽林}과 호분^{虎賁}: 황제를 호위하는 금위군^{禁衛軍}이다.

10 진 원제^{晉元帝}: 276~322. 동진 제1대 황제 사마예^{司馬睿}로, 재위 기간은 317년에서 323년이다. 민제^{愍帝}가 즉위하고 승상이 되었는데, 유요^{劉曜}가 장안을 함락하여 민제가 죽고 서진^{西晉}이 망하자 건강^{建康}에서 즉위하여 동진을 세웠다.

11 왕도^{王導}: 276~339. 자는 무홍^{茂弘}이다. 동진^{東晉}의 개국공신이며, 3대에 걸쳐 승상을 지내면서 나라의 기반을 다졌다.

12 장릉^{長陵}: 북위 효문제^{北魏孝文帝}의 능이다.

13 여호^{茹皓}: ?~504. 자는 금기^{禽奇}이며, 공종^{恭宗}의 손자이다. 고조^{高肇}, 원징^{元澄} 등과 함께 황제의 총애를 받아 권력을 장악하였으나 고조의 모함으로 인해 쫓겨났다.

14 원광^{元匡}: ?~525. 자는 건부^{建扶}이다. 관직이 탁지상서^{度支尚書}에 이르렀으며, 여호, 고조, 원징 등을 탄핵하다가 죽임을 당할 뻔하였다.

15 저수량^{褚遂良}: 「개언로^{開言路}」 법조 39번 각주 참조.

16 출함^{出閤}: 대군이나 왕자가 장성하여 사궁^{私宮}을 짓고 따로 나가서 사는 것을 말한다.

야 하니, 이것이 이른바 ‘성인의 가르침은 엄숙하지 않아도 이루어진다.’¹⁷는 것입니다.” 태종이 이를 따랐다.

|| 당 숙종唐肅宗이 영무靈武에서 즉위하였는데, 제도가 막 정비될 즈음이라 무인武人들이 교만하게 굴었다. 대장인 관송사管崇嗣가 조정에 있으면서 대궐을 등지고 앉아 태연히 말하고 웃곤 하였는데, 감찰어사 이면李勉¹⁸에게 탄핵되어 유사有司에게 붙잡혔다. 이에 숙종이 감탄하며 “나에게 이면이 있어서 조정이 비로소 존엄해졌다.”라고 하였다.

|| 당 덕종唐德宗 때의 일이다. 유문희劉文喜¹⁹가 반란을 일으켜 경주涇州를 점거하였는데, 조정의 신하들이 유문희를 사면해 달라고 청하였다. 그러나 덕종은 모두 듣지 않고서 “작은 재앙을 없애지 않으면 무엇으로 천하를 다스리겠는가.”라고 하였다. 유문희가 장수 유해빈劉海賓을 보내 조정에 들어가 아뢰게 하였는데, 유해빈이 덕종에게 “유문희가 지금 얻으려 하는 것은 부절符節에 불과하니, 원컨대 폐하께서 우선 그에게 부절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이에 덕종이 “작호爵號와 기물은 남에게 빌려줄 수 없으니, 나의 부절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 송 태조宋太祖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후당 장종後唐莊宗이 20년 동안 협하夾河에서 전쟁을 치러 천하를 얻었으나 군법軍法으로 단속하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어린아이 장난 같다. 짐은 이제 사졸들을 잘 길러서 작록爵祿과 상사賞賜를 아끼지 않을 것이니, 내 명령을 어기는 자는 죽음이 있을 뿐이다.”

|| 남송 효종南宋孝宗 때의 일이다. 지남강군사知南康軍事 주희朱熹가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기강은 저절로 세워질 수 없으니, 반드시 임금의 마음이 공평하고 정대하여 한쪽

17 성인의 … 이루어진다: 『효경』 「성치장聖治章」에 보인다.

18 이면李勉: 717~788. 자는 현경玄卿이다. 숙종이 장안으로 돌아와 즉위하는 데 큰 공을 세웠으며, 관직이 검교사도檢校司徒와 동평장사同平章事에 이르렀다.

19 유문희劉文喜: 덕종 때에 북정 유후北庭留侯로 있다가 경주의 민심이 혼란해진 틈을 타서 반란을 일으켰으나, 주체朱泚에게 포위되어 곤란을 겪어 수하의 유해빈을 통해 구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후에 다른 부장副將과 내통한 유해빈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으로 치우치거나 복종하지 않는 사사로움이 없어야 이를 근거로 확립될 수 있습니다. 임금의 마음은 저절로 바르게 할 수 없으니, 반드시 훌륭한 신하를 가까이하고 소인들을 멀리하여 의리를 강론하여 밝히고 샅된 마음을 막아야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효종이 이를 가납嘉納하였다. 【이상은 『속자치통감』에 보인다.】

- 명 태조明太祖 때의 일이다. 유기劉基²⁰가 태조에게 “송원宋元 이래로 오래도록 해이하였으니, 기강이 바로잡힌 뒤에야 혜정惠政을 베풀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태조가 이 말을 옳게 여기고 “경卿이 우선 간악한 이들을 감독하여 궁내의 기강을 엄숙히 해야 할 것이니, 내부內府라 할지라도 또한 규찰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 명 태조 때의 일이다. 급사중給事中 탁경卓敬²¹이 태조에게 “궁중은 조정이 본받는 대상이니,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폐하께서는 제왕諸王에 있어서 위계질서를 서둘러 분별하지 않아 복식이 태자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적서嫫婁가 어지럽고 준비에 질서가 없으니, 무엇으로 천하를 다스리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에 태조가 웃으며 “경의 말이 옳다. 내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했구나.”라고 하였다.
- 명 목종明穆宗 때의 일이다. 태학사 장거정張居正²²이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근년 이래로 기강이 엄숙하지 않아 가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이것이 옳고 저것도 옳다고 하는 것을 ‘조정調停’이라 하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차일피일 미루는 것을 ‘선처善處’라고 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형벌이나 상을 내리고 뺏기를 오로지 공정한 법도에 의하고 사사로운 정을 따르지 않도록 하여, 정교와 호령이 반드시 폐하의 의중에 따라 결정되고

20 유기劉基: 『애민생愛民生』 법조 30번 각주 참조.

21 탁경卓敬: 1348~1402. 자는 유공惟恭이다. 관직이 호부시랑戶部侍郎에 이르렀다. 정변으로 즉위한 성조成祖에게 질책과 회유를 당하였으나, 절의를 굽히지 않다가 참형을 당하였다.

22 장거정張居正: 1525~1582. 자는 숙대叔大이다. 신종이 즉위하고부터 10년간 재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국정的大部分을 독단적으로 처리하였다. 행정 정비를 단행하고 궁중의 낭비를 억제하고 황하의 치수 사업을 완수했다. 호구 조사와 토지 측량을 통하여 지주의 부정을 막아 농민의 부담을 줄이는 데 성과를 거두었으나,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죽었다. 그는 쇠퇴하던 국력을 회복시켰으나, 지나치게 가혹한 면이 있어 반감을 품은 자도 많았다. 황제의 스승을 자처하여 신종을 이상적인 군주로 만들기 위하여 『사서직해四書直解』, 『통감직해通鑑直解』, 『시경직해詩經直解』, 『제감도설帝鑑圖說』, 『모훈유편讀訓類編』 등을 편찬하였다.

근거 없는 의론에 흔들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니, 도찰원²³에 칙서를 내려 법도를 자세히 살펴 풍교와 기강을 진작하십시오.” 목종이 이를 보고 포유^{褒諭}하였다. 【이상은 『명사강목』에 보인다.】

계조 戒條

- 주 이왕^{周夷王}²⁴ 때의 일이다. 조근^{朝覲}하는 예법이 분명하지 않아 왕이 처음으로 당^堂에서 내려와 제후를 조건하니, 이때부터 황복^{荒服}²⁵은 조회하러 오지 않았다.
- 주 환왕^{周桓王}²⁶의 서자 자의^{子儀}가 왕에게 총애를 받았는데, 왕이 주공^{周公} 흑견^{黑肩}에게 그를 부탁하였다. 이에 신백^{辛伯}이 “두 명의 왕후를 세우거나, 서자를 적자와 대등하게 하거나, 신하에게 정권을 나눠 주거나, 수도에 맞먹는 도읍을 허용하는 것이 혼란의 근본입니다.”라고 간언하였다. 왕이 이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화란에 이르렀다. 【이상은 『봉주강감회찬』에 보인다.】
- 위 목공^{衛穆公}²⁷ 때의 일이다. 위^衛와 제^齊가 신축^{新築}에서 교전을 벌였는데, 신축 사람 중 숙우해^{叔于奚}가 손환자^{孫桓子}를 구원하니, 손환자가 이로 인해 화를 면하였다. 위인^{衛人}이 중숙우해에게 음읍을 상으로 주었는데, 그는 음을 사양하고 곡현^{曲懸}과 번영^{繁縷}²⁸을

23 도찰원^{都察院}: 명·청 때의 관서로, 도어사^{都御史}, 부도어사^{副都御史}, 첨도어사^{僉都御史}의 직제가 있고, 또 13개 도도에 감찰어사^{監察御史}를 두었다. 도어사는 모든 관사에 대한 규핵^{糾劾}을 전담하고, 13도 감찰어사는 내외 관원들의 잘못을 규찰하는 일을 주로 하였다. (『明史』 「職官志」)

24 주 이왕^{周夷王}: 주의 왕 희섭^{姬燮}으로, 의왕^{懿王}의 아들이자 여왕^{厲王}의 아버지이다. 왕은 제후들의 도움으로 왕이 되었고 하여 당^堂에서 내려와 만나고, 수레에서 내리는 등 항례^{抗禮}를 행하였다.

25 황복^{荒服}: 오복^{五服} 가운데 하나로, 정교^{政教}가 미치는 가장 먼 지역을 말한다. 『서경』 「우공^{禹貢}」에서 왕성^{王城}을 중심으로 500리 간격으로 5개 지역으로 구분하였는데, 안쪽부터 전복^{甸服}, 후복^{侯服}, 수복^{采服}, 요복^{衛服}, 황복^{蠻服}이다.

26 주 환왕^{周桓王}: ?~기원전 697. 주의 왕 희림^{姬林}으로, 동주 시대의 두 번째 왕이다. 환왕이 죽고 아들인 희타^{姬佗}가 장왕^{莊王}으로 즉위한 뒤, 흑견^{黑肩}이 자의^{子儀}를 왕으로 세우려고 모의하자 그를 죽였다.

27 위 목공^{衛穆公}: 춘추 시대 위의 군주로, 성은 희^姬, 이름은 숙^肅이다. 성공^{成公}의 아들이다. 재위 기간에 위^衛의 대부 공달^{孔達}과 진^晉의 대부 원곡^{原穀}, 송^宋의 대부 화초^{華萐}, 조^趙의 대부 공동^{公同}이 청구^{淸邱}에서 결맹^{結盟}하였으니, 이것이 대부 결맹의 시작이다.

28 곡현^{曲懸}과 번영^{繁縷}: ‘곡현’은 악기이고 ‘번영’은 말에 채우는 장식으로, 모두 제후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갖추고 조정에 나갈 수 있게 해 달라고 청하니, 이를 허락하였다. 중니(仲尼)가 이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애석하다. 음을 많이 주는 것만 못하다. 오직 기물과 이름은 남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되니, 만약 이를 남에게 빌려준다면 정권을 남에게 주는 것이다. 정권을 잃으면 국가도 따라 잃게 되는 법이다.”【『춘추좌씨전』에 보인다.】

|| 북위 세종(北魏世宗) 때의 일이다. 사도(司徒) 고조(高肇)²⁹가 정권을 농단하고 있었는데, 마침 크게 가뭄이 들자 고조가 제멋대로 녹수(錄囚)³⁰하여 민심을 얻고자 하였다. 이에 청하왕(淸河王) 원역(元擇)³¹이 세종에게 “옛날에 공자는 계씨(季氏)가 태산(泰山)에 여제(旅祭)를 지낸 것을 질타하였습니다. 진실로 군신의 분한(分限)은 싹이 트기 전에 막고 물이 스미기 전에 막아야 하니,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감선(減膳)³²과 녹수는 폐하의 일인데 지금 사도가 이를 행하고 있으니, 어찌 신하의 의리라 하겠습니까.”하고 말하였다. 세종은 대답하지 않았다.

|| 당 숙종(唐肅宗) 때의 일이다. 평로절도사(平盧節度使) 왕현지(王玄志)가 죽자, 숙종이 중사(中使)를 보내 군중에서 절도사로 세우고자 하는 자를 살펴 부절(符節)을 주었다. 군사들이 절도를 폐하고 세우는 것이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 당 문종(唐文宗) 때의 일이다. 동평장사(同平章事) 이석(李石)³⁴이 감로지변(甘露之變)³⁵으로 인심

29 고조(高肇): ?~515. 자는 수문(首文)이며, 세종의 외숙이다. 세종의 신임을 받아 전횡을 일삼았으며, 세종이 죽은 뒤 태위(太尉)로 있던 고양왕(高陽王)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30 녹수(錄囚): 수금(囚禁)된 죄인의 죄상 및 처결 상황을 다시 살피는 것으로, 나라에 큰 변고가 있을 때 왕이 스스로 근신하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31 원역(元擇): 487~520. 자는 선안(宣仁)이며, 고조(高祖)의 넷째 아들이자 세종의 이복동생이다. 이복형제인 원유(元綸) 등과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고 무함한 고조(高肇)를 왕망(王莽)에 비유하여 간언하였다.

32 감선(減膳): 음식 가짓수를 줄이는 것으로, 나라에 큰 변고가 있을 때 왕이 스스로 근신하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33 당 문종(唐文宗): 809~840. 당 제14대 황제 이양(李昂)으로, 재위 기간은 827년에서 840년이다. 목종(穆宗)의 둘째 아들이자 경종(敬宗)의 이복동생으로, 경종이 갑자기 사망하자 환관 왕수징(王守澄) 등에 의해 옹립되었다. 즉위 초에 조정을 쇠신하고자 궁녀 3,000명을 출궁시키고 오방(五坊)의 매와 개를 풀어주고 불필요하거나 부패한 관리 1,200명을 파직하는 등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환관들은 문종을 아들 취급하고 가짜 외삼촌 3명을 동원하는 등으로 농락하고 전횡하였다. 이에 문종은 이훈과 정주 등과 함께 청사(廳舍)의 석류나무에 감로가 내렸다고 꾸며 환관들을 모살하려고 하였는데, 탄로가 나서 도리어 이훈과 정주가 피살되고 문종은 연금되었다. 이 사건을 ‘감로지변’이라 한다. 결국 문종은 환관들에게 독살되었다.

이 흥흥해지고 환관들은 전횡을 일삼았을 때에 황명을 받들어 온몸을 바쳤다. 구사량(仇士良)³⁶이 그를 미워하여 도적들을 보내 이석이 조회하러 들어가는 틈을 엿보아 활을 쏘게 하였으나 약간의 부상만 입혔다. 좌우가 혼비백산하였는데, 이석의 말이 놀라 집으로 내달렸다. 또 다른 도적들이 마을 어귀에서 이석을 요격하였는데, 말의 꼬리만 잘리고 겨우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문종은 이 일을 알고 있었으나 어찌할 수 없었다. 【이상 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 남송 도종(南宋度宗)³⁷ 때의 일이다. 가사(賈似道)³⁸가 도종에게 재상을 그만두겠다고 요구하자 도종이 눈물을 흘리고 절하며 그를 만류하였다. 이에 강만리(江萬里)³⁹가 직접 도종을 부축해 일으키며 “예로부터 이와 같은 군신의 예는 없으니, 폐하께서 절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였다. 【『속자치통감』에 보인다.】

근안 謹按

삼가 살펴보건대, 송(宋)의 신하 주희(朱熹)가 효종(孝宗)에게 “사해가 지극히 넓고 백성이 지극히 많으니, 정치를 잘하는 사람은 이를 잘 총섭(總攝)하고 가지런히 정돈하여 각기 그 이

34 이석(李石): 자는 중옥(中玉)이다. 당시 환관들이 전횡하는 상황 속에서 종친으로서 재상을 맡아 국정을 보좌하며 기강을 바로잡으려 하였는데, 이를 시기한 환관 구사량이 도적을 보내어 이석을 살해하려 하였다. 위기를 모면한 이석은 병을 핑계대며 사직을 요청하여 외직으로 나갔다.

35 감로지변(甘露之變): 「어근습(馭近習)」 계조 기사에 보인다.

36 구사량(仇士良): 781~843. 환관으로, 내외오방사(內外五坊使)를 역임하고 무종(武宗) 때에는 관군용사(觀軍容使)에 올랐다. '감로지변' 때, 두 제후왕과 한 왕비, 네 재상을 살해하고 정권을 장악하였다.

37 남송 도종(南宋度宗): 1240~1274. 남송의 제6대 황제 조기(趙禔)로, 재위 기간은 1264년부터 1274년이다. 이종(理宗)의 동생 영왕(榮王) 조여(趙與芮)의 아들로, 이종에게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후사로 들어가 충왕(忠王)에 봉해진 뒤 태자가 되었다. 정무를 돌볼 능력이 되지 않아 귀비(貴妃)인 가씨(賈氏)의 오라비 가사(賈似道)에게 정사를 맡기고 그의 말만 따랐다.

38 가사(賈似道): 1213~1275. 남송 이종(南宋理宗)의 귀비인 가씨의 오라비로, 자는 사헌(師憲)이다. 쿠빌라이의 몽골군이 악주(鄂州)를 포위하자 칭신(稱臣)하고 세폐(歲幣)를 바치겠다는 조건으로 밀약하여 그들을 돌려보낸 뒤, 이를 숨기고 자신이 물리쳤다고 거짓 선전을 하였다. 그 공으로 우승상(右丞相)이 되어 조정 정사를 농단하다가, 몇 년 뒤 다시 공격해온 몽골군에게 대패하고 귀양을 가다가 죽었다.

39 강만리(江萬里): 1198~1275. 자는 자원(子遠)이다. 당시 좌상(左相)을 지냈는데, 가사(賈似道)의 미움을 받아 관직에 오래 있지 못하였다. 이후 원(元)이 쳐들어오자 순절하였다.

치에 따르도록 하여 기강을 세우고 유지합니다. 기강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어진 이와 어질지 못한 이를 분별하여 상하의 분한分限을 정하고, 공과 죄를 잘 밝혀서 상벌의 시행을 공정히 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니, 이 말의 뜻이 참 깊습니다. 임금이 천하를 다스림은 진실로 공정한 마음을 붙잡고 시비를 명확히 분별하는 정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진 이는 조정에 나오고 어질지 못한 이는 물러가니 이것이 천하의 진퇴를 공정하게 하는 기강이며, 공이 있는 자가 상을 받고 죄를 지은 자가 벌을 받게 되니 이것이 천하의 상벌을 공정하게 하는 기강입니다. 그러나 임금이 만일 박학다식한 명철함과 격물치지格物致知의 공부가 없다면, 마음이 공정할 수 없고 정사가 명확히 분별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어진 이를 어리석다고 여기고 어리석은 이를 어질다고 여겨 상하의 기강이 무너지며, 공을 죄로 여기고 죄를 공으로 여겨 상벌의 기강이 무너지게 됩니다. 예로부터 기강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서 나라를 잘 다스린 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나라를 법으로 다스리는 데 있어 오로지 기강을 엄격히 하는 데 힘썼습니다. 훈신勳臣들이 공적을 믿고 교만하면 장杖을 치고 먼 곳으로 내쫓고, 상신相臣이 청탁을 받아 송사를 처리하면 중도에 부처付處하도록 하였습니다. 외손처럼 친애하는 자라도 방자하여 근본을 잃는다면 대간臺諫의 요청에 따라 정배하였고, 부마도위駙馬都尉처럼 총애하는 자라도 제멋대로 법을 저촉한다면 사헌부에 추국하도록 특별히 허락하셨습니다. 의정부가 중재重宰에게 책임을 묻게 하여 조정의 체모를 높였고, 감찰監察이 권귀權貴를 막도록 하여 국법을 떨쳤습니다. 자성慈城에서 일이 잘못되면 귀주貴主의 간절한 요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법대로 처리하였으며, 심도沁都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원훈元勳이라도 사정을 봐주지 않고 반드시 사사賜死하였습니다.⁴⁰ 열성조계서 이처럼 엄숙하게 기강을 세우셨으니, 지금까지도 이어져 남은 가르침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아! 천하의 일은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어느 하나도 기강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한 나라에는 한 나라의 기강이 있고 한 집안에는 한 집안의 기강이 있고 한 몸에는 한 몸의 기강이 있습니다. 나라와 집안의 기강을 세우려거든 먼저 자신의 기강을 세우는 것이 최선이니, 이른바 한 몸의 기강이란 마음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마음속에서 발현한 것이 반

40 심도沁都를 … 사사賜死하였습니다: 김경징金慶徵은 인조반정 때의 공으로 정사공신靖社功臣 2등에 책록되고 순흥군順興君에 봉해졌다. 병자호란 때 강도江都 검찰사로 부임하였으나,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매일 술만 마시는 무사안일에 빠졌다. 강화江華가 함락되자, 수비 실패를 이유로 대간에게 탄핵을 받아 사사되었다. 장신張紳 또한 인조반정에 참여하였으나, 병자호란 때 강화유수로서 강화도를 지키지 못한 죄로 나라의 명을 받고 자진하였다.

드시 권형權衡을 바로잡고 밖으로 드러난 것이 반드시 요령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하니, 공정한 도리가 존재하는 것이 확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도리가 매인 바가 견고하여 돌이 되지 않게 됩니다. 이것으로 위태로운 한 세상을 갈고 닦고 백공百工들의 안일함을 신칙한다면, 보좌에서 팔짱을 끼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온갖 정무가 저절로 가다듬어지고 진작될 것입니다. 이것이 선유先儒가 반드시 기강을 세우는 요체를 본원의 영역에 귀결시킨 이유이니, 본원을 다스리는 요체는 또한 진실로 박학다식한 명철함과 격물치지의 공부와 관계가 있습니다. 유념하고 유념하소서.

명상벌^{明賞罰}

상벌을 분명히 하다

법조 法條

- 진^秦의 군대가 효^郃에서 패하였다. 문영^{文嬴}이 세 장수의 방면을 요청하자, 진 양후^{襄侯}가 허락하였다.¹ 진 목공^{秦穆公}이 교외에서 소복 차림으로 그들을 맞이한 뒤, 맹명^{孟明}[맹시^{孟視}]²을 교체하지 않고 말하였다. “내 잘못이다. 대부가 무슨 죄가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한 번의 과오로 큰 덕을 가리지 않는다.”
- 진 양공^{襄公}³ 때의 일이다. 구계 서신^{臼季胥臣}⁴이 기^冀 땅을 지나가다가, 기결^{冀缺}[극결^{郤缺}]⁵은 김을 매고 그의 아내는 들밥을 내오는데 마치 서로를 손님 대하듯이 공경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하여 그들과 함께 돌아와 문공^{文公}에게 이야기하니, 문공이 그를 하군대

1 진^秦의 … 허락하였다: 진 목공^{秦穆公}이 맹명, 서결술^{西乞術}, 백을병^{白乙丙} 등 세 장수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진^晉을 정벌하도록 하였는데, 그때 진 문공^{文公}의 초상^{初喪}이 나 아직 장사를 치르지 않았다. 당시 진^晉의 태자였던 양공^{襄公}이 노하며 “진^秦나라가 나를 업신여겨 초상이 난 기회를 이용해 우리 활^滑 땅을 공격하려 한다.”라고 하고, 상복 차림으로 군대를 이끌고 효^郃로 나가 진^秦의 군대를 격파하고, 세 장수를 사로잡아 돌아갔다. 문영은 진 목공의 딸로, 진^晉으로 시집 가 문공의 부인이 되었으며 양공의 적모^{嫡母}이다. 문영이 양공을 설득하여 세 장수를 풀어주고 진^秦으로 돌아가게 한 것이다.

2 맹명^{孟明}: 맹명은 자이고, 이름은 시^視였다. 백리해^{百里奚}의 아들로, ‘백리맹명시^{百里孟明視}’라고도 부른다. 진^晉에게 효^郃에서 크게 패한 뒤, 팽야^{彭衙}에서 싸우다가 또 패했다. 목공 36년 다시 진^晉을 공격했는데, 황하를 건너고 나서 타고 간 배를 볼 때 태우는 등 겹사 항전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3 진 양공^{襄公}: 춘추 시대 진의 군주로, 이름은 전해지지 않는다. 서용^{西戎}과 견용^{犬戎}이 주^周 왕실을 공격하여 유왕^{幽王}을 살해하자 군대를 이끌고 평양^{平陽}포를 호송하여 동천^{東遷}하는 데 공을 세웠다.

4 구계 서신^{臼季胥臣}: 춘추 시대 진^晉의 대부로, 식읍이 구^臼이고 자가 계절이기 때문에 구계라 불리며, 성은 서^胥이고 이름은 신^臣이다. 중이^{重耳}훗날 문공^{文公}을 따라 망명 생활을 하였으며, 문공이 즉위한 뒤, 대부가 되어 사공에 임명되었다.

5 기결^{冀缺}: 춘추 시대 진^晉의 대부 ‘극결^{郤缺}’로, 그의 아버 기^冀에 봉해졌으므로 ‘기결’ 이라고도 불렸다. 서신^{胥臣}에 의해 발탁된 뒤, 하군대부^{下軍大夫}가 되었으며, 진 성공^{成公} 때 조돈^{趙盾}을 대신해 중군원수^{中軍元帥}에 올랐다.

부下軍大夫로 삼은 일이 있었다. 기箠에서 돌아온 후,⁶ 양공이 선모先茅의 현⁷을 서신에게 상으로 주라고 명하며 “극결欲缺을 등용한 것은 그대의 공이다.”라고 하였다.

|| 초 장왕楚莊王 때의 일이다. 영윤令尹 자문子文⁸의 손자 잠윤箴尹 극황克黃이 제齊에 사신으로 갔다 돌아오는 길에 송宋에 이르렀는데, 자문의 종자從子인 월초越椒⁹가 반란을 일으켜 약오씨若敖氏가 멸족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자 극황의 시종이 “초로 들어가지 마십시오.”라고 하였다. 극황이 “임금은 하늘이다. 하늘을 피해 도망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고, 마침내 돌아와 사신의 일을 보고하고 스스로 사패司敗에게 잡혔다. 장왕은 자문이 초나라를 다스린 공을 생각하여 “자문에게 후손이 없다면 어떻게 선행을 권면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고, 그의 직책을 그대로 맡게 하고 그의 이름을 ‘생生’으로 고쳐 주었다.

|| 진 문공晉文公 때의 일이다. 성복城濮 전투¹⁰ 때, 진핍의 중군中軍이 늪지대에서 큰바람을 만나 대패大旆의 왼쪽 전旆¹¹을 잃었는데, 기만祁驎이 명을 범하였으므로¹² 사마司馬가 그를 죽여 제후에게 조리돌렸다. 진군晉軍이 환군하여 황하를 건널 때는 주지교舟之僑를 죽여 나라에 조리돌리니,¹³ 백성들이 이에 크게 복종하였다. 군자가 다음과 같이 논평하

6 기箠에서 돌아온 후: 진 양공이 침입해온 백적白狄을 기箠에서 패퇴시키고 돌아온 것이다. 이 전투에서 극결은 백적자白狄子를 사로잡는 공을 세웠다.

7 선모先茅의 현: 선모는 진핍의 대부이다. 선모가 후손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의 현을 취하여 서신에게 상으로 준 것이다.

8 자문子文: 춘추 시대 초楚의 대부인 투누오도譚於菟로, 자문은 그의 자이다. 출생 직후 들뜬에 버려졌으나 호랑이가 젖을 먹여 길렀다고 한다. 초 사람들은 젖을 누戮라 하고 범을 오도於菟라 일컫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누오도라고 하였다. 성왕成王을 섬겨 영윤이 되었기 때문에 ‘영윤 자문’으로도 불린다. 세 번이나 영윤에 임명되고 세 번 파직을 당했으나 동요하지 않았으므로 공자가 그를 “충성스럽다[忠]”라고 평가하였다. (『論語』「公冶長」)

9 월초越椒: 초楚의 권세가인 약오씨 집안의 사람 투초譚椒로, 월초는 그의 자이다. 성질이 난폭하였다. 태어나면서 웅호熊虎의 모습에 시랑豺狼의 소리를 내었으므로 그를 죽이지 않으면 그의 종족 약오씨가 멸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후에 과연 초 장왕을 공격하였다가 실패하여 약오씨가 전멸당함으로써 후사가 끊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0 성복城濮 전투: 춘추 시대에 패권을 다투던 진핍의 연합군이 초楚의 연합군을 격파한 싸움이다. 전력 면에서 열세였던 진의 연합군이 진陳, 채蔡 등과 연합한 초나라의 군대를 성복으로 유인해 크게 격파하였다. 이 전쟁으로 진이 중원의 패자가 되었다.

11 대패大旆의 왼쪽 전旆: 깃발의 테두리에 술이 달린 것을 ‘패旆’라 하고, 아무 무늬가 없는 통푹 천으로 만든 깃발을 ‘전旆’이라 한다. (『春秋左氏傳』僖公 28年 注疏)

12 기만祁驎이 명을 범하였으므로: 기만은 우마牛馬와 기패旗旆를 맡은 자로, 바람에 이것들을 모두 잃었으므로 명을 범했다고 한 것이다.

13 주지교舟之僑를 죽여 나라에 조리돌리니: 주지교는 본래 곽魏의 대부였는데, 곽공魏公이 견용에게 패한 후 진핍으로 망명하였다. 성복 전투에서 옹우戎右가 되었는데, 군대를 버리고 먼저 돌아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처형되었다.

였다. “문공은 적절하게 형벌을 내렸다. 세 죄인¹⁴을 죽이니 백성들이 복종하였다.”【이상은 『춘추좌씨전』에 보인다.】

|| 한 소후(昭侯)가 낚아서 해진 바지를 보관해두라고 명하였다. 시자(侍者)가 “임금께서는 자 애롭지 않으신 듯합니다. 좌우에게 하사하지 않고 보관하시는군요.”라고 하니, 소후가 말하였다. “내가 들으니, 현명한 임금은 한 번 찡그리고 한 번 웃는 것도 아낀다고 한다. 찡그림에는 찡그릴 일이 있어서이고 웃음에는 웃을 일이 있어서이니,¹⁵ 지금 바지를 하사하는 것이 어찌 다만 찡그리고 웃는 일일 뿐이겠는가. 내 반드시 공이 있는 자를 기다렸다가 그에게 줄 것이다.”

|| 제 위왕(齊威王)¹⁶이 즉묵(卽墨)의 대부를 불러 “그대가 즉묵을 다스린 이후로 험뜯는 말이 날마다 들려오기에 사람을 시켜 즉묵을 살펴보게 하였더니, 전야(田野)는 개간되고 인민은 넉넉하였다. 이는 그대가 내 좌우의 신하들을 섬겨 좋은 평판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만가(萬家)의 읍을 봉해주었다. 아(阿)의 대부를 불러 “그대가 아를 다스린 이후로 칭찬하는 말이 날마다 들려오기에 사람을 시켜 아를 살펴보게 하였더니, 전야는 개간되지 않고 인민들은 굶주렸다. 조(趙)가 건(鄆)을 공격하는데도 그대는 구원하지 않았고 위(衛)가 벽릉(薛陵)을 빼앗았는데도 그대는 알지 못하였다. 이는 그대가 후한 뇌물로 내 좌우의 신하들을 섬겨 좋은 평판을 구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그날로 아의 대부와 그를 칭찬했던 좌우의 신하들을 팽형(烹刑)에 처하였다. 이에 여러 신하가 두려워하여 감히 거짓을 꾸미지 못하였다.

|| 한(漢)의 계포(季布)¹⁷가 항적(項籍)의 장수였을 적에 여러 번 고조(高祖)[유방(劉邦)]를 곤궁하게 하

14 세 죄인: 성복 전투에서 처형된 전힐(顛顛), 기만, 주지교을 가리킨다.

15 찡그림에는 … 있어서이니: 찡그림도 이유가 있어서 찡그리는 것이고, 웃는 것도 이유가 있어서 웃는다는 의미로, 임금은 함부로 희로의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됨을 말한 것이다. 『한비자(韓非子)』 「내저실내(內儲說)」에 “밝은 군주는 한 번 찡그리고 한 번 웃는 것도 아끼니, 찡그림도 이유가 있어서이고, 웃음도 이유가 있어서이다.[明主之愛一嘖一笑 嘖有爲嘖 而笑有爲笑]”라고 하였다.

16 제 위왕(齊威王): 전국 시대 제의 군주로, 성은 규(匡) 씨는 전(田), 이름은 인제(因齊) 또는 영제(嬰齊)이다. 즉위 초에 정치를 경대부에게 맡겼다가 후에는 추기(鄒忌)를 재상, 전기(田忌)를 장군, 손반(孫臏)을 군사(軍師)에 기용하는 등 정사에 힘썼다. 마릉(馬陵) 전투에서 위(魏)를 격파하고 난 뒤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7 계포(季布): 초(楚) 항우의 무장으로, 누차 유방을 곤경에 빠뜨렸다. 후에 한을 세운 유방에게 사면 받아 낭중에 임명되었다. (『史記』 「季布傳」)

고 육보였다. 항적이 죽은 후, 고조가 현상금 천금을 걸어 계포를 잡으려 하였다. 계포가 머리를 깎고 칼을 쓰고 노예가 되어 스스로 노魯의 주가朱家에 팔려 갔다. 주가가 등공滕公¹⁸을 찾아가 계포를 사면해 주도록 설득하여 등공이 고조에게 말하니, 고조가 마침내 계포를 사면하고 낭중郎中에 제수하였다.

계포의 동모제同母弟인 정공丁公 또한 항우項羽의 장수였는데, 고조를 추격하여 곤경에 처하게 하고 단병短兵으로 고조와 육박하여 싸웠다. 고조가 다급하여 정공을 바라보며 “두 현자가 어찌 서로를 곤궁하게 하는가!”라고 하니, 정공이 군사들을 데리고 돌아갔다. 항왕項王[항위]이 죽은 뒤에 정공이 알현하자, 고조가 정공을 군중軍中에 소리들리면서 말하였다. “정공은 항왕의 신하로 불충하여 항왕으로 하여금 천하를 잃게 만든 자이다.” 결국 그를 참수하고 “후세에 신하가 된 자는 정공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였다.

- 전한 문제前漢文帝가 풍당馮唐¹⁹에게 “내 다만 염파廉頗²⁰와 이목李牧²¹ 같은 장수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하니, 풍당이 대답하였다. “이목이 조趙의 장수가 되어 변방에 있을 때 군사軍市에서 받는 조세를 모두 재량껏 병사들을 먹이는 데 썼으며, 상을 내리는 것을 조정에 보고하지 않고 결정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목이 그 지력과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신이 들으니, 운중雲中 태수 위상魏尙은 그 군사에서 받는 조세를 모두 병사들을 먹이는 데 썼으므로 흉노가 멀리 피하여 변경에 접근하지 못하였으며, 위상이 죽인 흉노의 수도 매우 많다고 합니다. 막부에 전공을 보고할 때, 수로首虜가 6급級의 차이가 났는데,²² 말 한마디가 상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문리文吏가 법에 따라

18 등공滕公: 한·한의 개국공신인 하후영夏侯嬰으로, 등공은 그의 봉호이다. 말을 관리하는 천역賤役に 종사하였으나, 소하蕭何, 번쾌樊噲와 함께 유방의 가신으로서 한을 건국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개국 후, 태복太僕을 지내고 여음후汝陰侯에 봉해졌다.

19 풍당馮唐: 전한 문제 때 효행으로 이름이 드러나 중랑서장中郎署長으로 발탁되었다. 이후 무제武帝가 즉위한 후 풍당을 발탁하려 하였지만, 이미 나이 90이 넘어 관직에 나가지 못하였고 풍당의 아들 풍수馮遂가 대신 기용되었다.

20 염파廉頗: 전국 시대 조趙의 장수로, 혜문왕惠文王 때 장將이 되고 상경上卿으로 승진했다. 효성왕孝成王 때는 진秦의 공격으로부터 성을 굳게 지켰으나 진의 이간으로 조괄趙括과 교체되었다. 조괄이 진 장군 백기白起에게 죽음을 당한 후, 연燕의 공격을 받아 다시 기용되어 연을 대파하고 신평군信平君이 되어 가상국假相國에 임명되었다. 80을 넘긴 나이에도 전투를 치르며 건재하여 노익장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21 이목李牧: ?~기원전 229. 전국 시대 조趙의 장수로, 장기간 대대와 안문雁門에서 흉노를 방비하였다. 진秦이 조를 공격하자 비연에서 진군을 대파하고, 무안군武安君에 봉해졌다. 염파와 함께 조의 명장으로 일컬어진다.

22 수로首虜가 6급級의 차이가 났는데: 위상이 적의 수급과 포로를 올려 보고할 적에 6급이 차이가 나서 죄를 받은 것이다. 적 한 명의 목을 베면 관직 한 계급을 제수하였으므로, 한 사람의 머리를 한 ‘급’이라 하였다.

처결하였습니다. 폐하께서는 상을 내리는 것이 너무 가볍고 벌을 내리는 것이 너무 무거우니, 비록 염파와 이목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쓰지 못할 것입니다.” 문제가 기뻐하며 위상을 다시 운중 태수로 삼았다.

|| 전한 선제前漢宣帝가 다음과 같이 조서를 내렸다. “공이 있어도 상을 내리지 않고 죄가 있어도 처벌하지 않으면 요순堯舜이라 해도 천하를 교화할 수 없다. 지금 교동왕膠東王의 상相인 왕성王成²³이 백성들의 수고를 위로해 주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아서 유민들이 스스로 호적에 이름을 등재한 자가 8만여 명이다. 다스림에 월등한 공로가 있으니, 왕성에게 관내후關內侯의 작위와 중이천석中二千石의 품계를 하사하라.”

|| 전한 원제前漢元帝 때의 일이다. 진탕陳湯²⁴과 감연수甘延壽²⁵가 황제의 제서制書를 위조해서 서역西域의 병사를 징발하여 질지 선우鄯支單于²⁶를 참살하였다. 석현石顯과 광형匡衡²⁷이 “진탕과 감연수는 군사를 일으키고 황제의 제서를 위조하였는데, 만일 작위와 토지를 더해준다면 훗날 사명使命을 받드는 자들이 앞다투어 요행을 바라 오랑캐에게 일을 벌일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종정宗正 유향劉向²⁸이 상소하였다. “질지 선우가 사자와 이사夷士 백여 명을 가두고 죽였습니다. 도호都護 감연수와 부교위副校尉 진탕이 성상의 뜻을 받들고 신령에게 의지하여,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먼 지역으로 들어가 질지의 목을 베어 곡길谷吉의 치욕²⁹을 씻어 주었습니다. 큰 공을 논하는 자는 작은 허물은

23 왕성王成: 교동왕의 상相으로 있으면서 외방의 유민 8만여 명이 경내로 몰려들었다고 보고하여 관내후의 작위를 받았다. 훗날은 왕성이 허위로 보고하여 큰 상을 받았다고 하였다. (『漢書』「循吏傳」)

24 진탕陳湯: 자는 자공子公이다. 서역 부교위西域副校尉로서 책모가 많았고 기이한 공을 세우기를 좋아하였다. 흉노 질지 선우를 참살하고 그 공으로 관내후에 봉해졌다. (『漢書』「陳湯傳」)

25 감연수甘延壽: 자는 군황君況이다. 뛰어난 무예로 어림군御林軍에 선발되어, 원제 때 낭중郎中과 간대부諫大夫가 되고 외적으로 서역 도호西域都護를 지냈다. 서역 도호로 있을 당시, 흉노 질지 선우를 참살하고 그 공으로 의성후에 봉해졌다.

26 질지 선우鄯支單于: 서흉노의 선우로, 이름은 호도오사呼屠吾斯이다. 전한 선제 때 독립하여 질지골도鄯支骨都 선우가 되었고, 원제元帝 때 감연수, 진탕 등에게 공격을 받아 죽었다. (『漢書』「陳湯傳」; 「匈奴傳」)

27 광형匡衡: 자는 치규稚圭이다. 원제 때, 승상이 되고 낙안후樂安侯에 봉해졌다. 경학에 밝고 특히 시에 뛰어났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시에 대해 말하지 말라. 광형이 올 것이다. 광형이 와서 해설하면 사람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할 것이다.[無說詩匡鼎來 匡說詩 解人頤]”라고 하였다. (『漢書』「匡衡傳」)

28 유향劉向: 기원전 77~기원전 6. 한의 종실로, 한 고조漢高祖의 배다른 동생 유교劉交의 4세손이다. 문장에 능하고 경술經術에 조예가 깊었으며, 누차 상소하여 시정時政을 논함에 그 말이 매우 강직하였고, 외척 왕씨王氏를 신랄하게 배척하였다. 저서에 『홍범오행전洪範五行傳』, 『열녀전列女傳』, 『신서新序』, 『설원說苑』 등이 있다.

29 곡길谷吉의 치욕: 한의 위사미衛司馬 곡길이 질지 선우에게 사신으로 갔다가 죽임을 당한 일을 가리킨다.

기록하지 않고 훌륭한 일을 거론하는 자는 작은 하자는 신경 쓰지 않는 법입니다. 잘못을 용서하여 나무라지 말고 총애하고 작위를 높여 주어 공이 있는 이를 권면해야 합니다.” 이에 감연수를 의성후義成侯에 봉하고, 진탕에게 관내후關內侯의 작위를 내렸다.

- 당 고조唐高祖가 괍읍霍邑에서 세운 공³⁰에 따라 상을 주었는데, 군리軍吏들은 모집에 응한 노예들을 양인良人과 동등하게 논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고조가 말하였다. “화살과 돌이 날아다니는 전쟁터는 귀천을 따지지 않으니, 논공하는 자리에서 어찌 차등을 두겠는가.” 어떤 이가 관직을 남발한다고 간언하자, 고조가 말하였다. “수씨隋氏는 훈상勳賞에 인색하였으니, 이것이 인심을 잃은 원인이다. 어찌 그것을 본받겠는가.”
- 당 현종唐玄宗 때의 일이다. 무강령武彊令 배경선裴景仙이 비단 5천 필의 뇌물을 받은 죄를 짓자, 현종이 노하여 참수하라고 명하였다. 대리경大理卿 이조은李朝隱³¹이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배경선의 증조부인 배적裴寂³²은 의리를 세워 큰 공이 있었고, 배경선은 대를 이었으니 그 죽음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현능한 자의 자손은 10대가 지나도 용서해 주어 그 조상의 공덕을 실로 새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한 가문의 제사가 끊기는 것 또한 인정상 슬퍼할 만한 일입니다.” 이에 현종이 허락하여, 배경선을 영남嶺南으로 장류杖流하였다.
- 당 숙종唐肅宗이 이필李泌³³에게 말하였다. “지금 괍자의郭子儀와 이광필李光弼은 이미 재상의 자리에 있다. 만일 장안長安과 낙양洛陽을 수복하고 사해를 평정하면³⁴ 상으로 내려

30 괍읍霍邑에서 세운 공: 당 고조 이연李淵과 태종 이세민李世民이 수의 장수 송노생宋老生의 군대와 산서성山西省 괍읍에서 싸워서 승리한 것을 말한다.

31 이조은李朝隱: 665~734. 자는 광국光國이다. 벼슬은 이부시랑吏部侍郎, 하남 윤河南尹, 영남 채방처치사嶺南採訪處置使 등을 역임하였다. 대리시경大理寺卿으로 있을 때, 법 집행을 엄격하게 하였다.

32 배적裴寂: 570~632. 당 고조 때의 재상으로, 자는 현진玄眞이다. 수隋에서 진양궁 부감晉陽宮副監으로 있을 때, 이세민의 수하로 있으면서 이연훗날 고조高祖의 거사를 도왔다. 벼슬은 상서우복야尙書右僕射,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 등을 역임하였다.

33 이필李泌: 722~789. 자는 장원長源이다. 어릴 때부터 문장에 능하여 당대의 문호文豪 장구령張九齡의 소우小友가 되었다. 당 현종唐玄宗은 태자[숙종]에게 이필과 포의지교布衣之交를 맺게 하고 이필을 선생이라 부르게 하였다. 양국충楊國忠의 시기를 받아 은둔하다가, 안녹산安祿山의 난 때 숙종의 부름을 받았다. 그러나 환관 이보국李輔國 등의 무고로 다시 은둔하였다. 대종代宗이 즉위한 뒤 한림학사에 제수되고, 이후 재상이 되었다.

34 지금 … 평정하면: 이때 안녹산과 사사명史思明이 어양瀋陽에서 난을 일으켜 양경을 점령한 뒤, 그곳의 보물을 약탈하였다. 이에 괍자와의 이광필이 절도사의 신분으로 난을 평정하고, 양경을 수복한 공으로 각각 분양왕汾陽王과 임희왕臨淮王에 봉해졌다.

줄 관직이 없으니 어찌해야겠는가?” 이필이 대답하였다. “공신으로 높은 관직에 있는 자들은 모두 자손을 위한 장구한 계책을 세우지 않고, 한때의 권력에 편승하여 이익을 구하는 데 힘씁니다. 지금을 위한 계책은 천하가 평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작위를 나누어 공신에게 상으로 주는 것만한 것이 없습니다.” 숙종이 “좋다.”라고 하였다.

|| 당 헌종唐憲宗 때의 일이다. 위박 절도사魏博節度使 전흥田興³⁵ 이 당에 귀순하자, 이강李絳³⁶ 이 말하였다. “위박魏博이 하루아침에 6주州의 땅을 가지고 와서 귀순하였으니, 조정에서 큰 상을 내리지 않으면 사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내고內庫에서 150만 전錢을 내어 하사하여 주기를 청합니다.” 헌종이 기뻐하며 “짐이 해진 옷을 입고 변변치 못한 음식을 먹으면서 재화를 모으는 것은 바로 사방을 평정하기 위해서이다.”라고 하고 마침내 상으로 내리니, 위박의 군사들이 기뻐서 우레처럼 소리쳤다.

|| 후주 세종後周世宗이 형상刑賞에 대해 근신들과 논하면서 “짐은 절대로 분노로 인해 사람에게 벌을 주지도 않을 것이며, 기쁨으로 인해 사람에게 상을 주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 송 태조宋太祖가 촉蜀을 정벌했을 때의 일이다. 왕전빈王全斌³⁷ 등이 법을 어겨서 징환徵還되니, 재물을 탐내고 항복한 이를 죽였다는 죄목으로 절도 유후節度留後로 좌천되었다. 이에 반해 조빈曹彬³⁸이 촉에서 돌아왔을 때, 짐 속에는 오직 도서圖書과 옷과 이부자리뿐이었으며, 또 부하들을 잘 단속하였다. 태조가 가상히 여겨 그를 선휘 남원사宣徽南院使로 임명

35 전흥田興: 764~821. 당 헌종 때의 절도사로, 자는 안도安道이다. 위박 절도사魏博節度使 전승사田承嗣의 종질이다. 전승사의 증손 회간懷諫이 어린 나이에 절도사를 승습하였으므로, 그의 사노私奴인 장사직將士則이 모든 정무를 전횡하였다. 이에 전흥이 병마사兵馬使가 되어 장사직을 죽이고 위주魏州, 박주博州, 패주貝州, 위주衛州, 단주澶州, 상주相州 등 6주州의 곡식 수입을 모두 적어서 헌종에게 바치고는 귀순하였다. 헌종이 그를 가상히 여겨 위박 절도사에 제수하고 ‘홍정弘政’이라는 이름을 하사하였다.

36 이강李絳: 「개언로開言路」 법조 50번 각주 참조.

37 왕전빈王全斌: 908~976. 후당後唐, 후진後晉, 후주後周 세 왕조에 걸쳐 벼슬하여 상주 유후相州留後에 이르렀다. 이후, 송이 후촉後蜀을 정벌할 때, 서천 행영전군부서西川行營前軍部署에 임명되어 후촉의 항복을 받아내는 등 전공을 세웠다. 그러나 성도成都에 들어간 뒤, 방탕한 짓을 일삼고 군사들을 단속하지 않아 반란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송의군절도관찰유후崇義軍節度觀察留後로 좌천되었다.

38 조빈曹彬: 「애민생愛民生·부附 진지賑濟」 법조 61번 각주 참조.

하자, 조빈이 사양하며 “서쪽 지역을 정벌한 장사將士들은 모두 벌을 받았는데, 신이 어찌 감히 혼자만 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니, 태조가 말하였다. “경은 무수한 공이 있다. 악을 징계하고 선을 권면하는 것은 나라의 상전常典인데, 또 어찌 사양하는가.”

■ 송 태조 때의 일이다. 관직을 올려주어야 하는 자가 있었는데, 태조가 평소 그를 싫어하여 허락하지 않았다. 조보趙普³⁹가 단호하게 청하였다. “형벌로 악을 징계하고 상으로 공을 보상하는 것은 고금에 통용되는 도입니다. 게다가 형상은 천하의 형상이니, 폐하께서는 어찌 사적인 감정으로 그것을 좌지우지하신단 말입니까.” 태조가 성을 내며 궁으로 들어가 버렸지만 조보는 궁문에 남아 오랫동안 떠나지 않으니, 마침내 태조가 윤허하였다.

■ 원 인종元仁宗 때의 일이다. 평장사平章事 이맹李孟⁴⁰이 말하였다. “임금의 권한은 형상에 달려있습니다. 한 가지 선행에 상을 내림으로써 천하가 권면되고 한 가지 악행에 벌을 내림으로써 천하가 징계되니, 상벌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천하를 다스리겠습니까.” 이에 억울하게 죽은 자는 관직을 회복시켜 그 자손에게 음식齒職을 주고, 실정에 넘치게 관작을 받은 자는 모두 추탈하였다. 【이상은 『속자치통감』에 보인다.】

■ 명 태조明太祖가 예부禮部에 훈유하였다. “임금의 상벌이 공정하지 않으면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할 수 없다. 한 고조漢高祖는 정공丁公을 참형하고 웅치雍齒를 봉하였으며,⁴¹ 당 태종唐太宗은 권만기權萬紀와 이인발李仁發을 축출하고 위징魏徵의 직언에 상을 내렸으니,⁴² 이른바 ‘한 명의 군자에게 상을 내리면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한 명의 소인에게

39 조보趙普: 「수법제守法制」 법조 31번 각주 참조.

40 이맹李孟: 「양사기養士氣」 법조 12번 각주 참조.

41 한 고조漢高祖는 … 봉하였으며: 정공은 계모季母의 모제母弟로 항우의 장수가 되어 유방을 궁지에 몰아넣고 거의 죽일 뻔 하였으나, 유방의 권유에 군대를 돌려 돌아갔다. 항우가 죽고 유방이 한을 건국한 뒤 정공이 유방을 찾아갔는데, 불충한 죄인으로 지목되어 목이 베였다. 자세한 내용은 「명상벌明賞罰」 법조法條 기사에 보인다. 웅치 역시 항우의 장수로 유방을 여러 번 곤경에 빠뜨려 유방의 미움을 받았으나, 유방이 아직 제후로 봉함을 받지 못한 장수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하여, 그를 십방후什方侯에 봉하였다.

42 당 태종唐太宗은 … 내렸으니: 권만기와 이인발은 남의 잘못을 고해바치는 것으로 당 태종의 총애를 입은 인물이다. 권만기가 선주宣州와 요주饒州의 은을 캐어 이익을 도모할 것을 청하였다. 태종은 자신을 정도正道로 인도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여 그날로 권만기를 내쳤다. 위징은 직간으로 유명한데, 태종에게 「십점불극중소十漸不克終疏」를 올려 태종이 초심을 잃어 나랏일이 잘못되어가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벌을 내리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짐이 혹여 상벌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거든 경들은 명백히 논의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 || 명 세종明世宗이 황제를 옹립한 공로를 논하여 양정화楊廷和, 장면蔣冕, 모기毛紀를 백伯으로 봉하였다. 어사 왕연汪淵 등이 상주하였다. “폐하께서 천하를 소유하신 것은 윤서倫序 상 당연한 일입니다.⁴³ 그런데 지금 관자官賚는 양을 굶는 자에게까지 미치고⁴⁴ 작록爵祿은 해진 바지보다 가볍습니다.” 광도霍韜 역시 상주하였다. “법률상 문관을 공후公侯에 봉할 수 없습니다. 폐하께서는 사신史臣으로 하여금 학사를 백伯에 봉하였다고 쓰게 하는 것을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하십니까?” 세종이 그 말을 따랐다. 【이상은 『명사강목』에 보인다.】

계조 戒條

- || 위 헌공衛獻公⁴⁵ 때의 일이다. 영희靈喜⁴⁶가 국정을 전횡하자 헌공이 그것을 우려하니, 공손면여公孫免餘가 그를 죽일 것을 청하였다. 헌공이 “영자穉子가 아니었으면 내가 복위하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그에게 정권을 맡기겠다고 말하였다.”라고 하니, 공손면여가 “제가 그를 죽일 것이니 임금께서는 간여하지 마십시오.”라고 대답하였다. 이후에 공손면여가 영씨靈氏를 공격하여 영희를 죽이고 시신을 조정에 늘어놓았다. 이에 대하여 자선子鮮이 “우리를 축출한 자는 살아서 도망가고 우리를 받아 준 자는 죽었다. 상벌에 원칙이 없으니, 어찌 악행을 막고 선행을 권면하겠는가. 임금은 신의를 잃고 나라는 형정刑政이 없

43 폐하께서 ... 일입니다: 명 무종明武宗이 후사 없이 죽었으므로 양정화와 내각 대신들은 태조太祖의 「황명조훈皇明祖訓」에 따라 흥헌왕興獻王의 아들 주후충朱厚燾을 옹립하였으니, 이가 바로 세종이다.

44 양을 굶는 자에게까지 미치고: 양고기를 굶는 선부膳夫나 포인庖人들이 높은 벼슬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전한前漢 말기, 유현외이 임시 집권하고서 관작을 함부로 주자, 장안에서는 “조하양竈下養이 중랑장中郎將, 난양위爛羊胃가 기도위騎都尉, 난양두爛羊頭가 관내후關內侯를 했다.”라고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전선重鈐選」 계조戒條 기사에 보인다.

45 위 헌공衛獻公: 춘추 시대 위의 군주로, 경박하고 포악한 성격으로, 대부 손임보孫林父와 영식靈寗이 정변을 일으켜 헌공을 축출하고 헌공의 동생 표휼상공癸公을 옹립하였다. 헌공은 제齊로 망명하였다가, 대부 영희가 상공을 죽이자 12년 만에 복위하였다. 후에 정치를 좌지우지하던 영희를 못마땅히 여겨 살해하였다.

46 영희靈喜: 춘추 시대 위의 대부로, 손임보孫林父와 영식靈寗에 의해 축출된 헌공을 복위시켰으나 국정을 전횡하다가 헌공에게 살해되었다.

으니, 또한 나라를 다스리기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⁴⁷ 【『춘추좌씨전』에 보인다.】

■ 후한 환제後漢桓帝가 황제를 옹립한 공로를 정하는 조서를 내려 양기梁冀⁴⁸ 등과 중상시中常侍 유광劉廣 등을 모두 열후列侯로 봉하였다. 두교杜喬⁴⁹가 다음과 같이 간언하였다. “폐하께서 충성스럽고 어진 사람을 예우하는 일을 서두르지 않으시고, 측근들을 봉해 주는 일을 우선하시니, 양씨 일가와 환관과 미친한 서열이 모두 공도 없이 인끈을 차고, 고생한 신하들의 토지를 쪼개어 가져갔습니다. 무릇 공이 있는데도 상을 내리지 않으면 선을 행한 자가 기대할 것이 없게 되고, 간악한 짓을 했는데도 꾸짖지 않는다면 악을 행한 이가 그 흉악한 짓을 마음 놓고 하게 됩니다.”

■ 북위 세종北魏世宗 때의 일이다. 사공장사司空長史 신웅辛雄⁵⁰이 산만山蠻을 토벌하고 군중에서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무릇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예리한 칼날을 무릅쓰면서 꺼리지 않는 것은 후한 상을 탐내고 형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 지역⁵¹을 방어하는데 패배가 많고 승리가 적으니, 그 원인을 찾아보면 모두 상벌을 분명하게 하지 않은 소치입니다. 장수와 사졸들의 공훈은 여러 해가 지나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는데, 패망한 군의 군졸들은 집에서 편히 쉬고 있으니, 이는 절사節士에게는 권면하는 바가 없게 하고 용렬한 자들에게는 두려워하는 바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상소를 아뢰었지만, 세종은 살피지 않았다.

■ 당 고종唐高宗 때의 일이다. 태학생太學生 송성宋城이 다음과 같이 봉사封事を 올렸다. “근래의 정벌은 허울뿐인 상전賞典만 있고 실상은 없습니다. 책훈策勳하는 데 인색하고 창

47 자선子鮮이 … 하였다: 자선은 위 헌공의 동생이다. 국외로 쫓겨나 있던 헌공은 영희에게 자선을 보내 국정을 맡기겠다는 약속을 하고서야 복위할 수 있었다. 이후 국정을 전횡하던 영희가 헌공에게 살해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자선은 국외로 나가 버렸다. ‘우리를 축출한 자’란 앞서 헌공을 축출하는 데 앞장섰던 손임보를 가리킨 것으로, 그는 헌공이 복귀하자 자신의 식읍을 가지고 진쁨으로 귀순하였다. ‘우리를 받아준 자’는 헌공을 복위시킨 영희를 가리킨다.

48 양기梁冀: 「입기강立紀綱」 법조 8번 각주 참조. 양기의 전횡은 「대척완待威晚」 계조 기사에 보인다.

49 두교杜喬: 자는 숙영叔榮이다. 효렴孝廉으로 천거되어 태자태부太子太傅, 대사농大司農 등을 역임하였다. 양기梁冀의 자제들과 중상시中常侍 등이 공로 없이 봉작된 일을 간언했다가 참소를 받아 옥사하였다.

50 신웅辛雄: 485~534. 자는 세빈世賓이다. 벼슬은 거기장군車騎將軍, 전중상서殿中尚書, 이부상서吏部尚書 등을 역임하였다. 수도 낙양洛陽을 나간 세종을 대신해 경사京師를 지키다가 북제北齊를 세운 고헌高歡에게 살해되었다.

51 세 지역: 서쪽으로 진秦과 능隴, 북쪽으로 변진邊鎭, 남쪽으로 만자蠻左를 말한다.

고가 빌까 걱정만 하니, 병사가 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손해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어찌 미덥지 못한 영수를 내걸고 허울뿐인 상을 준다는 조목을 베고도 공을 세우기를 바란단 말입니까. 소정방蘇定方이 요동遼東을 정벌하고 이적李勣이 평양平壤을 격파⁵²한 뒤로 상이 전혀 시행되지 않아 책훈이 지체되었는데도 한 명의 대량臺郎을 참하거나 한 명의 영사俞史를 죽여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사과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보기에 토번吐蕃을 평정하는 것은 조석朝夕 간에 기대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듯합니다.”

|| 남당南唐의 군주 이경李璟 때의 일이다. 서현徐鉉과 한희재韓熙載가 “진각陳覺, 풍연노馮延魯는 죽음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는데도 폐하께서 사면해주셨습니다.⁵³ 제멋대로 군대를 일으킨 자를 죄주지 않는다면 국경에 일을 꾸미는 자가 있게 되고, 군사를 잃은 자를 살려준다면 군대를 지휘할 적에 목숨을 바쳐 싸우는 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현륙顯戮⁵⁴을 행하여 군대의 위엄을 세우십시오.”라고 상소하였으나, 이경은 듣지 않았다.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근안 謹按

삼가 생각건대, 상벌賞罰이란 임금이 한 시대를 다스리고 못 신하들을 이끄는 대병大柄 [근 권함입니다. 상을 줌이 합당하면 한 사람에게 상을 줌에 천만 사람이 권면되고, 벌이 줌이 합당하면 한 사람에게 벌을 줌에 천만 사람이 징계됩니다. 그러나 혹 이와 반대된다면 사람들이 모두 해이해져 태만한 풍조가 이루어질 것이니, 권선과 징악을 어느 곳에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시군 세주時君世主는 마음에 보존한 것은 천리天理를 한결같이 따르지 못하는 데다가, 정치에 발현된 것은 번번이 사의私意에 휘둘림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자

52 소정방蘇定方이 … 격파: 소정방은 661년 평양 도행군대총관平壤道行軍大總管으로 당군을 이끌고 신라군과 함께 고구려를 공격하였으나, 사수蛇水에서 패하고 물러났다. 이적은 645년에 요동 도행군대총관遼東道行軍大總管으로 고구려 안시성을 침공하였으나 함락하지 못했다가 668년에 재차 침공하여 평양성을 함락하고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舊唐書』 「李勣傳」)

53 진각陳覺 … 사면해주셨습니다: 진각과 풍연노는 남당의 간신으로, 공을 세우고자 사명辭命을 위조하여 군대를 일으켰다가 위무 절도사威武節度使 이홍의李弘儀에게 대패하였다. 남당 군주 이경은 크게 노하였으나, 송제구宋齊丘와 풍연가馮延巳가 진청하였다는 이유로 결국 이들을 사면하였다. (『資治通鑑』 「齊王」)

54 현륙顯戮: 죄인을 처형한 뒤에 그 시체를 전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가 좋아하는 자라면 공이 비록 크지 않더라도 부풀려서 번번이 넘치는 은전을 베풀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도 건강부회하여 반드시 관대한 법으로 처분합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자라면 반드시 보상해 주어야 할 공로가 있어도 매번 내버려 두고, 용서할 만한 죄를 지어도 도리어 죄를 얹어 벌을 줍니다. 그 상과 벌이 이처럼 전도된다면 단지 요행의 문만 열어 줄 뿐만 아니라 결국 온갖 법도가 무너지게 될 것이니,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천하 사람들의 마음을 복종시킬 것이며 어떻게 한 시대의 치평治平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열성烈聖들은 상벌을 시행할 때 은혜와 위엄을 조화하여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하기를 적절하게 하였습니다. 태조께서는 조박趙璞⁵⁵에게 “나는 여러 신하의 비방과 칭찬에 대해 반드시 조사하여 그 실상을 파악한 뒤에 비로소 상벌을 행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⁵⁶ 태종께서는 정효복鄭孝復의 상소를 읽다가 ‘공이 같은데 상이 다르고 죄가 한 가지인데 벌이 다르다.[功同賞殊 罪一罰異]’라는 구절에 어필로 비점을 찍고 상벌을 거듭 밝히셨습니다.⁵⁷ 세종 때는 야인野人을 토벌한 공로⁵⁸를 시상할 때면 관례官隸에 속해있더라도 천역賤役을 면해주었으며,⁵⁹ 장령將帥을 어긴 법을 적용할 때면 부수副帥의 신분이라도 사전敎典을 내리기를 꺼렸습니다.⁶⁰ 성종 때는 신정申滯이 재물을 탐하는 죄를 짓자 그

55 조박趙璞: 1356~1408. 고려 말 조선 초의 관리로, 본관은 평양平壤, 자는 안석安石, 호는 우정雨亭이다. 문하시중 조인규趙仁規의 4세손이며, 부친은 전의령典儀丞 조사겸趙思謙이다. 이방원李芳遠과 동서 간이었으므로, 이성계李成桂를 따랐다. 조선이 개국되자 예조전서로서 개국공신 1등이 되어 평원군平原君에 봉해졌으며, 대사헌, 예문관 대제학, 호조 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사후에 불교를 신봉했다는 탄핵을 받아 공신록권이 추탈되었다.

56 태조께서는 … 하셨습니다: 1393년(태조 2) 양광도 안렴사楊廣道按廉使 조박趙璞이 자신의 무능을 이유로 사직을 청하자 이를 만류하면서 말한 것이다. (『太祖實錄』 2년 5월 18일)

57 태조께서는 … 밝히셨습니다: 태종이 가뭄 때문에 술을 끊고 구언求言의 하교를 내리자, 예조좌랑 정효복鄭孝復이 둔전, 환관, 군사, 관직, 상벌 등 국정 전반에 대해 상언하였다. 『실록』에는 태종이 이를 칭찬하고 “공은 같은데 상에 차이가 있는 것은 귀천을 따르기 때문이며, 죄는 동일한데 벌에 차이가 있는 것은 친소 때문이다.[功同而賞有高下者 從其貴賤也 罪一而罰有輕重者 以其親疎也]”의 네 구에 비점批點을 찍었다고 한다. (『太宗實錄』 9년 6월 25일)

58 야인野人을 토벌한 공로: 여기서 야인은 파저강婆娑江 등지의 여진족을 가리킨다. 이만주李滿住 등의 여진족이 자주 함길도 여연閔延에 들어와서 약탈하고 많은 주민을 잡아가지, 세종은 최윤덕崔潤德을 평안도 도절제사로 임명하여 소탕하도록 하였다. (『世宗實錄』 15년 2월 15일·20일·26일; 3월 7일·10일·19일·20일·22일)

59 관례官隸에 속해있더라도 천역을 면해주었으며: 평안도 사람 가운데 출정하여 공을 세울 경우, 그 상으로 한량關良은 벼슬을 주고, 향리鄕吏와 역자驛子는 부역을 면제하고, 관노官奴는 천인賤人을 면해줄 것을 병조에서 아뢰자 세종이 이를 따랐다. (『世宗實錄』 15년 3월 18일)

60 장령將帥을 … 꺼렸습니다: 최무선崔茂宣의 아들 최해산崔海山이 좌군절제사左軍節制使로 파저강婆娑江 토벌에 참전하였는데, 도절제사節制使가 정한 기일의 이튿날에 강을 건넜고 행군도 지체하여 토벌에 차질을 초래하였다. 군기軍機를 그린 친죄로 병조는 그를 폄하하기를 청하고 사헌부는 그의 직첩을 거두고 영구히 서용敍用하지 않아야 한다고 상소하니 세종은 논의 끝에 20여 년간 화포火砲를 연구한 그의 공로를 고려하여 파직에 그치게 하였다. (『世宗實錄』 15년 5월 11일·14일·15일)

아비의 공을 생각하고도 오히려 대벽大辟에 처하였으며,⁶¹ 선묘宣廟[선조] 때는 차천로車天輅가 과장科場을 더럽히는 죄를 짓자 그의 문장을 아꼈지만 특별히 명을 내려 정배定配하였습니다.⁶² 인묘仁廟[인조] 때는 경연에서 재주가 뛰어난 자에게 상을 내리고 격려하였으며, 효묘孝廟[효종] 때에는 농서農書를 지은 자에게 상을 내려 칭찬하였습니다.⁶³ 숙묘肅廟[숙종] 때는 홍계적洪啓迪이 노래하고 떠드는 궁인들에 대해 상소하여 논하자 표피豹皮를 하사하여 그의 직간直諫을 칭찬하였으며,⁶⁴ 유신일俞信一이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시골 유생을 장살杖殺하자, 옥에 가두어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⁶⁵ 열조列朝께서 행하셨던 일이 무엇인들 후세에 귀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아! 작상爵賞과 형벌刑罰은 본디 임금이 주재하는 것이지만, 천하의 호오好惡를 공정하게 적용하고 못사람의 시비를 따라야 합니다. 죄가 있더라도 사람들이 모두 벌줄 만하다고 한 뒤에 벌을 주며, 공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모두 상줄 만하다고 한 뒤에 상을 주어 한결같이 공의로 부치고 사의를 개입시키지 않아야 하니, 『서경』에 이른바 천명天命과 천토토討의 도⁶⁶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구준丘濬⁶⁷은 “조정에서 작위를 주는 것

61 성종 … 처하였으며: 신정은 좌리공신佐理功臣인 신숙주申叔舟의 아들로, 탐욕스럽다는 세간의 평가가 있었는데, 고령현高靈縣의 사노寺奴를 자기의 종으로 삼기 위해 어보御寶를 위조한 문서를 발송하였다가 발각되어 사형당하였다. (『成宗實錄』 13년 4월 24일)

62 선묘宣廟 … 정배定配하였습니다: 차천로는 문장에 뛰어났는데, 정자正字로 있을 때, 고향 사람 여계선呂繼先의 과문科文을 대신 지어주어 장원급제시킨 일이 발각되어 명천明川에 유배되었다. 이후, 문재文才가 있다는 이유로 사면되어 승문원에 종사하였다. (『宣祖實錄』 19년 10월 24일·27일; 21년 11월 21일)

63 효묘孝廟 … 칭찬하였습니다: 1665년(효종 6) 공주 목사公州牧使 신숙申淑이 『농가집성農家集成』이라는 책을 만들어 올렸는데, 『농사직설農事直說』, 『금양잡목裕陽雜錄』, 『사시찬요초四時纂要抄』 세 농서와 『구황촬요救荒撮要』를 부록으로 합본한 것이었다. 이에 효종이 칭찬하며 호피를 하사하라고 명하였다. (『孝宗實錄』 6년 11월 3일)

64 홍계적洪啓迪이 … 칭찬하였으며: 숙종이 즉위 40주년을 맞아 존송례尊崇禮를 거행하는 시기에 궁인들이 어울러 놀며 크게 떠드는 일이 있었다. 이에 정언正言 홍계적이 상소를 올려 음란한 소리를 물리칠 것을 청하자, 숙종이 그에게 표피를 내려 직언을 칭찬하였다. (『肅宗實錄』 39년 3월 12일)

65 유신일俞信一이 … 하였습니다: 유신일이 회양 부사淮陽府使로 있을 때, 과거 보러 가는 북도北道の 유생 세 사람을 범마포馬褸했다는 이유로 장을 쳤다. 그중 유생 이우백李友白은 죽었고, 나머지 두 사람은 불구가 되었다. 이 일이 알려진 후, 의금부에 잡혀 온 유신일은 이우백이 역병에 걸려 죽었다고 거짓 진술을 하다가 결국 옥중에서 죽었다. (『肅宗實錄』 25년 4월 19일; 윤7월 8일)

66 천명天命, 천토토討의 도: 『서경』 「고요묘臯陶謨」에 “하늘이 덕이 있는 이에게 명하려 하면 다섯 가지 복식으로 표창하고, 하늘이 죄가 있는 이를 토벌하려고 하면 다섯 가지 형벌로 징계한다.[天命有德 五服五章哉 天討有罪 五刑五用哉]”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67 구준丘濬: 1421~1495. 자는 중심仲深이다. ‘경산 구씨瓊山丘氏’라 부르기도 한다. 문연각 태학사로 주자학에 정통하였다. 저서는 진덕수眞德秀의 『대학연의大學衍義』를 보완한 『대학연의보大學衍義補』와 주희의 『가례家禮』를 해설한 『가례의절家禮義節』이 유명하다. 효종은 그를 ‘이학명신理學名臣’이라고 칭하였고, 『명신록名臣錄』에 “나라의 대신으로 자신을 엄격히 다스렸고, 성리학에 정통하고, 저술이 많아 그를 뛰어넘을 자가 없다.”라고 기록되었다.

은 조정이 군자가 모여 있는 곳이므로 군자를 권면하려는 것이다. 저자에서 형벌하는 것은 저자가 소인이 모여 있는 곳이므로 소인을 징계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후세의 임금은 작위를 줌에 공적으로 드러내려 하지 않고 형벌을 내림에 바깥으로 소문이 날까 걱정하니, 모두 지극히 공정하지 않다.”⁶⁸라고 하였습니다. 구씨의 이 말은 어찌 인주(人主)의 약석(藥石)이 아니겠습니까.

또 생각건대, 형벌은 위급한 상황에서 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더욱더 큼니다. 나라가 한창 경동(警動)하여 징발(徵發)하는 때에 큰 상을 걸어 놓으면 사졸들이 모두 이익을 쫓아 기꺼이 죽으려고 하며, 엄격한 법률을 보이면 사람들이 모두 위엄에 굴복해 여기는 일이 없습니다. 만일 평상시 작상을 쉽게 얻고 형벌을 쉽게 면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되면, 그 누가 얻기 쉬운 상과 면하기 쉬운 형벌 때문에 기꺼이 위태로움을 보고 자기 몸을 잊고 나서며 어려움에 닥쳐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이는 예로부터 명철한 왕이 무사(無事)한 때에도 반드시 신중을 기했던 이유입니다. 또 은혜가 다하면 태만해지고 위엄이 다하면 원망하니, 은혜와 위엄이 반드시 적절하게 내려지고 반드시 공평한 뒤에야 이 두 가지 병통이 없을 것입니다. 유념하고 유념하소서.

68 조정에서 … 않다: 『대학연의보』 「공상벌지시(公賞罰之施)」에 보인다.

홀형옥 恤刑獄

형옥을 삼가다

법조 法條

|| 우임금이 출행하다가 죄인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이유를 묻고는 눈물을 흘리자, 좌우의 신하들이 “군왕께서는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우임금이 “요순시대 사람은 모두 요순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삼았는데, 과인이 임금이 되고서는 백성들이 각자 자기의 사심私心을 마음으로 삼고 있기에 내가 마음 아파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봉주강감회찬』에 보인다.】

|| 제 경공齊景公이 안자晏子에게 “그대는 시장 가까이 살고 있으니, 물가가 어떤지 아는가?”라고 하자, 안자가 “어찌 감히 모른다고 하겠습니까.”라고 대답하였다. 경공이 “무엇이 비싸고 무엇이 싸던가?”라고 물었는데, 이때 경공이 월형刑¹을 빈번하게 시행하였으므로 목발을 파는 자가 있었다. 그러므로 안자가 “목발은 비싸고 신발은 싸니다.”라고 대답하니, 이로 인해 경공은 형벌을 줄였다. 군자는 이에 대해 “인선한 자의 말은 미치는 영향이 크니, 안자의 한마디 말에 제 경공이 형벌을 줄였다.”라고 논평하였다. 【『춘추좌씨전』에 보인다.】

|| 전한 문제前漢文帝 때의 일이다. 제군齊郡의 태창령太倉令 순우의淳于意가 죄를 지어 형벌을 당할 처지에 있었다. 그의 막내딸 제영緹嬰이 상서上書하여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1 월형刑: 『서경』 「여형묘제」에서 말한 다섯 가지 형벌[五刑] 가운데 하나로, 발꿈치를 베는 형벌이다. 이 밖에 얼굴에 자자刺字하는 목형墨刑, 코를 베는 의형劓刑, 생식기를 베는 궁형宮刑, 사형인 대벽형大辟刑이 있다.

없고, 형벌을 받은 자는 절단된 곳을 다시 이어 붙일 수가 없습니다. 가산을 몰수하고 저를 관비官婢로 삼아 아버의 벌을 속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니, 문제가 그 뜻을 가 없게 여겨 육형肉刑을 없애라고 조서를 내렸다.

■ 전한 선제前漢宣帝 때의 일이다. 정위사廷尉史 노온서路溫舒²가 상서하여 “지금 옥사를 다스리는 관리들은 각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명분으로 삼으니, 법을 심하게 적용하는 자는 공무를 잘 수행한다는 명성을 얻지만 공평하게 다스리는 자는 뒤탈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죄인을 죽음으로 몰아 넣으려고 합니다. 시속時俗의 말에 ‘땅에 금을 그어 만든 감옥이라도 들어가지 않으려 하고, 나무를 깎아 만든 옥리獄吏라도 마주 하지 않으려 한다.’라고 하니, 이는 모두 미워하고 애통해하는 말입니다. 오직 폐하게 해서 법제를 줄이시고 형벌을 너그럽게 하신다면 태평성대를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선제가 그의 말을 좋게 여기고, 조서를 내려 “관리들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교묘하고 법문法文이 점점 각박해져 무고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니, 짐은 마음이 매우 아프다. 정위평廷尉平을 두어 매년 9월에 청언請讞³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이때 선제는 항상 선실宣室로 거둥하여 재계하고 옥사를 결단하니, 옥사와 형벌이 공평하다고 이름났다.

■ 후한 명제後漢明帝⁴ 때의 일이다. 초왕楚王 유영劉英⁵이 방사方士들과 부서符瑞⁶를 만들었는데, 남자男子 연광燕廣이 ‘유영이 왕평王平, 안충顔忠과 함께 역모를 일으키려 한다.’라고

2 노온서路溫舒: 자는 장군長君이다. 효령孝廉으로 천거되어 정위사가 되었다. 선제에게 「상덕완형서尙德緩刑書」를 올렸는데, 위의 상주한 내용이 이 글의 일부이다.

3 청언請讞: 옥사를 처리하는 하급 관리가 판결하기 힘든 사건을 맞닥뜨리면 삼급 기관에 재심再審을 청하는 것을 말한다.

4 후한 명제後漢明帝: 28~75. 후한 제2대 황제 유장劉莊으로, 재위 기간은 57년에서 75년이다. 광무제光武帝的 넷째 아들로, 아버지를 이어 한나라 회복 사업을 공고히 하였다. 채음蔡愔 등을 인도에 보내 중국에 불교가 전파되도록 했으며, 빈민 구제와 농업 진흥, 조세 및 형벌 감면에 주력했으며, 황하를 정리하여 옛 모습을 되찾도록 하였다. 대외적으로는 북쪽의 흉노를 평정하고 지배력을 확립했으며 반초班超를 서역에 파견해서 친선을 도모하였다.

5 유영劉英: ?~71. 광무제와 허 미인許美人的 소생이다. 광무제에게 총애를 받지 못했으나 명제明帝가 태자였을 때부터 보좌하여 명제의 환심을 샀다. 만년에 황로黃老와 부도浮屠의 가르침을 따르며 방사方士와 교유하였는데, 왕평, 안충 등과 함께 금으로 거북을 만들고 옥으로 학을 만드는 등 부서를 만들어 모반을 꾀하고 있다고 연광에게 무함을 받았다. 이에 봉작을 박탈당하고 단양丹陽으로 옮겨져 자살하였다. (『後漢書』「明帝紀」; 「楚王英傳」)

6 부서符瑞: 하도河圖와 낙서洛書와 같은 상서로운 조짐으로, 제왕이 천명을 받을 상서로운 징조를 가리킨다.

고변하자 유영이 자살하였다. 초楚에서 일어난 옥사를 철저히 다스리는 데 몇 년이 흐르자 서로를 향한 고변이 이어졌는데, 시어사侍御史 한량寒朗⁷이 옥사로 인해 원통한 이들이 많음을 진달하였다. 이에 명제가 마음이 풀려 직접 낙양의 옥獄에 행차하여 죄인들의 정상情狀을 살펴 기록하고 심리審理하여 천여 명을 내보내니, 이때 가뭄에 큰비가 내렸다. 마 황후馬皇后도 초에서 일어난 옥사가 지나친 것이 많다고 한가한 틈을 타서 말하니, 명제가 측은함을 느끼고 밤중에 일어나 배회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죄를 낮추고 용서해 주는 일이 많았다.

|| 위 명제魏明帝⁸가 평망관平望觀을 청송관聽訟觀이라 고쳤다. 명제는 늘 “옥사는 천하 사람들의 생명과 관계되는 것이다.”라고 하고, 큰 옥사를 결단할 때마다 청송관에 가서 직접 옥사를 다스렸다. 또 조서를 내려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가운데 부모나 조부모가 연로한데다가 성인인 자손이 없고 주변에 기년복葺年服을 입을 친척도 없는 경우, 정상情狀을 갖추어 아뢰도록 하라.”라고 하였다.⁹

|| 남조南朝 송 문제宋文帝¹⁰ 때의 일이다. 사회謝晦¹¹가 처형된 뒤, 광록대부光祿大夫 범태范泰¹²가 표表를 올려 “부인은 삼종三從의 도리가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도리는 없습니

7 한량寒朗: 자는 백기伯奇이다. 알자수시어사器者守待御史로서 유영에 관한 옥사를 다스렸는데, 공범으로 지목된 왕평, 안충 등이 모진 고문을 이기지 못하여 거짓 진술을 하고 옥사를 처리하는 아전들도 명제가 노한 데 겁을 먹어 거짓으로 조서를 꾸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명제에게 사실대로 고하여 무고한 많은 이들이 풀려나게 하였다. (『後漢書』「寒朗傳」)

8 위 명제魏明帝: 204~239. 삼국 시대 위衛의 2대 군주 조예曹叡로, 재위 기간은 226년에서 239년이다. 문제文帝 조비曹丕와 문소황후文昭皇后 견씨甄氏의 아들로 자는 원중元仲이다. 문제의 유언으로 조진曹眞과 조휴曹休, 사마의司馬懿, 진군陳群 등의 보좌를 받았다. 만년에는 토목공사를 크게 벌이는 등 사치에 빠졌고, 그가 죽자 양자로 삼은 제왕齊王인 방쑹을 보좌한 자들의 내분으로, 사마씨司馬氏가 실권을 쥐었다.

9 또 … 하였다: 앞의 고사는 삼국시대 위 명제魏明帝 때의 일이나, 해당 부분은 북위 효문제北魏孝文帝 때의 일이다.

10 송 문제宋文帝: 407~453. 남조 송 제3대 황제 유의릉劉義隆으로, 재위 기간은 424년에서 453년이다. 제1대 무제의 셋째 아들로, 자신의 형인 소제를 폐위시키고 즉위하였다. 중앙집권제를 강화시켰고 학술을 중시하여 안정과 번영을 이루었다. 이때를 ‘원가元嘉의 치세’라 한다. 그러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북위 토벌에서 참패하여 국력의 피폐를 초래하였고, 결국 태자 유소劉劭에게 시해되었다.

11 사회謝晦: 390~426. 자는 선명宣明이다. 서선지徐羨之 등과 함께 소제少帝를 보필하다가 소제를 죽이고, 셋째였던 문제文帝를 옹립하였다. 그러나 문제가 즉위한 뒤 소제를 죽인 책임을 물어 서선지를 죽이자, 반란을 일으켰다가 북주伏誅되었다.

12 범태范泰: 355~428. 자는 백윤伯倫이다. 소제 때 정사의 득실을 논하는 상서를 거듭 올려 서선지, 사회謝晦 등과 불화를 겪었다. 문제 즉위 후 서선지 등이 제거된 뒤 다시 중용되어 시중侍中에 올라 광록대부를 지냈다.

다.¹³ 그런데 지금 사회의 처와 딸이 여전히 상방¹⁴에 있으니,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마음을 쓰십시오.”라고 하니, 문제가 조서를 내려 이들을 용서하였다.

❑ 북위 효문제^{北魏孝文帝}가 죄가 있어 변방으로 이주시킨 자들 가운데 도망간 이들이 많은 이유로 명을 내려 한 사람이라도 도망가면 모든 집안사람을 노역에 충당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광주 자사^{光州刺史} 최정^{崔挺}이 상소하여 “천하에 선한 사람은 적고 악한 사람은 많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집안사람들을 모두 잡아들인다면, 사마우시^{司馬牛}는 사마환퇴^{司馬桓魋}가 받아야 할 벌을 받고¹⁵ 유하혜^{柳下惠}는 도적^{盜跖}이 받아야 할 벌을 받아야 하니,¹⁶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에 효문제가 명을 거두었다.

❑ 수 문제^{隋文帝}가 형부^{刑部}에서 상주한 것을 보고 “법률이 여전히 너무 엄격하고 치밀하여 법망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고, 소위^{蘇威}¹⁷와 우홍^{牛弘}¹⁸ 등에게 조칙을 내려 신율^{新律}¹⁹을 개정하게 하였다. 이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 81조와 유배형에 해당하는 죄

13 부인은 … 없습니다: 『의례』 「상복^{喪服}」에 보인다. ‘삼종의 도리’는 시집가기 전에는 아버지를 따르고, 시집간 뒤에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은 뒤에는 자식을 따르는 것이다.

14 상방^{尙方}: 제왕이 사용하는 기물을 만드는 관서이자 죄수가 노역하던 곳이다. 복역하는 자들이 이곳에서 물건을 만들었다.

15 사마우시^{司馬牛}는 … 받고: 사마우는 춘추 시대 송국 사람으로, 공자의 제자이며, 사마환퇴의 아우이다. 사마환퇴는 본명이 향퇴^{尙魋}이나 송국 환공^{桓公}을 따랐기 때문에 ‘환퇴’라고도 불린다. 사마환퇴가 전권을 휘두르며 난을 일으켰다가 실패하여 위^衛로 도망쳤다가 제^齊로 오자, 제에 있던 사마우는 이를 피해 오스로 떠나면서 다시는 형과 한 군주를 모시지 않겠노라고 맹세한 일화가 있다. (『史記』 「仲尼弟子傳」)

16 유하혜^{柳下惠}는 … 하니: 유하혜는 춘추 시대 노국 사람으로, 이름이 전금^{展禽}이다. 유하^{柳下}를 식읍으로 받고 혜를 시호로 받아 ‘유하혜’라 불린다. 도적은 이름이 전웅^{展雄}으로, 유하적^{柳下跖}이라고도 불린다. 큰 도적이었는데, 유하혜의 동생이라고 전한다.

17 소위^{蘇威}: 542~623. 자는 무외^{無畏}이다. 태자소보^{太子少保}, 경조윤^{京兆尹}, 어사대부^{御史大夫} 등을 역임하였다. 우문술^{宇文述}, 배구^{裴矩}, 배온^{裴蘊}, 우세기^{虞世基}와 함께 ‘오귀^{五貴}’라 불렸다. 후에 양제^{煬帝}를 살해한 우문화^{宇文文化}及을 섬겼고, 이 밀^{李密}의 반군 세력이 성할 때는 이밀을 섬겼으며, 왕세충^{王世充}이 정^鄭을 세우자 왕세충에게 귀순하였고, 이세민^{李世民}이 왕세충을 멸하자 당조^{唐朝}에 귀순하였다.

18 우홍^{牛弘}: 546~611. 자는 이인^仁이다. 이부상서를 지내고 기장군공^{奇章郡公}에 봉해졌다. 칙명을 받아 예악과 제도를 정비하고, 『대업률^{大業律}』 18편을 찬수하였다.

19 신율^{新律}: 수 문제가 582년에 편찬한 법률로, 문제의 연호를 따라 ‘개황율^{開皇律}’이라 한다. 이듬해에 개정하여 12편 500조로 구성되었으니, 12편은 명례^{名例}, 위금^{衛禁}, 직지^{職制}, 호훈^{戶婚}, 구고^{庫庫}, 천흥^{擅興}, 도적^{盜賊}, 투송^{讞訟}, 사위^{詐僞}, 잡률^{雜律}, 포망^{捕亡}, 단옥^{斷獄}이다. 이때 정한 관제^{官制}, 균전제^{均田制}, 무병제^{府兵制} 등은 당^唐 율령의 기초가 되었다.

54조, 도徒나 장杖에 해당하는 죄 등 1,000여 조를 없애고, 500조만 남겨 두고 총 12권으로 만들었다. 이때부터 형률이 간결하고 요긴하여 성긴 듯하지만 벌주는 일을 빠뜨리지 않았다.²⁰

|| 수 문제 때의 일이다. 제주 참군齊州參軍 왕가王伽가 유배형을 받은 죄수 이참李參 등 70여인을 호송하여 경사京師로 향할 적에, 그들의 고통을 가엾게 여겨 형틀을 벗기고 죄수들과 “아무 날에 너희들은 경사에 도착해야 하니, 약속한 날보다 일찍 오거나 늦게 온다면 내가 너희들 대신 사형을 받을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그들을 놓아주어 떠나게 하였다. 유배형을 받은 이들이 감동하고 기뻐하여 약속한 대로 경사에 이르러 한 사람도 약속을 어기고 도망간 자가 없었다. 문제가 듣고 놀라 기이하게 여겨 유배형을 받은 이를 모두 불러 처자식을 데리고 경사에 들어오게 하여 전각의 뜰에서 잔치를 베푼 뒤 그들을 풀어 주었다. 이에 왕가를 옹령雍令으로 삼았다.

|| 당 태종唐太宗이 『명당침구서明堂鍼灸書』²¹를 읽고서 “사람의 오장五藏은 모두 등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고, 이제부터 등에 매질하지 말라는 조서를 내렸다.

|| 당 현종唐玄宗이 복도에서 호위병이 남은 음식을 도랑에 버리는 것을 보고 노하여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 송왕宋王 이현李憲²²이 “폐하께서 복도에서 다른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 것을 엿보고 죽이려 하시니, 신은 사람마다 편안치 못할까 염려됩니다. 또 폐하께서 땅에 음식을 버린 것을 미워한 까닭은 음식이 사람을 기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음식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 하시니, 근본을 잃은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상소하였다. 이에 현종이 크게 깨닫고서 “형님이 아니었다면 형벌을 남용할 뻔하였습니다.”라고 하고, 바로 호위병을 풀어 주었다.

20 성긴 ... 않았다: 『노자老子』 73장에 “하늘이 친 그물은 넓어 눈이 성기지만 악인에게 벌주는 일을 빠뜨리지 않는다.[天網恢恢 疎而不失]”라고 한 데서 보인다.

21 명당침구서明堂鍼灸書: 『신당서新唐書』 「예문지藝文志」에 실린 『황제명당경黃帝明堂經』, 『명당언측인도明堂偃側人圖』, 『명당인형도明堂人形圖』, 『명당공혈도明堂孔穴圖』 등과 같은 의서醫書로, 모두 침구에 관한 책이다.

22 이현李憲: 679~742. 본명은 성기成器이며, 예종睿宗의 적장자嫡長子이다. 송왕宋王에 봉해진 뒤에 태자 책봉이 거론되었을 때, 예종을 복위시키는 등 공이 많은 아우 현종에게 태자의 자리를 양보하였다.

|| 당 숙종唐肅宗 때의 일이다. 반란군에게 사로잡혀 관직을 받은 자가 모두 사형을 당할 처지에 있었다. 이에 이현李峴이 “반란군이 장안과 낙양을 함락시켜 천자天子(현종玄宗)께서는 남쪽으로 순행하시고 사람들은 각자 도망쳐 목숨을 부지했습니다.²³ 그런데 지금 일괄적으로 반란에 관한 법률로 사형에 처한다면, 인서仁恕의 도리에 어긋날까 우려됩니다. 또 하북河北이 아직 평정되지 않았고, 반란군에게 사로잡힌 이들도 여전히 많은데, 모두 죽인다면 반란군에게 붙으려는 마음을 굳힐 것입니다. 『서경』에 ‘저 괴수들은 섬멸하되, 협박에 못 이겨 따르는 자는 다스리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니, 숙종이 이를 따랐다.

|| 당 현종唐憲宗 때의 일이다. 이길보李吉甫²⁴가 현종에게 “위엄과 형벌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니, 위엄을 더하여 기강을 진작시키소서.”라고 하였다. 현종이 이강李絳²⁵을 돌아보고 “어떠한가?”라고 묻자, 이강이 “왕자王者의 정사는 덕을 숭상하고 형벌을 숭상하지 않거늘, 주 성왕周成王과 강왕康王, 한 문제漢文帝와 경제景帝를 버리고 진 시황秦始皇 부자父子를 본받는단 말입니까.”라고 대답하니, 현종이 옳게 여겼다. 후에 우적于曠²⁶이 입대入對하여 형벌을 준엄하게 할 것을 권하자 현종이 재상들에게 “우적은 대단한 간신姦臣이니, 짐에게 형벌을 준엄하게 하도록 권하여 짐이 인심을 잃게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니, 이길보가 아연실색하였다.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 송 태조宋太祖가 여러 주州의 옥리獄吏에게 구금되어 있는 죄수들을 돌보라고 명을 내린 일이 있었는데, 더위가 극심해지자 조서를 내려 “5일 단위로 옥사獄舍를 청소하고 형틀

23 반란군이 … 부지했습니다: 755년에 안녹산安祿山이 반란을 일으켜 낙양을 점령하고, 이듬해 20만 대군을 격파하고 장안으로 진격하였다. 당시 황태자였던 숙종은 현종과 함께 반군을 피해 사천四川으로 피신하였는데, 도중에 병사들이 양국충과 양 귀비를 죽일 것을 요구하며 반란을 일으켰다. 현종은 양국충과 양 귀비를 죽이고 사천으로 피신하였고, 숙종은 환관 이보국李輔國의 건의를 받아들여 금군禁軍의 일부를 이끌고 영무靈武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스스로 황위皇位에 올라 연호를 지덕至德이라 하고, 식방 절도사 곽자의郭子儀와 거란의 부족장 이광필李光弼의 군대를 중심으로 하북의 군대를 정비하였다.

24 이길보李吉甫: 「근정사勤政事」 법조 8번 각주 참조.

25 이강李絳: 「개언로開言路」 법조 50번 각주 참조.

26 우적于曠: ?~818. 자는 윤원允元이다. 벼슬이 사공평장司空平章에 이르렀으며, 그의 넷째 아들 계우季友를 영창공주永昌公主와 결혼시켰다. 후에 다른 아들 우민于敏이 사람을 죽인 일로 실각, 왕부王傅로 낮춰졌다가 태자빈객太子賓客으로 차사致仕했다.

을 세척했는지 점검토록 하라. 가난한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자에게는 약을 주며, 작은 죄를 지은 자는 즉시 심리審理해 판결하여 내보내도록 하라.”라고 하니, 이때부터 매년 상례常例가 되었다.

|| 송 태조가 「요전堯典」과 「순전舜典」을 읽고 탄식하며 “요순시대에는 사흉四凶도 먼 지역으로 쫓아내는 것에 그쳤는데, 근래의 법망은 어찌 이리도 치밀한가.”라고 하였다. 이로 인해 개보開寶 연간 이래로, 사형의 죄를 지었더라도 정리情理를 크게 해친 자가 아니면 대부분 사형을 면하게 해주었지만, 탐오한 관리만은 용서해 주지 않았다.

|| 원 세조元世祖가 사천택史天澤²⁷에게 “집이 혹 매우 노하여 주살하려고 한다면, 경들은 하루나 이틀 정도 기다렸다가 복주覆奏하여 시행하라.”라고 유시하였다.

|| 원 인종元仁宗 때의 일이다. 진녕晉寧의 백성 후희아侯喜兒 형제 5인이 모두 법을 범하여 사형을 받게 되었다. 인종이 탄식하며 “저 한 집안이 불행하여 이런 일이 발생하였다. 저들 중에 죄질이 가장 가벼운 한 사람을 택하여 장수를 치고 내보내 부모를 봉양하게 하고, 제사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이상은 『속자치통감』에 보인다.】

|| 명 태조明太祖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황무지를 김매는 자가 호미질을 조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멀쩡한 싹을 망가뜨리고, 간악한 이를 바로잡는 자가 법을 논함에 타당성을 잃는다면 반드시 선한 이들을 해칠 것이니, 형벌을 신중히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악에 물든 백성들은, 마치 흙덩이가 묻은 옷을 씻어 다시 깨끗이 만들 듯이 선善으로 인도하여 스스로 새로워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률이 점점 더 번잡해지는 것을 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니, 번잡한 것을 털어내고 간략하게 만들어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알기 쉽고 위반하기 어렵게 하라.”

27 사천택史天澤: 1202~1275. 자는 윤보潤甫이다. 몽골군에게 투항한 사병직史乘直의 아들로, 아버지와 형이 죽은 뒤 세습하여 도원수都元帥가 되었다. 지원至元 연간에 통수統帥가 되어 백안伯顔과 함께 병사를 이끌고 송宋을 멸망시켰다. 세조가 즉위하자 등용되어 재상이 되었다.

|| 명 태조 때의 일이다. 어사御史 진녕陳寧²⁸이 “법이 무거우면 사람들이 쉽사리 죄를 짓지 않고, 관리가 감찰하면 아랫사람이 제멋대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자, 태조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법이 무거우면 형벌이 남발되고 관리가 감찰하면 정사가 가혹해진다. 요순시대에는 의관에 오형五刑을 표시하고 장복章服을 달리하여 옥보였을 뿐인데도 백성들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고,²⁹ 진秦에는 정수리를 뚫고 갈빗대를 뽑는 형벌이 있었는데도 감옥에 죄수가 많아 저잣거리와 같았다. 어찌 신불해申不害와 한비지韓非子の 법으로 요순의 다스림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 명 건문제明建文帝[혜종惠宗]³⁰가 동궁東宮에 있을 때의 일이다. 건문제가 『명례율名例律』을 읽다가 조례 가운데 여전히 엄격한 것을 약간 개정하기를 청하자 태조가 이를 윤택하여 73조로 개정하였는데, 태조가 이를 보고 기뻐하였다.³¹ 후에 건문제에게 강도들을 조사하게 하였는데, 건문제가 한번 보고는 진짜 강도가 아님을 알아채고 신문하자 과연 그러하였다. 태조가 “너는 어찌 알았느냐?”라고 묻자, 건문제가 “『주례』에서 송사를 처리할 때 표정을 보고 판단하는 것³²을 우선으로 하였고 『서경』에서도 행동거지로 헤아려야 한다³³고 하였으니, 그 사람의 두 눈동자가 맑고 보고 듣는 태도가 반듯한 것을 보고, 강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28 진녕陳寧: ?~1380. 소주蘇州를 다스릴 때 세금을 늦게 낸 백성의 이마에 낙인을 찍었으므로, ‘진낙철陳烙鐵’이라 불렸다. 죄상상으로 권세를 휘두르던 호유용胡惟庸에 의해 천거되어 어사대부가 되었으며, 후에 호유용의 역모에 연루되어 처형당했다.

29 의관에 … 않았고: 『한서』 「무제기武帝紀」에 “요순이 오형五刑을 백성들 복장에 표시하자 법을 범하지 않았다.唐虞畫像而民不犯”라고 하였는데, 『백호통의白虎通義』에 “화상畫像이란 것은 그 의복에 오형을 표시하는 것이다. 묵형墨刑을 받아야 할 사람은 그 두건을 검게 하고, 의형劓刑을 받아야 할 사람은 그 옷을 붉게 하고, 궁형宮刑을 받아야 할 사람은 그 신발을 짝짝이로 하고, 대벽大辟을 받아야 할 사람은 옷삼을 베로 만들고 가선이 없게 하였다.”라고 하였다.

30 명 건문제明建文帝: 1377~?. 명 제2대 황제 주윤문朱允炆으로, 재위 기간은 1398년에서 1402년이다. 모호는 혜종이고, ‘건문建文’은 그의 재위 기간 연호이다. 태조의 손자로, 황태자 주표朱標가 사망함에 따라 황태손이 되어 즉위하였다. 황자黃子澄, 방효유方孝孺 조언에 따라 황제의 권위를 강화하고 숙부인 번왕藩王들의 봉경을 삭감하여 그 세력의 약화를 도모하였다. 이에 반발하여 정난靖難의 변을 일으킨 연영燕王 체책에게 패하고 남경이 함락되면서 행방불명이 되었다.

31 건문제가 … 기뻐하였다: 명 태조가 당시 황태손이던 건문제에게 『대명률大明律』을 완성하기 전에 죄명과 형벌의 예를 열거한 『명례율』을 보여주며 그 의미를 설명하였는데, 이 법률을 본 건문제가 여전히 엄격한 조례가 있다는 이유로 개정할 것을 청하여 73조로 개정하였다. (『明史』 「刑法志」)

32 표정을 보고 판단하는 것: 『주례』 「소사구小司寇」에 보이는 청송聽訟하는 다섯 가지 방법五聽 가운데 하나이다. 표정을 보고 판단하는 색청色聽 외에, 피고의 말을 듣고 판별하는 사청辭聽, 숨소리를 살피 판별하는 기청氣聽, 잘 듣고 있는지를 보고 판별하는 이청耳聽, 눈동자를 보고 판별하는 목청目聽이 있다.

33 행동거지로 헤아려야 한다: 『서경』 「여형묘刑」에 보인다.

- || 명 성조(明成祖)가 죄수들의 정상(情狀)을 기록할 적에 금의위(錦衣衛) 등의 관리에게 다음과 같이 유시하였다. “죄수들은 모두 오래도록 옥사에 갇혀 있다가 처음으로 짐의 앞에 이르렀다. 오래도록 옥사에 갇혀 있다보니 억울함이 있더라도 항변하지 못하고, 갑자기 짐을 만났으니 위엄에 두려워하며 감히 말하지 못했으리라. 너희들은 짐의 말대로 조용히 잘 살피 원통한 자가 있으면 즉시 와서 아뢰도록 하라.”
- || 명 인종(明仁宗)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법을 집행하는 것이 모두 공평하지 못하니, 짐은 매우 안타깝다. 지금부터 견강부회하여 원통한 이들이 생기거나 형벌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라. 짐이 만약 한 번이라도 지나치게 미워하여 법문에 없는 형벌을 적용한다면 형관들은 두 번 세 번 아뢰어야 하며, 그래도 윤택하지 않으면 삼공(三公), 대신(大臣)과 함께 아뢰어 반드시 윤택을 받고 난 뒤에 멈춰야 할 것이다.”
- || 명 선종(明宣宗)이 시신(侍臣)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옛사람들은 백성을 교화하는 도가 두루 갖추어졌으므로 법을 어기는 이가 적었는데, 후세에는 백성을 교화하는 도가 지극하지 못하므로 법을 어기는 이가 많다. 교화되지 않은 백성의 사지를 대뜸 절단하거나 피부를 벗겨내는 것은 차마 하지 못할 짓이다. 한 문제(漢文帝)는 육형(肉刑)을 없애고 당 태종(唐太宗)은 등에 매질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니,³⁴ 한 왕실이 나라의 명맥을 배양하고 당 왕조가 장구한 복을 누렸던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이상은 『명사강목』에 보인다.】

계조 戒條

- || 상 주왕(商紂王) 때, 제후 가운데 배반한 자가 있으면 형벌을 가혹하게 적용하였다. 구리기둥을 만들고 기름을 칠하여 숯불 위에 놓고 죄인으로 하여금 그 기둥 위를 걷다가 발이 미끄러져 불 속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주왕이 달기와 이를 보고 크게 즐거워하였는데, 이를 ‘포락형(炮烙刑)’이라 하였다. 【『봉주강감회찬』에 보인다.】

34 한 문제(漢文帝)는 … 금지하였으니: 「홀형옥(桎獄)」 법조 기사에 보인다.

|| 정 장공鄭莊公³⁵ 때의 일이다. 제후들이 허許를 쳤는데, 영고숙穎考叔³⁶이 장공의 모호기 鬻弧旗를 들고 먼저 성으로 올라가자, 자도子都³⁷가 밑에서 그를 향해 활을 쏘니, 영고숙이 떨어져 죽었다. 장공은 사졸에게 희생犧牲으로 돼지를 잡게 하고 향오行伍에 개와 닭을 잡게 하여, 영고숙을 쏘아 죽인 자를 저주하게 하였다. 이에 대해 군자는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장공은 형벌을 쓰는 도리를 잃었다. 이미 위엄 있는 형벌이 없어 무도한 일이 생긴 것이다. 무도한 행위를 하였는데도 저주하였을 뿐이니, 장차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춘추좌씨전』에 보인다.】

|| 진秦의 이사李斯가 2세 황제[호해胡亥]의 뜻에 영합하여, 독책하는 정치를 행할 것을 청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2세 황제가 더욱더 엄하게 독책하여, 백성들에게 세금을 혹독하게 거두는 자는 현명한 관리가 되고 사람을 죽이기를 많이 한 자는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었으며, 형벌을 받은 자가 길을 가는 사람 중에 반이나 되고 죽은 사람의 시신이 날마다 저잣거리에 쌓였다. 그러자 진의 백성들이 놀라고 두려워 반란을 일으킬 생각을 품게 되었다.

|| 후한 환제後漢桓帝 때의 일이다. 평원平原 사람 양해襄楷³⁸가 “폐하께서 즉위하신 뒤로 양기梁冀,³⁹ 구영寇榮, 손수孫壽,⁴⁰ 등만세鄧萬世⁴¹가 모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운

35 정 장공鄭莊公: 춘추 시대 정 의 군주로, 성은 희姬, 이름은 오생寤生이다. 무공武公을 이어 주 평왕周平王의 좌경사左卿士가 되어 권력을 장악하고, 전쟁을 통해 세력을 확장하였다. 주 환왕周桓王이 그의 작위를 박탈하자 입조入朝하지 않고 마찰을 빚었으며, 환왕이 그를 정벌하자 그에 맞서 크게 승리하였다.

36 영고숙穎考叔: 춘추 시대 정鄭 영곡穎谷의 봉인封人이다. 모친 무강武姜과 불화를 겪고 있던 정 장공을 설득하여 모자 관계를 회복하게 하였다.

37 자도子都: 미남자美男子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평소 영고숙과 사이가 좋지 못하였는데, 정 장공이 허許를 치려고 군사들에게 무기를 나누어 줄 적에, 전차를 먼저 차지하려고 다투다가 전차의 명예를 끼고 달아나는 영고숙을 쫓아갔으나 잡지 못하여 화낸 일이 있다. (『春秋左氏傳』 隱公 11年)

38 양해襄楷: 후한 환제 때의 관리로, 자는 공구公矩이다. 천문, 음양의 술법에 뛰어났으며, 환관의 전횡으로 황자皇子를 잃고 재변이 끊이지 않아 이를 바로잡을 것을 간언하였으나 하옥되었다.

39 양기梁冀: 『입기강立紀綱』 법조 8번 각주 참조.

40 손수孫壽: ?~159. 양기의 아내로, 자신의 외숙인 양기梁紀의 의붓딸 등맹녀鄧猛女를 궁에 들어 두 번째 황후가 되게 하고, 양기와 함께 정권을 전횡하였다. 후에 양기梁紀가 죄를 얻어 주살되자 죄에 연루될까 두려워 남편과 함께 자살했다.

41 등만세鄧萬世: 등 황후鄧皇后의 숙부이다. 등 황후가 두 번째 황후가 되어 총애를 받자 하남 윤河南尹에 제수되어 정권을 전횡하였다. 등 황후가 총애를 잃은 뒤 하옥되어 죽었다.

李雲은 명철한 군주는 응당 다른 이의 말을 꺼리지 않는다는 글을 올리고, 두중杜衆은 죽기를 청하며 실로 성상의 마음을 감오感悟시키려 하였으나, 모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한 왕조가 흥기한 뒤로 지금과 같이 형벌을 심하게 적용한 적이 없습니다. 주 문왕周文王은 1명의 아내에게서 10명의 자식을 두었는데, 지금 수천 명의 궁녀 가운데 잘 길러낸 황자皇子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니, 의당 형벌을 줄여 종사蠡斯⁴²의 복을 넓히십시오.”라고 상소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남조南朝 양 무제梁武帝 때, 조정 관원 중에 죄를 저지르는 자가 있으면 모두 법을 왜곡해서라도 구제하였다. 그런데 백성들이 죄를 저지르면 법대로 처리해서 연좌하는 대상이 높고 어리더라도 면제해 주지 않았으며 한 사람이라도 도망가면 온 집안사람을 인질로 잡아다 노역을 시켰다. 말릉秣陵에 사는 어떤 노인이 어가御駕를 막아서며 “폐하께서 법을 적용함에 백성들에게는 각박하고 귀인貴人에게는 느슨하니, 이는 나라를 장구하게 하는 도가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 남조 양 무제가 형법을 느슨하게 적용하여 혹 반역을 도모하다가 발각된 죄수라고 할지라도 용서해 주었다. 이에 왕후王侯들이 교만하고 방자해져 대낮에 저자에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였으며, 죄를 짓고 도망한 자가 왕가王家에 숨으면 유사有司들이 감히 잡아들이지 못하였다.

|| 북제 현조北齊顯祖는 술에 취할 때마다 사람 죽이는 것을 놀잇거리로 삼았다. 죽일 때에는 대개 사지를 찢게 하였으며, 불에 태우거나 물에 던지기도 하였다. 이에 양음楊愔⁴³이 업하鄴下 지역의 사형수 중에 선발하여 장위仗衛 속에 두고 ‘공어수供御囚’⁴⁴라 하고, 황제가 사람을 죽이려 할 때마다 이들을 잡아가 명에 응하였다.

42 종사蠡斯: 『시경』 「주남周南」의 편명으로, 주 문왕의 후비가 궁녀들과 서로 화목하여 자손이 많았으므로, 이를 알을 많이 낳는 메뚜기에 비유하여 자손의 번성함을 노래한 것이다.

43 양음楊愔: 「개언로開言路」 계조 87번 각주 참조.

44 공어수供御囚: 살인을 즐기는 황제에게 제공되는 죄수라는 뜻이다.

- || 당 태종唐太宗이 옥사獄事를 논하다가 위징魏徵이 “수 양제隋煬帝 때 도적들 가운데 고신拷訊을 받아 자복한 자가 모두 2,000여 명이었습니다. 대리승大理丞 장원제張元濟가 그 수가 많은 것을 이상하게 여겨 그 정황을 조사해보니, 그 중에 5명만 도적이고 나머지는 모두 평민이었으나 결국 감히 상주하지 못해 모두 죽였습니다.”라고 하니, 태종이 “임금과 신하가 이러하니 어찌 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 || 당 의종唐懿宗 때의 일이다. 동창공주同昌公主가 흥서薨逝하자, 의종이 의관醫官 한중소韓宗邵 등을 죽이고 그 친족을 모두 잡아들여 경조京兆의 옥사에 가두었다. 동평장사同平章事 유첨劉瞻이 “수명의 길고 짧음은 사람에게 정해진 분수입니다. 한소종 등이 공주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마음을 다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재앙과 복은 바꾸기 어렵습니다. 결국 일을 그르쳤다고 해서 노인과 어린이까지 형틀에 묶어두어,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사리에 통달한 군주께서 현명하지 못하다는 비방을 받으려 하십니까.”라고 하니, 의종이 노하여 그를 쫓아냈다.
- || 남한 고조南漢高祖 유엄劉龔⁴⁵은 참혹한 형벌을 시행하여, 코에 물을 붓고, 혀를 자르고, 사지를 찢고, 시체를 쪼개고, 불에 태우고, 물에 삶는 형벌이 있었다. 독사를 풀어놓은 물에 죄인을 던지기도 하였는데, 이를 ‘수옥水獄’이라 하였다.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45 남한 고조南漢高祖 유엄劉龔: 889~942. 오대십국 남한의 초대 군주로, 재위 기간은 917년에서 942년이다. 후량後梁으로부터 남해왕南海王으로 봉해져 있던 형의 지위를 빼앗은 뒤 제위에 올라 국호를 ‘대월大越’이라 하였다. 이듬해 과거 한漢의 후손임을 자처하며 국호를 ‘대한大漢’으로 바꾸었다. 통상적으로 다른 한漢 왕조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남한南漢’이라고 부른다.

부附 신사慎赦 사면을 신중히 하다

법조 法條

- || 후한 광무제後漢光武帝 때의 일이다. 오한吳漢⁴⁶이 병이 위독하자 무제가 어거御駕를 타고 친림하여 하고 싶은 말을 물었는데, “폐하께서 부디 신중히 하여 죄인을 사면하지 마시길 바랄 뿐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 || 진 무제晉武帝가 태자를 세울 적에 조서를 내려 “근세에 태자를 세울 때마다 반드시 사면령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막 세운世運이 평안해졌으니, 마땅히 호오好惡를 보여 백성들로 하여금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 없도록 해야 한다. 소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일은 짐이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고, 사면령을 내리지 않았다.
- || 당 태종唐太宗이 시신侍臣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옛말에 ‘사면은 소인의 행복이고 군자의 불행이니, 한 해에 사면을 거듭 시행하면 선량한 이는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잡초를 기르면 좋은 곡식을 해치고, 죄 있는 자를 사면하면 선량한 사람을 해친다. 그러므로 짐은 즉위한 뒤로 자주 사면하고자 하지 않았으니, 소인들이 이를 믿고서 법을 가벼이 어길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 || 장손 황후長孫皇后의 병세가 심해지자 태자가 “의약醫藥을 모두 써보았는데도 병이 낫지 않으니, 폐하께 죄인들을 사면해 달라고 청하십시오.”라고 하니, 장손 황후가 “사면은 국가의 큰일이니, 자주 내려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였다.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46 오한吳漢: ?~44. 자는 자안子顏이다. 광무제가 후한을 건국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운태이십팔장臺二十八將’ 중 한 사람이다.

근안 謹按

삼가 살펴보건대, 성왕聖王이 윗자리에 있어도 진실로 천하의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악을 행하지 않고 스스로 선으로 옮겨 가도록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득이 옥사 獄事를 관장하는 관리를 미리 두어 교화를 돕는 정사⁴⁷로 삼아,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알아 감히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순임금은 다섯 가지 형벌⁴⁸에 관한 법을 두고 은殷에서는 열 가지 허물⁴⁹을 경계하였으며, 주周에서는 여덟 가지 법⁵⁰을 두고 한漢에서는 세 조목의 법령⁵¹을 두어 때에 맞게 사용하고 도리에 맞게 시행하였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어 저지른 죄나 반복하여 저지른 죄⁵²에 해당하여 이치상 용서하기 어려운 자는 죄가 가볍더라도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가하고, 모르고 저지른 실수나 재앙으로 인한 죄⁵³에 해당하여 인정상 용서해야 하는 자는 죄가 무겁더라도 매번 관대한 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죄의 경중에 따라 관대하거나 가혹하게 처벌하여 각각 마땅함을 따르되, 가여워하고 측은히 여기는 뜻을 항상 그 사이에서 두었습니다. 이것이 명군철벽明君哲辟이 반드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중히 형벌을 행한⁵⁴ 방법입니다.

47 교화를 돕는 정사: 원문의 “弼教之政”을 풀이한 말이다. 필교弼教는 ‘형벌을 시행하여 교화를 돕는다.’는 의미로, 『서경』 「대우모대禹謨」에 “네가 사사士師가 되어서 오형을 밝혀 오품오品的 가르침을 도와 나를 다스리도록 기약하였기 때문이다.[汝作士 明於五刑 以弼五教 期於予治]”라고 하였다.

48 다섯 가지 형벌: 얼굴에 자자刺字하는 묵형墨刑, 코를 베는 의형劓刑, 발 뒤꿈치를 베는 월형刕刑, 생식기를 자르거나 틀어막는 궁형宮刑, 사형인 대벽형大辟刑을 가리킨다.

49 열 가지 허물: 『서경』 「이훈伊訓」에 보이는, 이윤이 태감에게 경계하게 한 열 가지 허물이다. 궁중에서 항상 춤추는 것[恒舞], 술에 취해 노래 부르는 것[酣歌], 재물을 탐닉하는 것[殉貨], 여색에 빠지는 것[殉色], 늘 놀기만 하는 것[恒遊], 사냥을 일삼는 것[恒畋], 성인의 말을 업신여기는 것[侮聖言], 충직한 말을 무시하는 것[逆忠直], 늙은이와 덕이 있는 사람을 멀리하는 것[遠耆德], 사납고 어리석은 자를 가까이 하는 것[比頑童]을 이른다.

50 여덟 가지 법: 『주례』 「사사士師」에 보이는, 여덟 가지 죄를 다스리는 법이다. 여덟 가지 죄는 나라의 기밀을 빼내는 것[邦洩], 모반하여 난을 일으키는 것[邦賊], 간첩 노릇 하는 것[邦讎], 국법을 어기는 것[犯邦命], 국가의 사명詞命을 위조하는 것[矯邦命], 국보를 훔치는 것[爲邦盜], 직당하여 국정을 조종하는 것[爲邦朋], 유언비어를 날조하는 것[爲邦誣]이다.

51 세 조목의 법령: 한 고조漢高祖가 진秦의 가혹한 법을 폐지하고 세 조목으로 줄여서 만든 법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며,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와 도둑질한 자는 그 범죄와 상응하는 형벌에 처한다.[殺人者死 傷人及盜抵罪]”라고 하였다. (『史記』 「高祖本紀」)

52 믿는 ... 죄: 원문의 “枯終”을 풀이한 말로, ‘호枯’는 믿는 구석이 있어 함부로 짓는 죄이고, ‘종終’은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짓는 죄이다. (『書經』 「舜典」 蔡沈注)

53 모르고 ... 죄: 원문의 “眚災”를 풀이한 말로, ‘생眚’은 잘못을 저지르는지 모르고 짓는 죄이고, ‘재災’는 피치 못한 재앙으로 인해 짓는 죄이다. (『書經』 「舜典」 蔡沈注)

우리나라의 열성列聖께서 대를 이어 전하신 교훈은 형벌을 신중히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종께서는 “형관刑官이 다른 이의 죄를 논할 때 공신이나 고관대작은 으레 가벼운 법을 따라 적용하고, 세력이 없는 사람은 일일이 따져 벌을 내리니, 이것이 어찌 천심天心에 부합하는 것이겠는가.”라고 교유하셨으며,⁵⁵ 세종께서는 “옥사를 처리하는 법은 마땅히 공평무사한 마음으로 분명하게 물어야 할 것이며, 죽을죄를 다스릴 때는 살릴 수 있는 방도를 구할 것이요, 중한 죄를 다스릴 때는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야 할 것이다.”라고 교유하고,⁵⁶ 삼한三限의 법을 정하고⁵⁷ 추계秋啓의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셨습니다. 문종께서는 옥사를 처리하는 관리에게 “감옥을 설치한 것은 죄지은 자를 징벌하기 위함인데 법을 위반하면서 죄수를 괴롭히고 침탈을 자행하니, 죄수들의 친속親屬으로 하여금 관청에 호소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유시하셨습니다.⁵⁸ 인종께서는 유사가 죄수의 고신拷訊을 계청啓請할 때마다 이마를 찡그리면서 “이 또한 사람이니, 되도록 잘 살피고 삼가도록 하라.”라고 하고, 이내 “과인의 치하治下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백성들이 죄를 짓거나 법을 범하는 자가 없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탄식하셨습니다.⁵⁹ 효종께서는 『서경』 「여형呂刑」을 읽고 탄식이 일어 형관에게 마음을 다하도록 면유面諭하고,

54 공경하는 … 행한: 『서경』 「순전舜典」에 “공경하고 또 공경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형벌을 행한다.〔欽哉欽哉 惟刑之恤哉〕”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55 태종께서는 … 교유하셨으며: 종신과 공신들을 훈련관 도제조 및 병서강도총제兵書講討總制로 임명하면서, 이들이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과 똑같이 형벌을 적용해야 한다고 교유하였다. (『太宗實錄』 9년 3월 25일)

56 세종께서는 … 교유하고: 대사헌 성엄成揆 등이 옥사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무고한 백성이 형벌을 받게 되자 이들을 국문하고, 송자宋儲, 신계삼辛繼參, 신정리申丁理, 박안신朴安臣, 권명손權孟孫 등에게는 각각 속장曠杖 70에 처하고, 성엄은 원종 공신原從功臣이므로 파면만 하고, 이진李震은 곤장 70대를 치고 도徒 1년 반으로 처결하였다. (『世宗實錄』 4년 10월 24일)

57 삼한三限의 법을 정하고: 옥송獄訟의 지체를 막기 위하여 기한을 정해서 처리하도록 법을 정하였는데, 사죄死罪에 관계되는 대사大事는 90일, 도류형徒流刑에 관계되는 중사中事는 60일, 태장杖에 관계되는 소사小事는 30일을 기한으로 하여 옥사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世宗實錄』 29년 1월 8일)

58 문종께서는 … 유시하셨습니다: 문종은 형옥刑獄이 원통하고 억울함을 초래하기가 쉽다고 하여 옥사를 처리하는 관리에게 “감옥을 설치한 것은 본디 죄 있는 자를 징벌하기 때문이고 사람을 죽는 지경에 이르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그런 까닭으로 여러 번 교사敎書의 법조法條를 내려서 죄수를 가없이 여겨 보살피며 주기를 힘쓰도록 했는데도, 옥獄을 맡은 이졸吏卒이 법에 어긋난 행동으로 죄수를 시달리게 해서 침탈侵奪을 마음대로 하니 지금부터는 죄수의 친속에게 진소陳訴하게 하여 엄하게 죄를 다스려서 원악冤抑을 풀어주도록 하라.”라고 유시하였다. (『文宗實錄』 2년 5월 21일)

59 인종께서는 … 탄식하셨습니다: 인종은 항상 형옥에 유의하여 유사宥司가 죄수의 고신拷訊을 계청하면 반드시 이마를 찡그리면서 “이 또한 사람인데 어찌 차마 난폭한 고문을 가하여 그 생명을 상해할 수 있겠는가. 되도록 잘 살피고 삼가서 억울함이 없게 하라.”라고 하고, 이내 “과인의 치하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백성들이 죄를 짓고 법을 범하는 자가 없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탄식하였다. (『仁宗實錄』 「仁宗大王行狀」)

또 “형벌은 정치를 보조하는 도구이다. 한결같이 공평한 마음으로 임한 뒤에야 백성들이 손발을 둘 곳이 있게 된다.”라고 하교하셨습니다.⁶⁰ 숙묘肅廟[숙종]께서는 팔도의 방백方伯에게 “군주의 위엄으로도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거나 죽일 적에는 감히 기쁨이나 노여움에 따라 행하지 않으니, 어찌 사소한 혐의나 잠깐의 분노로 사람 목숨을 하찮은 지푸라기처럼 대하겠는가.”라고 하교하셨습니다.⁶¹ 아! 열성께서 지극한 정성으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중히 형벌을 행한 뜻에는 인심을 감복시키고 후세에 법으로 삼을 것이 있습니다.

형옥刑獄을 관장하는 관리는 옛 사사士師이니, 책임이 막중한 만큼 선발도 더욱 신중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자주 바뀌는 관원에게 갑작스레 복잡한 문안文案을 담당하게 하면, 교활한 서리胥吏의 손에 의해 문안이 뒤바뀌는 경우가 많아지고 도필刀筆하는 아전에 의해 생사가 갑자기 결정될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 곳에 청탁하고 농간을 부려 문안을 바꾼다면 크고 작은 옥사가 모두 공평함을 잃게 될 것이니, 백성들이 어찌 곤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디로 달려가 자신의 사정을 호소하겠습니까. 지금 세상에 비록 고요鞫陶⁶²가 없었지만, 가령 관대하기도 하고 엄하기도 하여 부드러워도 삼키지 않고 강하여도 뱉지 않는 자⁶³에게 옥사에 관해 논의하고 죄인에게 적용한 조문을 아뢰는 일을 오랫동안 맡겨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면, 법을 숙고하여 다룰 수 있고 형벌을 분명하게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크고 작은 일에 모두

60 효종께서는 … 하교하셨습니다: 『서경』 「여형」을 또한 경신敬慎해야 한다는 뜻으로 형관에게 면유하고, 또 “형벌은 정치를 보조하는 도구이다. 성인聖人도 부득이 쓰기는 했지만, 반드시 지공무사至公無私하여 한결같이 공평한 마음에 의거하여 결정하였다. 그런 뒤에야 백성들이 손발을 둘 데가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은 형을 받는 사람이 많은데도 실정을 자백하는 사람은 없으니, 정치를 보조한다는 의의가 너무도 없다. 간혹 1차의 형신을 받고 잇따라 치사致死하는 경우가 있으니 형벌을 가함에 있어 공경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형벌을 행하는 도리가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孝宗實錄』 「孝宗大王行狀」)

61 숙묘肅廟께서는 … 하교하셨습니다: 숙종이 세조歲抄를 보고는 여러 도도의 수령 중에 법조를 범하여 견책을 받은 사람이 또한 한둘이 아님을 지적하면서 팔도 감사監司들에게 백성들의 생명을 중시하라는 하교를 내렸다. (『肅宗實錄』 18년 12월 1일)

62 고요鞫陶: 순임금 때의 신하로, 형벌을 관장하는 사사士師가 되어 순임금을 보좌하였다.

63 부드러워도 … 자: 『시경』 「증민烝民」에 “세속의 말을 들어보니, 부드러우면 씹어 삼키고, 강하면 뱉는다던데, 중산보는 그렇지 않아, 부드러워도 삼키지 않으며, 강하여도 뱉지 않아서, 흠어비 흠어미를 구해주며, 강포한 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人亦有言 柔則茹之 剛則吐之 維仲山甫 柔亦不茹剛亦不吐 不侮矜寡 不畏疆禦]”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64 협중協中의 다스림: 원문의 “協中之道”를 풀이한 말이다. ‘협중協中’은 ‘중도中道에 맞다.’라는 의미로, 『서경』 「대우모대禹謨」에 “형벌을 쓰되 형벌이 없는 경지에 이를 것을 기억하여 백성들이 중도에 맞는 것은 너의 공이다. [刑罰于無刑 民協于中 時乃功]”라고 한 데서 보인다.

한결같이 공정함을 따르는 것이 옛날에 이른바 협중^{協中}의 다스림⁶⁴이 아니겠습니까. 아! 옛날에는 교화를 행한 이후에 형벌을 가했으니, 대개 효제충신^{孝悌忠信}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예의엄치^{禮義廉恥}로 다스렸는데도 백성 중에 통솔되지 않는 자가 있으면 형벌을 가했던 것입니다. 만약 교화를 우선으로 하지 않고 형벌을 가하는 데 힘쓴다면 이는 백성을 그물질하는 것이니,⁶⁵ 백성의 부모가 된 자로서 백성을 그물질할 수 있겠습니까. 유념하고 유념하소서.

64 백성을 그물질하는 것이니 : 『맹자』 「양혜왕^{梁惠王}」에 “백성들은 항산^{恒産}이 없으면 항심^{恒心}이 없어서 못할 짓이 없으니, 이렇게 해서 죄를 짓게 한 뒤에 처벌을 가한다면 이는 백성을 그물질하는 것이라고 하였다.[苟無恒心 放辟邪侈 無不爲已 及陷於罪然後 從而刑之 是罔民也]”라고 한 데서 보인다.

正史彙鑑

권
8

예신료禮臣僚

신료臣僚를 예우하다

법조 法條

11 제 양왕齊襄王¹이 술기운이 오르자 “재상 단單²을 불러오라.”라고 하였다. 초발貂勃³이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조아리고 “왕께서 스스로를 주 문왕周文王과 비교한다면 누가 낫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하니, 양왕이 “나는 그만 못하다.”라고 하였다. 초발이 “그렇습니다. 제 환공齊桓公⁴과 비교한다면 누가 낫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하니, 양왕이 “나는 그만 못하다.”라고 하였다. 초발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주 문왕은 여상呂尚⁵을

1 제 양왕齊襄王: 전국 시대 제의 군주로, 성은 규(婁), 씨는 전(田), 이름은 법장(法章)이다. 민왕(湣王)의 아들이다. 연(燕)의 장수 악의(樂毅)가 침략하여 제의 대부분의 성을 함락하자 태사 각(軫)에게 집에 숨어 지냈다. 민왕이 거물로 달이나 초에 구원을 요청했는데 초(楚)의 장수 요치(淖齒)가 연과 내통하여 민왕을 살해하니, 전단(田單)이 법장을 찾아 즉위시켰다. 전단을 중용하여 악의를 실각시키고 제(齊)의 옛 땅을 수복하였다.

2 단單: 전국 시대 제(齊)의 장수 전단(田單)이다. 제가 연(燕)의 공격을 받아 멸망 직전의 상황에 처했을 때 즉묵성(即墨)을 끝까지 지켰고, 반간계를 써서 연의 장수 악의(樂毅)를 실각시킨 후 화우지계(火牛之計)를 써서 연의 군대를 물리치고 잃었던 제의 영토를 수복하였다. 그 공으로 안평군에 봉해졌다.

3 초발貂勃: 전국 시대 제(齊)의 신하이다. 평소 초발이 전단을 소인(小人)이라고 비방하고 다니다가 전단과 만나자, “도척의 개가 요임금을 보고 짚는 것은 도척을 귀하게 여기고 요임금을 천하게 여겨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는 본성이 주인이 아닌 자에게 짚는 법입니다.”라고 하였다. 이를 들은 전단이 그를 비범하게 여겨 군주에게 추천하고 벼슬을 하게 해주었다.

4 제 환공齊桓公: 춘추 시대 제의 군주 소백(小白)이다. 형인 양공(襄公)의 포악함을 피하여 국외로 망명하였는데, 중형(從兄) 공손무지(公孫無知)가 양공(襄公)을 죽이고 스스로 즉위하였다가 대부 응릉(應廩)에게 살해당하자, 가장 먼저 귀국함으로써 즉위하였다. 포숙(鮑叔)의 추천에 따라 정적이었던 관중(管仲)을 재상으로 기용함으로써 부국강병을 이루었다. 춘추오패(春秋五霸) 가운데 최초의 패자(霸者)로, ‘존왕양이(尊王攘夷)’의 가치 아래 제후들을 규합하고 국위(國威)를 떨쳤다. 그러나 말년에는 간신을 가가(加)이하여 중용하다가 그들에 의해 유폐되어 굶어 죽었다.

5 여상呂尚: 주 문왕(周文王)의 신하 강상(姜尚)으로, 여몽(子牙)의 아들이고, 성은 강(姜)이다. ‘태공망(太公望)’ 또는 ‘강태공(姜太公)’으로도 불린다. 무왕(武王)을 도와 상주왕(商紂王)을 멸망시키고 천하를 평정하였으며, 그 공으로 제(齊)에 봉해져 시조가 되었다. 「임현능(任賢能)」 법조(法條) 기사에 보인다.

얻고서 ‘태공太公’이라 부르고 제 환공은 관이오管夷吾를 얻고서 ‘중보仲父’라 불렀는데 지금 왕께서는 안평군安平君(전단田單)을 얻고서 ‘단’이라고만 부르시니, 어찌 이렇게 나라를 망치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양왕이 이에 안평군에게 야읍夜邑의 1만 호戶를 더 봉해주었다. 【『봉주강감회찬』에 보인다.】

■ 전한 문제前漢文帝 때의 일이다. 양 회왕梁懷王⁶의 태부太傅였던 가의賈誼⁷가 상소하였다. “문신하거나 코를 베는 형벌이 대부大夫에게 미치지 않는 것은 주상으로부터 가까운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기』에 ‘군주의 수레를 끄는 말의 나이를 감히 확인하지 않는다.’⁸라고 하니, 이는 주상을 위하여 불경함이 될 소지를 미리 멀리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귀하고 총애받는 지위에 있던 자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폐출하여도 괜찮고, 물러나게 하여도 괜찮고, 사약을 내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를 속박하여 긴 끈으로 매어 끌고 다니고 도관徒官으로 강등하여 사구司寇와 옥리가 옥설과 매질을 한다면, 저 비천한 자들이 ‘존귀한 자가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면 나도 그렇게 해도 되겠다.’라고 익히 알게 됩니다. 이는 높은 사람을 높게 대우하고 귀한 사람을 귀하게 대우하는 교화가 아닙니다.” 문제가 그 말을 깊이 받아들였다. 이후로 대신 가운데 죄를 지은 자는 모두 형벌을 받지 않았다.⁹

■ 전한 무제前漢武帝 때의 일이다. 대장군 위청衛青¹⁰은 귀한 신분이었지만 때때로 궁중에서 무제를 모실 적에 무제는 평상 끝에 걸터앉은 채 그를 만나기도 하였으며, 승상丞相 공

6 양 회왕梁懷王: 전한 문제의 넷째 아들 유읍劉璵이다. 문제는 양 회왕을 몹시 총애하였고 어린 나이에 양 회왕에 봉해주었다. 문제가 대신들의 의견에 따라 가의를 장사長沙로 좌천시켰는데, 그를 다시 불러 만나보고서 그동안 소원히 한 것을 후회하며 양 회왕의 태부로 삼아 주기도 하였다. 그런데 양 회왕이 말에서 낙상하여 요절하고 말았고, 가의는 이를 슬퍼하다가 병사하였다.

7 가의賈誼: 「여엄치勵廉恥」 법조 1번 각주 참조.

8 군주의 … 않는다: 군주가 기용하는 물건이나 동물은 함부로 대하지 않음을 말한다. 말은 치아의 발달 상태를 통해 비교적 정확하게 나이를 판단할 수 있는데, 군주의 수레를 모는 말에 대해서는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한 것이다.

9 대신 … 않았다: 대신들은 형벌을 받지 않는 대신 자신을 택하였음을 말한다. 『후한서』, 『자치통감』 등에는 “대신이 죄를 지으면 모두 자살하고 형을 받지 않았다.〔大臣有罪 皆自殺 不受刑〕”라고 기록되어 있다.

10 위청衛青: ?~기원전 106. 자는 중경仲卿이다. 평양후平陽侯의 관리였던 아버지 정계鄭系와 평양후의 첩 위오衛媼의 사이에서 태어난 탓에 종 취급을 받았다. 후에 누이 위자부衛子夫가 무제武帝의 은총을 입어 후비가 되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성을 따라 위씨衛氏가 되었다. 흉노의 정벌에 큰 공을 세워 대장군이 되고 대사마에 올랐다. 장평후長平侯에 봉해졌으며, 사후에는 그 아들이 작위를 계승하였다. (『漢書』 「衛青傳」)

손홍公孫弘¹¹이 사사로이 무제를 알현할 적에 무제는 이따금 관을 쓰지 않기도 하였다. 그러나 급암汲黯이 알현할 때에는 관을 쓰지 않고는 만나보지 않았다. 무제가 무장武帳¹² 안에 앉아 있을 때 급암이 와서 일을 아뢰려 하였다. 무제는 관을 쓰지 않고 있다가 멀리서 급암을 보고 사람을 시켜 아뢰도록 하였으니, 그 공경함이 이와 같았다.

|| 후한 광무제後漢光武帝 때의 일이다. 사농司農 강풍江馮이 “사례 교위司隸校尉를 시켜 삼공三公을 감독해야 합니다.”라고 상언하니, 사공연司空椽 진원陳元이 소를 올렸다. “신이 듣기로, 신하를 스승으로 예우하는 자는 제왕帝王이고, 신하를 손님으로 예우하는 자는 패자霸者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무왕武王은 태공太公을 스승으로 삼았고 제 환공은 관이오를 중보로 대우하였으며, 가까이로 고제高帝께서는 상국相國을 예우하였고¹³ 태종太宗[문제文帝]께서는 재보宰輔에게 권력을 빌려주셨습니다.¹⁴ 폐하께서는 몸을 낮추어 현자를 대하셔야 하니, 유사有司로 하여금 공보公輔¹⁵의 죄를 감찰하게 두셔서 안 됩니다.” 광무제가 그를 따랐다.

|| 후한 순제後漢順帝¹⁶ 때의 일이다. 대사농大司農 유거劉據가 직무상 견책을 받아 상서성尙書省으로 소환되어 가는데, 호송하는 자가 빨리 걸으라고 호통치고 매질까지 하였다. 좌

11 공손홍公孫弘: ?~기원전 121. 무제 때 대책對策으로 발탁되어 승상까지 지냈다. 관리의 검소함을 중시하여 베 이불을 덮고 상에는 고기반찬을 두 가지 이상 놓지 않았으며, 고인故人과 빈객賓客들에게 녹봉을 모두 나누어 주어 집안에 남은 것이 없었다. 그러나 성품이 남을 해치려는 뜻이 많고 겉으로는 관대한 듯하면서도 실제로는 각박하여, 자신과 틈이 있는 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끝내 화를 입혔으므로 소인이라는 평을 받았다. (『漢書』「公孫弘傳」)

12 무장武帳: 호위용 의장을 가리는 휘장이다. 일설에는 무사의 모습을 수놓은 휘장이라고도 한다.

13 고제高帝께서는 상국相國을 예우하였고: 고제는 소하蕭何를 상국으로 임명하면서 소하에게 검을 차고 대전大殿에 오를 수 있는 특권을 주었다.

14 태종太宗께서는 재보宰輔에게 권력을 빌려주셨습니다: 문제文帝 때 환관 등통鄧通이 총애를 받고 태만하니, 신도가申屠嘉가 등통을 불러 참수하려고 하였다. 문제가 이를 알고서 먼저 신도가 등통을 꾸짖을 시간을 충분히 주고, 적당한 때에 사자를 보내 등통을 구명하였다. 「어근습駭近習」 법조法條 기사에 보인다.

15 공보公輔: 왕을 보필하는 삼공三公과 사보四輔를 가리킨다. 사보는 의疑, 승조, 보輔, 필粥 또는 도道, 필粥, 보輔, 승承을 가리킨다고도 하며, 왕망은 사의師疑, 전승傳承, 아보阿輔, 보불保拂을 사보로 삼아 아들들 가르치게 하였다.

16 후한 순제後漢順帝: 115~144. 후한 제8대 황제 유보劉保로, 재위 기간 126년에서 144년이다. 안제安帝의 맏아들로 황태자가 되었는데, 염 황후閔皇后의 모략으로 폐위되어 제음왕濟陰王으로 강등되었다. 안제가 죽자, 염 황후가 북향후北鄉侯 유의劉昱을 세우고 수렴청정을 하였다. 얼마 뒤 유이가 죽자, 손정孫程 등 19명의 환관이 순제를 즉위시켰다. 순제는 이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제후에 봉하고 양자를 통한 세습제를 허용했고, 이로 인해 환관의 세력이 강화되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순제는 양남梁妘을 황후로 삼고 오빠인 양기梁冀를 등용하였는데, 이들이 전권을 휘두르며 조정을 장악하였다. 환관과 외척의 전횡으로 정치는 부패했고, 백성은 도탄에 빠졌다.

웅左雄¹⁷이 “구경九卿의 지위는 삼사三事[삼공三公]에 버금가며 대신의 반열에 있으니, 다닐 때는 옥을 패용해야 하는 예법이 있고 거동할 때는 장엄한 준칙이 있습니다. 효명황제 孝明皇帝[명제明帝]께서 그들에게 처음 매질하는 벌을 두셨지만, 이러한 벌들은 옛 전범典範이 아닙니다.”라고 상언하니, 순제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로 구경이 다시는 매질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

|| 남조南朝 양 무제梁武帝 때의 일이다. 좌장군左將軍 풍도근馮道根이 죽었는데, 무제는 이날 이묘二廟¹⁸에 제사가 있어 궁을 나온 뒤에 그의 죽음을 전해 들었다. 무제가 중서사인中書舍人 주이朱異에게 “길사吉事와 흉사凶事를 같은 날에 참석해도 괜찮은가?”라고 묻자, 주이가 “옛날 위 헌공衛獻公은 유장柳莊의 죽음을 전해 듣고서 제복祭服을 벗지 않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풍도근은 비록 사직지신社稷之臣은 아니지만, 또한 왕실을 위한 공로가 있습니다. 가시는 것이 예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무제가 그의 집에 거동하여 매우 애통하게 곡하였다.

|| 당 태종唐太宗 때의 일이다. 대리소경大理少卿 호연胡演이 죄수 명단을 올리고, 기주 자사 岐州刺史 정선과鄭善果를 끌고 나왔다. 이에 태종이 호연에게 “정선과가 비록 죄는 있지만 관품官品이 낮지 않은데, 어찌 죄수들 틈에 있게 한단 말인가. 지금부터 삼품三品 이상의 관리 가운데 죄를 지은 자는 조당朝堂에서 진퇴를 판결 받게 하라.”라고 하였다.

|| 당 태종 때의 일이다. 대장군 설만균薛萬均이 고창高昌¹⁹의 부녀자와 사통하였다고 고발한 자가 있어, 고창 내에서 부녀자를 색출하여 대리시大理寺로 보내고 설만균과 대면하여 변론하게 하였다. 위징魏徵²⁰이 “지금 대장군을 망한 나라의 부녀자와 대면하여 사사로운 잠자리의 일을 변론하게 하니, 그것이 사실이라도 얻는 것이 적으며 거짓이라면

17 좌웅左雄: ?~138. 자는 백호伯豪이며, 효렴孝廉으로 천거되어 기주 자사冀州刺史가 되었다. 탐관오리를 탄핵하고, 과거 제도의 시정을 상소하기도 하였다. (『後漢書』「左雄傳」)

18 이묘二廟: 태묘太廟과 소묘小廟를 이른다. 태묘는 아버지 태조 문황제太祖文皇帝를 비롯한 조상들을 위한 사당이고, 소묘는 어머니 문헌황후文獻皇后를 위한 사당이다.

19 고창高昌: 한대漢代 서역西域 36국의 하나로, 토번吐蕃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지금의 신강성新疆省 위구르 자치 지역 일대이다. 당唐의 이정李靖에게 멸망당하였다.

20 위징魏徵: 「개언로開言路」 법조 35번 각주 참조.

않는 것이 큼니다.”라고 하니, 태종이 그를 석방하였다.

|| 당 현종唐玄宗 때의 일이다. 요숭姚崇²¹이 학질虐疾 때문에 말미를 청하니, 현종이 날마다 수십 명의 사자를 보내 음식과 기거를 살폈다. 큰일이 있을 때마다 현종이 원건요源乾曜를 보내 자문하였는데, 원건요가 요숭을 사방관四方館²²으로 옮길 것을 청하자 현종이 허락하였다. 요숭이 굳이 사양하자 현종이 말하였다. “나는 경을 궁중에서 살게 하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다.”

|| 당 숙종唐肅宗이 태자 시절에 이필李泌²³과 포의지교布衣之交를 맺었다. 이필이 영무靈武로 알현하러 오니,²⁴ 숙종이 크게 기뻐하여 출행할 때는 나란히 말고삐를 잡고 다녔고 잠 잘 때는 침상을 나란히 놓고 누웠다. 이필을 우상右相으로 삼으려 하자 이필이 굳이 사양하면서 “폐하께서 빈우賓友로 대해 주시니, 재상보다 귀한 것입니다. 어찌 굳이 저의 뜻을 굽히려 하십니까.”라고 하니, 숙종이 그만두었다. 숙종이 이필과 군대 안을 순행巡行하는데, 군대의 병사들이 손으로 가리키면서 “노란 옷을 입은 사람이 성인聖人(천자天子)이고, 흰 옷을 입은 사람은 산인山人이다.”라고 수군거렸다. 숙종이 이를 듣고 이필에게 “나라가 힘든 시기에 감히 관직으로 그대의 뜻을 굽힐 수는 없지만, 우선 관복을 입어 사람들의 의심을 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니, 이필은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였다.²⁵

|| 당 대종唐代宗²⁶ 때의 일이다. 곽자의郭子儀가 입조하자²⁷ 대종이 원대元載, 왕진王縉, 어조은魚朝恩 등에게 각자 집에서 그를 위한 주연酒宴을 마련하라고 명하였다. 대종은 곽자의

21 요숭姚崇: 651~721. 자는 원지元之이다. 당 현종을 도와 '개원開元의 치세'를 이루었다. 방현령房玄齡, 두여회杜如晦, 송경宋璟과 더불어 당조唐朝의 '사대현상四大賢相'으로 꼽힌다.

22 사방관四方館: 사방에서 오는 사자使者들을 접대하는 관서官署이다. 여기서의 사방관은 사자들을 위해 마련된 숙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23 이필李泌: 「명상발명賞罰」 법조 33번 각주 참조.

24 이필이 영무靈武로 알현하러 오니: 당시는 안녹산安祿山이 난을 일으킨 시기로, 영양靈陽에서 은거 중이던 이필은 피난길에 오른 숙종의 부름을 받아 달려간 상황이었다. 이 무렵 숙종은 영무에서 즉위하였고 촉촉으로 피난한 아버지 현종玄宗을 태상황태上皇으로 모셨다.

25 이필은 … 받아들였다: 이필이 관복을 받아 입자, 숙종은 새로 관직을 창설하여 임명하고 그를 곁에 두었다.

26 당 대종唐代宗: 727~779. 당 제8대 황제 이예李豫로, 재위 기간은 762년에서 779년이다. 초명은 수책이다. 즉위한 이듬해 7년 동안 나라를 어지럽힌 안사의 난이 진압되었다. 그러나 환관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반란은 끊이지 않았고 번진들이 발호하여 국정이 어지러웠다. 또한 그는 불교에 심취하여 불교 사찰에 많은 토지와 혜택을 주어 국가재정을 약화시켰다.

를 예우하여, 항상 ‘대신大臣’ 이라 부르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 북주 세종北周世宗²⁸ 때의 일이다. 추밀사樞密使였던 한충정공韓忠正公 정인회鄭仁誨²⁹가 죽자 세종이 그의 상에 가려 하였는데, 근신近臣이 시운時運이 좋지 않다고 아뢰었다. 세종이 “근신 간에는 의리가 중하니, 일시日時가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라고 하고, 가서 곡을 하고 애도를 다하였다.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 송 태조宋太祖 때의 일이다. 한림학사翰林學士 두의竇儀³⁰가 초안 작성의 부름을 받아 후원의 문 앞에 이르렀는데, 두의는 태조가 두건을 추켜올려 이마를 드러내고 맨발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서 물러선 채로 나아가려 하지 않았다. 태조가 급히 관과 허리띠를 찾은 후에 불러들이니, 두의가 마침내 “폐하께서 창업하시고 자손에게 물려주려 하신다면, 천하 사람들에게 예를 보이셔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태조가 매무새를 정돈하고 사과하니, 이로부터 근신을 마주할 때면 관대를 착용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 북송 진종北宋眞宗 때의 일이다. 여단呂端은 도량이 넓은 사람이었으므로, 진종이 그를 몹시 존중하여 정중하게 두 손을 모아 읊하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또 여단의 체구가 매우 컸는데, 궁정의 섬돌이 가파르므로 재인粹人에게 그를 위한 납폐納陛³¹를 만들게 하였다.

27 곽자의郭子儀가 입조하자: 당시 곽자의는 일흔 살이 넘었지만 여전히 몸소 출정하여 여러 난리를 평정하고 돌아왔다. 이에 대종은 권신들에게 돌아가면서 곽자의를 위한 연회를 열어주라고 명하였는데, 한 번의 연회 비용이 십만 민縑에 이르렀다고 한다.

28 북주 세종北周世宗: 534~560. 북주 제2대 군주 우문욱宇文毓으로, 재위 기간은 557년에서 560년이다. 시호는 명제明帝이다. 효민제孝閔帝 우문각宇文覺이 폐위될 때 실권자이자 사촌형인 우문호宇文護에 의하여 옹립되었다. 후에 세종의 명민함을 시기한 우문호에 의해 독살당하였다.

29 정인회鄭仁誨: ?~955. 자는 일신日新이다. 세종이 북정北征을 할 때, 동경 유수東京留守로서 군수품을 제때 결함 없이 조달하여 공로를 인정받았고 시중侍中을 겸임하게 되었다.

30 두의竇儀: 914~967. 자는 가상可象이다. 박학다식하고 전고典故에 밝아 한림학사에 제수되었고, 공부상서 등을 역임하였다. 그의 네 아들 두엄竇儼, 두간竇玘, 두칭竇稱, 두희竇德도 모두 현달하여 ‘연산燕山의 두씨오룡竇氏五龍’으로 불렸다. (『宋史』「竇儀傳」)

31 납폐納陛: 전殿으로 오르는 섬돌과 섬돌 사이에 놓아 오르기 편하게 해주는 디딤대이다. 황제가 공훈을 세운 제후나 공신에게 내리는 ‘구석九錫’ 가운데 하나이다.

|| 북송 신종北宋神宗 때의 일이다. 지전주知全州 장중선張仲宣이 장오죄贓汚罪를 저질러 등에 장杖을 맞고 문신을 당한 후 유배가게 되었다. 판심형원判審刑院 소송蘇頌이 신종에게 말하였다. “옛날에 형벌은 상대부에게 가해지지 않았습니다. 장중선은 삼품三品の 관리인데 지금 그에게 문신하는 형벌을 가하여 노역하는 죄수들 사이에 두려 하시니, 비록 그가 긍휼히 여길 만한 부분이 없지만 의관을 더럽히는 결과만 있게 됩니다.” 신종이 “그 말이 옳다.”라고 하고, 조서를 내려 장형杖刑과 경형黥刑을 면해주었으며 이를 법령으로 만들었다. 【이상은 『속자치통감』에 보인다.】

|| 명 태조明太祖가 유기劉基와 대신을 대우하는 예를 논하였다. 유기가 “옛날에 공경公卿이 죄를 지으면 물을 담은 대야 위에 검을 올리고 청실淸室³²로 보내어 자결하게 하여 그를 치욕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없었으니, 이것이 대신을 대우하는 예입니다.”라고 하고, 『대대례기大戴禮記』와 가의賈誼의 상소문을 취하여 올리니, 태조가 깊이 동의하였다.

|| 명 태조 때의 일이다. 한림학사 송렴宋濂³³이 치사致仕하니, 태조는 송렴이 걸어 다니기 힘들었으므로 특별히 좋은 말을 골라주었으며, 친히 「양마가良馬歌」를 짓고 신하들에게 화답하도록 명하여 각별히 총애하였다. 그가 떠나려 할 때, 또 돈과 비단, 어제御製 문집文集을 주면서 “짐이 경의 충성을 가상하게 여기므로 경에게 하사하는 것이다. 경은 올해 나이가 몇인가?”라고 하자, 송렴이 “예순여덟입니다.”라고 하였다. 태조가 “이 비단을 보관하였다가 백 세까지 옷을 지어 입으라.”라고 하고, 명을 내려 그가 가는 길을 호위하게 하였다. 【이상은 『명사강목』에 보인다.】

32 청실淸室: ‘청실淸室’이라고도 하며, 신하가 자신의 죄과를 씻기 위해 들어가서 군주의 처분을 기다리는 공간을 의미한다. 죄수를 가두는 곳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33 송렴宋濂: 「근정사勤政事」 법조 16번 각주 참조.

계조 戒條

- || 정 장공鄭莊公이 주周에 갔는데, 주 환왕周桓王이 그를 예우하지 않았다.³⁴ 주 환공周桓公³⁵이 환왕에게 말하였다. “정鄭을 잘 대우해 주어 다른 제후들이 오도록 권장하여도 오지 않을 까 염려되는데, 예우해주지 않는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정은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 || 노 장공魯莊公이 금복고金僕姑³⁶로 송宋의 남궁장만南宮長萬을 쏘아 맞혀 그를 사로잡으니,³⁷ 송이 그를 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송 민공宋閔公이 남궁장만을 조롱하여 “처음에 내가 그대를 존경했었는데, 지금은 노의 포로가 되었으니 나는 그대를 존경하지 않는다.”라고 하니, 남궁장만이 이를 치욕으로 여기고 몽택蒙澤에서 민공을 시해하였다.
- || 노 선공魯宣公³⁸ 때의 일이다. 태묘太廟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날 중수仲遂³⁹이 죽었다. 하지 않아도 뒤편에도 역제釋祭⁴⁰를 지내고 만무萬舞⁴¹를 추었으니, 예가 아니다.⁴²

34 정 장공鄭莊公이 … 않았다: 주 환왕이 즉위할 무렵 주周와 정鄭의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이때 장공이 조회하러 간 것이다. 이전에 주 평왕周平王이 이민족의 침략을 피해 낙읍洛邑으로 천도할 때, 정 무공鄭武公에게 큰 도움을 받았으므로 그를 경사卿士(재상宰相)로 임명하고 정권을 일임하였다. 이후 무공의 뒤를 이은 장공은 정 의 국력을 키워나갔고, 이를 견제한 평왕은 장공의 권력 일부를 곡甗에게 나누어 주려 하였다. 장공이 이에 반발하자 평왕은 서로의 아들을 인질로 교환하는 것으로써 화평을 꾀하였다. 이때 정으로 간 평왕의 아들은 정에서 죽게 된다. 평왕이 죽은 후 손자 립린이 뒤를 이어 환왕으로 즉위하고 곡공에게 정권을 맡기려 하자, 장공이 반감을 품고 온溫 음과 성주成周에 침입하여 곡식을 베어 망쳐놓았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주와 정 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 (『春秋左氏傳』隱公 3年)

35 주 환공周桓公: 주공周公 단부의 후예인 흑견黑肩을 가리킨다. 주공 단은 무왕武王의 아우이자 성왕成王의 숙부로, 무왕이 죽고 어린 성왕이 즉위하자 장남 백금伯禽을 봉국封國인 노魯에 보내어 작위를 승계하게 하고 자신은 주周에 남아 어린 성왕을 보좌하였다. 이 때문에 주공은 주의 영토 내에 채읍采邑이 있게 되었고, 주에 남은 그의 후손이 '주공周公'의 작위를 세습하게 되었다.

36 금복고金僕姑: 화살의 일종이다. 노 장공이 남궁장만을 쏘아 맞힌 화살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금복고는 좋은 화살의 범칭으로 쓰였다. 자세한 형태나 특징은 전해지지 않는다.

37 송宋의 … 사로잡으니: 제 환공齊桓公이 즉위 후에, 송宋과 함께 노魯를 공격했을 때의 일이다. 그 발단은 노가 망명한 제齊의 공자公子 규絛를 제로 들여보내 즉위시키려 하였기 때문이다.

38 노 선공魯宣公: 춘추 시대 노의 군주로, 성은 희姬, 이름은 퇴猷 또는 왜倭이다. 문공文公이 죽은 후, 양중襄仲이 제齊의 애강哀姜이 낳은 적자를 죽이고 2세였던 그를 즉위시켰다. 이에 삼환삼桓(중손씨仲孫氏 · 숙손씨叔孫氏 · 계손씨季孫氏)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면서 공실이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39 중수仲遂 양중襄仲: 춘추 시대 노魯의 경대부卿大夫로, 장공莊公의 둘째 아들이다. 이름은 수遂이고 자가 양중이며 중수라 불리기도 하였다. 선공宣公을 옹립하여 즉위를 도왔고 국정國政을 장악하였다.

40 역제釋祭: 시(시)되었던 자의 수고에 보답하기 위해 대접하는 제사이다. 역釋은 이어서 지내는 제사이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천자나 제후가 정제正祭를 지낸 다음 날에 역제를 거행하고, 경대부는 제사를 지낸 당일에 '빈시賓尸'라는 이름으로 거행한다.

|| 정 희공(鄭禧公)이 태자 시절에 자한(子罕)과 함께 진핍으로 갔는데, 자한을 예우하지 않았다. 또 자풍(子豐)과 함께 초(楚)로 갔는데, 자풍을 예우하지 않았다. 즉위한 후 위(郈)에서 회맹할 때 자사(子駟)가 보좌하였는데, 또한 예우하지 않았다. 시자(侍者)가 이에 대해 간언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조(鄆)에 이르렀을 때 자사가 자객을 보내 희공을 시해하고, 제후에게는 학질로 죽었다고 부고하였다.

|| 진 평공(晉平公)⁴³ 때의 일이다. 순영(荀盈)이 죽어 강(絳)에 빈소를 차리고 아직 장례를 치르지 않았는데,⁴⁴ 평공이 술을 마셨다. 선재(膳宰) 도괴(屠綏)가 잔걸음으로 들어와 악공에게 술을 따라주면서 말하였다. “그대는 군주의 귀를 밝히는 임무를 맡았다. 자자와 묘(卯)가 일진에 있는 날을 불길한 날이라 하니, 이날 군주는 음악을 듣지 않는다. 군주의 경좌(卿佐)는 임금의 팔과 다리이니, 팔과 다리가 혹여 끊어진다면 얼마나 아프겠는가. 그런데 그대는 귀를 닫고 음악을 연주하였으니, 군주의 귀를 밝힌 것이 아니다.” 또 폐숙(嬖叔)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말하였다. “그대는 군주의 눈을 밝히는 임무를 맡았다. 복식(卜式)으로써 예를 드러내야 하며 기물에는 걸맞은 용모가 있다.⁴⁵ 지금 군주의 용모가 그 기물에 맞지 않은데 그대는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을 밝힌 것이 아니다.” 또 스스로 마시면서 “신은 실상 군주의 입맛을 알맞게 맞추는 임무를 맡았는데, 두 신하가 직분을 잃었음에도 군주께서 명을 내리시지 않았으니,⁴⁶ 신의 죄입니다.”라고 하니, 평공이 기뻐하면서 술자리를 파하였다. 【이상은 『춘추좌씨전』에 보인다.】

41 만무(萬舞): 만무는 도끼와 방패를 들고 추는 무무(武舞)와 깃털과 피리를 사용하는 문무(文舞)로 구분된다.

42 예가 아니다: 노 선공이 태묘에서 제사를 지낸 후 역제를 지낼 때 만무를 추게 하면서 피리를 불면서 추는 춤만 생략하였으나, 경인(敬尹) 중수가 죽었으므로 역제를 생략했어야 옳다고 말한 것이다. 해당 구절은 춘추좌씨전에는 보이지 않고, 『예기』 「단궁(檀弓)」에 공자가 이 사건을 두고 “예가 아니다. 경(卿)이 죽으면 역제를 지내지 않는 것이다.[非禮也 卿卒不繹]”라고 한 기록이 있다.

43 진 평공(晉平公): 춘추 시대 진의 군주로, 성은 희(姬), 이름은 표(彪)이다. 세금을 과중하게 걷고 향락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았다. 이에 ‘육경(六卿)’으로 꼽히는 범씨(范氏), 지씨(智氏), 중항씨(中行氏), 조씨(趙氏), 위씨(魏氏), 한씨(韓氏) 가문이 국정을 장악하였고, 훗날 이 가운데 조씨, 위씨, 한씨가 진을 삼분(三分)하여 통치하게 되었다.

44 순영(荀盈)이 … 않았는데: 순영은 진핍의 대부이고 강은 제(齊)의 땅이다. 순영이 제에 가서 아내를 맞이하고 돌아오는 길에 죽었다.

45 복식(卜式)으로써 … 있다: 군주가 길사(吉事)와 흉사(凶事)에 어울리는 복식과 기물을 갖추어 합당한 예를 드러내 보이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대부 순영이 죽어 장례를 채 마치지 않았으므로, 군주는 술자리를 멀리하고 애도를 표해야 함을 의미한다.

46 신은 … 않았으니: 『춘추좌씨전』에는 “맛으로 기를 통하게 하고, 기로 뜻을 충만하게 하며, 뜻으로 말을 정하고, 말로 명령을 내립니다.[味以行氣 氣以實志 志以定言 言以出令]”라고 하였다.

- || 전한 경제前漢景帝가 주아부周亞夫⁴⁷를 불러 음식을 하사하였는데, 큰 고깃덩어리만 있을 뿐 자른 고기도 없고 젓가락도 놓아 두지 않았다. 주아부가 속으로 못마땅하게 여겨 상석尙席에게 젓가락을 가져오게 하였다. 경제가 이를 보고 웃으면서 “그대의 마음에 불만이 있는 것인가.”라고 하자, 주아부가 관을 벗고 사죄하였다.
- || 초 원왕楚元王⁴⁸이 노魯의 신공申公, 목생穆生, 백생白生을 중대부로 삼았다. 목생이 술을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원왕은 늘 그를 위해 단술을 마련하였다. 손자 무戊⁴⁹가 즉위한 뒤에도 항상 단술을 마련하였는데, 뒤에 가서는 이것을 잊어버렸다. 목생이 물러나 “떠날 때가 되었다. 단술을 두지 않으니, 왕의 뜻이 태만해진 것이다. 지금 떠나지 않으면 초 사람들이 저자에서 나에게 칼을 채울 것이다.”⁵⁰라고 하고, 병을 핑계 대고 떠났다.
- || 위 명제魏明帝가 방림원芳林園에 흙을 쌓아 산을 만들었는데, 공경과 관리들에게 모두 흙을 짊어져 나르고 그 위에 소나무와 대나무를 심고 산짐승을 잡아 그 안에 풀어놓게 하였다. 사도군의연司徒軍議掾 동심董尋이 상소하여 간언하였다. “폐하께서 이미 신하들을 존중하여 관면冠冕으로 드러나게 하고 수놓은 비단옷을 입게 하고 화려한 수레를 타게 하셨으니, 미천한 자들과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땅을 파고 흙을 짊어지게 하니, 얼굴은 검게 얼룩이 묻고 몸과 발은 진흙투성입니다. 나라의 체모를 손상시키면서 무익함을 추구하시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 || 남조南朝 송 효무제宋孝武帝⁵¹는 신하들을 함부로 대하여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 왕현모王玄謨⁵²를 ‘노창老僧’,⁵³ 복야僕射 유수지劉秀之⁵⁴를 ‘노간老慳’,⁵⁵ 안사백顏師伯⁵⁶을 ‘언髦’⁵⁷

47 주아부周亞夫: 기원전 199~기원전 143. 전한 문제前漢文帝 때, 세류細柳에서 흉노의 침략을 막아 문제의 총애를 받았다. 경제景帝 때 오목, 초楚 등 7국七國이 반란을 일으키자, 주아부가 태위太尉로서 명을 받고 정벌하여 승상에 올랐다. 만년에 경제의 의심을 받아 죽었다.

48 초 원왕楚元王: 한 고조漢高祖의 서제庶弟 유교劉交이다. 학문을 좋아하고 재예가 뛰어났으며, 젊은 시절 노魯의 목생, 백생, 신공과 함께 부구백浮丘伯에게서 시를 배웠다. 학자 유항劉向이 그의 현손玄孫이다.

49 무戊: 초 원왕 유교劉交의 손자이다. 조조晁錯가 추진한 정책에 의해 봉토를 식감 당하자 오왕吳王 유비劉濞와 함께 모반을 일으켰다. 이를 ‘오초칠국吳楚七國의 난’이라 한다. 서쪽으로 진출하기 위해 양梁을 공격하였으나 함락하지 못하고, 창을 툴에 주둔하고 있던 주아부와 결전을 벌였으나 대패당하고 자살하였다.

50 초 … 것이다: 목생이 떠난 후에 초왕 무戊의 포악함이 점점 드러났다. 남아 있던 신공과 백생이 이에 간언을 올리자, 초왕이 그들을 죄수로 만들어 붉은 옷을 입히고 목에 쇠사슬을 채워 저자에서 방아 찧는 일을 시켰다.

이라고 불렀다. 종영수宗靈秀는 몸이 비대하여 절하였다가 일어나기 힘들었는데, 연회가 있을 때마다 그에게 하사품을 자주 내려 그가 감사의 절을 하다가 넘어지거나 고꾸라지게 만들어 웃음거리로 삼았다.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근안 謹按

삼가 살펴보건대, 공자孔子가 노 애공魯哀公에게 “군주는 신하를 예로써 부리고, 신하는 충성으로써 섬긴다.”라고 하였습니다.⁵⁸ 당우唐虞와 삼대에는 빈우賓友로서 대하고 고굉股肱처럼 가까이하였으므로, 저마다 진심을 다해 보필하였고 상하가 서로 믿어 다스림과 교화가 융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진秦은 예의를 없애고 오로지 형벌과 법률에 의지하였으니, 군주를 높이고 신하를 낮추는 법이 이때부터 엄격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한漢은 그 폐단을 이어받아 숙손 통叔孫通이 예법을 제정함에 옛 것을 인습하고 고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가의가 이러한 폐단을 깊이 개탄하여 문제文帝에게 이를 진언함에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는 데 이르렀습니다.⁵⁹ 그가

51 송 효무제宋孝武帝: 430~464. 남조 송 제4대 군주 유준劉駿이다. 재위 기간은 453년에서 464년이다. 문제文帝의 셋째 아들로, 어려서부터 기지가 있고 글재주가 뛰어났다. 형인 태자 유소劉劭가 문제를 시해하자 병사를 이끌고 토벌에 나서 즉위하고 유소를 죽였다. 종실과 귀족을 억눌러 왕권을 강화하였고, 형의 일족을 모두 죽이는 잔악성을 보였다. 사치를 일삼아, 송의 쇠퇴를 초래하였다.

52 왕현모王玄謨: 388~468. 자는 언덕彦德이며, 문제文帝 때 북진책北進策을 진달하여 북정에 나섰다가 대패하고 참수당할 뻔하였으나, 심경지沈慶之의 만류로 죽음을 면하였다. 그 뒤 각지의 반란을 평정하면서 나라를 안정시키는 공을 세웠다. 효무제宋孝武帝의 고명顧命을 받았으나, 엄격하고 강직한 성품 때문에 외직으로 쫓겨났다.

53 노창老倉: ‘촌뜨기 노인’이라는 뜻이다. 당시 강남 사람들은 중원 사람들을 ‘촌뜨기’라는 뜻으로 ‘창倉’이라고 불렀는데, 왕현모가 중원 출신이었기 때문에 효무제宋孝武帝가 이와 같이 부른 것이다.

54 유수지劉秀之: 396~464. 자는 도보道寶이며, 지방관으로서 많은 치적을 쌓아 효무제가 중용하였다. 어린 시절 집이 매우 가난했던 탓에 평소에 매우 근검절약했다고 한다.

55 노간老簡: ‘찌꺼한 노인’이라는 뜻이다. 유수지가 평소 매우 근검절약하여 인색하다는 평을 들었다.

56 안사백顔師伯: 419~465. 자는 장연長淵이다. 효무제에게 두터운 신임을 받아 시중侍中, 이부상서吏部尚書, 상서우복야尙書右仆射 등을 역임하였다.

57 언彦: ‘빠드르니’라는 뜻이다. 안사백의 외모를 두고 한 말이다. 저본의 원문에서 “顔師伯”인데, 원전인 『자치통감』에는 “顔師伯爲彦”라고 되어있으므로 이를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58 공자孔子가 … 하였습니다. 『논어』 「팔일八佾」에 보인다.

59 탄식하고 … 이르렀습니다: 가의의 상소문에 “신이 지금의 사세事勢에 대해 생각하니, 통곡할만한 것이 한 가지 있고, 눈물이 흐를만한 것이 두 가지 있고, 길게 탄식할만한 것이 여섯 가지 있습니다.[臣竊惟今之事勢 可爲痛哭者一 可爲流涕者二 可爲長太息者六]”라고 하였다.

“천자가 낮빛을 바꾼다.”라고 한 것은 대신은 예모를 갖추어야 하는 대상임을 말한 것이고, “형벌은 상대부에게 내리지 않는다.”⁶⁰라고 한 것은 귀신貴臣에게는 육형肉刑을 내려 치욕스럽게 해서는 안 됨을 말한 것입니다. “탐욕스럽다.”라고 하지 않고 반드시 “보귀篋篋가 정갈하지 않다.”⁶¹고 이르며, “문란하다.”라고 하지 않고 “유박帷簿이 단정하지 않다.”⁶²고 이른 것도 예의와 염치의 도리로써 신료를 처우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대개 군주가 아랫사람들을 예우하는 것은, 사소한 예절을 세세하게 삼가는 것을 한때 우려하는 미덕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풍교風教를 세우고 세도世道를 갈고 닦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지위가 높은 것을 믿고 업신여기며 함부로 하여, 푸른 패옥佩玉과 붉은 슬갑膝甲을 차는 반열의 신하⁶³를 아이처럼 부르며 금 인장印章과 옥 장신구를 차는 반열의 신하⁶⁴를 종처럼 꾸짖으면, 저들은 자신이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여겨서 도리어 남에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비록 포승줄에 묶이는 치욕을 겪어도 전혀 부끄러운 낮빛이 없고, 종기를 훤는 천한 일을 해야 해도 오히려 스스로 달게 여겨, 날이 갈수록 비루하고 지조 없게 될 것입니다. 풍속이 망가져 모두 이 지경에 이른다면 누구에게 나라를 맡기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본디 예의의 나라라 일컬어져 돈후한 풍속을 숭상하니, 신료를 대함에 있어 그 도를 다하는 데 힘썼습니다. 하륜河崧이 능침을 살피러 갈 때 청교靑郊에 거동하여 주연을 열어 주셨고,⁶⁵ 유정현柳廷顯이 죽었을 때 백포白袍를 입고 거애擧哀하셨

60 형벌은 상대부에게 내리지 않는다: 원문의 “刑不上大夫”는 『예기』의 「곡례曲禮」에 나오는 구절이다. 가의의 상소문에는 “黜削之辜 不及大夫”라고 되어 있다.

61 보귀篋篋가 정갈하지 않다: 정갈해야 할 제기祭器가 정갈하지 못하다는 뜻으로, 대신大臣이 청렴하지 못함을 에둘러 지적하는 말이다. 보귀는 곡식의 신에게 제사 지낼 때 사용하는 제기를 가리킨다. (『漢書』「賈誼傳」)

62 유박帷簿이 단정하지 않다: 침실의 휘장이 제대로 드리워져 가리지 못하였다는 뜻으로, 대신大臣이 남녀 관계에 있어 문란紊亂함을 에둘러 지적하는 말이다. 유박은 침실에 드리우는 휘장이나 발을 가리킨다.

63 푸른 … 신하: 『시경』「채기採芣」에 “명복을 입으니 붉은 슬갑은 눈부시고 푸른 패옥은 짙량대내.服其命服 朱芾斯皇 有瑱蔥珩”라는 구절이 있다. 해당 시는 주 선왕周宣王 때 형만荊蠻을 정벌한 방숙方叔을 찬미한 시가로 알려져 있다.

64 금 … 신하: 조정의 관원을 가리킨다. 금 인장은 고관대작에게 지급되는 도장이고, 옥 장신구는 조정의 관원이 조회할 때 착용하였다.

65 하륜河崧이 … 주셨고: 태종이 하륜을 함길도咸吉道로 보내 능침을 살피게 하면서, 동교東郊에서 주연을 베풀어주고 전송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太宗實錄』 16년 10월 2일)

66 유정현柳廷顯이 … 거애擧哀하셨습니다: 좌의정 유정현이 치사致仕한 지 나흘만에 죽자, 세종이 백포, 오사모烏紗帽, 흑각대黑角帶 차림을 하고 백관을 거느리고 거애했으며, 조회를 3일 동안 폐하고 소선素膳을 들었다. (『世宗實錄』 8년 5월 15일; 『孝宗實錄』 3년 6월 26일)

습니다.⁶⁶ 유신儒臣을 자字로 불러주어 벗처럼 대하시니 성삼문成三問은 죽음으로 보답하였고,⁶⁷ 벗이라고 이르며 방백方伯의 일을 맡기시니 유호인俞好仁은 북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⁶⁸ 신숙주申叔舟가 직소直所에서 밤늦도록 책을 읽으니 담비 갓옷을 벗어 잠든 그에게 덮어 주셨고,⁶⁹ 성희안成希顔이 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하게 사니 응련應連[매]을 하사하고 아울러 감골을 주셨습니다.⁷⁰ 상진尙震이 술자리가 끝나고 취하여 임금이 행차하는 길에 누워있으니 면장面帳으로 가려주고 지나갔으며,⁷¹ 정종영鄭宗榮이 치사致仕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어악御樂을 연주하여 전별하였습니다.⁷² 이서李曙는 성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전사하자 서울 집에 돌아간 뒤에 빈소를 마련하라고

67 유신儒臣을 … 보답하였고: 문중은 동궁 시절에 밤이 되면 책을 들고 집현전 숙직소에 가서 난해처를 물어보곤 하였기 때 문에 성삼문 등은 밤에도 관대를 벗지 못하였다. 어느 날 성삼문은 한밤중이 되어 세자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관복을 벗고 누우려고 하니, 세자가 “근보謹浦”라고 그의 호를 부르며 들어왔다고 한다. (『海東稗林』; 『英祖實錄』 22년 9월 1일) 세종은 병약한 세재문중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예견하고 집현전 학사들을 불러 원손단종을 부탁하였는데, 단종 즉위 후에 수양대군이 계유정난癸酉靖難을 일으켜 스스로 왕위에 오르고 단종을 폐위시켰다. 이에 성삼문은 단종 복위 운동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처형당하였다.

68 벗이라고 … 흘렸습니다: 유호인이 선산善山으로 돌아가 늙은 어머니 봉양하길 청하니, 성종成宗이 친히 전별해주었고 유호인이 이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 자리를 파하고 성종이 사람을 시켜 유호인을 살펴보게 하였는데, 유호인은 북쪽을 바라보며 한참 머뭇거리다가 시 한 수를 벽에 썼다. 그 시 가운데 “북쪽을 바라보니 임금과 신하의 거리는 멀고, 남쪽으로 내려오니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하게 되었다.北望君王隔南來母子同”라는 구절이 있다. 처음에 성종은 유호인이 수령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다가, 그가 해마다 간절히 청하므로 의성 현감義城縣監에 임명하였다. 성종이 은밀히 감사에게 “호인은 나의 친구이다. 아버지를 위하여 헌감이 된 것이니 잘 보아주라.”라고 당부하였으나, 감사는 그가 풍월을 읊으며 관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하등으로 고과를 매겨 보고하였다. (『龍泉談寂記』)

69 신숙주申叔舟가 … 주셨고: 세종이 어느 날 밤 2경更 쯤에 내시를 시켜 숙직하는 학사가 무엇을 하는가를 가서 엿보게 하였는데, 신숙주가 촛불을 켜 놓고 글을 읽고 있었다. 내시가 서너 번이나 가서 보아도 글을 읽고 있었고, 닭이 울자 비로소 잠이 들었다. 세종이 이를 가상하게 여겨서 그가 깊이 잠이든 틈에 자신이 입고 있던 담비 갓옷을 벗어 그를 덮어주게 하였다. (『海東稗林』)

70 성희안成希顔이 … 주셨습니다: 정자正字였던 성희안이 아버지를 여의자 관직을 그만두고 복상을 마치고 복직하였다. 성종이 복직한 그를 불러 매를 하사하고 공무를 마친 여가 시간에 사냥을 하여 어머니의 반찬을 장만하라고 하였다. 성희안이 일찍이 야대夜對에 들어가자 성종이 술과 과실을 하사하였는데, 성희안이 감골 십여 개를 소매에 넣은 채 술에 취해 엎드려 인사불성이 되었다. 내시가 그를 업고서 나오는데 소매 속의 감골이 땅에 떨어지는 줄도 몰랐다. 이튿날 성종이 감골 한 광주리를 옥당玉堂에 내리면서 “어젯밤 희안이 아버지께 드리려던 것이므로 다시 하사하노라.”라고 하였다. (『龍泉談寂記』; 『中宗實錄』 8년 7월 27일)

71 상진尙震이 … 지나갔으며: 명종이 후원後苑을 다녀오는 길에 술에 취해 길가에 누워있는 상진을 알아보고, “대신大臣이 길가에 있는데 지나쳐 가기에는 마음이 편치 않다.”라고 하여 장막으로 가려주고 지나갔다. (『東閣雜記』 「本朝濔源寶錄」)

72 정종영鄭宗榮이 … 전별하였습니다: 정종영이 77세에 치사하니, 선조宣祖가 역마를 주어 호송하도록 명하였다. (『宣祖修正實錄』 22년 2월 1일)

73 이서李曙는 … 명하였습니다: 병자호란 때 이서가 남한산성을 정비하며 지키다가 질병과 과로로 쓰러져 죽었다. 인조는 그를 위해 통곡하였고 도성에 돌아간 후 그의 집안에 빈소를 마련하라고 특별히 명하였다. 후에 영의정으로 추증하였다. (『仁祖實錄』 15년 1월 2일)

특별히 명하셨습니다.⁷³ 정경세鄭經世는 빈석賓席에서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죽었을 때는 동궁東宮을 보내어 치제하게 하셨습니다.⁷⁴ 김상헌金尙憲은 노신老臣을 우대하는 남다른 은전恩典을 입어 궁중에서 견여肩輿를 탔으며,⁷⁵ 조복양趙復陽은 스승을 존중하는 각별한 은전을 입어 장례에 쓸 널감을 하사받았습니다.⁷⁶ 이 모두는 열성列聖의 예우가 일반적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니, 고가故家와 세신世臣이 전승傳誦하고 감읍感泣하여 선군先君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임금에게 보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개 천승千乘의 나라를 다스리며 만민萬民의 위에 있는 자가 자신의 존귀함을 가지고 신하들을 가버이 여기는 것은 형세상 그렇게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군신 사이에는 본래 뚜렷한 구별이 있어, 엄격히 대하거나 두려워하는 경향이 많다보니 마음과 뜻이 통하기가 어렵습니다. 선정신先正臣 김장생金長生이 신하가 군주 앞에서 부복하는 예법을 거두어 달라고 청한 일⁷⁷은, 그 의미가 매우 심원합니다.

지금 비록 갑자기 근래의 법들을 고칠 수 없겠지만, 옛 성왕이 자기를 비우고 몸을 굽힌 도로 말해보겠습니다. 도학道學을 배운 유자儒者를 부르시려거든 스승을 섬기는 예로써 대하셔야 하고 국정國政을 논할 신하를 만나시려거든 친구와 대화하는 예로써 대하셔야 합니다. 대신大臣에게 몸을 쓰는 일을 맡기지 마시고, 일반 관리들에게 종종걸음으로 달려가는 공손함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죄지은 자에게는 법에 따라 처분하더라도 혹여 독책하거나 욕보이지 마시고, 진언하는 자가 시회時諱를 범하더라도 혹여 깔보거나 모욕하지 마십시오.

74 정경세鄭經世는 … 하셨습니다: 정경세가 부제학으로서 진강을 하였는데, 인조가 그의 정성과 부지런함을 가상히 여겨 자금을 올려주고 경연관의 직임을 맡겼다. 정경세는 빈객賓客의 신분으로 죽었지만, 인조는 정경세가 마음을 다하여 자신을 가르친 은혜가 있다 하여 동궁을 보내어 거애擧哀하게 하였다. (『仁祖大王行狀』)

75 김상헌金尙憲은 … 탔으며: 효종은 김상헌이 나이가 많아 걷기 힘들다고 하여 견여를 탄 채 대궐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가 전殿에 오를 때는 내관이 부축하게 하였다. (『孝宗大王行狀』)

76 조복양趙復陽은 … 하사받았습니다: 예조판서 조복양이 죽자 현종은 상을 치르는 데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고, 세자[숙종]는 그에게 널감을 내렸다. (『顯宗實錄』 12년 1월 10일) 조복양은 현종 때 세자 빈객世子賓客이 되어서 당시 세자였던 숙종에게 하루에 세 번 강독하고 30번을 읽도록 권하였다. 세자가 오래 앉아 있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면 손을 끌어당겨 앉히면서까지 읽게 하였다고 한다. (『承政院日記』 영조 23년 3월 18일)

77 선정신先正臣 … 일: 김장생은 신하가 임금 앞에 부복하는 예는 고례古禮가 아니니, 임금과 신하가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데 막힘이 없어야 정사를 논함에 신뢰가 생긴다고 하자, 인조가 그를 일어나 앉게 하였다. 그러나 대신들은 부복하는 예를 끝내 감히 바꾸지 못하였다. (『肅宗實錄』 6년 10월 12일; 『沙溪全書』 『筵席問對』)

78 구경九經: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 아홉 가지 법도를 말한다. 아홉 가지 법도는 각각 '몸을 닦는 것[修身]', '현자를 존중하는 것[尊賢]', '친족을 친애하는 것[親親]', '대신을 공경하는 것[敬大臣]', '신하를 체찰하는 것[體群臣]',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하는 것[子庶民]', '공장工匠들을 우대하여 오게 하는 것[來百工]', '먼 지방 사람을 너그럽이 대하는 것[柔遠人]', '제후를 포용하는 것[懷諸侯』이다. (『中庸』)

이렇게 하신다면 조정의 사대부가 저마다 지중하여 명예와 절의를 아끼고 예의와 사양을 일으킬 것이니, 이것이 어찌 구경九經⁷⁸의 도이자 일세一世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송 영종宋寧宗이 즉위하고 한 달이 지난 뒤, 승상 유정留正⁷⁹을 내쫓자 사람들은 그 영단英斷에 감복하였으나, 주자朱子是 그것을 듣고 근심하면서 “군주의 마음이 이처럼 쉽게 교만하니, 걱정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누군가 “아무개는 거리낌 없이 함부로 행동하여 쫓겨날 만한데, 무엇이 걱정입니까?”라고 묻자, 주자가 “신하를 등용하거나 내침에 응당 예모禮貌를 갖추어야 하는데, 어찌 이처럼 한단 말인가.”라고 답하였습니다. 주자는 비록 쫓겨날 만한 신하라도 예모를 갖추지 않으면 마음은 쉬이 교만해지고 손은 쉽게 미끄러지는 법이니⁸⁰ 실로 중차대한 근심거리라고 여긴 것입니다. 신이 감히 이를 인용하여 말씀드립니다. 유념하고 유념하소서.

79 유정留正: 1129~1206. 자는 중지仲至이며, 청렴하고 직간을 꺼리지 않아 명망이 높았다. 송 광종宋光宗 때 좌승상左丞相이 되어 조여우趙汝愚 등 많은 인재를 등용하였다. 영종이 즉위한 후 영종을 옹립한 공이 있던 한탁주韓侂胄와 불화가 있었고, 영종과 뜻이 맞지 않아 결국 파직되었다.

80 손은 쉽게 미끄러지는 법이니: 어떤 행위를 하는 것에 익숙해짐을 말한다. 송송의 여러 대신들이 지방관 조종약晁仲約의 죄를 논의할 때, 부필富弼이 그를 죽여야 한다고 하자 범중엄范仲淹이 “임금께서도 아직 어떻게 하실지 정하지 않으셨는데 군주가 신하를 벌하여 죽이도록 경솔히 이끌다가 훗날 이것이 손에 익으면 우리들도 목숨을 보존하기 어렵다.[雖上意亦未知所定也 而輕導人主以誅戮臣下 他日手滑 雖吾輩亦未敢自保]”라고 하여 만류하였다.

변붕당 卞朋黨

붕당을 분별하다

법조 法條

|| 전한 원제 前漢元帝 때, 유갱생 劉更生 [유향 劉向]이 다음과 같이 글을 올렸다. “옛날 공자는 안연 顔淵, 자하 子夏와 함께 서로 칭찬하셨으나 붕당을 이루지 않았고, 우 임금은 후직 后稷, 고요 皋陶와 함께 서로 끌어주었으나 편당을 짓지 않았으니, 어째서겠습니까?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간사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간사한 이들이 무리를 지어 함께 공모하여 올바른 신하들을 모함하고 있으니, 예로부터 명철한 군주 중에 주벌을 행하지 않고 나라를 다스린 자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순임금은 사홍 四凶에게 벌을 내리셨고,¹ 공자는 양관 兩觀에서 주벌을 행하였습니다.²”

|| 당 헌종 唐憲宗이 “사람들이 말하길 외간에서 붕당이 크게 성하다고 하니, 어째서인가?” 라고 묻자, 이강 李絳³이 “임금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신하들이 붕당을 짓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이에 대해 말해 보면 가증스럽고 찾아보면 자취가 없기 때문입니다. 동한 말기에 천하의 현인과 군자들을 모두 당인 黨人이라 몰아붙여 그들을 금고 禁錮시켰다가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하였습니다. 대개 군자는 군자끼리 합치는 법이니, 어찌 군자들을

1 순임금은 … 내리셨고: 사홍은 네 명의 악인惡人으로, 공공공고, 환도 驩兜, 삼묘 三苗, 곤 鯀을 가리킨다. 『서경』 「순전 舜典」에 “공공을 유주로 유배하고 환도를 송산으로 추방하고 삼묘를 삼위에 위리안치 圍籬安置하고 곤을 우산에 구치 拘置하였으니, 네 사람을 처벌하자 천하가 모두 복종하였다. [流共工于幽洲 放驩兜于崇山 竄三苗于三危 殛鯀于羽山 四罪而天下咸服]” 라고 하였다.

2 공자는 양관 兩觀에서 주벌을 행하였습니다: 양관은 본래 궁궐 앞 양쪽에 세운 높은 망루로, 법률을 게시해 놓는 곳이다. 공자가 노흘에서 재상의 직임을 설행할 때 소정묘少正卯를 양관 아래에서 처형한 일이 있다. (『孔子家語』 「始誅」)

3 이강 李絳: 「개언로 開言路」 법조 50번 각주 참조.

소인들과 합치게 한 뒤에야 봉당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라고 대답하였다. 또 배도裴度⁴는 “방향에 따라 종류대로 모이고, 만물은 무리에 따라 분류되는 법입니다.⁵ 따라서 군자와 소인이 뜻과 취향을 같이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이는 것도 형세상 필연적인 일이라 할 것인데, 군자가 무리를 이루면 ‘동덕同德’이라 하고 소인이 무리를 지으면 봉당이라 합니다. 그리하여 겉으로는 서로 비슷하게 보일지라도 안으로는 실로 현격하게 차이가 나니, 폐하께서 그들의 올바름과 간사함을 분별하는 데 달려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II 당 무종唐武宗⁶ 때의 일이다. 이덕유李德裕⁷가 무종에게 “간사함과 올바름 두 가지는 형세상 서로 용납되지 않지만, 군주가 분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올바른 사람은 소나무나 측백나무와 같아 다른 물건에 의지하지 않고 곳곳이 서지만, 간사한 사람은 등나무나 여라女蘿와 같아 다른 물건에 기생하지 않으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사람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군주를 섬기고, 간사한 사람은 앞다투어 봉당을 짓는 것입니다.”라고 상언하니, 무종이 이를 가납嘉納하였다.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II 북송 인종北宋仁宗 때의 일이다. 여이간呂夷簡⁸이 집권하자 그의 문하에서 등용된 자가 많았으므로 지개봉부知開封府 범중엄范仲淹⁹이 「백관승천차서도百官升遷次序圖」를 올렸다. 이

4 배도裴度: 765~839. 자는 중립중립이다. 절도사를 억압하고 환관에 대해서 강경책을 취하였다. 현종 때 재상으로 임명되어 채주蔡州에서 반란을 일으킨 오원제吳元濟를 격파하여 사로잡고 하북河北의 번진들을 정부에 복종하게 만들었다. 번진의 할거 국면을 일시 소강상태로 만든 공으로 진국공晉國公에 봉해졌다. 만년에 환관들이 득세하여 정권을 장악하자, 낙양 근교에 녹야당綠野堂을 짓고 백거이白居易, 유우석劉禹錫 등과 함께 시를 지으며 지냈다. (『舊唐書』「裴度傳」)

5 방향에 … 법입니다. 『주역』 「계사전繫辭傳」에 보인다.

6 당 무종唐武宗: 862~888. 당 제15대 황제 이엽李炎으로 재위 기간은 873년에서 888년이다. 초명은 전漣이었으나 금단金丹 중독으로 건강이 나빠지자 도사들의 조언에 따라 염炎으로 개명하였다. 환관 구사량仇士良에 의해 옹립되었으나, 이덕유李德裕를 재상으로 임명하여 국정을 맡기면서 구사량을 축출하였다. 도교를 독실하게 믿어 강력한 폐불廢佛 정책을 펼쳤다. 방술方術에 심취하였으며 결국 단약에 중독되어 사망하였다.

7 이덕유李德裕: 「근정사勤政事」, 계조 44번 각주 참조.

8 여이간呂夷簡: 「개언로開言路」, 계조 106번 각주 참조.

9 범중엄范仲淹: 989~1052. 자는 희문希文이다. 인종이 친정하자 부름을 받아 간관諫官이 되었다. 광 황후郭皇后의 폐립문제를 놓고 여이간呂夷簡 등과 대립하다가 좌천되었다. 서하西夏의 침공을 막아 공을 세운 후 관리제도와 군사제도 등을 개혁했는데, 이를 ‘경력신정慶曆新政’이라 한다. 그러나 하송夏慄 일파에 의해 좌천되어 지방관을 역임하다가 병으로 죽었다. 청렴하고 애국애민에 힘써 사대부의 모범적 인물로 꼽힌다.

에 여이간이 범중엄은 직책 밖의 일을 논하였고 천거한 이들은 모두 그의 봉당이라고 참조하니 범중엄은 지요주知饒州로 폄직되었다. 여정余靖,¹⁰ 윤수尹洙,¹¹ 구양수歐陽脩¹² 모두 범중엄이 쫓겨난 것에 대해 직간하였으며, 채양蔡襄¹³은 「사현일불초四賢一不肖」 시를 지어 범중엄, 여정, 윤수, 구양수를 찬미하고 고약눌高若訥¹⁴을 비판하였다. 이후 범중엄이 다시 임금의 총애를 얻자, 구양수는 「봉당론朋黨論」을 지어 “군자는 도를 함께하는 이를 벗이라 여기고 소인은 이익을 함께하는 이를 벗이라 여기니, 모두 자연스러운 형세이다.”라고 하였다.

|| 북송 신종北宋神宗이 등보滕甫¹⁵에게 치란治亂의 도에 대해 묻자, “치란의 도는 흑백이나 동서東西와 같으니, 색이 변하고 위치가 바뀌는 이유는 봉당이 어지럽혀 그런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신종이 “경은 군자와 소인의 당에 대해 아는가?”라고 물으니, “군자는 무리 짓지 않습니다. 초목에 비유하자면 이리저리 얽혀 서로 붙어있는 것은 덩굴풀이지 소나무나 측백나무가 아닙니다. 조정에 봉당이 없으면 중등中等 정도의 군주라도 다스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등上等의 성스러운 군주라도 위태로울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신종이 훌륭한 말이라고 여겼다.

|| 남송 효종南宋孝宗이 보신輔臣 섭형葉衡¹⁶ 등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정에서 사람을 등용할 때 그 사람의 현부賢否가 어떠한지를 논해야지 당黨에 관계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테면 당唐의 우승유牛僧孺와 이덕유李德裕가 40년 동안 서로를 공격하면서 화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모두 군주의 다스림이 밝지 못하여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10 여정余靖: 「개언로開言路」 법조 57번 각주 참조.

11 윤수尹洙: 1001~1047. 자는 사노師魯이다. 범중엄이 폄직되자 이를 간언하다가 폄직되었다. 구양수와 함께 고문古文을 창도하였으며, '하남河南 선생'으로 불렸다.

12 구양수歐陽脩: 「개언로開言路」 법조法條 55번 각주 참조.

13 채양蔡襄: 「개언로開言路」 법조法條 54번 각주 참조.

14 고약눌高若訥: 997~1055. 자는 민지敏之이다. 범중엄이 폄직당하였을 때 구양수가 그에게 편지를 보내 간언을 하지 않다고 책망하자, 그 편지를 인종에게 보이며 구양수를 탄핵하여 좌천시켰다.

15 등보滕甫: 1020~1090. 자는 원발元發이다. 초명初名은 보甫이고 자가 달도達道였는데, 노왕魯王의 휘諱를 피하여 자인 '달도'를 이름으로 삼고 다시 자를 '원발'로 고쳤다. 신종에게 신임을 받았으나 매부 이봉李逢의 역모 때문에 좌천되었다. 이후 소식蘇軾이 그를 위해 해명하는 글을 지어 주었다.

16 섭형葉衡: 1122~1183. 자는 몽석夢錫이다. 호부상서, 참지정사參知政事, 우승상右丞相을 역임하였다.

당 문종唐文宗이 ‘하북河北의 적을 제거하는 것은 쉽지만 조정안의 봉당을 제거하는 것은 어렵다.’ 라고 하였으니, 짐은 이를 듣고 웃었다. 군주는 그저 공정히 시비를 가릴 뿐이니, 당黨과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이상은 『속자치통감』에 보인다.】

|| 명 의종明毅宗 때의 일이다. 시강侍講 예원로倪元璐¹⁷가 “동림당東林黨¹⁸ 추원표鄒元標,¹⁹ 왕기王紀, 고반룡高攀龍,²⁰ 양연楊漣,²¹ 고헌성顧憲成,²² 조남성趙南星,²³ 풍종오馮從吾,²⁴ 진대수陳大受, 주순창周順昌,²⁵ 위대중魏大中, 주기원周起元, 주종건周宗建 등은 모두 진정한 이학理學, 진정한 골력骨力, 진정한 기절氣節, 진정한 청조淸操, 진정한 이치吏治를 갖춘 자들이니, 어찌 동림당의 명성과 도의를 모두 거짓이라 하겠습니까. 동림당 사람들은 최정수崔呈秀와 위충현魏忠賢이 미워하여 반드시 죽이거나 쫓아내고자 하는 자들이니 올바른 사

17 예원로倪元璐: 1593~1644. 자는 옥여玉汝이다. 전권을 휘두르던 환관 위충현의 유당遺黨을 공격하는 상소를 올려 동림당東林黨을 변호하였으며, 시강侍講에 올라 위충현이 동림당을 무함하기 위한 자료로 만든 『삼조요전三朝要典』을 없앨 것을 청해 그 판본을 불태웠다.

18 동림당東林黨: 명 신종明神宗 때 고헌성顧憲成 등이 송대宋代 양시楊時가 강학했던 동림서원東林書院을 중수하고 고반룡 등과 함께 이곳에서 강학하며 조정의 정사를 비평하였는데,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과 이에 동조했던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위충현에 항거하다가 혹독한 박해를 받았으며, 의종이 즉위하고 위충현이 실각하자 당금黨禁이 비로소 풀렸다. (『明史』「顧憲成傳」; 『明史紀事本末』「東林黨議」)

19 추원표鄒元標: 1551~1624. 자는 이첨爾瞻이다. 형부 우시랑刑部右侍郎, 좌도어사左都御史 등을 역임하였다. 수선서원首善書院을 세워 풍종오馮從吾와 함께 후진을 양성하였다. 저서로 『원학집顯學集』, 『추남고어의합편鄒南華語義合編』이 있다.

20 고반룡高攀龍: 1562~1626. 자는 운종雲從 또는 존지存之이다. 동림서원東林書院에서 주자학을 가르치고, 실학을 제창하였다. 광종光宗의 급사사건 때 환관파의 음모를 폭로하였으며, 위충현魏忠賢의 탄압을 받아 체포되기 직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1 양연楊漣: 1572~1625. 자는 문유文濡이다. 위충현의 전횡이 심해지자 조남성趙南星, 좌광두左光斗, 위대중 등과 함께 상소를 올려 위충현의 24가지 대죄를 폭로하였다. 이듬해 위충현의 무고로 고문을 받다가 옥사하였다. 저서에 『양대홍집楊大洪集』이 있다.

22 고헌성顧憲成: 1550~1612. 자는 속시叔時이다. 신종神宗이 정귀비鄭貴妃의 소생인 셋째 아들 주상순朱常洵을 편애하여 왕자 주상락朱常洛의 태자 책봉을 미루는 처사에 반대하다가 면직되었다. 후에 동림서원을 중수하여 동림당의 지도자가 되어 고반룡, 전일본錢一本 등과 함께 강학하였다.

23 조남성趙南星: 1550~1627. 자는 몽백夢白이다. 추원표, 고헌성과 함께 한대漢代의 삼군三君인 두무劉淑, 유숙劉淑, 진번陳蕃에 비견되었다. 아들 위광미魏廣微를 입각시키려다 거절당한 위충현의 무함을 받아 삭직削籍된 후 변경에서 수자리를 살다가 죽었다. 저서에 『조충의집趙忠毅集』 등이 있다.

24 풍종오馮從吾: 1556~1627. 자는 중호仲好이고 시호는 공정恭定으로, '풍공정'이라고도 불린다. 추원표와 함께 수선서원首善書院을 창건하고 강학하였다. 저서에 『원유고략元儒考略』, 『풍자절요馮子節要』, 『풍소허집馮少墟集』, 『고문집선古文輯選』 등이 있다.

25 주순창周順昌: 자는 경문景文이다. 복주 추관福州推官, 이부계훈주사吏部稽勳主事, 문선서원외랑文選司員外郎을 역임하였다. 동림당東林黨의 일원으로 위충현에 맞섰으나 그의 음해로 가혹한 형벌을 받고 옥사했다. 서화에 능했는데, 특히 묵란墨蘭을 잘 그렸다.

람이고, 동림당을 공격한 이들 중에 최정수와 위충현에게 이용을 당했지만 곧은 절개로 아첨하지 않아 소원해지거나 쫓겨난 사람들 역시 올바른 사람입니다. 최정수와 위충현을 기준으로 정직함과 간사함을 판단하는 것은 거울로 아름다움과 추함을 구별하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하니, 의종이 이를 옳게 여겼다. 【『명사강목』에 보인다.】

계조 戒條

|| 후한 환제後漢桓帝가 여오후蠡吾侯일 때 감릉甘陵의 주복周福²⁶에게 수학하였는데, 즉위한 뒤 그를 발탁하여 상서尙書로 삼았다. 같은 고을의 하남윤河南尹 방식房植²⁷도 유명하였으니, 두 집안의 빈객들이 마침내 각각 자기 무리를 심어 점차 혐극嫌隙이 생겼다. 이로 인해 감릉에는 남부와 북부 두 당파가 생겼으니, 붕당의 의론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환관들이 뇌수牟修²⁸에게 사주하여 글을 올려 태학太學의 유사遊士들이 붕당을 만들어 조정을 비방한다고 고변하게 하였다. 이에 환제가 진노하여 군현에 조칙을 내려 당인黨人들을 체포하고, 이응李膺²⁹ 등을 황문북시옥黃門北寺獄³⁰에 하옥하였다. 상소에 연명連名된 두밀杜密,³¹ 진식陳寔,³² 범방范滂³³의 무리 200여 명을 잡느라 사자使者들이 사방으로 나갔다.

26 주복周福: 자는 증진仲進이다. 환제의 스승으로 상서尙書에 발탁되었으므로 사람들이 “스승이 된 인연으로 벼슬을 얻은 이는 주증진周仲進이라네.”라고 노래하였다고 한다. (『後漢書』 「黨錮傳」)

27 방식房植: 자는 백무伯武이다. 하남 윤河南尹, 소부小府, 사공司空을 역임하였으며, 치적으로 명성이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천하의 법도가 되는 사람은 방백무房伯武라네.”라고 노래하였다고 한다. (『後漢書』 「黨錮傳」)

28 뇌수牟修: 방사方士 장성張成의 제자이다. 장성이 이응李膺에 의해 살해당하자 환관들의 사주를 받아 글을 올려 이응 등을 무고했다.

29 이응李膺: 110~169. 자는 원례元禮이다. 효렴孝廉으로 천거되어 청주 자사靑州刺史, 하남윤을 역임하였다. 당시에 인망이 높았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접견하기만 해도 ‘용문에 올랐다[登龍門]’고 말하였다.

30 황문북시옥黃門北寺獄: 한대漢代 황문서黃門署 관하의 감옥으로, 주로 장상將相이나 대신大夫를 국문하거나 가두었다. 궁내 북쪽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불렸다.

31 두밀杜密: ?~169. 자는 주보周甫이다. 상서령尙書丞, 하남윤, 태복太僕을 역임하였다. 이응李膺과 명성을 나란히 해 당시 ‘이두李杜’로 불렸다.

32 진식陳寔: 104~187. 자는 중궁仲躬이다. 송사訟事를 공정하게 판정하였다.

33 범방范滂: 137~169. 자는 맹박孟博이다. 효렴孝廉으로 천거되어 청조사淸詔使와 광록훈주사光祿勳主事를 지냈다.

|| 후한 영제後漢靈帝 때의 일이다. 이응李膺 등이 비록 금고禁錮를 당하였으나 천하가 그의 도道를 높여 숭상하고 서로 표방하여 삼군三君, 팔준八俊, 팔급八及, 팔주八廚라는 호칭³⁴이 있었다. 이에 환관 조절曹節³⁵ 등이 유사有司에게 구당鉤黨을 이룬 자들을 고문하여 죄를 다스리도록 넌지시 주청을 올리게 하였는데, 이때 영제의 나이가 14세였다. 영제가 조절에게 “구당이란 무엇인가? 어떤 악행을 저질렀기에 죽이고자 하는가?”라고 물으니,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영제가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라고 하자, “사직社稷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니, 영제가 주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이응 등이 조옥詔獄에 나아가 죽었고, 그의 문생門生과 옛 관리들이 모두 금고를 당하였다. 이후 천하의 호걸과 훌륭한 행실이 있는 유학자를 환관들이 일체 당인으로 몰아붙였다. 도로장군度遼將軍 황보규皇甫規³⁶는 자신이 서주西州의 호걸로서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였다. 이에 “신이 전에 옛 대사농大司農 장환張奐을 천거하였으니 이는 당에 아부한 것이요, 태학생 장봉張鳳 등이 상서上書하여 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였으니 이는 당인이 신에게 아부한 것입니다. 신은 마땅히 연좌되어 처벌받아야 합니다.”라고 글을 올렸는데, 조정에서는 불문에 부쳤다.

|| 당 목종唐穆宗 때의 일이다. 이덕유李德裕³⁷는 이길보李吉甫³⁸의 아들인데, 중서사인中書舍人 이종민李宗閔³⁹이 대책對策을 지어 그의 아버지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그에게 원한을 품었다. 또 이덕유가 이종민의 사위 소소蘇巢가 청탁을 통해 진사가 되었음을 입증하니, 이때

34 삼군三君 … 호칭: 후한 영제 때 환관의 횡포에 맞섰던 명사名士에게 붙인 호칭이다. 삼군은 ‘온 세상이 종주로 삼는 세 사람’이라는 말로, 두무實武, 유숙柳淑, 진번陳蕃을 가리킨다. 팔준은 ‘영결英傑 여덟 사람’이라는 말로, 이응, 손익손翊, 두밀杜密, 왕창王暢, 유우劉祐, 위량魏朗, 조전趙典, 주우朱寓를 가리킨다. 팔급은 ‘사람들의 추종을 이끈 여덟 사람’이라는 말로, 장검張儉, 잠질잠뎬, 유표劉表, 진상陳翔, 공옥孔昱, 원강苑康, 단부壇敷, 적조翟超를 가리킨다. 팔주는 ‘재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한 여덟 사람’이라는 말로, 도상度尙, 장막張邈, 왕고王考, 유유劉儒, 호모반胡毋班, 진주秦周, 번향番嚮, 왕장王章을 가리킨다.

35 조절曹節: ?~181. 영제를 책립冊立한 공으로 장안향후長安鄉侯에 봉해진 뒤에, 환관 왕보王甫 등과 함께 권력을 전횡하였고 조사詔書를 위조하여 대장군 두무實武와 태부太傅 진번陳蕃을 죽였다. 사후에 거기장군車騎將軍에 증직되었다.

36 황보규皇甫規: 104~174. 자는 위명威明이다. 태산 태수泰山太守, 도로장군度遼將軍, 호강교위護羌校尉 등을 역임하였다. 환관에게 아부하지 않아 무함을 받고 하옥되었는데, 태학생 300여 명 등이 구명하여 사면을 받고 풀려났다. (『後漢書』 「黨錮傳」)

37 이덕유李德裕: 「근정사勤政事」, 계조 44번 각주 참조.

38 이길보李吉甫: 「근정사勤政事」, 법조 8번 각주 참조.

39 이종민李宗閔: ?~846. 자는 손지損之이다. 대책을 올려 이길보를 비판하자 정계에서 배제되었다가 목종이 즉위한 뒤 중서사인, 이부시랑吏部侍郎, 동평장사同平章事 등을 역임하였다.

부터 이덕유와 이종민이 각각 봉당朋黨으로 나뉘어 번갈아 서로 모함하고 알력을 빚은 것이 40년이다. 우승유牛僧儒⁴⁰가 재상이 되고 이덕유가 외직으로 나가 절서 관찰사浙西觀察使가 되어 8년 동안 승진하지 못하니, 이덕유는 이봉길李逢吉⁴¹이 자신을 배제하고 우승유를 추천한 것이라고 여겼다. 그리하여 우승유와 이덕유의 원한이 더욱 깊어졌다.

|| 당 문종唐文宗이 이덕유와 이종민의 당파에 대해 걱정하여 늘 탄식하며 “하북河北의 적을 제거하는 것은 쉽지만 조정 안의 봉당을 제거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였다.

|| 당 소종唐昭宗⁴² 때의 일이다. 이진李振⁴³이 여러 차례 진사시進士試에 응시하였으나 끝내 급제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벼슬하는 자들을 깊이 미워하여 주전충朱全忠⁴⁴에게 “이 무리는 항상 스스로清流淸流라고 말하니, 마땅히 이들을 황하黃河에 던져 탁류濁流가 되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주전충이 배추裴樞, 독고손獨孤損, 최원崔遠, 육의陸扈, 왕부王溥, 조송趙崇, 왕찬王贊 등과 조정의 인사 중에 좌천된 자 30여 명을 백마역白馬驛에 모아서 하루 저녁에 모두 죽여 시신을 황하에 던졌다.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 북송 철종北宋哲宗⁴⁵ 때의 일이다. 사마광司馬光이 죽자 백관百官들이 하례할 일이 있어 마치

40 우승유牛僧儒: 779~847. 자는 사암思黯이다. 현종憲宗 때, 이길보의 배척을 받아 오랫동안 서용敍用되지 못하다가 목종穆宗의 신임을 받아 호부시랑 동평장사戶部侍郎同平章事가 되었다. 후에 이종민과 합심하여 이덕유 등을 배척했는데, 이를 ‘우이당쟁牛李黨爭’이라 일컫는다.

41 이봉길李逢吉: 758~835. 자는 허주虛舟이다. 급사중給事中, 문하시랑門下侍郎을 역임하였다. 황보박皇甫鎛과 결탁하여 악행을 일삼았다.

42 당 소종唐昭宗: 867~904. 당 제19대 황제 이연李晔으로, 재위 기간은 887년에서 904년이다. 의종의 일곱째 아들로, 환관 세력에 의해 옹립되었다. 일부 환관이 반란을 일으켜 소종을 퇴위시키고 태자 이유李裕를 즉위시켰는데, 반대파 세력에 의해 다음해 복위되었다. 이무정李茂貞을 중심으로 하는 반란군이 장안長安을 압박하자 피난 갔다가 주전충에게 시해되었다.

43 이진李振: ?~923. 주전충周全忠의 좌리佐吏로 있으면서 권력을 독단하였다.

44 주전충朱全忠: 852~912. 오대五代 후량 태조後梁太祖로, 재위 기간은 907년에서 912년이다. 본래 이름은 ‘온溫’으로, 당 희종唐僖宗 말기에 발생한 황소黃巢의 난에 부장部將으로서 가담하였다가 관군에 항복한 뒤, 희종으로부터 ‘전충全忠’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았다. 그 뒤 황소의 잔당을 평정한 공으로 양왕梁王에 봉해졌고, 이극용李克用과의 권력 경쟁에서 승리하여 당의 실권을 장악하였다. 희종의 뒤를 이은 소종昭宗을 살해하고 애제哀帝를 세운 뒤, 제위를 양위 받아 양梁을 세웠다.

45 북송 철종北宋哲宗: 1077~1100. 북송 제7대 황제 조후趙煦로, 재위 기간은 1085년에서 1100년이다. 즉위한 후 고 태후高太后가 수렴청정하였고 사마광, 여공저, 문연박이 재상의 직임을 맡았다. 이때 장돈, 채확 등 신당新黨을 축출했는데, 태후가 죽고 친정을 시작하자 장돈을 재상으로 삼으면서 사마광, 여대방, 소식, 소철 등의 구당파舊黨派를 파직하고 신종 때의 신법新法을 부활시켰다.

고 조문하려고 하였다. 이에 정이程頤가 “안 된다. 공자께서도 조문 가서 곡뭇을 한 날에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자, 소식蘇軾이 “저자에서 억울하게 죽은 숙손통叔孫通이 이러한 예禮를 만들었구나.”⁴⁶”라고 하니, 결국 두 사람 사이에 혐극嫌隙이 생겼다. 당시 여러 현인賢人이 조정에서 부류에 따라 어울리지 않을 수 없었으니, 낙당洛黨이니, 촉당蜀黨이니, 삭당朔黨이니 하는 말이 있게 되었다. 낙당은 정이를 영수領袖로 하여 주광정朱光庭, 가이賈易 등이 보좌하였고, 촉당은 소식을 영수로 하여 여도呂陶 등이 보좌하였고, 삭당은 유지劉摯, 양도梁燾, 왕암수王巖叟, 유안세劉安世가 영수였으며 보좌하는 이들이 매우 많았다.

|| 북송 휘종北宋徽宗 때의 일이다. 채경蔡京이 원우元祐, 원부元符 연간 말의 사마광司馬光, 소식蘇軾, 정이程頤 등 120인을 기재하여 간당蠶黨이라고 몰아세우고, 휘종에게 청하여 그들의 이름을 적고 돌에 새겨 단례문端禮門에 세우고 간당비蠶黨碑를 반포하여 주현州縣에 새기게 하였다.⁴⁷ 장안長安의 석공石工 안민安民이 글자를 새기면서 비석 끝에 안민 두 글자를 새기지 않게 해 달라고 청하였으니, 후세에 죄를 얻을까 두려워서이다. 【이상은 『속자치통감』에 보인다.】

|| 명 신종明神宗 때의 일이다. 각신閣臣 왕가병王家屏⁴⁸이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자, 신시행申時行⁴⁹과 왕석작王錫爵⁵⁰은 내심 언관言官들을 성가신 존재로 여겼다. 왕

46 저자에서 … 만들었구나: 북송北宋 사마광이 사망하였을 때, 정이가 교례郊禮에 하례賀禮하는 일 때문에 그날 조문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소식이 “공자孔子가 그날에 곡을 하면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노래를 불렀다면 곡하지 않는다”라고 한 말은 들어보지 못하였다.[子於是日哭則不歌 卽不聞歌則不哭]라고 정이를 비판하였으니, 자질한 예에 얽매어 있음을 한대漢代에 조정 의례를 제정한 숙손통에 비유하여 말한 것이다.

47 채경蔡京이 … 하였다: 북송 철종 때 사마광이 재상이 되고 나서 왕안석王安石이 신종神宗 때에 실시한 신법을 모두 폐지하고 옛 법을 회복하였는데, 장돈章惇이 재상이 된 뒤에 다시 사마광 등을 배척하여 조정에서 축출하였으며, 채경蔡京이 재상이 된 뒤에는 사마광, 문언박文彦博, 소식, 정이 등 120인을 간당蠶黨으로 지목하여 이른바 원우간당비元祐蠶黨碑를 세우고, 다시 사마광 이하 309인을 기록하여 원우당적비元祐黨籍碑를 세운 뒤에 천하에 반포하였다. (『宋史』「徽宗本紀」, 「姦臣傳」)

48 왕가병王家屏: 1536~1604. 자는 충백忠伯이다. 이부 좌시랑吏部左侍郎, 수보수輔를 역임하였다. 신종神宗이 조회에 나오지 않고 황태자 책봉을 미루자 왕가병이 이에 대해 간언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는 병을 이유로 사직하고 귀향함으로써 신종의 행동을 촉구하였다. 그가 귀향한 후 8년이 지나서야 신종이 황태자를 세웠다. 저서에 『왕문단집王端文集』 등이 있다.

49 신시행申時行: 1535~1614. 자는 여묵汝黻이다. 이부상서, 수보수輔를 역임하였다. 장거張居正이 시행한 고성법考成法을 폐지하는 등 관대한 정치를 펴 태평재상太平宰相이라 불렸다. 저서에 『서경강의회편書經講義會編』과 『사한당집賜閣堂集』 등이 있다.

석작이 고헌성(顧憲成)에게 “지금 괴이한 것은 묘당(廟堂)에서의 시비에 대해 천하가 이를 기필코 반대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자, 고헌성이 “내가 보기에는 천하의 시비에 대해 묘당이 반드시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여, 결국 서로 뜻이 맞지 않았다. 이부(吏部)가 후임 각신을 추천하면서 왕가병의 이름을 올리니, 신종이 내키지 않아 하고서 심일관(沈一貫)을 예부상서(禮部尙書)로 삼아 내각에 들였다. 이에 고헌성이 이부를 구원하는 상소를 올리자, 신종이 노하여 고헌성 등을 폄적하였다. 고헌성이 폄적당하고 나서 양시(楊時)의 동림서원(東林書院)에서 강학을 시행하니, 천하가 이를 추종하였다. 손비양(孫丕揚),⁵¹ 추원표(趙元標), 조남성(趙南星)의 무리는 거리낌 없이 바른말을 한다고 자부하며 매양 정부와 대치하였으며, 심일관은 자신의 기량을 과시하며 권세를 끼고 이기려고 하니, 쫓겨난 자들은 몸은 떠났지만 명성은 더욱 높아졌다. 이것이 동림당(東林黨)과 절당(浙黨)⁵²의 시작이다.

|| 명 신종(神宗) 때의 일이다. 조정의 의론이 분열되자 태학사(太學士) 섭향고(葉向高)⁵³가 “열국으로 나뉘어 다투거나 남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는 어떤 나라 사람, ‘남쪽 사람’, ‘북쪽 사람’이라는 호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하는 한 집안이고 만백성은 한 임금을 섬기고 있는데도 경계를 긋고 구역을 나누어 다른 나라처럼 나뉘어 있으니, 이른바 ‘진인(秦人)’, ‘진인(晉人)’, ‘초인(楚人)’, ‘제인(齊人)’, ‘절인(瀾人)’이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명칭으로 저를 부르고 저 역시 이러한 명칭으로 스스로를 칭하니, 편협할 뿐만 아니라 상서롭지도 못합니다.”라고 상소하였는데, 비답을 내리지 않았다.

50 왕석작(王錫爵): 1534~1614. 자는 원어(元叔), 호는 형석(荊石)이다. 회시(會試)에서 1등으로 급제하고 정사(廷試)에서 2등으로 급제하여 국자감(監)주, 예부상서, 내각수부 등을 역임하였다. 아들 왕형(王衡)도 정사에서 2등으로 급제하여 사람들이 “부자가 모두 2등으로 급제했다.”고 칭찬했다고 한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을 때, 일본과의 전쟁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였는데, 왕석작은 일본이 조선을 발판으로 명을 침략하려는 목적을 간파하고 일본과의 전쟁을 강력 주장하였다. 저서에 『왕문숙집(王文肅集)』, 『문숙주초(文肅奏草)』 등이 있다.

51 손비양(孫丕揚): 1532~1614. 자는 숙효(叔孝)이다. 장거정(張居正)과 마찰을 빚어 병을 핑계로 사직하였다가 장거정이 죽자 응천(應天)尹으로 복귀하였다. 관리들의 청탁을 막기 위해 이부에서 관리를 선발하는 철침법(掣籤法)을 고안하였다.

52 절당(浙黨): 동림당을 반대하는 데 앞장섰던 정파 가운데 하나로, 절강성(浙江省) 출신 관료와 사인이 주축이 되었다. 동림당 고헌성의 인사 추천에 분개한 심일관(沈一貫)이 요정문(姚廷元), 방중철(方從哲) 등 절강 출신 사인들을 기용하면서 절당이라 지칭되었다. 이후 관응진(官應震)과 오량사(吳亮嗣)를 주축으로 하는 초당(楚黨), 산둥 출신 기시교(卮詩教)를 주축으로 하는 제당(齊黨)이 가세하여 비동림당(非東林黨)이라 불리며 동림당을 공격하였으니, 이를 이르러 동림전쟁(東林戰爭)이라 한다.

53 섭향고(葉向高): 자는 진경(進卿)이다. 동림당과 비동림당이 대립하자 중간에서 조정하려고 힘썼으나, 불만을 품은 자들이 동림당의 과수라고 몰아붙여 파직되었다.

|| 명 희종明熹宗 때의 일이다. 대리시승大理寺丞 서대화徐大化가 양연楊漣과 좌광두左光斗 등이 같은 당이라 한데 뭉쳐서 다른 당을 배격하고 권세를 부리며 뇌물을 받았다고 탄핵하니, 희종이 호부주사戶部主事에게 추국을 명하였다. 조흠曹欽은 조남성趙南星과 위대중魏大中 등이 웅정필熊廷弼의 뇌물을 받았다고 논하면서 왕문언汪文言을 증거로 삼고 제현諸賢을 줄줄이 거론하였다. 이에 위충현魏忠賢은 조서를 꾸며 진무사鎭撫使 허현순許顯純⁵⁴으로 하여금 혹형酷刑을 내리게 하였으나, 모두 불복하였으며 양연과 좌광두, 위대중, 원화중袁化中, 주조서周朝瑞 등이 모두 옥사獄死하였다. 【이상은 『명사강목』에 보인다.】

근안 謹按

삼가 살펴보건대, 옛날의 붕당은 현사賢邪가 대립하는 것이었고 그 다툼은 한 때에 그쳐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곧 잦아들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붕당은 사그라들었다가 또 다시 드세져서 각기 고수하는 바가 누대에 걸쳐 전해지면서 점점 더 만연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에 대처하는 방법은 옛날과는 다릅니다. 아, 이미 고질이 된 습속은 갑자기 변화시킬 수 없고 이미 정해진 명목 역시 대번에 혁파하기 어려우니, 윗자리에 있는 자가 오로지 공명정대한 마음으로 현우賢愚와 선악善惡을 보고서 취사선택해야 합니다.

대개 우리나라는 명종과 선조대에 조정의 신하들이 분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작은 일로 시작되어 점차 치우친 색을 만들어 동인東人이라 하고 서인西人이라 하였는데, 뿌리가 점차 깊어지고 견고해져 동은 다시 나뉘어 남인南人和 북인北人이 되고 서는 다시 나뉘어 노론老論과 소론少論이 되었습니다. 칭찬하여 옳다고 하는 것이 꼭 모두 옳은 것은 아니며, 배척하여 그르다고 하는 것이 꼭 모두 그른 것은 아닙니다. 충성을 다하고 지조가 있는 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보잘것없는 용렬한 자가 뒤섞여 있으며 간사하고 속임을 일삼는 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강직하고 청렴한 자들이 뒤섞여 있기도 합니다. 의론을 서로 치켜세워 주니 이익이 이로써 뒤따르고, 과실을 서로 비호해 주니 세력이 이로써 만들

54 허현순許顯純: ?~1628. 금의위도지휘첨사錦衣衛都指揮僉事, 진무사를 역임하였다. 위충현과 당을 지어 전이경토爾耕, 최응원崔應元, 양환楊寰, 손운학孫雲鶴과 함께 '오표五彪'로 불렸으며, 양연楊漣, 좌광두左光斗, 황존소黃尊素, 주순창周順昌 등이 그에게 죽임을 당했다. 위충현이 실각하자 피살당했다.

어집니다. 이러한 풍조가 점차 아교처럼 굳어져 자손에게 전해지고 대대로 인습하여 변고가 차츰 생겨나고 살생이 빈번하게 일어나니, 나라의 불행이 아아! 또한 심합니다. 을해년(1575)의 당론⁵⁵이 처음 일었을 때 선정신 이이李珥가 양쪽을 중재하면서 온힘을 다해 마음을 썼으나, 일 만들기 좋아하는 한 무리가 제멋대로 모함하여 기필코 이기려는 계책을 실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지류가 점차 변하여 계축년(1613)에 인륜을 어지럽히는 죄⁵⁶를 저지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당색을 가지고 있되 유연한 태도를 가진 자들 중에는 명망과 덕으로 취할만한 이가 많았으니, 이것이 인묘仁廟[인조]께서 선한 무리를 대거 등용할 때 그들을 참용參用하신 이유입니다.⁵⁷ 기해년(1659)의 예론禮論⁵⁸이 처음 일었을 때, 선정신 송시열宋時烈이 경전의 뜻을 근거로 올바른 견해를 진술하였는데, 화禍를 일으키기 좋아하는 무리가 앞장서서 공격하고 배척하여 스스로 바름을 해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⁵⁹ 그리하여 수렁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점차 심해져 결국 경신년(1680)에 역모에 해당하는 주벌을 받게 되었습니다.⁶⁰ 그러나 같은 당색을 가지고 있되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자들 중에는 간혹 생각이 조금 다른 이가 있었으니, 이것이 숙묘肅廟[숙종]께서 공정한 법도를 이미 행한 후에 그들을 모두 기용한 이유입니다.⁶¹ 경신년 이후 일개의 무리가 겉으로는 훈척勳戚을 배척하는 청의淸議를 빌렸으나 속으로는 화복禍福만 돌아보는 사심을 품

55 을해년의 당론: 1575년에 일어난 정쟁조정 사건으로, 당시 동서 양당으로 갈라져 당쟁의 조짐이 일자 이이李珥가 주동이 되어 정쟁의 주요 발단이 된 김효원金孝元和 심의겸沈義謙을 지방관으로 파견한 일을 가리킨다. 이 일로 이이는 심의겸을 주축으로 하는 동인의 비난을 받게 되었다.

56 계축년에 인륜을 어지럽히는 죄: 1613년에 대북파大北派가 영창대군永昌大君 및 반대파 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일으킨 옥사를 가리킨다. 동인은 정철의 처벌 수위를 놓고 대립하다가 서인에 대한 강경파인 북인과 온건파인 남인으로 분리되었는데, 임진왜란 이후 주전론主戰論을 펼치고 의병을 일으킨 북인이 정국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북인은 현실정치에 이견이 대립되었던 차에 세자를 책봉하는 견해의 차이로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과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소북으로 갈라졌다.

57 인묘仁廟께서 ... 이유입니다: 인조가 집권한 뒤 서인이 정권을 주도하였으나 남인이었던 이원익李元翼이 재상의 지위에 오르면서 숙종 때까지 100여 년 동안 서인과 남인의 공존을 바탕으로 한 대립이 계속되었다.

58 기해년의 예론禮論: 1659년 효종이 사망하자 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제를 두고 일어난 논쟁을 가리킨다. 현종은 서인이었던 송시열宋時烈, 송준길宋浚吉 등이 효종이 차차이므로 기년복基年服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를 따랐다.

59 화禍를 ... 낳았습니다: 1674년에 인선왕후仁宣王后 장씨張氏가 사망하자 자의대비의 복제 문제를 두고 갑인예송甲寅禮訟이 있었는데, 효종은 기년복基年服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 남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로 인하여 송시열, 송준길 등의 서인은 정치적 위기에 몰렸으며 허적許積, 윤희尹彞 등 남인들이 실권을 장악하였다.

60 경신년에 ... 되었습니다: 갑인예송으로 정권을 장악한 남인은 허견許堅이 숙종의 5촌인 북창군福昌君, 북선군福善君, 북평군福平君 3형제와 결탁하여 역모를 꾸민 것이 밝혀져 몰락하였으며, 이로 인해 서인이 득세하였다.

61 숙묘肅廟께서 ... 이유입니다: 1689년에 숙종이 희빈 장씨의 소생인 윤씨를 원자元子로 삼으려는 남인의 손을 들어주면서 서인을 몰아내고 재집권한 기사환국己巳換局을 가리킨다.

어 강직한 이들을 가리켜 모질고 과격하다고 하고 간사한 짓을 함에도 공명정대하다고 자부하니, 말류의 폐단이 점차 심해졌습니다. 이를테면 「신유의서辛酉擬書」⁶²는 사람의 도리로 감히 하지 못할 일인데 경중을 따지는 논의로 꽤가 갈려 다두고, 갑술년(1694)에 역적을 토벌한 것⁶³은 왕조의 기강과 관계된 것인데 심원한 설로 애매모호하게 하여, 병술년(1706)에 한 번 부딪히고⁶⁴ 병신년(1716)에 재차 부딪쳤습니다.⁶⁵ 신축년(1721) 건저建儲에 이르러서는 우주를 지탱하고 만고를 아우르는 큰 의리를 막고,⁶⁶ 무신년(1728)에는 궁궐을 범하는 데에 이르고⁶⁷ 을해년(1755)에는 그들의 소굴이 모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⁶⁸

대체로 그 발단을 가지고 말하자면 그들의 지벌地黜과 문학은 피차 사류 간에 서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데, 문호를 나누는 자들은 스스로 근거하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는 진실로 현명한 사람이 아니면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끝에 이르면 충신忠臣과 역신逆臣으로 갈리니, 충신은 무엇 때문에 충신이 되고 역신은 무엇 때문에 역신이 되겠습니까? 처한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비교하며 돌아보는 자는 지력智力이 이익에 의해 어두워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라를 망치고 집안을 해치게 되고, 일에 임하여 명백하고 정직하게 해나가는 자는 일이 의리와 부합하여 미리 계산하고 도모하지 않아도 나라를 구원하고 사직을 받들 수 있게 됩니다. 만일 피차의 시말을 분별

62 신유의서辛酉擬書: 신유년(1681)에 윤증尹拯이 송시열에게 보내려고 했던 서찰로, 본래의 제목은 「의여회천사擬與懷川書」이다. 주자朱子를 신봉했던 송시열을 두고 정작 그의 행동은 주자의 가르침과 다르다고 공박한 내용이다. 윤증은 박세채朴世采의 만류로 편지를 부치지 않았으나, 그 후 송시열의 손자이자 박세채의 사위인 송순석宋淳錫이 몰래 빼가서 송시열에게 전하여 세상에 알려졌다. 이는 당시 집권세력이었던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파되는 회니시비懷尼是非의 발단이 되었다.

63 갑술년에 역적을 토벌한 것: 1694년에 폐비 민씨廢妃閔氏 복위운동을 반대하던 남인이 화를 입어 실각하고 소론과 노론으로 나뉜 서인이 재집권하게 된 갑술환국甲戌換局을 가리킨다.

64 병술년에 한 번 부딪히고: 1706년 박태춘朴泰春이 당시 세자였던 경종을 두고 '세자모해설'을 유포한 혐의로 정배定配된 일을 말한다.

65 병신년에 재차 부딪쳤습니다: 1716년에 송시열과 윤증 간의 회니시비懷尼是非에 대해 국왕이 윤증의 잘못으로 판정한 병신처분申處分을 가리킨다.

66 신축년 … 막고: 1721년에 당시 실권을 장악한 노론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영조를 왕세제 책봉하고 이어서 대리청정까지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유배형을 받게 되었던 신축옥사辛丑獄事를 가리킨다.

67 무신년에는 … 이르고: 노론이 지지한 영조가 즉위하자 정치적 위협을 느낀 소론 일부 세력이 영조와 노론을 제거하고 밀풍군密豊君 이탄李坦을 왕으로 추대한 무신란戊申亂을 가리킨다. 이인좌李麟佐를 주축으로 일어났으므로 '이인좌의 난'이라고도 한다.

68 을해년에는 … 되었습니다: 무신란에 연루되어 20년 동안 적소竊所에 있던 윤지尹志가 1775년 나주 객사에 나라를 비방하고 영조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내용의 글을 붙였다. 이른바 '나주괘서사건'으로, 영조는 이와 연루된 소론 세력을 대거 숙청하였고 이를 '을해옥사乙亥獄事'라고 일컫는다.

하고자 하신다면, 그 요체는 공사와 의리의 기미가 어떠한지를 잘 살피는 데에 있습니다. 중간에 일을 맡은 한두 신하가 조화를 이루는 데 힘써 시대를 구원하는 계책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도리어 시비를 흐려 풍속을 무너뜨리는 잘못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천의소감 關義昭鑑』⁶⁹이 나오고서야 나라가 크게 밝아졌으니, 이는 바로 인심人心을 경계토록 하고 왕도王道를 펼칠 수 있는 때입니다.

누대에 걸쳐 일어난 화란禍亂은 이미 지난 일이지만 이를 진압하는 계책은 지금도 귀하니, 방비를 엄하게 하지 않아서는 안 되지만 너무 심한 논의를 치우치게 주장해서는 안 되며, 조정을 공정하게 하지 않아서도 안 되지만 또 번갈아 기용하는 정사를 고수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마음가짐을 허심탄회하게 하여 ‘당黨’이니 ‘붕朋’이니 하는 것을 모두 잊고 동인, 서인, 남인, 북인을 막론하여 정직한 자는 장려하고 아첨하는 자는 물리치며, 유능한 이를 천거하는 자가 있거든 같은 당인을 천거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말고, 악한 이를 물리치는 자가 있거든 다른 당인을 공격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피차를 두지 말아 풍속이 크게 변화되면 오랜 당여들이 점차 사라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논의가 제멋대로 생겨나는 일도 없게 될 것입니다. 주자朱子が “먼저 현부賢否와 충사忠邪를 분별하여 과연 현명하고 충직하다면 공개적으로 그들을 진출시켜 오직 그들의 도가 성장하지 않을까 걱정해야 하며, 과연 어리석고 간사하다면 공개적으로 그들을 축출하여 오직 그들의 도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천하의 일에 희망이 있게 될 것이다.”⁷⁰라고 하였으니, 유념하고 유념하소서.

69 천의소감關義昭鑑: 영조가 자신의 집권 의리執權義理를 천명하게 한 책이다. 영조는 1721년 자신이 왕세제로 책봉된 이후 1755년 을해옥사가 일어나기까지 지속적으로 자신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역모가 발생하자, 자신의 왕위 계승이 정당한 것이었음을 밝히고 국시國是를 확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영조는 『천의소감』 간행 작업에 김재로金在魯, 이천보李天輔 등 노론, 소론, 남인 인사들을 두루 참여시키고, 자신이 세제로 책봉된 이후로 발생한 사건들의 경위와 관련자들의 죄과와 처벌을 명시하여 자신의 정통성을 천명하였다.

70 먼저 … 것이다: 「여유승상서與留丞相書」에 나오는 내용으로, 주희朱熹가 사대부의 붕당을 걱정한 승상 유정畝正에게 글을 보내어 군자의 당을 적극적으로 옹호한 내용이다.

칙무비 飭武備

군비 軍備를 갖추다

법조 法條

|| 노 장공魯莊公이 제齊와 전쟁을 하려 할 때, 조귀曹鬮가 알현을 청하여 무엇을 믿고 전쟁을 하느냐고 물었다. 장공이 “생활에 보태어 쓸 옷과 음식을 반드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라고 하니, 조귀가 “작은 은혜라서 두루 미치지 않으니, 백성이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장공이 “제사 때 희생과 옥과 비단을 올리고, 사실대로 고할 것이다.”¹라고 하니, 조귀가 “작은 신의라 신이 믿지 않을 것이니, 복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장공이 “크고 작은 옥사를 반드시 그 사정을 헤아려 처리할 것이다.”라고 하니, 조귀가 “백성들을 위한 마음에 속하니, 한 번 싸워 볼 만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 진 문공晉文公이 삼군三軍을 만들고 2년 만에 전쟁에 쓰려고 하니, 자범子犯이 “백성이 아직 도의를 모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안으로 백성을 이롭게 하는 데 힘쓰니 백성의 생활이 안정되었다. 다시 삼군을 전쟁에 쓰려고 하니, 자범이 “백성이 아직 신의를 모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원原을 정벌하여 신의를 보이니,² 백성이 교역하면서 부당하게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 하지 않았다. 문공이 “이제 괜찮은가?”라고 물으니, 자범

1 사실대로 고할 것이다: 저본의 원문은 “犧牲玉帛 必以信”인데, 원전인 『춘추좌씨전』에는 “必以信” 앞에 “弗敢加也”라는 문장이 있다. 이는 신에게 고해야 할 내용을 거짓으로 부풀려서 고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2 원原을 정벌하여 신의를 보이니: 주 양왕周襄王이 진 문공에게 주周의 직할지 원原을 하사하였는데, 원이 문공에게 복종하지 않았다. 그러나 진 문공이 신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이자 원의 사람들이 진 문공에게 귀의하였다. 「신사교信辭教」 법조 기사에 보인다.

이 “백성이 아직 예의를 모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수大蕩³를 거행하여 예의를 보이자 백성이 명령을 따르고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삼군을 이끌고 한 번 전쟁하여 패자霸者가 되었으니,⁴ 문공의 교화가 결실을 거둔 것이다.

|| 초 평왕楚平王⁵이 연단然丹을 종구宗丘로 보내 국도의 서쪽 군대⁶를 선발하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물자를 지급하고 궁핍한 자를 구제하며, 어린 고아를 길러주고 병든 늙은이를 봉양하며, 재해를 입은 자를 돕고 죄인을 사면하며, 간특한 자를 문책하고 재능을 펴지 못하고 눌러있던 이를 거용하며, 외지에서 새로 온 사람을 예우하고 옛 관원을 서용하게 하였다. 굴파屈罷를 소릉召陵에 보내 국도의 동쪽 군대를 선발하게 하고, 연단과 마찬가지로 하게 하였다. 변경의 이웃 나라와 우호를 맺어 백성들을 5년 동안 쉬게 하였으니, 그런 뒤에야 전쟁에 나섰다. 【이상은 『춘추좌씨전』에 보인다.】

|| 전한 경제前漢景帝 때, 조조晁錯가 상언하였다. “진秦의 수졸戍卒은 풍토를 이기지 못하였으니,⁷ 변방에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정착하여 살 자를 선발하여 높은 성과 깊은 해자를 만들게 하시는 것만 못합니다. 백성을 모집함에 죄를 사면하고 관직을 주며 옷과 식량을 내리시면, 마을끼리 서로 도와 오랑캐에게 달려들어 죽음도 불사할 것이니, 이는 임금에게 보답하고자 해서가 아니라 친척을 보호하고자 하며 그 재물을 이롭게 여겨서입니다. 이는 동방의 수졸이 변방의 지세에 익숙하지 못하여 마음속으로 오랑캐를 두

3 대수大蕩: 군대를 대대적으로 검열하고 지위와 등급을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다.

4 한 번 … 되었으니: 진 문공平文公이 초楚와 성북城濮에서 일전一戰을 벌여 크게 이기고 패권을 차지함을 말한다.

5 초 평왕楚平王: 춘추 시대 초의 군주로, 성은 미(米), 씨는 웅(熊)이며, 초명은 기질(棄疾)이었다가 즉위 후 거록(居)로 개명하였다. 반란을 통해 즉위하여 초기에는 내치(內治)와 외교(外交) 양면으로 잘 다스려 초楚의 중흥을 이끌었으나, 후기에는 간신 비무극(費無極) 비무기(費無忌)의 농간으로 인해 태자(太子) 건(建)의 비가 될 예정이었던 맹영(孟嬴)을 빼앗고 태자를 변방으로 내쫓는 등의 실책을 저질렀다. 비무극이 태자의 스승인 오사(伍奢)와 그의 아들 오상(伍尚)을 처형하니, 오사의 아들 오운(伍員) 오자서(伍子胥)가 복수를 다짐하며 탈출하여 오(吳)로 망명하였다. 결국 오의 장군이 된 오자서가 초를 침공하여 수도를 함락하고 이미 무덤에 묻힌 평왕의 시체를 꺼내어 채찍질을 함으로써 복수에 성공하였고, 초는 크게 쇠퇴하여 약점으로 수도를 옮기고 재건에 힘써야 하였다.

6 국도의 서쪽 군대: 원문의 “上國之兵”을 풀이한 말로, 초楚의 국도 서쪽에 ‘상류(上流)’가 있었으므로 그곳을 ‘상국(上國)’이라 불렀다.

7 진秦의 … 못하였으니: 진의 백성들은 추운 북방이나 무더운 남방의 변경으로 수자리를 살러 갔다가 적응을 하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강제로 동원되어 수자리 살러 가는 것을 몹시 싫어하였다. 진 멸망의 촉매가 된 진승(陳勝)의 반란도 수자리를 살러 가던 백성들이 일으킨 것이다. 조조는 이 일을 언급한 후 한의 서북방을 지키는 병사들은 그 지역 사람으로 쓸 것을 말하였다.

러워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공효가 만 배나 차이가 납니다.” 경제가 그 말을 따랐다.

|| 당 문종唐文宗 때의 일이다. 이덕유李德裕가 서천 절도사西川節度使가 되어 주변루籌邊樓⁸를 세우고 촉蜀의 지형도를 만들었는데, 남쪽으로는 남조南詔,⁹ 서쪽으로는 토번吐蕃에 이르렀다. 군대의 일에 노련하고 변방의 일을 잘 아는 자를 날마다 불러 산천, 성읍, 도로의 험난함과 평이함, 넓음과 좁음, 멀고 가까움을 물었는데,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모두 직접 가본 것처럼 훤히 꿰뚫었다. 사졸을 훈련시키고 보루를 수리하고 식량을 비축하면서 변방을 지키니, 문종이 청계관淸溪關을 수리하여 남조가 노략질하러 오는 길을 막으라고 명하였다.

|| 북주 세종北周世宗이 시신侍臣에게 말하였다. “군대는 정예로워지게 하는 데 힘써야지 머릿수를 늘리는 데 힘써서는 안 되니, 어찌 백성의 고향을 짜내어 노쇠하고 쓸모없는 것을 기르단 말인가.” 이에 명을 내려 여러 부대를 대거 조사하여 정예로운 자는 상군上軍으로 올리고 노쇠한 자는 쫓아내게 하였다. 또 조서를 내려 천하의 장사壯士를 모아 모두 궁궐에 보내고, 조광운趙匡胤으로 하여금 그 가운데 뛰어난 자를 선발하여 전전제반殿前諸班¹⁰으로 편성하게 하였다. 이로부터 사졸들이 정예롭고 강건해져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다.

|| 북주北周가 남당南唐과 전쟁할 때, 남당의 수군이 정예롭고 민첩하여 북주 사람들이 상대할 수가 없었다. 북주 세종北周世宗이 수춘壽春에서 돌아와 변수汧水에서 전함 수백 척을 만들고 투항한 남당의 병졸들에게 명하여 북주의 군인에게 수전水戰을 가르치게 하니, 수개월 뒤에는 종횡으로 출몰하는 것이 남당의 수군보다 나았다. 이에 우효위대장군右驍衛大將軍 왕환王環¹¹에게 명하여 수군 수천 명을 거느리고 민하閔河에서 영수潁水를

8 주변루籌邊樓: '변방의 적들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누각'이라는 뜻이다.

9 남조南詔: 7세기 무렵 몽사조蒙舍詔가 타이족이 세운 나라들을 병합하고 운남雲南 일대에 세운 나라 이름이다. 당 현종唐玄宗이 양국총楊國忠 등을 보내어 남조를 정벌하게 하자, 남조는 토번과 동맹을 맺고 당에 저항하였다.

10 전전제반殿前諸班: 금위군의 일종으로, '전전군殿前軍' 또는 '제반직諸班直'이라고도 한다. 분행문반分行門班, 전전좌반殿前左班, 전전우반殿前右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1 왕환王環: ?~957. 본래 후촉後蜀의 장수로, 북주 세종에게 대적하다가 사로잡혔다. 세종이 그의 충직함을 인정하여 사면한 후 부하로 삼았다.

따라 회수淮水에 들어가게 하니, 남당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크게 놀랐다.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 || 명 선종明宣宗이 시신侍臣에게 “옛사람이 이적夷狄을 억제한 것은 오직 수비에 달려 있었다. 성곽과 보루가 견고하고 군량이 충분하며 사졸들이 잘 훈련되어 있고 감시가 엄격하다면 저들이 어찌 근심거리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고, 변방의 장수에게 신중히 방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 || 명 헌종明憲宗 때, 어사御史 위한魏澣 등이 “산서山西에 있는 안문雁門¹² 등 여러 관關에 능력과 인망을 갖춘 중신과 지혜와 용맹을 겸비한 장수를 더 배치하여 지방을 안정시키셔야 합니다.”라고 하니, 헌종이 명을 내려 십이단영十二團營¹³을 세우고, 병부상서兵部尙書 백규白圭¹⁴에게 감독하고 훈련하게 하였다.
- || 명 목종明穆宗 때의 일이다. 태학사太學士 장거정張居正¹⁵이 상소하였다. “지금 논의하는 자들은 모두가 ‘병사는 많지 않고 식량은 부족하며 장수는 적임자를 구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데, 신이 생각하기에는 이 세 가지는 모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분발하여 힘쓰려는 의지가 없는 것을 걱정할 뿐입니다. 바라건대 황상께서는 스스로를 다스리는 계책을 우선하시고 반드시 해내겠다는 의지를 굳건히 하십시오. 모신謀臣에게 일을 맡기고 참된 정사를 잘 다스려서 깊이 생각하고 살펴 실행하신다면, 5년 안에 오랑캐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종이 이를 읽고 칭찬하였다. 【이상은 『명사강목』에 보인다.】

12 안문雁門: 산서 지역의 안문산에 건립된 관문 이름으로, 춘추 시대부터 존재했던 중요 방어 거점이다. 오늘날 산서성山西省 대현代縣에 있으며 만리장성의 중요한 관문 중 하나이다. 영무관寧武關, 편두관偏頭關과 더불어 ‘외삼관外三關’이라 불린다.

13 십이단영十二團營: 명 헌종 때 신설한 군대로, 삼대영三大營[五軍營·三千營·神機營]에서 선발한 12만의 정예병으로 편성하였다. 사무영四武營[奮·耀·練·顯], 사용영四勇營[敢·果·效·鼓], 사위영四威營[立·伸·揚·振]으로 구성되어 있다.

14 백규白圭: 1419~1475. 자는 종옥宗玉이며, 태자소보太子少保, 병부상서兵部尙書 등을 역임하였다.

15 장거정張居正: 「입기강立紀綱」 법조 22번 각주 참조.

계조 戒條

- || 초 무왕楚武王¹⁶ 때의 일이다. 굴하屈瑕¹⁷가 라국羅國을 정벌하러 갈 때, 투백비鬬伯比¹⁸가 전송하고 돌아오면서 마부에게 “막오莫敖[굴하는 반드시 패할 것이다. 그가 밭을 높이 들어 걸었으니, 마음이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무왕의 부인 등만鄧曼은 “막오가 포소蒲騷에서의 승리¹⁹에 져서 반드시 라국을 경시할 것입니다. 군주께서 기세를 눌러주지 않으면 제대로 대비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²⁰ 결국 라국이 초의 군대를 대패시켰고, 굴하는 황곡荒谷에서 목을 매어 죽었다.
- || 진핍의 신공申公 무신巫臣이 거함을 거쳐 갔을 적에²¹ 거구공渠丘公과 연못 가에 서서 “성이 너무 넓었습니다.”라고 하였다. 거구공이 “오랑캐 지역에 있는 보잘것없는 나라인데, 누가 우리를 안중에 두겠는가.”라고 하니, 신공 무신이 “용감한 사내도 문을 겹겹이 닫기 마련인데, 하물며 나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라고 답하였다. 후에 초楚가 거함을 공격하여 거구渠丘를 포위하였는데, 성이 넓어 군대가 흩어져 달아났다. 거성郢城을 포위하자 또한 거성의 군대도 궤멸하였다. 군자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거함이 변방의 작은 나라임을 믿고 성곽을 수리하지 않아서 12일 만에 초가 세 도시를 함락하였으니, 방비가 없었기 때문이다.”【이상은 『춘추좌씨전』에 보인다.】
- || 진 시황秦始皇이 여섯 나라를 병탄한 후 천하의 병기를 거두어들이고 그것을 녹여 종거금인鍾鐻金人²² 12개를 만들어 궁정 안에 두었다.

16 초 무왕楚武王: 춘추 시대 초의 군주로, 성씨는 미뽀, 씨씨는 웅熊이며, 이름은 철徹이다. 투백비鬬伯比, 굴하屈瑕를 기용하여 국력을 신장하고, 당시 한수漢水 동쪽 지역에서 강성하던 수隨를 정벌하였다. 이에 주周 왕실에 자작子爵보다 높은 존호尊號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니, 이를 계기로 ‘왕후’를 자칭하였다.

17 굴하屈瑕: 춘추 시대 초楚의 대부로, ‘막오’는 그의 관직명이다.

18 투백비鬬伯比: 춘추 시대 초楚의 대부로, ‘영윤 자문승尹子文’이라 불린 투누오도鬬穀於菟의 아버지이다.

19 포소蒲騷에서의 승리: 굴하가 운郢, 수隨, 교교, 주州, 요홀 연합군에 맞서 적은 병력으로 포소蒲騷에서 물리친 일을 가리킨다.

20 무왕의 … 하였다: 투백비가 초 무왕에게 군대를 더 파견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굴하가 패할 것임을 넌지시 알렸으나 무왕이 이해하지 못하였다. 이에 투백비가 그 사실을 등만에게 고하였고, 등만이 무왕에게 설명한 것이다. 무왕이 이를 듣고 급히 사람을 보내었으나 제때 미치지 못하였다.

21 거함을 거쳐 갔을 적에: 진후가 신공 무신을 오토로 사자로 보내면서, 거에게 길을 빌리게 한 적이 있었다.

22 종거금인鍾鐻金人: 사람 모습을 한 금속 소형으로, 종처럼 속이 텅 비어 있어 ‘종거鐘鐻’라는 이름이 붙었다.

- || 진 무제晉武帝가 주군州郡의 병사들을 모두 철수시키자²³ 교주목交州牧 도황陶璜²⁴이 상언하였다. “영주寧州의 여러 오랑캐가 상류를 점거하고 수로와 육로를 아울러 돌아다니고 있으니, 주군의 병사를 줄여 허점을 노출하면 안 됩니다.” 복야僕射 산도山濤²⁵ 또한 “주현州縣의 무비武備를 없애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였으나 무제가 듣지 않았다. 영녕永寧²⁶ 이후로 도적이 떼지어 일어났는데 주군의 무비로는 제어할 수 없어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졌으니, 산도가 말한 것처럼 되었다.
- || 당 현종唐玄宗의 천보天寶 연간 이후로 활기驍騎²⁷의 제도도 흐지부지되어 모병에 응한 자들은 모두 장사치나 무뢰배의 자제라서 군대의 일을 익힌 적이 없었다. 태평한 시대가 오래 이어져 논의하는 자들이 대부분 ‘중원中原의 군대를 줄여도 된다.’라고 말하였으며, 민간에서는 병기를 지니는 것이 금지되었다. 안녹산安祿山²⁸은 군비의 해이함을 보고서 중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마음을 지니게 되었다.
- || 당 덕종唐德宗 때 육지陸贄²⁹가 상주上奏하였다. “태종께서 부병府兵을 설치한 것이 크게 800여 곳이었는데 관중關中이 거의 500 곳이니, 중앙에 병력을 집중하여 변방을 통제하려 했던 뜻이 분명합니다. 건원乾元 이후로 모든 군대가 동쪽을 토벌하느라 변방 수비가 느슨해지고 금군禁軍도 부실하였으니, 토번吐蕃이 허점을 틈타 침입하여 선황제께서 동

23 진 무제晉武帝가 ... 철수시키자: 진 무제는 자신이 후한의 삼국을 통일하였으므로 전쟁이 영원히 종식될 것이라고 여겼다.

24 도황陶璜: 후한後漢 때의 사람으로, 진 무제가 삼국을 통일한 후 교주交州를 맡고 원릉후苑陵侯에 봉해졌다. 교주에서 30년 동안 어진 정사를 펴고자 한다. (『晉書』「陶璜傳」)

25 산도山濤: 죽림칠현의 한 사람으로, 진 무제에게 등용되어 벼슬이 시중侍中에 이르렀다. 무제가 점차 향락에 빠지며 주색을 일삼자 벼슬에서 물러나 은둔했다. (『晉書』「山濤傳」)

26 영녕永寧: 진 무제의 뒤를 이은 혜제惠帝의 연호이다.

27 활기驍騎: 당 현종唐玄宗 때 창설한 도성의 숙위병宿衛兵이다. 현종 11년(723)에 경주京兆에서 숙위하던 부병府兵이 대거 도망가자, 재상 장염張說이 근방의 부병과 백정白丁들을 모집하여 보충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렇게 선발된 군대를 처음에는 ‘장종숙위長從宿衛’라고 부르다가 후에 ‘활기’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들은 해마다 경조에서 두 달만 숙위하면 출정出征과 진수鎮守의 부담을 면제받았다.

28 안녹산安祿山: ?~757. 초명은 알락산軻攀山이었는데, 어려서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개가함에 따라 성이 안안이 되었다. 당 현종 때 양 귀비의 눈에 들어 몇 개 절도사節度使를 겸임했다가 양국충楊國忠과 갈등을 빚고 그를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경사京師를 함락하고 스스로 웅무황제雄武皇帝라 칭하며 ‘성무聖武’란 연호를 썼으나, 그의 아들 경사慶緒에게 살해되었다. (『新唐書』「顏真卿傳」)

29 육지陸贄: 「개언로開言路」 계조 95번 각주 참조.

쪽으로 피하셨습니다. 이는 모두 중앙에 병력을 집중하여 변방을 통제하는 권도權道를 잃은 것이며 뿌리를 깊고 튼튼하게 하는 계책을 잊은 것이니,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찌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 당 덕종이 이필李泌³⁰과 부병제를 부활시키는 것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이필이 덕종을 위해 부병제의 성쇠를 차근차근 설명하였다. “부병은 평소에는 편안하게 농사를 짓고, 각 부에는 절충折衝이 있어 그들을 통솔하였습니다. 절충은 농한기에 그들에게 전투와 진법을 가르치고 익히게 하였습니다. 유사시에 징발할 때는 주와 부에 부절을 내려보내 검증하고 징발하였습니다. 징발 기간은 짧으면 한 철을 넘기지 않았고 길어도 한 해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장열張說³¹이 처음 ‘화기병驍騎兵’이라는 장기간 중군할 병사를 모집한 이래로 정착하여 살지 않고 지켜야 할 종족宗族도 없어서 스스로 자중하지 않아 화란이 생겼으니, 지금까지도 문제입니다. 가령 부병제가 지금까지 유지되었다면, 위아래의 질서가 무너져 크게 혼란스러운 병폐가 어찌 있었겠습니까.”

|| 당 덕종 초기에 신책군사神策軍使 백지정白志貞³²이 금군禁軍을 모집하는 일을 맡았다. 동쪽으로 정벌을 나갔다가 죽은 자를 백지정이 모두 숨기고 아뢰지 않고, 다만 시정의 부자들에게서 뇌물을 받고 그들로 충원하였으니, 이름이 군적에 있어 급역을 받으면서도 몸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였다. 그 뒤 경원涇原의 반란군³³이 변고를 일으키자 덕종이 금군을 불러 적을 막으려 하였으나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

|| 당 목종唐穆宗이 즉위하고 하북河北과 하남河南이 대략 평정되니, 소부蕭俛,³⁴ 단문창段文昌³⁵이 “천하가 태평하니 점차 군대를 줄여야 한다.”라고 하여, 군진軍鎮에 은밀히 조서를

30 이필李泌: 「명상법明賞罰」 법조 33번 각주 참조.

31 장열張說: 667~730. 당 현종 때의 명재상으로, 자는 도제道濟, 열지說之이다. 봉각사인鳳閣舍人, 좌승상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으며, 연국공燕國公에 봉해졌다. 문장에 뛰어나 허국공許國公 소정蘇頌과 함께 ‘연허대수燕許大手’라고 칭해졌다. 저서에 『장연공집張燕公集』이 있다. (『舊唐書』「張說傳」)

32 백지정白志貞: ?~787. 본래 이름은 백수규白瑋珪이다. 서리 출신으로, 당 덕종의 심복이 되어 ‘지정志貞’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았으며, 신책군사神策軍使, 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 어사대부禦史大夫 등을 역임하였다.

33 경원涇原의 반란군: 덕종德宗 4년(783)에 경원 절도사涇原節度使 요영언姚勗言이 번진藩鎮 이희열李希烈의 반란을 진압하러 출병하였다가 조정의 대우에 불만을 품고 주지朱泚를 옹립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舊唐書』「姚勗言傳」)

내려 군사들이 주둔하고 있는 곳에 해마다 100명 중 8명에 한하여 탈영이나 사망을 명목으로 군적에서 제할 것을 청하였다. 목종은 주연에 빠져 국사에 관심이 없어 결국 그들이 아뢰는 것을 재가하니, 군적을 잃은 군사들이 많아져 모두 산이나 늪에 모여 도적이 되었다. 주극융³⁶과 왕정주³⁷가 난을 일으켜 한 번 부르짖자 도망친 병졸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조서를 내려 여러 도에서 병사를 징발하였는데 모두 임시로 모집한 병사들이라서 오합지졸이었고, 게다가 중사^{中使}를 보내 군진^{軍陣}을 감독하였으므로 주장^{主將}이 전권을 가지고 명령을 내릴 수 없었으며, 심지어 금중^{禁中}에서 지시하는 전술이 아침에 명령했다가 저녁에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다시 하북 지역을 상실했다.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 || 명 세종^{明世宗}이 십이단영^{十二團營}을 개편하여 용정부^{戎政府}를 만들고, 여러 도에서 병사를 모집하여 경사^{京師}에 들어가 방위하게 하며, 경영장^{京營將}으로 하여금 변방의 병사들을 나누어 훈련시키게 하였다. 병부에서 “선부진^{宣府鎮}과 대동진^{大同鎮}은 경사의 문호^{門戶}에 해당합니다. 도적을 문호에서 막지 않고 집 안에서 맞싸우고서 위태롭지 않은 경우는 드물었습니다.”라고 하였지만, 세종은 듣지 않았다. 【『명사강목』에 보인다.】

34 소부^{少府}蕭儼: ?~842. 자는 사겸^{思謙}이며, 상서우복야^{尙書右仆射}, 병부상서^{兵部尙書}, 태자태부^{太子太傅} 등을 역임하고 서국공^{徐國公}에 봉해졌다. 국가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군비 축소 정책이 당의 군사력 약화와 번진의 반란을 야기하여, 당이 몰락하는 데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면^免'은 『통감절요』의 주석에는 음이 '면^免'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그의 성명을 '소부^{蕭儼}'라고 기록한 자료가 있고 '사겸'이라는 그의 자를 감안하여 몸을 굽힌다는 의미의 독음인 '부'로 번역하였다.

35 단문^{段文昌}: 773~835. 자는 목경^{墨卿}이다. 목종이 즉위하면서 그를 재상으로 임명하였는데, 1년이 되지 않아 사직을 청하여 서천절도사^{西川節度使}로 부임하였다. 이후 병부상서^{兵部尙書}, 형남 절도사^{荊南節度使} 등을 역임하였고, 추평군공^{鄆平郡公}에 봉해졌다. (『舊唐書』「錢徽傳」)

36 주극융^{朱克融}: ?~826. 노룡 절도사^{盧龍節度使} 유충^{劉總}의 편장^{偏將} 출신으로, 유충의 후임인 장흥정^{張弘靖}의 억압에 반발하여 장흥정을 구금하고 스스로 노룡 유후^{盧龍留侯}를 자처하였다. 같은 시기에 반란을 일으킨 성덕 유후^{成德留侯} 왕정주^{王庭湊}와 협력하여 막주^{莫州}, 영주^{瀛州} 등을 점령하니, 목종은 그를 제압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를 노룡 절도사에 제수하였다.

37 왕정주^{王庭湊}: ?~834. 성덕군^{成德軍}의 도지병마사^{都知兵馬使} 출신으로, 성덕 절도사^{成德節度使} 전홍정^{田弘正}을 죽이고 스스로 성덕 유후를 자처하였다. 같은 시기에 반란을 일으킨 노룡 유후 주극융^{朱克融}과 협력하여 기주^{冀州}, 패주^{貝州} 등을 점령하니, 목종은 그를 제압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를 성덕 절도사에 제수하였다.

근안 謹按

삼가 살펴보건대,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은 문文과 무武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문에 관계된 일을 닦고 무에 관계된 일을 갖추지 않으면, 하늘에 양陽만 있고 음陰이 없는 것과 같으며, 땅에 유柔만 있고 강剛이 없는 것과 같으며, 사람에게 인仁만 있고 의義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때문에 예로부터 제왕은 비록 문덕文德으로 천하를 다스렸지만, 그 문을 이루어 그것을 오랫동안 편안하게 다스림에는 무력武力에 힘입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평화로운 시기에 정사를 강구講究하고 무사한 시기에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미연에 화난禍難을 염려하고 장래의 위급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역』 「계사전繫辭傳」에 “문을 겹겹이 설치하고 딱따기를 쳐서 도적을 대비한다.”라고 하였고, 『서경』 「강왕지고康王之誥」에 “육군六軍을 크게 펼치시어, 우리 고조께서 받으신 천명을 무너지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였으니, 이는 모두 국가가 한가한 때에 일찌감치 조치하고³⁸ 위란危亂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역대로 무력을 남용하여 전쟁을 일삼다가 스스로 전복되거나 패배한 사례가 한둘이 아니지만, 안일함에 빠져 군비軍備에 대해 말하길 꺼리다가 영토가 깎이거나 국력이 약해지며 위태롭거나 망하지 않은 경우가 드뭅니다. 당唐은 천보 연간에 태평함에 안주하여 전쟁에 대한 경계³⁹를 잊었다가 안록산安祿山이 한 번 출현함에 천하가 와해되었고, 송宋은 선화宣和 연간에 안락함에 빠져 오랫동안 미래에 대한 방비⁴⁰를 느슨히 하였다가 오랑캐인 금금이 한 번 호령함에 천하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마법』에 “전쟁을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망하고, 전쟁을 잊은 자는 반드시 위태로워진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를 가리킵니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에는 수비를 잘하여 강대한 수 양제隋煬帝와 강력한 당 태종唐太宗이

38 일찌감치 조치하고: 원문의 “早爲之所”를 풀이한 말이다. 『춘추좌씨전』 은공隱公 원년元年에 “일찌감치 조치하여 세력이 불어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不如早爲之所 無使滋蔓]”라고 하였다.

39 전쟁에 대한 경계: 원문의 “桴鼓之警”을 풀이한 말이다. ‘부고桴鼓’는 전쟁을 하거나 도적을 쫓을 때 사용하는 북과 북채를 가리킨다.

40 미래에 대한 방비: 원문의 “苞桑之備”를 풀이한 말이다. ‘포상苞桑’은 미래를 염려하여 단단히 대비해둠을 이르는 것으로, 『주역』 「계사전繫辭傳」 비괘조卦의 구오九五에 “망하려나, 망하려나 하고 걱정하여 무성한 뽕나무 뿌리에 붙들어 매어 둔다.[其亡其亡 繫于苞桑]”라고 하였다.

모두 정벌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갔으며, 고려는 거란, 몽골, 합단⁴¹과 수십 년에 걸쳐 오랫동안 잘 맞서 싸웠습니다. 우리 태조께서는 신들린 무위⁴²로 몸소 술한 전쟁에 참여하셨고, 즉위하신 후에 군비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셨습니다.⁴² 열성께서 이를 이어받아 군율을 거듭 밝히셔서 북쪽으로는 육진⁴³의 지역을 개척하고⁴³ 남쪽으로는 삼포⁴⁴의 왜구를 축출하니,⁴⁴ 그 시절의 군사력은 강성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이후로는 서울과 지방의 군사제도를 많이 증설하였으니,⁴⁵ 또한 지난날의 과오를 뉘우치고 훗날에 경계하는 방도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여 년이 지난 뒤로 무사⁴⁵가 날이 갈수록 소원해져서 폐원⁴⁵이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지금 논의하는 자들은 ‘군제⁴⁵를 고치지 않을 수 없다.’라고도 하고 ‘병사의 수를 줄이지 않을 수 없다.’라고도 하여 그 방책이 각자 다릅니다. 그러니 크게 변동⁴⁵하려면 반드시 시기와 방법이 알맞고 모두가 동의한 후에야 비로소 논의할 수 있습니다. 우선 폐단에 따라 고쳐나가는 요령으로 말한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무사⁴⁵한 습관을 바꾸고 쇠신의 행정을 실행하며, 소홀히 하는 잘못을 고치고 치밀한 준비에 힘써야 합니다. 장수는 기량과 지략이 있는 이를 쓰고 못난 자를 물리쳐 면직시키며, 군졸은 힘이 센 자를 쓰고 쇠약한 자를 걸러내어 교체해야 합니다. 병기를 망가뜨리는 자는 가차없이 벌을 주어야 하고, 군무⁴⁵에 능숙한 자는 아낌없이 상을 내려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수행함에 있어 부지런히 하거나 게을리하는 것은 오직 감독하고 신칙함이 어떠한가에

41 합단⁴¹: 원 세조元世祖 때 반란을 일으킨 내안⁴¹의 부장으로, 내안이 정부군에게 잡혀 처형당하자 그 잔당을 이끌고 요동 각지에서 활동하였다. 1290년(충렬왕 16)에 합단이 고려의 내륙까지 침입하였는데, 충렬왕이 원과 연합하여 연기⁴¹에서 합단의 군대를 크게 격퇴하였다.

42 군비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셨습니까: 판의흥삼군부사⁴² 정도전⁴² 군제 개혁안을 상서⁴²하였고 태조가 이를 따랐다. (『太祖實錄』 3년 2월 29일)

43 육진⁴³의 지역을 개척하고: 세종 때 김종서⁴³ 등을 함경도 두만강 하류 지역에 파견하여 종성⁴³, 온성⁴³, 회령⁴³, 경원⁴³, 경흥⁴³, 부령⁴³에 진⁴³을 설치하고 여진족의 침입에 방비한 일을 말한다.

44 삼포⁴⁴의 왜구를 축출하니: 세종 때 왜⁴⁴의 대마도를 정벌한 후, 그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동래의 부산포⁴⁴, 웅천의 제포⁴⁴, 울산의 염포⁴⁴를 개항하고 왜인과의 교역을 허가하였다. 중종 대에 이르러 삼포의 왜인이 폭동을 일으키자 황형⁴⁴, 유담⁴⁴이 이들을 물리치고 삼포에 거류한 왜인들을 추방한 후, 제포 한 곳만 개항하였다.

45 서울과 … 증설하였으니: 각 지역만을 방어하는 오위제⁴⁵를 개편하여 수도 방어와 궁궐 경비는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수어청, 총융청이 담당하는 오군영⁴⁵ 제도를 운영하고, 지방군은 각 지방에서 양인과 천인 등을 소집하여 훈련하는 속오군⁴⁵ 제도를 실시하였다.

달려 있으며 제정한 법이 흔들리지 않음에 달려 있으니, 이것이 소식蘇軾이 정성을 다해 「교전수책敎戰守策」⁴⁶을 지은 이유입니다.

생각해보면 병기는 상서롭지 못한 기물⁴⁷이지만 예기치 못한 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무講武에 빠져 유희 수단으로 삼게 되면, 도리어 방탕해져 낭비하는 큰 폐해가 생깁니다. 당唐 말기의 희종僖宗은 몸소 말을 타고 활쏘기를 즐겼고⁴⁸ 명명의 천계제天啓帝(희종僖宗)는 내조內操를 자주 시행하였으니,⁴⁹ 모두 나라를 어지럽히고 멸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 또한 임금이 두려워하면서 명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유념하고 유념하소서.

46 교전수책敎戰守策: 소식이 1061년 제과制科에 응시하여 지은 책문策文이다. 당시 송宋은 농민의 반란이 끊이지 않고 서하西夏 등 국외의 적들이 압박해오는 상황이었음에도 군신群臣은 가무와 향락을 즐기며 안일하게 지냈다. 이에 소식은 국가를 항상 위기에 대비하여 군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의 책문을 답안으로 지어 올렸고, 과거에 합격하였다.

47 병기는 상서롭지 못한 기물: 『노자』에 “병기는 상서롭지 못한 기물로 군자의 기물이 아니며, 어쩔 수 없을 때에 그것을 사용한다.[兵者 不祥之器 非君子之器 不得已而用之]”라고 하였고, 『국어』 「조어越語」에 “병기는 흉기이고, 전쟁은 최후의 수단입니다.[兵者 凶器也 爭者 事之末也]”라고 하였다.

48 당唐 말기의 … 즐겼고: 당 희종唐僖宗이 군비 목적이 아니라 취미로 무예를 익힌 것을 지적한 것이다. 희종은 재위 기간 동안 정사를 환관 전령자田令孜에게 일임하고 자신은 투계鬪鷄, 격국擊鞠 등 잡기에 몰두하였고 기사騎射나 검식劍槊 등을 취미로 익혔다.

49 명명의 … 시행하였으니: ‘내조’는 태감이 궁중에서 군대를 조련하게 하는 것으로, 명 희종이 강병強兵 양성에 소홀함을 지적한 것이다. 희종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문맹으로, 재위 기간 동안 정사를 태감太監 위중현魏忠賢에게 일임하고 자신의 취미인 목공木工에 몰두하였다.

유후곤 裕後昆

후손에게 덕행을 물려주다

법조 法條

- || 하夏の 우임금은 전장과 법도를 마련하여 자손에게 남겨주었다.¹
- || 주 문왕周文王이 병으로 자리에 누웠을 때, 세자에게 말하였다. “선을 보고 게을리 하지 말며, 때가 이르렀으면 의심하지 말며, 잘못을 고쳐 그대로 머물지 말라. 이 세 가지는 도가 지극한 경지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다.” 세자가 두 번 절하고 가르침을 받았다.
- || 주 성왕周成王이 나이가 어려서 조계阼階²에 오르지 못하니, 주공周公이 총재冢宰로서 그를 도와 다스렸다. 세자의 법도를 백금伯禽에게 들어 보여서 성왕으로 하여금 부자父子, 군신君臣, 장유長幼의 도리를 알게 하고자 하였다.³【이상은 『봉주강감회찬』에 보인다.】
- || 전한 문제前漢文帝 때의 일이다. 양 태부梁太傅 가의賈誼⁴가 상소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옛날에는 어린 태자가 지각이 있게 되면, 천하사람 중 견문이 넓고 학술이 있는 사

1 하夏の … 남겨주었다: 『서경』 「오자지가五子之歌」에 “밝고 밝으신 우리 선조는 만방의 임금이시니, 전장과 법도를 마련하시어 자손들에게 물려주셨다.[明明我祖 萬邦之君 有典有則 貽厥子孫]” 라고 하였다.

2 조계阼階: 남향의 집에서 주인이 오르내리면서 손님을 맞고 전송하는 동쪽 섬돌로, 원문의 ‘이조阼階’는 천자의 자리에 올라 정사를 돌보는 것을 의미한다.

3 세자의 … 하였다: 백금은 주공의 아들이다. 『예기』 「문왕세자文王世子」에 “세자가 지켜야 할 도리를 들어서 백금에게 가르쳤는데, 이는 성왕으로 하여금 부자, 군신, 장유의 도리를 알게 하고자 함이었다. 성왕이 과실이 있으면 백금의 종아리를 쳤으니, 성왕에게 세자의 도리를 보이신 것이었는데, 이는 문왕이 세자로서 행하였던 도리였다.[抗世子法於伯禽 欲令成王之知父子君臣長幼之道也 成王有過 則撻伯禽 所以示成王世子之道也 文王之爲世子也]” 라고 하였다.

4 가의賈誼: 「어염치勵廉恥」 법조 1번 각주 참조.

람을 발탁하여 보좌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태자가 태어나면서부터 바른 일을 보고 바른 말을 듣고 바른 도를 행하였으며, 주변에는 모두 바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릇 늘 바른 사람과 함께 지내면 바르지 않을 수 없으니, 제齊에서 나고 자란 이가 제의 말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늘 바르지 않은 사람과 함께 지내면 바르지 않음이 없을 수 없으니, 초楚에서 나고 자란 이가 초의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공자는 ‘어려서 갖춰진 것은 타고난 천성과 다를 바 없고, 오래 익숙해지다 보면 본디 그러했던 것 같아진다.’⁵라고 하였습니다. 신은 이런 이유로 ‘좌우를 선발하여 일찍부터 가르치고 타이르는 것이 가장 급하다.’고 한 것입니다. 제대로 가르치고 좌우가 바르면 태자가 바꾸어지고, 태자가 바꾸어지면 천하가 바꾸어집니다.” 문제가 가납하였다.

- || 축한 소열蜀昭烈이 죽음을 앞두고, 태자에게 다음과 같이 서계誓戒를 남겼다. “선이 작다고 하여 행하지 않아서는 안 되며, 악이 작다고 하여 행해서는 안 된다.”
- || 북위 태종北魏太宗이 도肅⁶를 태자로 세운 후, 남평공南平公 장손승長孫嵩,⁷ 산양공山陽公 해근奚斤,⁸ 신안공新安公 안동安同을 좌보左輔로 삼아 동상東廂에 앉아 서쪽을 바라보게 하고, 백마공白馬公 최호崔浩,⁹ 태위太尉 목관穆觀, 산기상시散騎常侍 구퇴丘堆¹⁰를 우필右弼로 삼아 서상西廂에 앉아 동쪽을 바라보게 하여 백관이 자기의 직책을 총괄하여 태자의 명을 듣게 하였다. 태종이 서궁西宮에 머물며 몰래 엿보았는데, 태자가 결단하는 것을 듣고 매

5 어려서 … 같아진다: 『공자가어孔子家語』 「72제자해七十二弟子解」에 “어려서 이루어진 것은 곧 천성과 같으며, 습관으로 이루어진 것은 자연과 같다.[少成則若性也 習慣成自然也]”라고 하였다.

6 도肅: 북위 세조北魏世祖 탁발도拓拔肅를 가리킨다. 「개언로開言路」 법조 25번 각주 참조.

7 장손승長孫嵩: 358~437. 선비족으로, 본래 성은 발발拔拔이었는데, 도무제道武帝 탁발규拓跋珪를 섬겨 이름을 하사받았다. 탁발도를 태자로 추천한 후 좌보左輔가 되었으며, 탁발도가 즉위하자 사주 중정司州中正에 오르고 북평왕北平王에 봉해졌다.

8 해근奚斤: 369~448. 선비족으로, 본래 성은 달해達奚이다. 태조太祖 때 금군을 통솔하고, 시랑侍郎이 되어 태조의 신임을 받았다. 후연後燕, 고거高車 및 중원 정벌에 참여해 여러 차례 전공을 세워 산양후山陽侯에 봉해졌다. 태종太宗 때 정병장군鄭兵將軍, 좌승상左丞相 등을 역임했으며, 세조世祖 때에 의성왕宜城王에 봉해졌다.

9 최호崔浩: 「장명절獎名節」 법조法條 32번 각주 참조.

10 구퇴丘堆: ?~428. 선비족으로, 자는 고퇴庫堆이다. 태조의 시종이었는데, 태종太宗 즉위 후 산기상시散騎常侍에 올랐다. 이후, 무공을 세워 후작侯爵에 봉해졌으며, 탁발도가 즉위하자 진서대장군鎭西大將軍, 태복경太卜卿, 정주 도독定州都督 등을 역임하였다.

우 좋아하며 근신에게 말하였다. “장손숭은 덕망이 있는 오랜 신하이므로 해근은 말을 잘 하고 지모가 뛰어나며, 안동은 일처리에 능숙하고 목관은 정치의 요체를 잘 알고 있으며, 최호는 건문이 넓고 기억을 잘하고 구퇴는 공무에 있어서 신중하다. 이 여섯 사람이 태자를 보좌하고 있으니, 짐은 반역자를 토벌하고 복종하는 자를 위무하면 천하에 뜻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남조南朝 송 고조宋高祖¹¹가 자신이 미천할 때 쓰던 농기구를 보관하였다가 자손에게 보이도록 명하였다. 문제文帝가 단도丹徒의 고궁故宮¹²에 이르러 그것을 보고 창피해하는 기색이 있자, 근신이 진언하였다. “대순大舜은 역산歷山에서 직접 밭을 갈았고,¹³ 백우伯禹는 수도水土를 직접 다스렸습니다.¹⁴ 그런데 폐하께서는 이 물건을 거들떠보지 않으시니, 어떻게 선제先帝의 덕과 농사의 어려움을 아시겠습니까.”

|| 남조 송 문제宋文帝가 무장강武帳岡¹⁵에서 형양왕衡陽王 의계義季¹⁶를 전별할 때의 일이다. 문제가 나가려고 하면서 황자들에게 음식을 먼저 먹지 말라고 신칙하고 모임 장소에 도착하여 음식을 차려놓았는데, 날이 저물도록 형양왕이 도착하지 않자 황자들이 굶주린 기색을 보였다. 이에 문제가 “너희들은 어려서나 장성해서나 편안하고 풍족하여 백성

11 송 고조宋高祖: 363~422. 남조 송 제1대 황제 유유劉裕로, 재위 기간은 420년에서 422년이다. 동진東晉 말 환헌桓玄이 안제安帝의 왕위를 찬탈하여 국호를 초쑤로 고치자 유유가 군대를 일으켜 토벌하고 안제를 다시 옹립하여 나라를 부흥시켰다. 이후 안제를 살해하고 아우 사마덕문司馬德文을 공제恭帝로 옹립하였다. 이듬해 공제에게 선양을 받는 형식으로 즉위하여 국호를 송이라 하였다.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매우 검약하였으며, 전 왕조의 호족세력의 전횡을 교훈 삼아 호족을 탄압하고 한미한 집안 출신의 인재들을 등용하고, 세금과 요역을 경감하고, 가혹한 법령을 폐지하는 등 안전과 부흥을 도모하였으나 즉위 3년 만에 사망하였다.

12 단도丹徒의 고궁故宮: 진뽀이 동천했을 때, 훗날 남조 송 고조가 된 유유가 팽성彭城에서 단도현丹徒縣 경구리京口로 옮겨 거주하였으므로 농묘와 고궁이 이곳에 있었다.

13 대순大舜은 … 갈았고: 순임금이 미천한 신분이었을 때, 역산에서 손수 밭을 갈고, 하빈河濱에서 질그릇을 빚어 굶고, 뇌택雷澤에서 물고기를 잡았다고 한다. (『史記』 「五帝本紀」)

14 백우伯禹는 수도水土를 직접 다스렸습니다: 요임금 때, 9년 동안 계속된 장마에 백우에게 홍수를 다스리도록 명하였는데, 우가 자연적인 형세에 따라 치산치수治山治水하여 홍수를 막고 백성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한다. (『書經』 「禹貢」)

15 무장강武帳岡: 건강성建康城의 북문 밖 선무장宣武場 부근으로, 그곳에 행궁의 편좌便坐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한 것이다.

16 형양왕衡陽王 의계義季: 415~447. 남조南朝 송宋의 종실로, 무제武帝의 일곱 번째 아들이자, 문제의 아우이다. 자는 사호師護이다. 이때, 의계가 남연주 자사南兖州刺史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전별한 것이다.

들의 고단함을 알지 못한다. 지금 너희들에게 굶주림의 고통을 느끼게 하여 어물御物을 절약해야 함을 알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

|| 북주 고조北周高祖¹⁷가 만년현승萬年縣丞 악운樂運¹⁸에게 물었다. “경은 태자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겠는가?” 악운이 “중등中等의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하자, 고조가 중등의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 물었다. 악운이 대답하였다. “제 환공齊桓公 같은 사람입니다. 관중管仲이 그를 도와주었을 때는 패업을 이루었고, 수조豎刁¹⁹가 그를 보좌할 때는 난정亂政을 이루었으니, 함께 선을 행할 수도 있지만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고조가 “내 알겠노라.”라고 하고, 궁관을 잘 골라 뽑아 태자를 보좌하게 하고 악운을 발탁하여 경조승京兆丞에 임명하였다.

|| 수 문제隋文帝 때의 일이다. 어느 날 태자 용勇²⁰이 촉蜀 지방에서 만든 갑옷을 화려하게 꾸미자 문제가 다음과 같이 훈계하였다. “너는 태자가 되었으니, 응당 검약을 우선으로 해야 종묘를 잘 받들 수 있다. 아마도 너는 오늘 황태자가 되었다는 마음 때문에 예전의 일을 잊어버린 듯하다. 그러므로 너에게 예전에 내가 차던 칼 한 자루와 장아찌 한 그릇을 내리니, 네가 상사上士일 때 항상 먹던 음식이다. 지난 일을 기억한다면 내 마음을 이해할 것이다.”

17 북주 고조北周高祖: 543~578. 북주 제3대 군주 우문옹宇文邕으로, 재위 기간은 560년에서 578년이다.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사촌 우문호宇文護를 주살하고 친정하였다. 선비족의 풍속에서 벗어나 관제를 정리하였으며, 검약하게 생활하며 민생에 관심을 기울여 노비들을 석방하였으며, 불교를 금지하고 승려와 도사들을 환속시키고 사찰을 관청에 귀속시켰다. 이후 백성들의 생활이 안정되어 나라가 강성하였다.

18 악운樂運: 지는 승업承業이다. 벼슬은 만년현승, 경조승 등을 역임하였다. 직간으로 명성이 있었는데, 선제宣帝가 간언을 듣지 않자 수레에 관을 싣고 조정에 나아가 여덟 가지 과실을 거론한 글을 올려 황제의 노여움을 사기도 하였다.

19 수조豎刁: 춘추 시대 제 환공 때의 환관으로, ‘豎刁’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어린 시절부터 증복으로서 환공을 섬겼고, 성장하여서는 궁에 남기 위해 스스로 거세하였다. 환공이 몸져 눕자 궁문을 막고 외부인의 출입을 막아 환공을 굶어 죽게 만들었다. 환공이 죽은 뒤 역아易牙, 개방關方 등과 함께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 (『春秋左氏傳』 僖公 18年)

20 태자 용勇: ?~604. 수 문제隋文帝 양건楊堅의 맏아들로, 양건이 북주北周의 정권을 장악하였을 때, 낙주 총관洛州總管, 소총재小冢宰에 임명되어 옛 북제北齊 지역을 관할하였다. 문제가 즉위한 후 태자가 되었으나, 아우 양광楊廣의 모함으로 폐위되어 서인이 되었다. 후에 문제가 양옹을 다시 태자로 복위시키려 하자, 이를 알아챈 양광에게 죽임을 당했다. 방릉왕房陵王으로 추존되었다.

- || 당 태종唐太宗이 태자를 세운 뒤로 어떤 상황을 만날 때마다 태자를 가르쳤다. 태자가 밥을 먹는 것을 보고는 “네가 농사짓는 것의 어려움을 안다면 항상 이 밥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태자가 말을 탄 것을 보고는 “네가 말의 수고로움을 알아 말의 힘을 다 소진하지 않는다면 항상 말을 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태자가 배를 탄 것을 보고는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얹어버리기도 한다. 백성은 물과 같고 임금은 배와 같다.”라고 하고, 태자가 나무 아래서 쉬고 있는 것을 보고는 “나무는 먹줄을 따르면 곧아지고, 임금은 간언을 들으면 존엄해진다.”²¹라고 하였다. 또 『제범帝範』²² 12편을 지어 태자에게 내리니, 「건친建親」, 「구현求賢」, 「심관審官」, 「납간納諫」, 「거참去讒」, 「계영戒盈」, 「숭검崇儉」, 「상벌賞罰」, 「무농務農」, 「열무閱武」, 「숭문崇文」이다.
- || 당 현종唐玄宗이 원苑에 보리를 심고 태자 이하를 데리고 친히 가서 보리를 베며 말하였다. “이것은 종묘에 바치는 것이므로 감히 내가 직접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너희들에게 농사를 짓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었다.”
- || 당 헌종唐憲宗 때의 일이다. 원진元稹²³이 정원貞元 연간²⁴ 왕비王伾와 왕숙문王叔文²⁵이 잡기雜技로 동궁[순종順宗]의 총애를 얻어 영정永貞 연간²⁶에 천하를 어지럽힐 뻔한 일을 들어, 서둘러 선량하고 정직한 인사를 뽑아 여러 황자를 보도輔導하게 해야 한다고 상소하였다. 헌종이 그 말을 가납하였다.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21 나무는 … 존엄해진다: 『서경』 「열명說命」에 보이는 내용이다.

22 제범帝範: 당 태종이 제왕의 사적事跡을 적어서 태자에게 하사한 훈서로, 모두 1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23 원진元稹: 779~831. 자는 미지微之이다. 목종穆宗이 태자 시절부터 원진의 시가를 좋아하여, 즉위 후 그를 중용하였다. 젊을 때 거침없는 성격으로 인해 환관의 비위를 거슬러 말채찍으로 얼굴을 얻어맞고 강릉부江陵府로 좌천당하였으나, 의지할 곳이 없었던 그는 환관과 결탁하여 중앙 정계로 복귀하였고 재상까지 이르렀다. 후에 변절자로 간주 되었다. 백居易 白居易와는 동과급제同科及第하였고 평생의 시우詩友 관계를 맺어 나란히 ‘원백元白’으로 일컬어진다. 원화체元和體의 유행과 신악부新樂府 운동을 주도하였으며, 소설 『앵앵전鶯鶯傳』을 남겼다. (『舊唐書』 「元稹傳」)

24 정원貞元 연간: 당 덕종唐德宗 때의 연호로, 785년 1월 1일부터 805년 8월 4일까지 21년 동안 사용되었다.

25 왕비王伾와 왕숙문王叔文: 당 순종唐順宗의 태자 시절 공로로, 바둑 등의 잡기로 태자의 환심을 산 뒤 갖은 속임수로 태자를 오도하였고, 순종이 즉위하자 권세를 믿고 방자하게 행동하였다. 헌종이 즉위하여 두 사람을 유배시켰는데 왕비는 병사하고 왕숙문은 사사되었다. (『唐書』 「王叔文傳」)

26 영정永貞 연간: 당 순종 때의 연호로, 805년 8월 5일부터 동년 12월 30일까지 사용되었다.

- || 금 세종金世宗²⁷이 태자에게 말하였다. “짐이 너를 위해 천하를 안정시켰으니, 더 이상 경영할 일은 없다. 너는 오직 조종의 순수한 유풍遺風을 잊지 말아서, 도와 덕을 부지런히 닦아 효를 행하고 상벌을 분명하게 펼쳐 다스리기만 하면 된다. 예전에 당 태종唐太宗이 고종高宗에게 ‘내가 고구려 정벌을 끝마치지 못했으니, 너는 이것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하였는데,²⁸ 짐은 너에게 이와 같은 일은 남기지 않겠다.”
- || 남송 효종南宋孝宗이 보신輔臣에게 말하였다. “옛사람은 자식 교육을 중요하게 여겼으니, 그 일이 『예기』 「문왕세자文王世子」에 갖추어져 있다. 널리 총량忠良한 사람을 뽑아서 전후 좌우에 모두 바른 사람이 있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설거주薛居州 한 사람이 있더라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²⁹ 이에 왕십봉王十朋³⁰과 진량한陳良翰³¹을 태자첨사太子詹事로 삼고, 유돈劉焯에게 태자시독太子侍讀을 겸하게 하였다.
- || 남송 이종南宋理宗은 집안 교육이 매우 엄격하였다. 태자는 답이 처음 올면 내전에 들어가 문안을 드리고, 답이 두 번째로 올면 동궁으로 돌아왔으며, 답이 세 번째로 올면 회의소會議所로 가서 여러 일을 상의하여 결정하였다. 회의소에서 나오면 자선당慈善堂으로 들어가 경사經史를 청강하였다. 해가 질 무렵 다시 황제가 기거하는 곳에 이르면 황제가 오늘 무슨 책을 강하였는지 묻고 태자는 답을 하였는데, 답이 맞으면 차를 내리고 앉게 하였으나 답이 틀리면 반복하여 분석하게 하고 다음 날 다시 강하게 하였다.

27 금 세종金世宗: 1123~1189. 금 제5대 군주 완안옹完顔雍으로, 재위 기간은 1161년에서 1189년이다. 희종을 암살하고 즉위한 해릉양왕海陵煬王이 폭정을 일삼고 무리하게 송宋을 공격하자,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켜 해릉양왕을 죽이고 완안옹을 옹립하였다. 완안옹은 즉위하여 송과 화의를 맺고, 검소한 생활을 하며 내정에 힘써 번영을 이루어, ‘소요순小堯舜’이라고 일컬어졌다.

28 당 태종唐太宗이 … 하였는데: 고구려 보장왕寶藏王 4년(645)에 당 태종이 3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하였으나, 안시성安山城 성주인 양만춘楊萬春에게 패하여 철수하였다. 후에 이듬해 고종이 보장왕 27년(668)에 신라와 연합하여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일설에는 태종이 고구려 정벌에 나선 것을 후회하여 태자에게 고구려를 침공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고도 한다.

29 설거주薛居州 … 않는다: 현인이 조정에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모두 선하지 않다면 임금을 선한 쪽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말이다. 설거주는 전국 시대 송宋의 현신으로, 대불승戴不勝이 왕을 선도하기 위해 그를 항상 왕의 곁에 있게 하였다. 이를 두고 맹자가 “설거주 한 사람으로 송왕을 어찌하겠는가.[一薛居州獨如宋王何]”라고 하였다. (『孟子』 「滕文公」)

30 왕십봉王十朋: 1112~1171. 자는 구령龜齡이다. 관직은 용도각학사龍圖閣學士, 시어사侍御史 등을 역임하였으며, 금에 대한 항전책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주희朱熹, 왕응신汪應辰 등의 학자들과 교류하였으며, 저서에 『매계집梅溪集』과 『춘추해春秋解』, 『상서해尙書解』, 『논어해論語解』 등이 있다.

31 진량한陳良翰: 자는 방언邦彦이다. 관직이 병부시랑, 태자첨사 겸 시랑에 이르렀다.

- || 남송 이종이 황태자가 태학에서 공자를 배알하도록 조서를 내렸다. 손수 조서를 내려 “호위虎闈에서 치주齒耑하는 일³²은 태자의 일이다. 석전釋奠과 사채舍菜³³는 우리나라에서 폐한 적이 없으니, 태자에게 배알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 원 세조元世祖가 왕순王恂³⁴을 태자 찬선太子贊善으로 삼았다. 왕순은 연왕燕王³⁵【곧 태자이다.】에게 기거하고 출입하는 때, 음식과 의복의 예절, 정무를 보고 사람을 쓰는 요체, 삼강오륜의 의미,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도와 역대 흥망의 원인에 이르기까지 말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연왕이 하루는 왕순에게 마음을 지키는 방도에 관해 말하자, 왕순이 “제가 일전에 허형許衡³⁶에게 들었는데, 사람의 마음은 책을 찍어내는 목판 같다고 했습니다. 판목版木이 어그러지지 않으면 수천만 장을 찍더라도 모두 어그러지지 않고, 판목이 이미 어그러졌다면 그것으로 찍어낸 종이는 모두 어그러집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연왕이 “좋은 말이다.”라고 하였다. 【이상은 『속자치통감』에 보인다.】
- || 명 태조明太祖가 화공에게 옛사람이 효도한 행적과 자신이 몸소 겪은 정벌 전쟁에서의 역경을 그림으로 그리게 하고, 태자와 제왕들에게 보여주며 말하였다. “우리 집안은 본래 농사를 업으로 삼아 선조들이 대대로 충후忠厚한 덕을 쌓았다. 지금 집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모두 선행을 쌓은 은택이 자손에게 미친 것이다.³⁷ 후세의 자손들은 부유하고 귀하기만 해서 필시 조종이 덕을 쌓은 어려움을 알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 그림

32 호위虎闈에서 치주齒耑하는 일: ‘호위’는 궁성의 ‘호문虎門’과 같은 말로, 호문의 좌측에 있던 국자감을 가리키며, 치주하는 일이란 태자가 학교에 들어갈 때 신분에 따르지 않고 연령에 따라서 다른 학생 사이에 자리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33 석전釋奠과 사채舍菜: 석전과 사채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많으나, 석전은 고대에 학교에서 술과 음식을 차려 놓고 선생先聖과 선사先師에게 제를 올리는 일종의 전례이며, 사채는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하여 마름 따위를 제수로 사용하여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여기서 ‘석釋’과 ‘사술’은 ‘농다’ 또는 ‘올리다’의 뜻으로 의미가 같다.

34 왕순王恂: 1235~1281. 자는 경보敬甫이다. 역산曆算에 정통하였으며, 태자찬선太子贊善, 태시령太史令 등을 지냈다. 허형許衡, 관수경鄆守敬 등과 함께 『수시력授時曆』을 만들어 반포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역대 역법 가운데 가장 정밀한 것으로 평가된다.

35 연왕燕王: 원 세조의 차남이자 성종成宗의 부친인 태자 첸김眞金을 가리킨다. 황태자에 책봉되기 전에 연왕에 봉해졌다. 형이 요절하여 황태자가 되었으나, 정치적 대립과 부왕과의 갈등으로 즉위하지 못하고 병으로 죽었다. 사후에 성종에 의해 유종裕宗으로 추존되었다.

36 허형許衡: 『양사기養士氣』 법조 10번 각주 참조.

37 선행을 … 것이다: 『주역』 곤괘坤卦에 “덕행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자손에게까지 경사가 미친다.[積善之家 必有餘慶]”라고 하였다.

을 남겨 아침저녁으로 살피게 하니, 경계하는 바가 있기를 바란다.”

- || 명 태조가 또 대본당^{大本堂}을 세우고 옛사람의 그림과 서적을 가져다가 그 안을 채우고 사방의 이름난 유학자들을 불러 태자와 왕들을 가르치게 하였다. 어느 날 태조가 조회를 마치고 나와 궁중의 빈터를 가리키며 태자에게 말하였다. “이곳은 참으로 누각을 세워 경치를 관람하고 노닐기 좋은 곳이지만 지금 채소를 심게 한 것은 차마 백성들을 수고롭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 명 성조^{明成祖}가 시신^{侍臣}에게 옛사람들의 행적 중 경계하고 살피볼 만한 것을 모으게 하고, 책이 완성되자 『문화보감^{文華寶鑑}』이라고 이름하였다. 성조가 황태자를 불러 “자신을 다스리고 남을 다스리는 요체가 이 책에 갖추어져 있으니, 너는 힘써야 할 것이다.”라고 훈유하였다.
- || 명 성조가 오이라트^{瓦剌}를 직접 정벌할 때, 황태손에게 행군을 따르게 하고 “몸소 진을 치게 하여 장졸들의 노고와 정벌이 쉽지 않음을 보게 하겠다.”라고 하였다. 또 태조^{太祖}가 창업한 일의 어려움과 지난날 흥망과 잘잘못을 모아 엮고 하사하였는데, 『무본지훈^{務本之訓}』이라 이름하였다.
- || 명 성조가 글을 써서 태자를 훈계하였다. “직간하는 말을 좋아하면 덕이 날로 넓어지고, 아첨하는 말을 좋아하면 잘못이 날로 더해진다. 너는 장차 종사^{宗社}와 백성들의 군주가 될 것이니 아랫사람들의 말을 살피지 않아서는 안 된다.”
- || 명 인종^{明仁宗}이 중정^{中正}에 관한 도서를 태자에게 하사하며 말하였다. “중정^{中正}은 체體와 용用이 하나이다. 편벽되지 않고 치우치지 않으며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함이 없어³⁸ 천하의 온 선함이 모두 여기에 근원한다. 융성했던 옛날 제왕이 전수한 요체 또한 여기에 있으니, 너는 이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38 편벽되지 … 없어: 주희^{朱熹}가 ‘중중’의 뜻을 풀이한 말이다. 『중용장구』 「제사^{題辭}」에서 “치우치지 않고 기대지 않아서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는 것을 ‘중’이라 이르고, ‘용’은 평상을 이른다.[不偏不倚 無過不及之謂中 庸平常也]”라고 하였다.

|| 명 목종³⁹穆宗 때의 일이다. 급사중³⁹給事中 장로³⁹張鹵가 “황태자가 지금 나이가 어리므로, 안에서 모시는 신하는 관계된 바가 더욱 중합니다. 응당 사례감⁴⁰司禮監을 신칙하고 좌우의 사람을 신중히 발탁하여 매일 경서와 사서⁴⁰史書를 수업하고 민정⁴⁰民情을 이야기하고 행동거지를 바름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훗날 어진 이를 가까이하고 학문을 강론하며 천명을 받고 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단서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하니, 목종이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 【이상은 『명사강목』에 보인다.】

계조 戒條

|| 진 헌공⁴¹晉獻公이 태자 신생⁴²申生에게 동산⁴¹東山의 고락씨⁴³卓落氏를 정벌하게 하자, 이극벽⁴¹克이 다음과 같이 간언하였다. “태자는 종묘와 사직의 제사를 받들고 밤낮으로 임금의 음식을 살피는 자입니다. 군대는 명에 따라 움직일 뿐인데, 태자가 임금의 명을 받으면 위엄이 없게 되고, 독단적으로 명을 내리면 효가 아니게 됩니다. 그러므로 임금의 적자는 군대를 통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춘추좌씨전』에 보인다.】

|| 전한 무제⁴⁴前漢武帝가 여 태자⁴⁴戾太子를 위해 박망원⁴⁴博望苑을 만들어 빈객과 사귀게 하고 태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었다. 이 때문에 이단⁴⁴異端으로 진언하는 빈객이 많았다.

39 장로³⁹張鹵: 1523~1598. 자는 소화³⁹昭和이다. 태상시소경³⁹太常寺少卿, 대리시경³⁹大理寺卿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에 『장호동집³⁹張滄東集』, 『가릉소초³⁹嘉隆疏鈔』 등이 있다.

40 사례감⁴⁰司禮監: 명대⁴⁰明代 환관의 최고 관청이다. 환관은 본래 이부⁴⁰吏部가 관할하였는데, 성조⁴⁰成祖 때부터 사례감이 환관을 관할하게 되었다.

41 진 헌공⁴¹晉獻公: 춘추 시대 진의 군주로, 성은 희⁴¹姬, 이름은 궈제⁴¹詭諸이다. 무공⁴¹武公 칭稱의 아들이다. 즉위 후에 방계⁴¹傍系 공족⁴¹公族들을 숙청하고 강⁴¹絳으로 천도하여 권력을 지켰으며, 여용⁴¹驩戎, 경⁴¹耿, 괄⁴¹郭, 위⁴¹魏를 복속시키고 순식⁴¹適息의 기도⁴¹閭道 滅⁴¹의 계획으로 곡⁴¹穀과 우⁴¹虞를 병탄하여 세력을 확장하였다. 폐친인 여희⁴¹驪姬의 참소에 따라 태자를 죽이고 아들 중이⁴¹重耳와 이오⁴¹夷吾를 추방한 다음 여희가 낳은 해제⁴¹奚齊를 태자로 책봉하였다. 이러한 후계 문제는 진⁴¹晉에 큰 혼란을 초래하였다.

42 신생⁴²申生: 진 헌공의 태자로, 여희를 총애했던 아버지 헌공에 의해 곡옥⁴²曲沃으로 쫓겨났다. 이후 여희가 헌공에게 참소하여 죽이려 하자, 여희의 음모임을 밝히면 아버지가 상심할 것을 염려하여 밝히지 않고 자살하였다. (『禮記』 「檀弓」)

43 고락씨⁴³卓落氏: 산서⁴³山西省 화숙현⁴³和順縣 일대에 살던 부족으로, 적적⁴³赤翟의 별종이다. 점차 남하하여 춘추 시대에는 진⁴³晉의 도성인 강성⁴³絳城과 근접한 원성⁴³垣城 일대에 거주하며 진의 변경을 자주 침입하였다. 동산⁴³東山翟으로도 불린다.

44 여 태자⁴⁴戾太子: 기원전 128~기원전 91. 전한 무제⁴⁴前漢武帝의 장자 유거⁴⁴劉據이다. 권신 강충⁴⁴江充의 모함을 받게 되자, 거병⁴⁴擧兵하여 강충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하였다. 뒤에 태자의 억울함을 알게 된 무제는 태자를 위해 사자⁴⁴宮子宮을 짓고 ‘여⁴⁴戾’라는 시호를 내렸다. (『漢書』 「武五子傳」)

|| 전한 원제前漢元帝 때의 일이다. 산양왕山陽王 유강劉康⁴⁵이 재예가 있어 원제가 산양왕을 후사로 삼으려는 마음이 있었다. 원제는 음악을 좋아하여 간혹 전殿 아래에 비고鞞鼓⁴⁶를 설치하고 직접 누대의 난간 위에 올라 구리 구슬을 떨어뜨려 북을 울렸는데, 진격을 독려하는 북소리와 똑같았다. 산양왕 또한 이것을 잘하여 원제가 자주 칭찬하니, 시중侍中 사단史丹⁴⁷이 진언하였다. “이른바 인재란 명민하면서 학문을 좋아하고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아는 자이니, 황태자가 이런 사람입니다. 만일 갖가지 악기 사이에서 인재를 취한다면 진혜陳惠와 이미李微⁴⁸가 광형匡衡⁴⁹보다 뛰어나니, 이들을 상국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원제가 말이 없었다.

|| 북제 현조北齊顯祖 때의 일이다. 태자 고은高殷⁵⁰은 성품이 온화하고 활달하며, 사인士人을 예우하고 학문을 좋아하였으며, 시정時政을 잘 살폈으므로 칭찬이 자자하였다. 그러나 문선제文宣帝[현조]는 늘상 태자가 한족漢族의 성품을 지닌 것을 싫어하여 폐위하고자 하였다. 문선제가 금봉대金鳳臺에 올라 태자를 불러 직접 죄수를 베어 죽이게 하니, 태자가 불쌍히 여겨 어쩔 줄 몰라 하였다. 문선제가 크게 화를 내며 말채찍으로 때렸는데, 태자가 이때부터 기가 죽어 말을 더듬었으며 정신이 불안하였으므로, 문선제가 항상 호인胡人 강호아康虎兒를 보내 태자를 보호하게 하였다.

|| 북주 고조北周高祖 때의 일이다. 태자 우문운宇文贇⁵¹이 소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자, 좌궁정左宮正 우문백宇文伯이 고조에게 말하였다. “황태자는 사해를 돌봐야 할 자인데, 덕이 있다는 명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바라건대, 바른 사람을 잘 골라 사우師友로 두

45 유강劉康: 전한 원제前漢元帝의 차남이자, 애제哀帝의 부친이다. 공황제共皇帝로 추존되었다.

46 비고鞞鼓: 기병騎兵이 말 위에서 치는 소고小鼓이다.

47 사단史丹: ?~기원전 13. 자는 군중君仲이다. 부음父蔭으로 부마도위시중駙馬都尉侍中이 되었는데, 원제元帝가 병이 심해져 부 소의傳昭儀의 소생을 후사로 삼으려 하자, 사단이 눈물을 흘리며 간언하여 태자를 폐하려던 일을 저지하였다.

48 진혜陳惠와 이미李微: 둘 다 황문黃門에서 북을 치고 피리를 불던 악관이다.

49 광형匡衡: 「명상벌명賞罰」 법조 27번 각주 참조.

50 고은高殷: 545~561. 남북조 북제北齊의 2대 군주로, 재위 기간은 559년에서 560년이다. 문선제文宣帝 고양高洋의 맏아들이다. 숙부인 고연高演에게 폐위되었으므로 폐제廢帝라고 불린다.

51 우문운宇文贇: 559~580. 북주 제4대 군주로, 재위 기간은 578년에서 580년이다. 무제의 맏아들로 태자에 책봉되었는데, 자질을 의심받아 아버지로부터 엄격한 교육을 받았다. 즉위하여 아버지의 신하를 숙청하고 대규모 궁전을 축조하고 사치를 일삼고 주색에 빠져 정무를 외척에게 일임하여 결국 멸망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어 임금이 될 자질을 조호調護한다면, 아직은 일취월장하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혹여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후회해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 당 고종唐高宗이 상란각翔鸞閣에 거둥하여 큰 연회를 관람하였다. 악공樂工을 동과 서 두 무리로 나누어 옹왕雍王 이현李賢⁵²에게는 서쪽 무리를 맡게 하고 주왕周王 이현李顯⁵³에게는 동쪽 무리를 맡게 하여 승패를 겨루게 하고 즐거워하니, 학처준郝處俊⁵⁴이 다음과 같이 간언하였다. “두 왕은 나이가 아직 어리고 지취志趣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 응당 배를 권하고 대추를 양보하며⁵⁵ 한 몸처럼 서로 친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두 무리로 나누어 번갈아 솜씨를 뽑내고 다투게 하니, 승부를 다투고 조롱하며 무례하게 구는 것은 예의를 숭상하고 화목을 권장하는 방법이 아닌 듯합니다.”

|| 남한南漢의 군주⁵⁶가 진왕秦王 유흥도劉弘度⁵⁷에게 숙위병宿衛兵 1천 인을 모집하라고 명하였는데, 모두 시정의 무리배들이었다. 유흥도가 이들과 가깝게 지내자, 동평장사同平章事 양동잠楊洞潛이 “진왕은 나라의 적장자이니, 단정한 인사를 가까이해야 합니다. 진왕에게 군사를 맡긴 것도 이미 잘못된 일이거늘, 하물며 소인배들을 가까이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라고 간언하였다. 그러나 남한의 군주는 끝내 유흥도에게 훈계하지 않았다.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52 옹왕雍王 이현李賢: 654~684. 당 고종의 육남이자 측천무후의 차자이다. 장자인 효경태자孝敬太子가 측천무후에게 독살당한 뒤, 태자가 되었으나 자신도 목숨을 보전하지 못하게 될 줄 알고서 오이를 다 따져 빈 넝쿨만 남았다는 내용의 「황대과사黃臺瓜辭」를 지어 악공에게 노래하게 하였다. 이후 폐서인 되어 유배지에서 죽었다.

53 주왕周王 이현李顯: 훗날 즉위하여 당 중종唐中宗이 된다. 「여염치勵廉恥」 계조 23번 각주 참조.

54 학처준郝處俊: 606~681. 동대시랑東臺侍郎, 중서령中書令 등을 역임하였다. 668년 나당연합군唐聯軍이 고구려를 공격할 때, 요동도 부총관遼東道副總管의 신분으로 참전하였다. 측천무후의 즉위를 반대하다가 태자소보太子少保로 좌천되었다. 저서에 「양당서지兩唐書志」가 있다.

55 배를 권하고 대추를 양보하며: 우애가 돈독함을 비유한 말이다. 남송南宋의 왕태王泰가 조모가 대추를 주자 다른 아이들은 앞다투어 대추를 집어 가는데, 홀로 가져가지 않았다는 고사와 전한前漢의 공융孔融이 작은 배만 골라 먹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梁書』「王泰傳」; 『後漢書』「孔融傳」)

56 남한南漢의 군주: 고조高祖 유염劉龔을 가리킨다. 「홀형옥恤刑獄」 계조 45번 각주 참조.

57 진왕秦王 유흥도劉弘度: 920~943. 남한高祖南漢高祖 유염의 삼남으로, 위로 두 형이 있었으나, 모두 일찍 죽어 제위를 이을 후계자로 여겨졌다. 초명은 흥도인데, 제위에 오른 뒤에 '분'으로 개명하였다. 아우들을 의심해서 갈등을 빚다가 진왕왕 유성劉晟에 의해 폐위되어 살해되었다.

근안 謹按

삼가 살펴보건대, 「하서夏書」에서 계략을 찬양할 적에 반드시 대우大禹의 도를 이었음을 말하고, 「주서周書」에서 무왕武王을 칭송할 적에 반드시 문왕文王의 계책을 받들었음을 말했습니다. 계는 진실로 철왕哲王이고 무왕은 진실로 성군입니다. 철왕이 되고 성군이 된 까닭을 미루어보면, 대우가 법전과 법칙을 두어 그 자손들에게 남겨 준 것⁵⁸이 철왕이 되는 길을 열어 주었고, 문왕이 능히 자손의 기업을 열고 번창하게 하여 후인을 도와준 것⁵⁹이 성군이 되도록 계발시켰습니다. 그렇다면 후손이 어질고 명철한 것은 어느 것인들 전왕의 인도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하겠습니까. 아, 태자의 책무는 위로는 책임져야 할 종묘와 사직이 있고, 아래로는 떠받드는 백관과 만민이 있습니다. 만일 보양하기를 올바르게 하지 않고 훈육하기를 방정하게 하지 않는다면 덕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심지가 나태해지기 쉬우니, 장차 어떻게 어렵고 큰 책임을 짊어지고 장구한 업적을 보전하겠습니까. 가의賈誼의 「보부편保傅篇」⁶⁰과 원진元稹의 「교본서敎本書」⁶¹에서 반복하고 논열하여 상세히 다뤄 빠뜨린 것이 없지만, 그 요체는 효제孝悌와 예의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후대에 복을 남겨주는 계책이 어찌 여기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400년 동안 태평하게 다스려진 것은 성신聖神께서 복을 남겨주신 공렬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세종께서 몸소 내선內禪⁶²을 받아 교화를 베풀어 다스려 화평하게 하심

58 법전과 … 것: 『서경』 「오자지가五子之歌」에 “밝고 밝으신 우리 선조는 만방의 임금이니, 법전과 법칙을 마련하시어 자손들에게 물려주셨다.[明明我祖 萬邦之君 有典有則 貽厥子孫]”라고 하였다.

59 능히 … 것: 『시경』 「무武」에 “진실로 문덕이 있는 문왕이 그 뒤를 열어 놓자 무왕이 이를 이어받아 은을 이겨 살육을 저지해서 공을 이루었다.[允文文王 克開厥後 嗣武受之 勝殷遏劉 耄定爾功]”라고 하였고, 「옹擁」에 “현명하고 명철한 인물이요 문무를 겸비한 임금이니, 편안함이 황천에 미쳐 그 후손을 번창하게 하였다.[宣哲維人 文武維后 燕及皇天 克昌厥後]”라고 하였으며, 「군아군牙」에 주 목왕周穆王이 선왕의 덕을 말하면서 “크게 드러났도다, 문왕의 가르침이여. 크게 이었다, 무왕의 공렬이여. 우리 후인을 계도하고 돕되, 모두 바름으로써 하여 결함이 없다.[丕顯哉 文王謨 丕承哉 武王烈 啓佑我後人 咸以正罔缺]”라고 한 데서 보인다.

60 보부편保傅篇: 전한前漢의 가의가 지은 『신서新書』의 편명으로, 태자의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61 교본서敎本書: 당唐의 원진이 현종憲宗에게 서둘러 선량하고 정직한 인사를 뽑아 여러 황자를 보도轉導하게 해야 한다고 상소한 글로, 「논교본서論敎本書」라고도 한다. 자세한 내용은 「유후곤裕後昆」 법조法條 기사에 보인다.

62 내선內禪: 임금이 살아 있는 동안에 아들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주던 일을 말한다. 1418년(태종 18)에 태종은 “18년 동안이나 호랑이 등에 탔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十八年騎虎 亦已足矣]”라고 하며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上王으로 물려났다. (『太宗實錄』 18년 8월 8일)

은 바로 태종께서 유선⁶³을 설치하여 보도한 소치입니다. 인종께서 동궁에서 덕을 닦으시어 아름다운 명성이 세상에 널리 퍼진 것도 중종께서 좌잡⁶⁴을 지어 타이르고 경계하신 효과입니다. 인조께서 편안함을 물려줌에 있어서 도를 공경하는 가르침에 근본을 두었기 때문에 효종의 성덕⁶⁵을 이룰 수 있었고, 현종께서 세자를 교육함에 있어서 현명한 빈사⁶⁶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숙종의 현모⁶⁵를 열 수 있었습니다. 열성조가 대대로 물려준 심법⁶⁶이 저와 같이 탁월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황천⁶⁶이 정성스레 돌봐주고 조종⁶⁶이 묵묵히 도우시니, 인지⁶⁶와 종사⁶⁶의 경사가 성대하게 일어나 본손⁶⁶과 지손⁶⁶이 백대에 이어지는 아름다움을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⁶⁶

다만 생각건대, 제왕의 집안은 서인의 집안과는 다르니, 보양하고 교육하는 도리에 있어 더욱 올바른 방법을 다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만 한가하고 편안한 데에 익숙하다 보니 잘못 인도하기 쉽습니다. 어렸을 적에 보모가 업고 안아주고 근습⁶⁶이 떠받드는 것은 이미 어린아이를 기르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스승에게 나아간 뒤에도 요속⁶⁶을 갖추기는 하나 형식에 따라 숫자나 채우는 데 지나지 않고, 강독을 행하기는 하나 또한 글자만 따지고 글의 뜻은 이해하지 못하는 데 가까우며, 덕행으로 훈도⁶⁶한 적이 없고 예법으로 교유⁶⁶한 일이 드무니, 이는 명월주⁶⁶와 야광벽⁶⁶을 길가에 버려두는 것과 같습니다. 『논어』 「자로⁶⁶」에 “자기 몸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행해지고, 자기 몸이 바르지 않으면 명령하더라도 백성들이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윗사람이 명령한 것을 따르지 않고 윗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따르는 것은 아랫사람의 상⁶⁶정⁶⁶입니다. 더구나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본받는 것은 더욱이 상하관계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신이 그러므로 “그가 보고 느껴서 익숙해지기를 바란다면 몸소 가르치는 것보다 절실한 것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끌어 도와주는 방법을 말하자면, 오직 전후좌우

63 유선⁶³: 동궁의 교육을 담당하던 관원으로, 1402년(태종 2)에 설치되었다. 빈사⁶⁶, 시학⁶⁶ 등과 함께 동궁이 『효경⁶⁶』 등의 유학서를 익히고 유교의 교양을 쌓으며 덕성을 함양하도록 교육하는 임무를 맡았다. 세자시강원의 직제를 갖추는 때 이 직책이 채택되지 않았다가 영조⁶⁶ 때에 세손의 교육을 위해 태종의 고사를 따르면서 다시 등장하였다.

64 중종께서 좌잡⁶⁴을 지어: 원자⁶⁶였던 인종이 성품이 바르고, 학문에 뛰어난 소질을 보이자 중종이 유모에게 상을 내리고 친히 잠계⁶⁶를 지어 원자에게 내렸다. (『中宗實錄』 12년 4월 13일)

65 인지⁶⁶와 종사⁶⁶: 『시경』 「주남⁶⁶」의 편명으로, 두 편 모두 자손이 번창함을 노래하는 내용이다.

66 본손과 … 것입니다: 자손이 영원히 현달할 것이라는 말로, 『시경』 「문왕⁶⁶」에 “문왕의 자손들이 본손과 지손이 백세토록 전할 것이다.[文王孫子 本支百世]”라고 하였다.

에 모두 올바른 사람을 두어 그들과 함께 지내게 하여 봉마⁶⁷의 도움을 받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아! 위에서 진언한 30여 조목은 모두 임금의 도리와 크게 관련 있는 것들입니다. 본받을 만한 것은 본받고 경계할 만한 것은 경계하여 하나하나 몸소 실천하여 종이 위의 진부한 말이 되지 않게 하신다면, 모든 조목에서 논한 것이 모두 후손에게 훌륭한 덕행을 남길 근본이 될 뿐만 아니라 억만 년 동안 영원할 기틀을 더욱 공고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념하고 유념하소서.

67 봉마^{蓬麻}: ‘봉생마중^{蓬生麻中}’의 준말로, 훌륭한 벗을 말한다. 『순자』 「권학^{勸學}」에 “썩이 삼 속에서 자라면 붙잡아 주지 않아도 곧다.[^{蓬生麻中 不扶而直}]”라고 하였다.



홍봉한(洪鳳漢)

부록

홍봉한洪鳳漢 연보年譜

홍낙인洪樂仁의 『선부군연보략先府君年譜略』, 홍낙신洪樂信의 『홍익정유사洪翼靖遺事』, 홍봉한洪鳳漢의 『익익재만록翼翼齋漫錄』,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정조正祖의 간찰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연대	나이	기사
1713년(숙종 39)	1세	2월 23일, 안국방安國坊에서 태어나다.
1718년(숙종 44)	6세	8월, 어머니 임씨任氏가 세상을 떠나다.
1721년(경종 1)	9세	○월, 천연두에 걸리다.
1722년(경종 2)	10세	3월, 신임사화辛丑士禍로 백부伯父 홍석보洪錫輔는 거제巨濟로 귀향가고 부친 흥헌보洪鉉輔는 삭탈관직 되다. 모친을 따라 구호鰲湖에서 머물다.
1723년(경종 3)	11세	7월, 외조부 문희공文僉公 임방任篈이 세상을 떠나다.
1724년(경종 4)	14세	가을, 백부 홍석보가 계신 평양 임소任所로 가다. 현옹玄翁 정내교鄭來僑에게 『사기史記』를 배우다.
1727년(영조 3)	15세	4월, 황해도 관찰사 이집李湑의 딸과 혼인하다. 7월, 부친 흥헌보가 백부 홍석보를 모시고 구호에서 머물게 되어 따라가다.
1728년(영조 4)	16세	3월, 역모가 일어나자 부친 흥헌보가 분문奔聞하기 위하여 서울 집으로 돌아오다. 10월, 독서에 매진하여, 이때부터 문예文藝가 일취월장하다.
1729년(영조 5)	17세	1월, 장남 홍낙인洪樂仁이 태어나다.
1730년(영조 6)	18세	12월, 외조모 이부인李夫人이 세상을 떠나다.
1731년(영조 7)	19세	10월, 부친 흥헌보를 따라 경기 감영 임소로 가다.
1733년(영조 9)	21세	9월, 식년 진사 초시 3등.
1734년(영조 10)	22세	9월, 식년 진사 초시 3등.
1735년(영조 11)	23세	4월, 증광시 진사 3등 제9인에 들다. 6월, 딸 혜경궁惠慶宮이 태어나다. 8월, 송시열宋時烈과 송준길宋俊吉을 문묘에 종향從享할 것과 현자賢者를 무함한 신치운申致雲을 벌할 것을 태학 유생들과 함께 상소하다. 12월, 조모 이부인이 세상을 떠나다.

연대	나이	기사
1736년(영조 12)	24세	겨울, 가주可洲 안중관安重觀에게 『주역』을 배우다. 안중관이 ‘익익翼翼’ 이라는 재호齋號를 지어주다.
1739년(영조 15)	27세	3월, 차남 홍낙신洪樂信이 태어나다.
1740년(영조 16)	28세	윤6월, 부친 정헌공貞獻公 홍현보가 세상을 떠나다.
1741년(영조 17)	29세	5월, 큰누이가 세상을 떠나다. 역병이 돌아 집안사람들이 모두 피했는데, 홀로 누이의 상을 치르다.
1742년(영조 18)	30세	8월, 부친 정헌공 홍현보의 복상服喪을 마치다. 9월, 경릉敬陵 참봉에 수의首擬되었으나 미수未受하다.
1743년(영조 19)	31세	윤4월, 태학장의太學掌議로서 국왕 친임 대사례大射禮에 참여하여 임금의 술을 받다. 7월, 의릉懿陵 참봉이 되다. 9월, 문과 정시 초시 1등 제3인에 들다. 딸이 세자빈의 재간택에 들다. 10월, 딸이 세자빈의 삼간택에 들다. 11월, 익위사세마衛司洗馬가 되다. 세자빈의 삼간택三揀擇을 행하여 딸이 간택되다.
1744년(영조 20)	32세	1월, 딸이 왕세자빈에 책봉되다. 8월,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임금에게 건의하여 6품으로 오르다. 10월, 문과 정시 초시 1등 3인에 들다. 문과 을과乙科 제1인으로 급제하다. 11월, 승정원가주서가 되다. 문겸文兼이 되다. 시강원문학特講院文學이 되다.
1745년(영조 21)	33세	1월, 비국문낭청備局文郎廳이 되다. 2월, 수어중사관守禦從事官이 되다. 빈궁嬪宮의 병환 때 직속한 노고로 말을 하사받다. 4월, 광주부윤廣州府尹이 되다. 9월, 동부승지가 되다. 10월, 우부승지가 되다.
1746년(영조 22)	34세	1월, 좌부승지가 되다. 2월, 양주 목사楊州牧使가 되다. 3월, 공홍 감사公洪監司가 되다. 금호록錦湖錄을 쓰다. 9월, 공조참의가 되다. 10월, 우부승지가 되다. 12월, 좌부승지가 되다.

연대	나이	기사
1747년(영조 23)	35세	2월, 호조참의가 되다. 6월, 우부승지가 되다. 좌부승지가 되다. 9월, 우승지가 되다. 공조참의가 되다. 이조참의에 제수되었는데 두 번 상소하여 체차되다. 10월, 우부승지가 되다.
1748년(영조 24)	36세	1월, 대사성이 되다. 5월, 좌승지가 되다. 경기 감사가 되다.
1749년(영조 25)	37세	1월, 사도세자惠悼世子的 대리청정이 시작되다. 3월,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겸 장흥고長興庫 제조提調, 차비국당상관差備局堂上官이 되다. 4월, 병조참판이 되다. 6월, 도승지가 되다. 9월, 예조참판이 되다. 승문원 제조가 되다.
1750년(영조 26)	38세	1월, 어영대장이 되고 동의금同義禁을 겸하다. 3월, 우윤右尹이 되다. 5월, 호조참판이 되다. 6월,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를 겸하다. 9월, 연접도감延接都監 제조가 되다.
1751년(영조 27)	39세	3월, 좌윤左尹에 임명되다. 4월, 내의원에서 숙직한 노고로, 가의대부로 오르다. 5월, 예조참판이 되다. 청계천이 토사로 막혀 홍수가 나면 민가가 수몰된다고 준천濬川할 것을 청하다. 6월, 균역청 일에 동참하라는 명을 받다. 7월, 열조의 어압을 모아서 첩을 만들라는 명을 받다. 10월, 상의원尙衣院제조를 겸하다. 11월, 중국인 자손의 신포 면제 대가를 토산으로 하기를 청하다. 준천 사업이 시급하다는 것을 아뢰다.
1752년(영조 28)	40세	5월, 대왕대비전의 옥보전문玉寶篆文을 써서 올려, 말을 하사받다. 7월, 호조참판이 되다. 9월, 외손(정조正祖)이 태어나다. 대사헌이 되다. 10월, 호조참판이 되다. 자헌대부로 오르다. 11월,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를 겸하다. 12월, 제신諸臣과 함께 공시貢市의 폐막弊瘼을 바로잡으라는 명을 받다.

연대	나이	기사
1753년(영조 29)	41세	<p>1월, 예조판서가 되다. 2월, 동경연을 겸하다. 3월, 예조판서가 되다. 5월, 치성雉城이 완성되다. 축성의 공로로 말을 하사받다. 6월, 장흥고長興庫제조提調를 겸하다. 9월, 예조판서 겸 내국제조가 되다. 『궁원식례보편宮園式禮補編』의 서문을 쓰다. 10월, 사역원司譯院제조를 겸하다. 12월, 동지춘추관사가 되다. 좌참찬이 되다. 한강漢江, 노량路梁, 양화楊花 세 진鎮을 삼영三營에 분속시킬 것을 아뢰다.</p>
1754년(영조 30)	42세	<p>0월, 관동關東의 상정법을 바로잡다. 10월, 총용사가 되다. 임진臨津의 수비가 허술하므로 임진절목臨津節目을 수정하여 올린다. 11월, 임진을 경략하는 책임을 부여받다.</p>
1755년(영조 31)	43세	<p>2월, 제신諸臣과 함께 시노비감공절목寺奴婢減貢節目을 바로잡으라는 명을 받다. 3월, 어영대장이 되다. 5월, 훈련대장이 되다. 병조판서가 되다. 7월, 정헌대부로 오르다. 8월, 장산長山의 돈대墩臺와 임진臨津의 문루門樓를 세울 것을 아뢰다. 처 정부인貞夫人 이씨李氏가 세상을 떠나다. 윤12월, 동지성군관사同知成均館事가 되다. 내국제조를 겸하다. 고故 충신忠臣 윤집尹集의 자손이 궁핍하여 옛집을 파니, 그 집을 사서 그 자손에게 돌려줄 것을 아뢰다.</p>
1756년(영조 32)	44세	<p>1월, 승정대부로 오르다. 동지성군관사, 장흥고제조를 겸하다. 예조판서 겸 지경연, 상의원제조가 되다. 송시열과 송준길을 조천褫遷하지 말아야 한다고 아뢰다. 2월, 광주 유수廣州留守가 되다. 4월, 남한南漢 폐막을 바로잡을 것을 아뢰다. 윤9월, 선혜청宣惠廳당상관 겸 판의금, 상의원제조가 되다. 10월, 평안도 관찰사가 되다. 관서록關西錄을 쓰다. 12월, 관서시민關西市民的 구채舊債 수만 냥을 건감하다.</p>
1757년(영조 33)	45세	<p>2월, 내직內職으로 옮겨 비변사당상관이 되다. 3월, 판돈녕이 되다. 선혜청당상관이 되다. 4월, 총용사가 되다. 5월, 판의금부사 겸 지경연이 되다. 6월, 장흥고제조를 겸하다. 7월, 어영대장이 되다. 승문원제조가 되다. 10월, 우참찬 겸 지경연이 되다. 12월, 공조판서가 되다.</p>

연대	나이	기사
1758년(영조 34)	46세	<p>3월, 평시서平市署제조가 되다.</p> <p>4월, 해서海西의 상정법詳定法을 바로잡다.</p> <p>7월, 우참찬이 되다. 훈련대장이 되다. 군기시軍器寺제조를 겸하다.</p> <p>8월, 승문원 제조가 되다.</p> <p>한국訓局의 군료軍料를 순미純米로 정할 것을 아뢰다.</p> <p>김창집金昌集의 시문집 『몽와집夢窩集』을 간행하도록 자금을 지원하다.</p> <p>10월, 총융사가 되다.</p>
1759년(영조 35)	47세	<p>2월, 외손정조이 왕세손에 책봉되다.</p> <p>호조판서 겸 세손사世孫師가 되다.</p> <p>5월, 부모도감裨廟都監이 되어 관장한 노고勞苦로, 승록대부崇錄大夫로 오르다.</p> <p>영남嶺南에 조운선漕運船을 만들 것을 아뢰다.</p> <p>6월, 병이 심해져 모든 직임에서 해임해줄 것을 상소하다.</p> <p>10월, 이창의李昌諱, 홍계희洪啓禧와 더불어 준전당상澗川堂上에 제수되어, 그 절목을 논의하여 정하라는 명을 받다.</p> <p>12월, 예조판서가 되다.</p> <p>호조판서가 되어 공시貢市의 폐단을 바로잡을 것을 아뢰다.</p>
1760년(영조 36)	48세	<p>3월, 제신諸臣과 함께 준천澗川의 역사役事를 감독하라는 명을 받다. 수어사守禦使가 되다.</p> <p>4월, 청계천 공사 기념첩 『준천계첩澗川契帖』의 서문을 쓰다.</p> <p>6월, 종묘서宗廟署제조를 겸하다.</p> <p>8월, 좌참찬이 되다.</p> <p>9월, 금위대장이 되다.</p>
1761년(영조 37)	49세	<p>3월, 우의정 겸 승문원도제조都提調가 되다. 내국內局도제조가 되다.</p> <p>4월, 군자감 도제조, 훈련도감도제조, 종묘서도제조, 사복시제조를 겸하다.</p> <p>사도세자가 몰래 평양에 다녀오다. 영조가 알게 되어 관련자를 처벌하다.</p> <p>8월, 좌의정 겸 세자부世子傅가 되다.</p> <p>9월, 영의정 겸 승문원도제조, 내의원도제조, 사복시제조, 종묘서도제조가 되다.</p>
1762년(영조 38)	50세	<p>2월, 북도北道에 가서 여러 능침을 보수하는 역사役事를 감독하라는 명을 받다.</p> <p>「북정록北征錄」을 쓰다.</p> <p>5월, 사도세자의 비행에 대하여 나경언이 고변하다.</p> <p>윤5월, 좌의정 겸 세자부, 승문원도제조가 되다.</p> <p>사복시 제조 겸하다. 어영도御營都 제조를 겸하다.</p> <p>사도세자가 세상을 떠나다.</p> <p>6월, 군기시도제조를 겸하다. 내국도제조를 겸하다.</p> <p>8월, 외손[정조]이 동궁東宮에 책봉되다.</p> <p>세손부를 겸하다. 좌의정 겸 승문원도제조가 되다.</p> <p>12월, 사은 겸 주청사謝恩兼奏請使가 되다. 바로 다음해 1월 체직되다.</p> <p>군기시도제조를 겸하다.</p>

연대	나이	기사
1763년(영조 39)	51세	4월, 삼남三南의 여러 도에도 창술을 두어 흉년에 대비할 것을 청하여 제민창濟民倉을 설치하다. 5월, 영중추부사嶺中樞府사가 되다. 6월, 좌의정 겸 승문원도제조, 내국도제조가 되다. 세손부를 겸하다. 7월, 영의정이 되다. 봉상시도제조를 겸하다. 제향祭享에 사용하는 유과油果의 크기를 옛 규례를 따를 것을 아뢰다. 9월, 제사 의례를 바로잡은 뒤 『태상지太常誌』를 편찬할 것을 청하다.
1764년(영조 40)	52세	2월, 동궁정소의 종통을 효장세자로 옮기는 '갑신처분甲申處分'이 내려지다. 3월, 내국도제조를 겸하다. 5월, 영의정이 되다. 7월, 시무6조를 올리다. 10월, 영의정이 되다. 파주坡州에 방영防營을 설치할 것을 청하다. 금난전권을 완화할 것을 청하다. 장례원掌禮院을 혁파하고 보민사保民司를 설치할 것을 아뢰다. 11월, 한익모와 함께 「보민사절목保民司節目」을 올리다. ○월, 『어제영은경희록御製迎恩慶喜錄』의 발문跋文을 쓰다.
1765년(영조 41)	53세	6월, 종묘서 도제조, 사역원도제조를 겸하다. 7월, 연석筵席의 반차班次를 바로잡을 것을 아뢰다. 12월, 총렬공忠烈公 송상현宋象賢의 사당을 조천禱遷하지 말 것을 아뢰다. ○월, 스승 정내교鄭來僑의 시문집 『안암집浣巖集』을 간행하고 발문을 쓰다.
1766년(영조 42)	54세	4월, 내국도제조를 겸하다. 9월, 영중추부사가 되다. 계모繼母 이부인이 세상을 떠나다. 임금이 승지를 보내어 조문하다. 11월, 임금이 중사中使를 보내어 권내勸內하다. 12월, 임금이 사관史官을 보내어 선문宣問하다.
1767년(영조 43)	55세	10월, 임금이 부친 정헌공 흥헌보에게 사제賜祭하다.
1768년(영조 44)	56세	8월, 임금이 사관史官을 보내어 위유慰諭하다. 11월, 계모 이부인의 상례喪禮를 마치다. 영의정 겸 승문원도제조가 되다. 어영도제조, 내국도제조를 겸하다. 12월, 영의정 겸 어영도제조가 되다.

연대	나이	기사
1769년(영조 45)	57세	<p>1월, 『정사취감』을 충공에 올린다.</p> <p>3월, 봉상시 도제조를 겸하다.</p> <p>6월, 외손 동궁(정조)이 당호(堂號)로 '정휴당(貞休堂)'을 써주다.</p> <p>8월, 사복시 제조를 겸하다.</p> <p>10월, 울릉도에 대하여 고증하고 책을 편찬하여 외교 문건으로 삼을 것을 청하다.</p> <p>12월, 임금이 홍봉한 등에게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를 간행하도록 명하다. (이듬해 8월에 완성)</p>
1770년(영조 46)	58세	<p>1월, 영중추가 되다.</p> <p>3월, 청주(淸州)의 한유(韓諭)가 홍봉한을 처벌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리자 사직하다. 봉조하가 되다. 동대문 밖 흥낙임의 집에서 은둔하다.</p> <p>4월, 임금이 승지를 보내 돈유(敦諭)하다.</p>
1771년(영조 47)	59세	<p>2월, 사도세자의 아들 은언군(恩彦君)과 은신군(恩信君)의 관작이 삭탈되고 제주도에 유배되다. 은언군과 은신군에게 초헌(朝軒)을 빌려준 것으로 인해 청주(淸州)에 부처되다. 사면되어 과천(果川) 촌사(村舍)에서 대좌(待罪)하다.</p> <p>3월, 서명(敍命)을 받아 용호(龍湖) 촌사(村舍)에서 머물다.</p> <p>4월, 마포(三湖) 흥낙신의 집(僑舍)로 옮겨 머물다. 은신군이 유배지 제주에서 졸하다.</p> <p>6월, 임금의 부름을 받아 입시(入侍)하다.</p> <p>8월, 한유(韓諭)가 홍봉한을 벌해야 한다는 상소를 다시 올리고, 양사(兩司)가 합계(合啓)한 것으로 인하여, 면직되어 서인(庶人)이 되다. 경기도 고양(高陽) 문봉(文峯)에서 살다.</p> <p>11월, 임금이 은유(恩諭)를 내려 서명(敍命)하다.</p>
1772년(영조 48)	60세	<p>1월, 봉조하가 되다.</p> <p>7월, 김귀주(金龜柱)와 김관주(金觀柱)가 홍봉한을 처벌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린다. 파직되다.</p> <p>9월, 봉조하가 되다. 1월부터 계속 동궁(정조)이 초록하고 있던 『송사』의 산삭과 교정을 돕다.</p>
1773년(영조 49)	61세	<p>2월, 회갑이 되니, 임금이 사관에게 명하여 수서(手書)를 내리고 동궁이 술을 선물하고 지희시(志喜詩)를 보내다.</p>
1775년(영조 51)	63세	<p>10월, 임금이 부친 정헌공(鄭憲公) 홍헌보(洪憲保)에게 사제하다.</p> <p>12월, 동궁에게 대리청정의 명이 내리다.</p>
1776년(영조 52)	64세	<p>3월, 영조가 승하하다. 정조가 즉위하다. 정이환(鄭履煥) 등이 홍봉한을 처벌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린다.</p> <p>4월, 임금이 사관을 보내어 은유(恩諭)하다. 정조의 대리청정을 반대한 동생 흥인한(洪麟漢)이 유배되다.</p> <p>7월, 흥인한이 사사(賜死)되다.</p> <p>8월, 온가족이 고양(高陽) 문봉(文峯)에서 숨어 지내다. 이울(李瑛), 이계(李晙) 등이 홍봉한을 처벌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린다.</p>

연대	나이	기사
1777년(정조 1)	65세	6월, 맏아들 흥낙인이 세상을 떠나다. 8월, 김이익(金履翼)이 흥봉한을 처벌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린다.
1778년(정조 2)	66세	2월, 은교(恩敎)를 받아 장진(帳殿)에 입시하다. 12월 4일, 고양(高陽) 문봉(文峯)의 분암(墳庵)에서 세상을 떠나다. 정조가 부고를 듣고 막차(幕次)를 설치하고 망곡(望闕)하고, 청원부원군(淸風府院君)의 규례로 예장(禮葬)할 것을 명하고, 승지를 보내 치제(致祭)하다. 그리고 친히 제문을 지어 보내다.
1784년(정조 8)		8월 24일, 익정(翼靖)이라는 시호가 내려지다.
1800년(순조 1)		순조가 흥봉한의 『주고(奏藁)』를 간인(刊印)하라 명하다.
1843년(헌종 9)		헌종이 흥봉한에게 부조지전(不祧之典)을 시행하라 명하다.

1 分문(分問): 난리를 당한 임금에게 달려가 안부를 여쭙는 것을 말한다. 주 양왕(周襄王)이 난리를 피해 정鄭의 시골 마을에 머물면서 노획(魯)에 알리자, 장문중(臧文仲)이 “천자(天子)께서 도성 밖 땅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계시니, 어찌 감히 달려가서 천자를 모시는 신하에게 안부를 여쭙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天子蒙塵于外 敢不奔問官守]”라고 대답한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春秋左氏傳』 僖公 24年)

